

74-3-2

諸外國의 統計制度

1974. 7

006149

目 次

아 세 아 編	1
✓Ⅰ . 日本의 統計制度	3
✓Ⅱ . 自由中国의 統計制度	51
Ⅲ . 泰國의 統計制度	119
Ⅳ . 印度의 統計制度	149
Ⅴ . 필리핀의 統計制度	167
Ⅵ . 인도네시아의 統計制度	217
Ⅶ . 스리랑카의 統計制度	251
Ⅷ . 베트남의 統計制度	271
Ⅸ . 홍콩의 統計制度	283
✓Ⅹ . 싱가포르의 統計制度	291
歐 美 編	299
✓Ⅰ . 美國의 統計制度	301
✓Ⅱ . 獨逸의 統計制度	349
Ⅲ . 캐나다의 統計制度	367
✓Ⅳ . 스웨덴의 統計制度	389
Ⅴ . 荷蘭의 統計制度	401

아 세 아 編

I . 日本의 統計制度

I . 日 本 的 統 計 制 度

概 要

日本の 統計機構는 各 部 省 과 庁 的 統 計 部 局 으로 構 成 되 고 있 으 며
또한 地 方 에 하 부 組 織 을 두 고 있 다 .

一 般 的 으로 國 家 에 따 라 統 計 組 織 的 形 態 是 行 政 組 織 構 成 的
關 點 上 相 異 한 樣 相 을 띠 고 있 다 .

그 러 나 統 計 業 務 를 다 루 는 部 局 的 觀 點 上 本 だ 면 特 殊 機 關 上
統 計 業 務 가 集 中 된 形 態 和 여 러 官 官 上 分 散 된 形 態 及 其 中 間
組 織 的 三 者 로 區 分 할 수 있 다 .

分 散 形 態 上 在 此 的 統 計 業 務 的 調 整 是 集 中 形 態 上 比 較 難
易 だ . 許 多 分 散 型 國 家 上 亦 統 計 調 整 業 務 를 다 루 는 機 構 를
設 置 하 고 有 而 且 如 此 的 含 意 上 分 散 型 的 短 點 을 補 完 하 고 有 也 .

日 本 是 分 散 型 的 統 計 制 度 也 只 是 強 力 的 統 計 調 整 業 務 를 다 루 는
中 央 統 計 機 關 을 갖 춘 特 殊 的 形 態 也 且 地 方 公 共 團 體 的 統 計 業 務 是
大 體 上 集 中 型 的 形 態 를 취 하 고 有 也 故 曰 可 知 也 .

一 . 統 計 組 織

1 . 中 央 統 計 總 合 調 整 機 構

1) 行 政 管 理 庁 行 政 管 理 局

日 本 的 統 計 業 務 的 總 合 調 整 機 關 是 行 政 管 理 庁 行 政 管 理 局
也 .

從來에는 統計基準局이었으나 1970年 7월에 行政管理局으로 變更되었다. 현재는 行政管理局이 全國 統計業務의 綜合調整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行政管理局의 業務中 統計에 관한 業務를 總括整理하는 職位로서 統計主幹이 新設되어 統計法 統計報告調整法에 의거 從來 行政管理庁長官이 統計基準局長에게 委任된 權限을 그대로 継承하여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行政管理局은 統計의 眞實性 確保와 統計調査의 重複을 避하고 統計體系를 整備하여 統計 및 統計制度의 改善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統計法 및 統計報告調整法, 行政管理庁設置法 등의 法令에 根拠하여 다음과 같은 業務를 處理하고 있다.

- i) 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作成하는 統計中 指定統計 指定
- ii) 統計와 統計調査의 綜合調整
- iii) 統計報告의 調整
- iv) 各種의 統計基準의 설정
- v) 地方公共團體의 統計機關의 機構, 정원 및 運營에 관한 연락과 勸告
- vi) 統計職員의 訓練
- vii) 統計職員 養成의 企劃 및 資格檢定과 統計知識의 普及 및 統計制度의 改善發展에 관한 事項
- viii) 國際統計 業務의 統轄
- IX) 亞細亞 統計研修所 (Asian Statistical Institute) 에 서 實施하는 統計研修의 協助

2) 統計審議會

行政管理庁에는 附屬機關으로서 統計審議회가 設置되어 있다. 統計審議會는 行政管理庁長官의 要請에 따라 統計調査의 審査와 統計基準의 設定·統計調査活動 및 統計報告의 調整에 關聯된 重要 業務를 檢討 調査하고 이와 關聯된 事項은 行政管理庁長官에게 勸告한다.

同審議會는 統計學識 및 統計調査에 關한 經驗이 豊富한 7名과 中央行政機關 및 都道府縣統計主管部局의 代表 7명 및 統計利用者를 代表하는 4명으로 構成되어 있고 每月 1回 會議을 開催하고 있다.

이 審議會는 1973年 1月末 現在 다음과 같은 13個의 部會를 두고 있다.

- ① 統計開發部會
- ② 統計制度 部會
- ③ 人口 및 勞動統計部會
- ④ 農林 漁業統計部會
- ⑤ 鉦工業 建設統計部會
- ⑥ 交通統計部會
- ⑦ 企業統計部會
- ⑧ 國民生活 및 社會統計部會
- ⑨ 調査技術 開發部會
- ⑩ 分類部會

- ① 經濟指標部會
- ② 國民經濟計算部會
- ③ 情報處理部會

2. 統計作成機關

全國的 統計의 作成機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中央機關

① 總理府 統計局

總理府統計局은 國勢調查 및 기타 各省庁에 속하지 않는 國勢의 基本에 관한 統計調査의 實施 및 分析을 行하며 大規模의 最新集計製表의 施設을 가지고 自体調査 結果의 處理와 集計는 물론 他省庁의 集計受託業務도 맡고 있다. 그리고 그 산하부속기관으로서 統計研修所를 設置 運營하고 있다.

統計局의 職制는 크게 調査部와 製表部の 2部로 나누이고 總務課와 統計情報課가 별도로 設置되어 있다.

調査部에는 國勢統計課, 勞動力統計課, 經濟統計課, 消費統計課가 있고 製表部內에 受託製表課, 人口製表課, 經濟製表課, 電子計算課가 있다.

② 經濟企劃庁 (調査局 統計課 및 經濟研究所)

經濟企劃庁의 調査局에 속하고 있는 統計課는 주로 經濟 統計分析業務를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重要的 經濟統計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企劃庁 傘下의 經濟研究所에서 國民所得統計를 편집하고 國庫조사를 實施하고 있다.

이 외에도 同研究所에서는 經濟構造 및 經濟循環의 研究를 行하고 있다.

③ 大蔵省(大臣官房調査企劃課, 関稅局輸出課 및 國稅庁總務課)

大蔵省 関稅局輸出課가 貿易統計를 編輯하고 있으며 大蔵省 大臣官房調査企劃課는 省内의 統計의 調整을 받고 있다.

그리고 大蔵省 傘下의 國稅庁總務課에서는 稅務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④ 文部省(統計課)

文部省 大臣官房統計課는 教育行政에 관한 統計調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集計 編輯하고 있으며 教育委員會와 文部省傘下 各機關의 統計調査에 관한 기술상의 指導와 助言을 行하고 있다.

同省 傘下의 統計數理研究所는 統計에 관한 數理 및 그 應用的 研究를 行하고 있다.

⑤ 厚生省(統計情報部)

厚生省 大臣官房統計情報部는 人口動態統計를 編輯하며 厚生行政에 관한 統計調査를 實施하고 관련 統計를 分析한다.

그리고 同部는 總理部の 統計局 다음가는 大規模의 統計資料處理 施設을 갖추고 있다. 同省 傘下의 人口問題研究所는 將來의 人口 推計 및 기타 人口問題를 研究하고 있다.

⑥ 農林省(農林經濟局的 統計情報部)

農林省 農林經濟局 統計情報部는 農林漁業에 관한 주요 統計調査의 實施와 관련 統計의 分析業務를 받고 있다.

農林省은 統計調査를 担当하는 地方機關으로서 地方農政局 統計調

査部，同局 統計調査事務所 및 北海道 統計調査事務所가 있고 이들의出張所가 設置되고 있다.

⑦ 労働省 (労働統計調査部)

労働省 大臣 官房에 労働統計調査부가 設置되어 있으며 労働行政에 관한 統計調査의 実施 및 分析을 行하고 있다.

⑧ 通商産業省 (調査統計部)

通商省内의 調査統計部는 鉱工業，商業，國際貿易에 관한 統計調査를 実施하고 그 結果를 分析・編輯한다. 또 部省의 기타 各局 및 同省傘下の 中小企業庁에서도 소관행정에 관한 各種 統計調査를 実施하고 있다.

⑨ 運輸省 (情報管理部)

運輸省의 情報管理部는 輸送 기타 交通行政에 관한 各種 統計資料를 蒐集・整理・編輯하고 있다.

⑩ 郵政省 (經營分析課)

郵政省 經理局經營分析課는 他 部局의 統計業務를 調整하는 외에 通信行政에 관한 各種 統計資料를 蒐集・整理・編輯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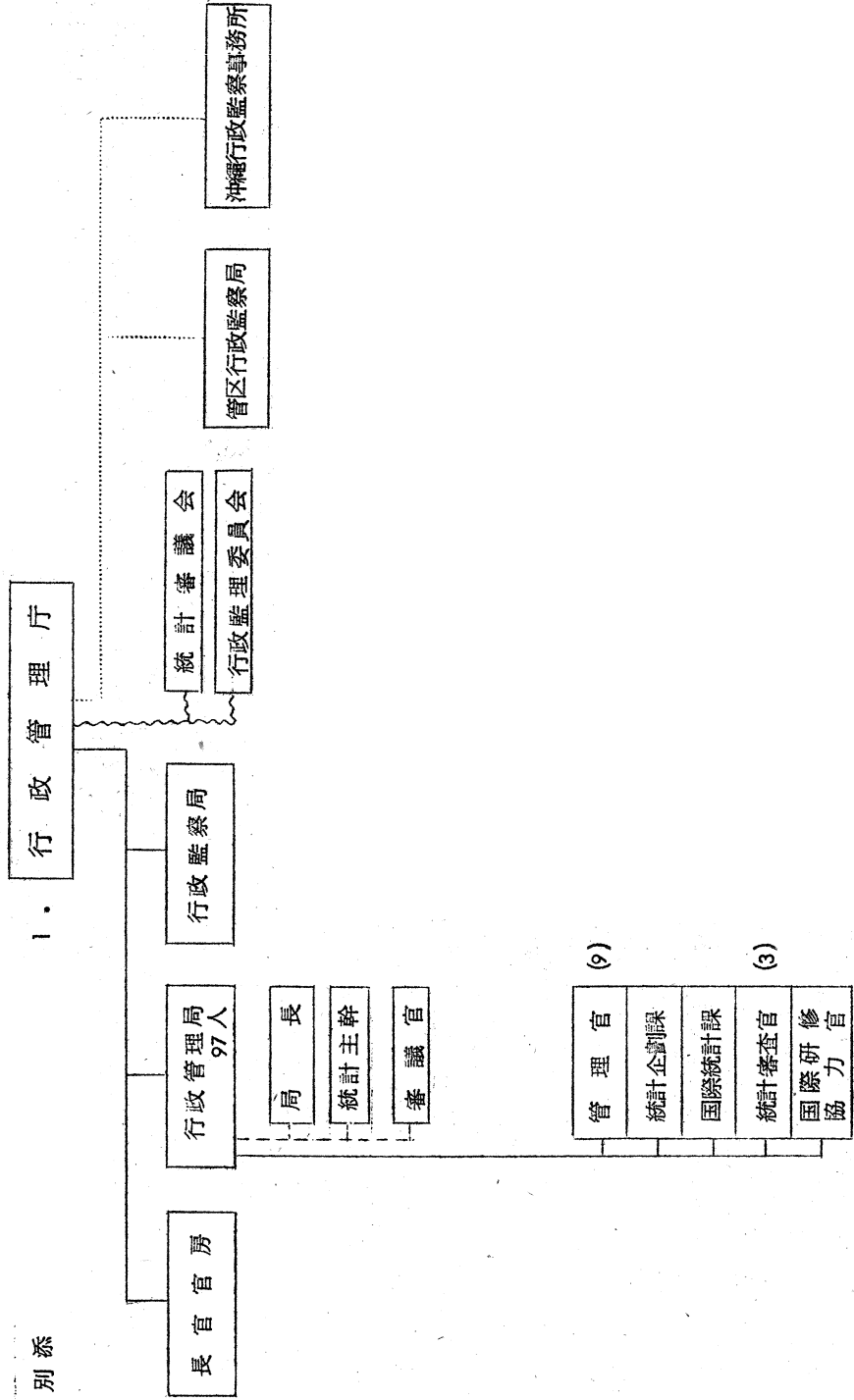
⑪ 建設省 (計劃局 調査統計課)

建設省 調査統計課에서는 建設에 관한 各種 統計를 蒐集・整理・編輯한다.

其他 部省 및 機關에서도 各 部署에서 소요되는 行政統計資料를 編輯 發刊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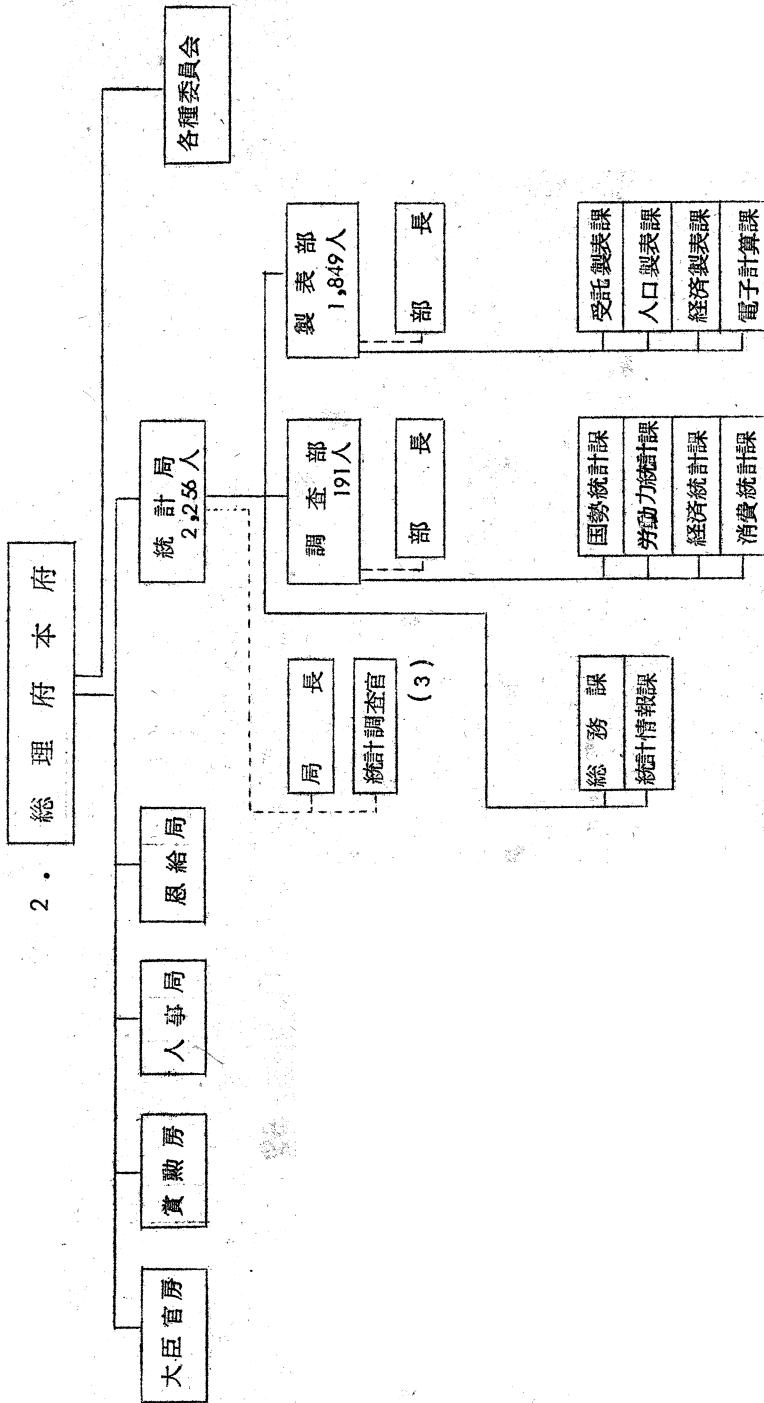
重要な 日本 中央政府의 統計機構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別添



註：1.人員 吳 機構亡 1973.4.1 現在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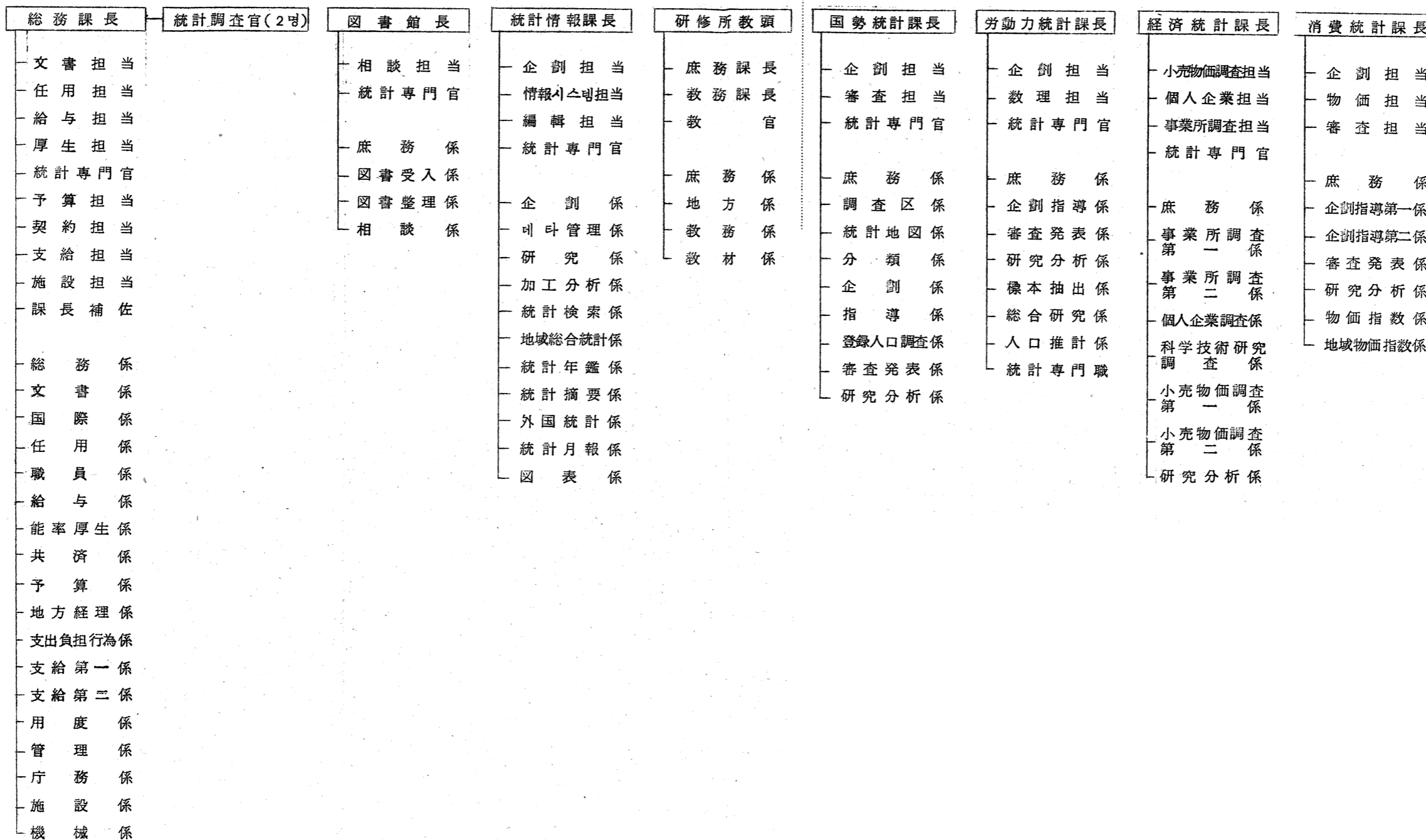
2.()内斗 数字亡 担当官数計.



2-1. 總理府 統計局의 組織表

(1) 總務課等

(2) 調查部



(3) 製 表 部

受託製表課長

- 企 劃 担 当
- 庶 務 担 当
- 受託第一担当
- 受託第二担当
- 受託第三担当
- 統計専門官

- 企 劃 係
- 調 整 係
- 管 理 係
- 庶 務 係
- 作 業 計 劃 係
- 材 料 保 管 係
- 受託製表第一係
- 受託製表第二係
- 受託製表第三係
- 受託製表第四係
- 受託製表第五係
- 受託製表第六係
- 受託製表第七係
- 受託製表第八係
- 受託製表第九係
- 受託製表第十係

人口製表課長

- 庶 務 担 当
- 内容検査第一担当
- 内容検査第二担当
- 基本符号第一担当
- 基本符号第二担当
- 職産符号第一担当
- 職産符号第二担当
- 審 查 担 当
- 事業所調査担当
- 統計専門官

- 庶 務 係
- 作 業 計 劃 係
- 受 付 整 理 係
- 照 会 係
- 内 容 檢 査 第 一 係
- 内 容 檢 査 第 二 係
- 内 容 檢 査 第 三 係
- 内 容 檢 査 第 四 係
- 内 容 檢 査 第 五 係
- 内 容 檢 査 第 六 係
- 基 本 符 号 第 一 係
- 基 本 符 号 第 二 係
- 基 本 符 号 第 三 係
- 基 本 符 号 第 四 係
- 基 本 符 号 第 五 係
- 基 本 符 号 第 六 係
- 職 産 符 号 第 一 係
- 職 産 符 号 第 二 係
- 職 産 符 号 第 三 係
- 職 産 符 号 第 四 係
- 職 産 符 号 第 五 係
- 職 産 符 号 第 六 係
- 審 査 係
- 事業所調査第一係
- 事業所調査第二係
- 事業所調査第三係

經濟製表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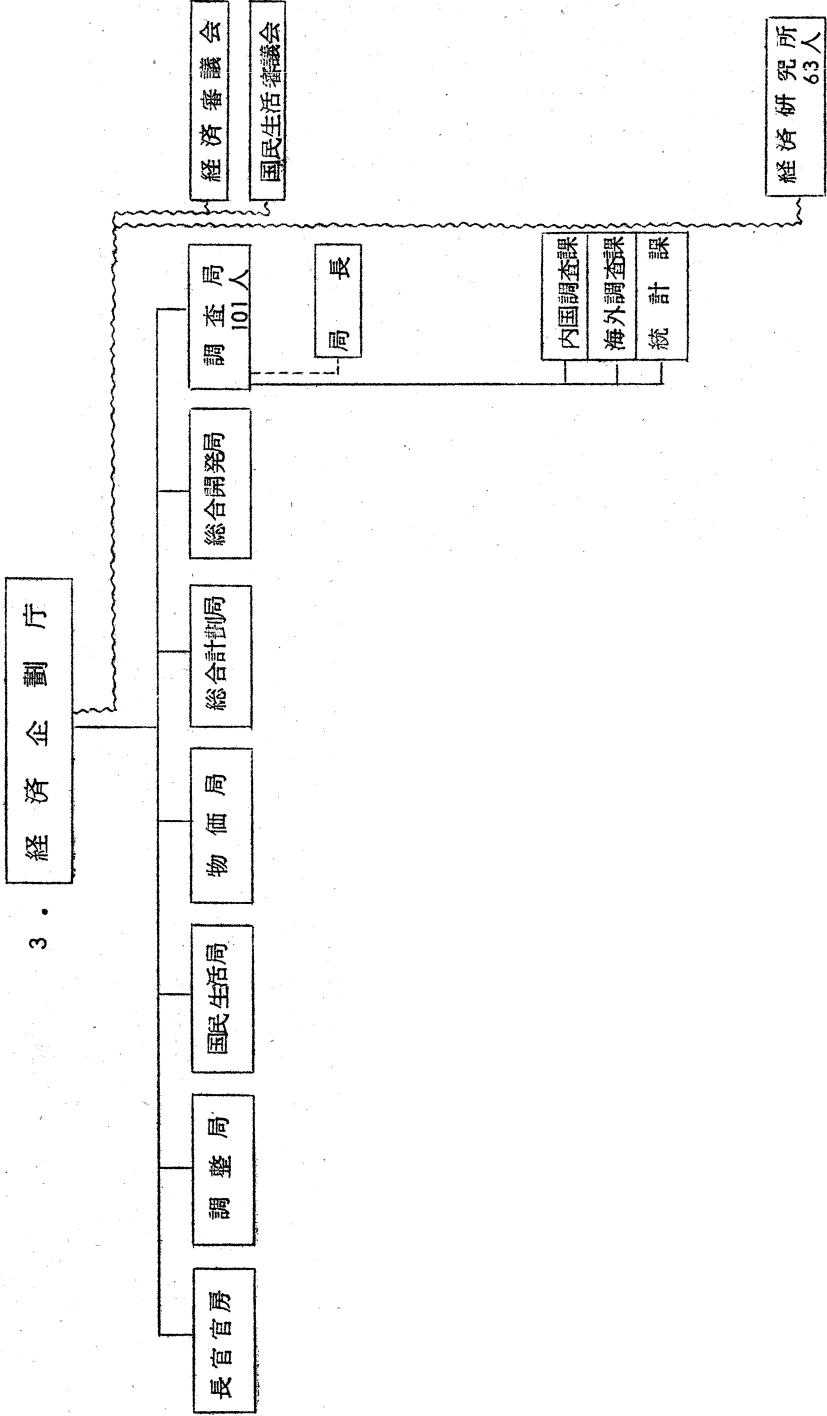
- 庶 務 担 当
- 勞動力調査担当
- 小売物価調査担当
- 家計調査第一担当
- 家計調査第二担当
- 統計専門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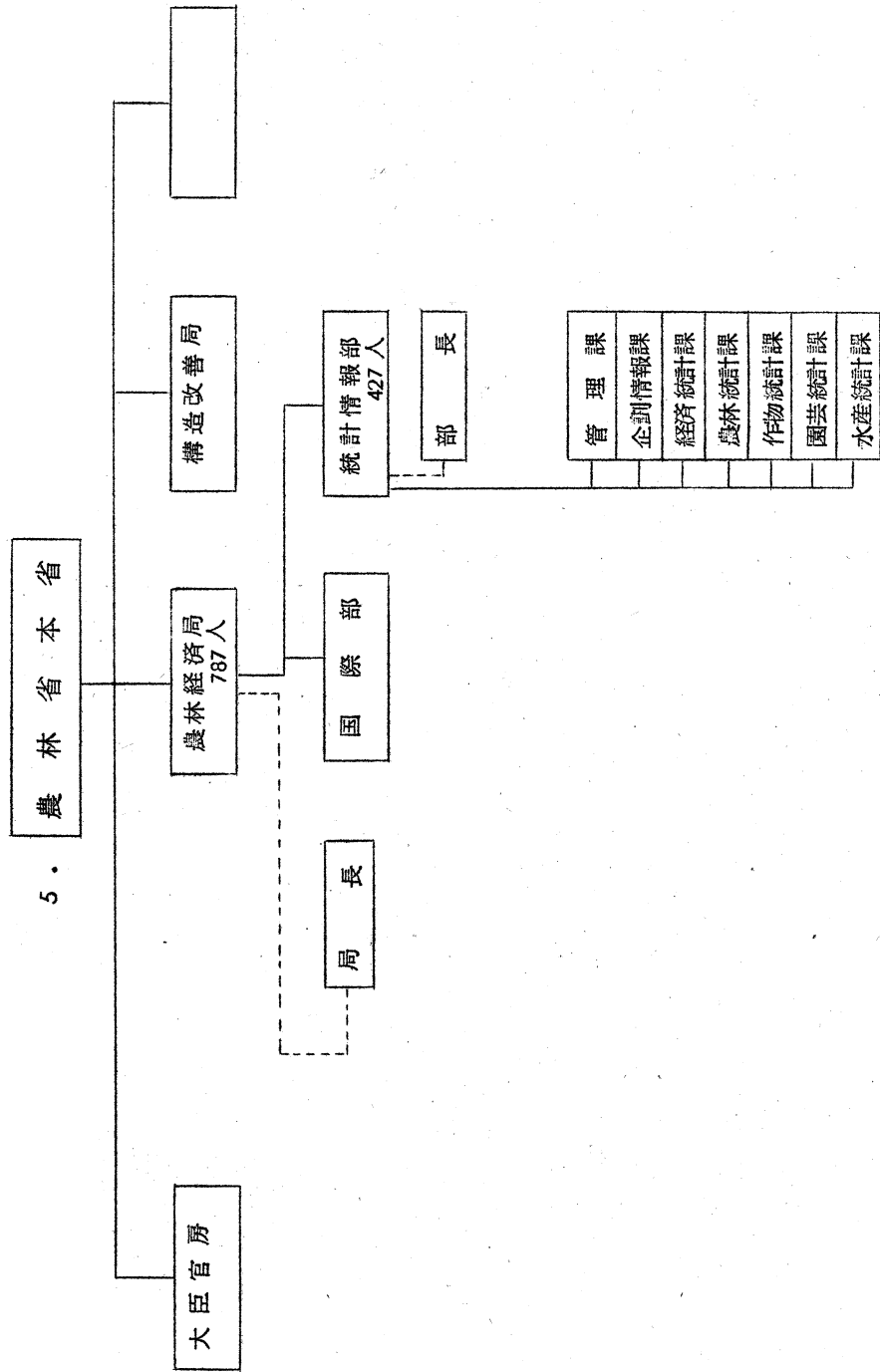
- 庶 務 係
- 作 業 計 劃 係
- 勞動力調査第一係
- 勞動力調査第二係
- 個人企業調査係
- 小売物価調査第一係
- 小売物価調査第二係
- 小売物価調査第三係
- 家計調査受付係
- 家計調査符号第一係
- 家計調査符号第二係
- 家計調査符号第三係
- 家計調査換算第一係
- 家計調査換算第二係
- 家計調査審査第一係
- 家計調査審査第二係

電子計算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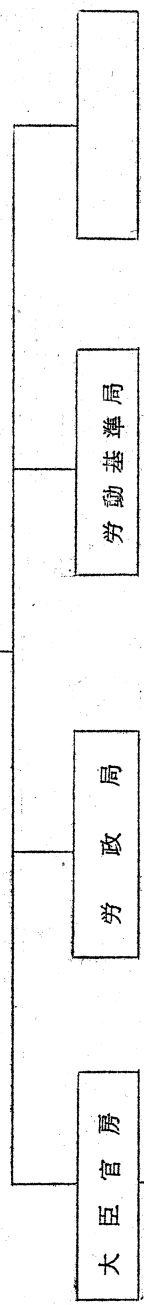
- 企 劃 担 当
- 演 算 担 当
- 穿孔第一担当
- 穿孔第二担当
- 統計専門官

- 庶 務 係
- 作 業 計 劃 係
- 演 算 第 一 係
- 演 算 第 二 係
- 演 算 第 三 係
- 操 作 第 一 係
- 操 作 第 二 係
- 光 学 装 置 係
- 穿 孔 第 一 係
- 穿 孔 第 二 係
- 穿 孔 第 三 係
- 穿 孔 第 四 係
- 穿 孔 第 五 係
- 穿 孔 第 六 係
- 穿 孔 第 七 係
- 統 計 專 門 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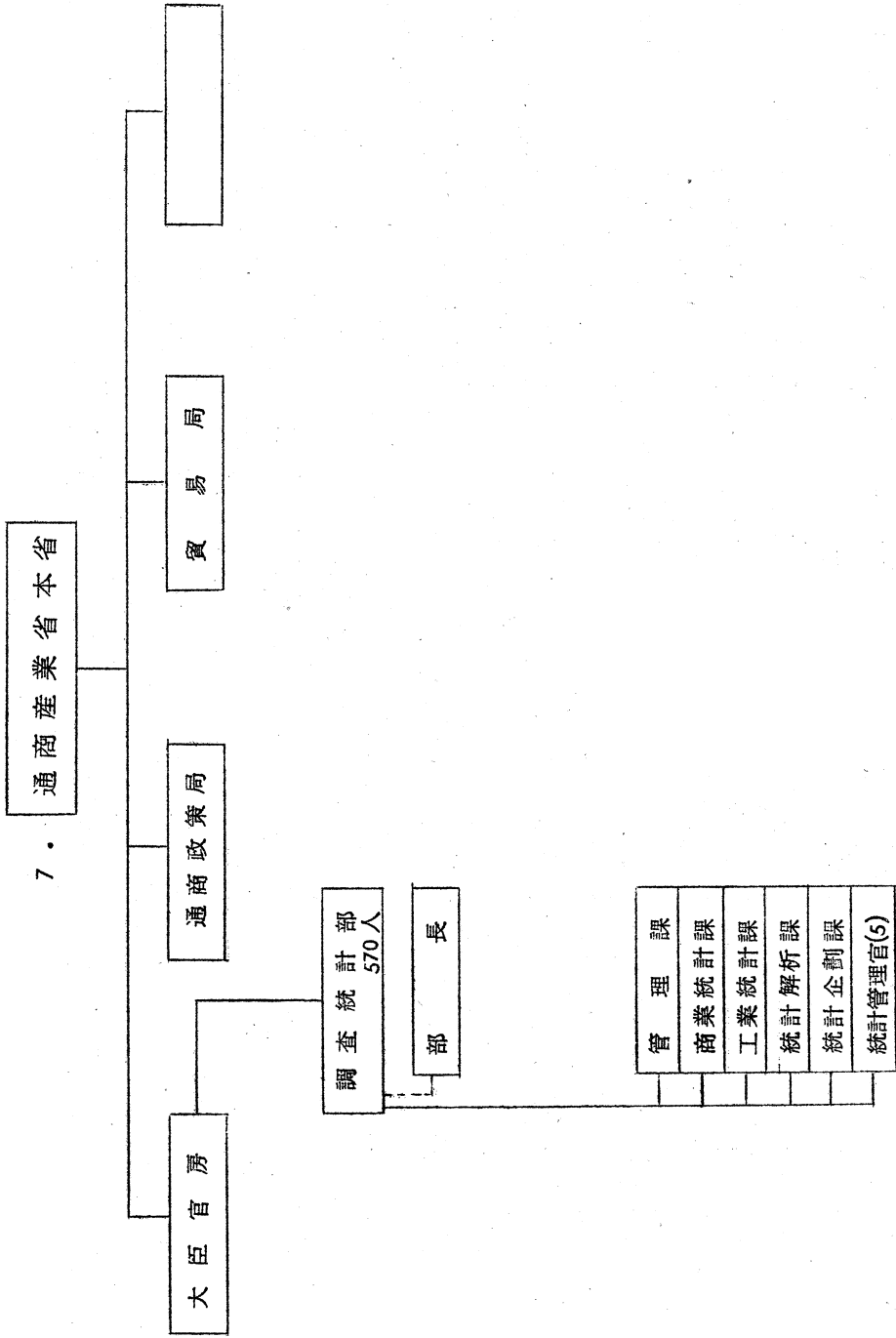
6. 労働省本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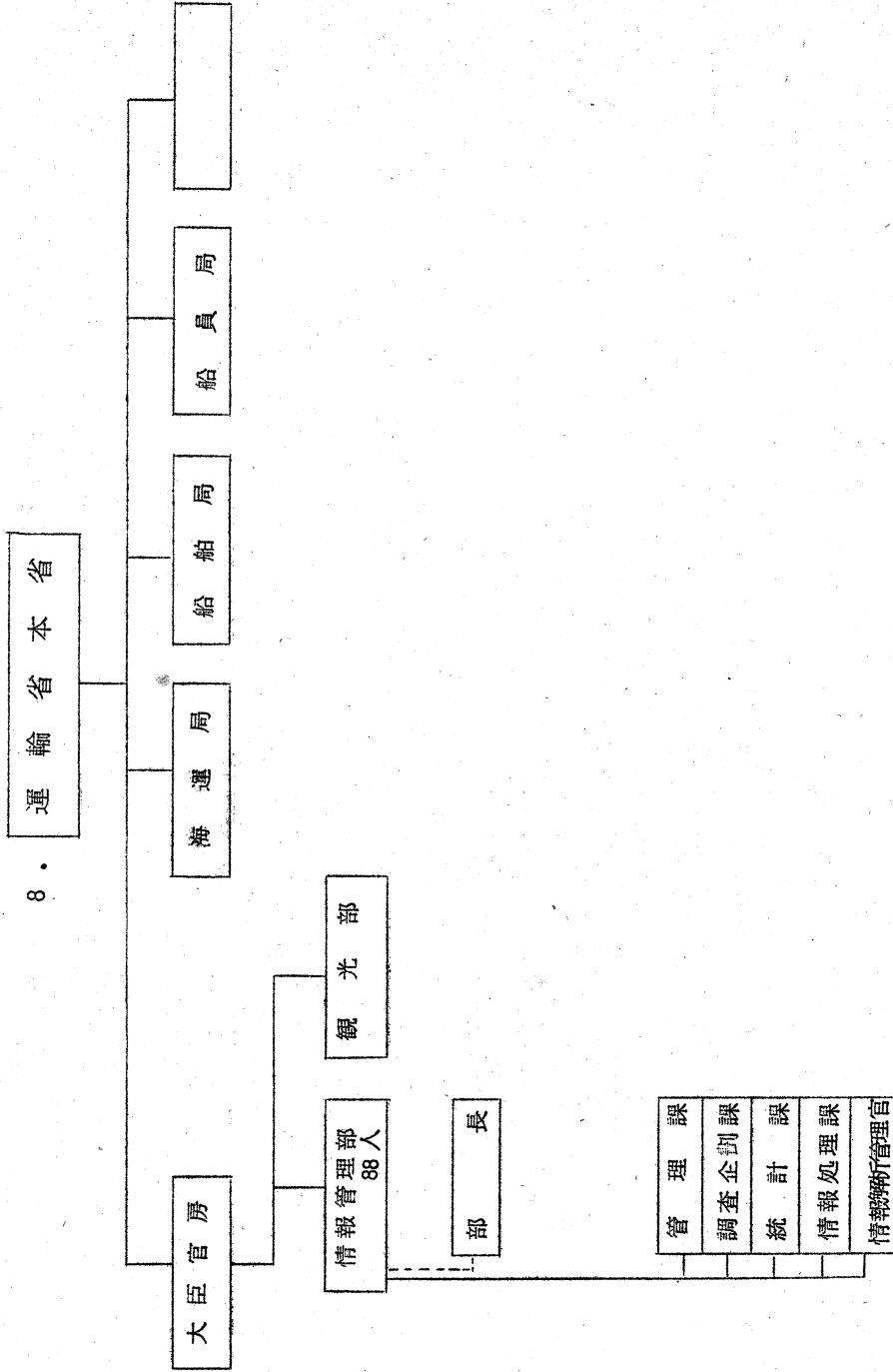
統計情報部
216人

部長

- 管理課
- 情報解析課
- 雇傭統計課
- 賃金統計課
- 労働福祉統計課
- 情報処理



8.



2) 地方機構

前項에서 기술한 各 中央部省과 庁의 統計調査의 실사기관 으로서는 各 都道府縣統計 主管部課 및 市町村의 統計担当課係가 있다. 大部分의 國家指定統計 調査의 大部分의 實查事務는 이들 機構에 委託되고 있다.

縣에는 統計課외에 衛生 또는 民生主管課가 있고 教育委員會事務局 및 其他 部署에서도 別개의 單位 統計組織을 두고 있다.

그리고 農林省傘下 機關으로 統計調査 事務所가 있고 通商성 산하의 通商산업국과 勞働省傘下의 勞働基準局 등이 地方機關으로 設置되고 있다.

그리고 최말단의 統計調査 單位로 調査員이 있으나 그들은 임시적으로 雇傭되고 있는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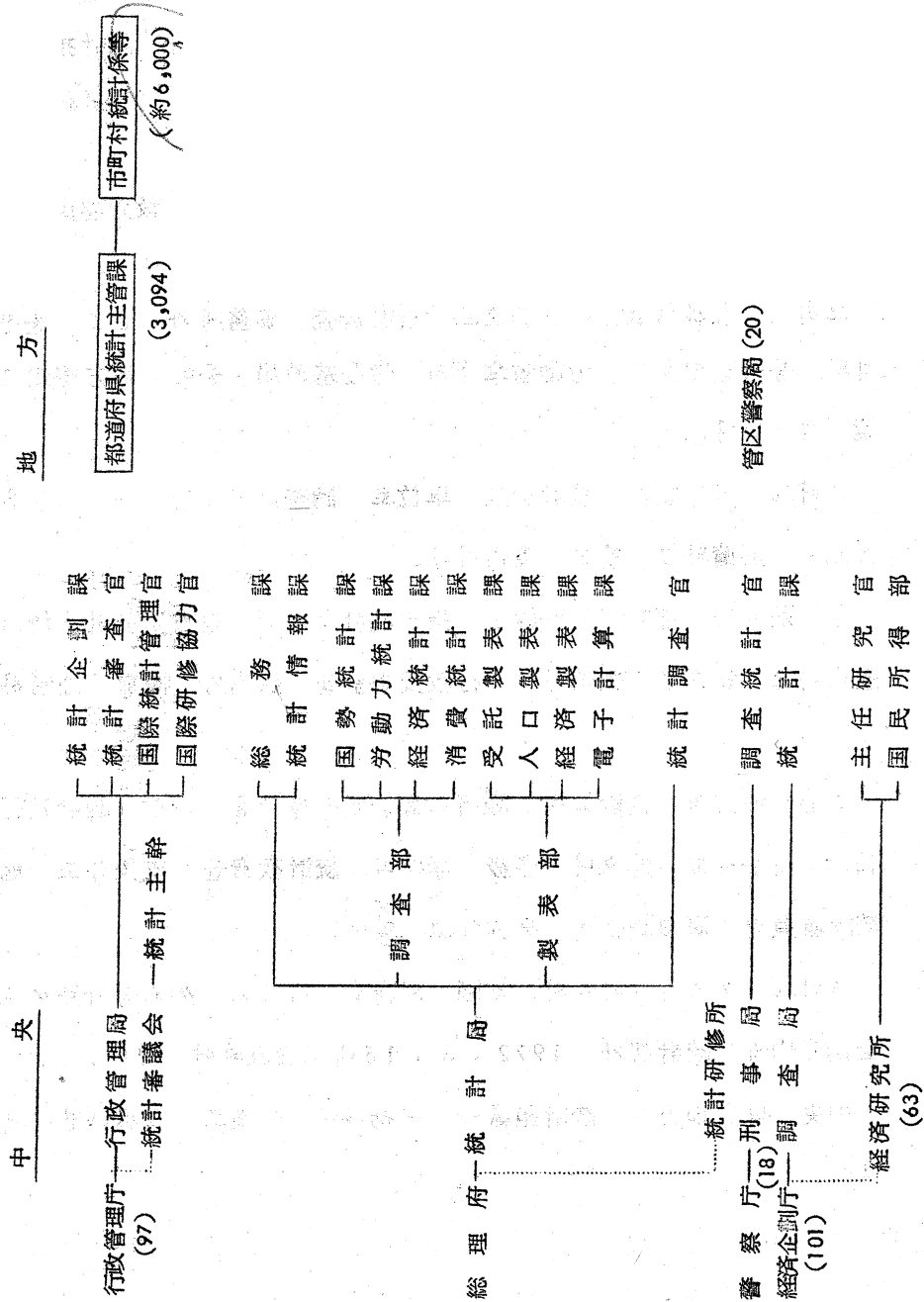
各 縣이나 部の 統計課는 指定統計외에도 地方固有의 統計業務를 遂行하고 있으며 大部分이 行政資料室을 課내에 設置 運營하고 있다.

또한 地方의 統計年報, 經濟指標, 현세일람 등 各種 統計刊行物을 刊行 배부하고 있으며 各級 學校의 統計教育을 支援하고 地方庁 統計職員의 研修訓練을 實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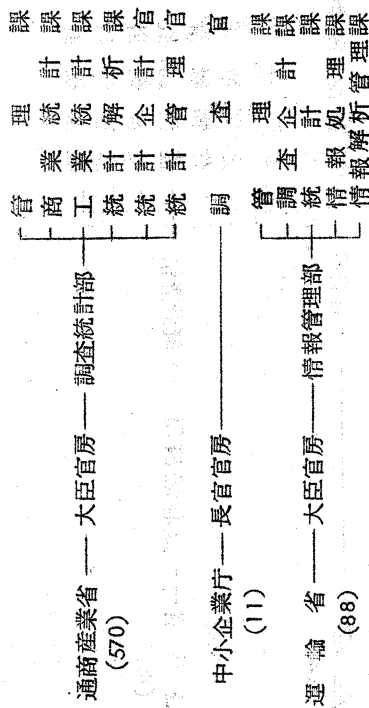
그리고 "오끼나와"의 本國 歸屬을 계기로 "오끼나와" 政府 企劃庁내에 統計部가 1972. 5. 15에 設置되어 있다.

中央 및 地方의 統計組織을 一括하여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官 庁 統 計 機 構 一 覧



地方通商産業局 (170)



海運局・陸運局
陸運事務所 (8)
都道府県港湾課・観光課

管区気象台調査課 (51)
地方郵政局 (45)

都道府県労働基準局

都道府県建設・土木主管課

地方事務局 人事委員会

(註) 1. 機構令 1973.4.1現在
2. 人員令 1972.4.1現在
3. 内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
4. () 内数字は統計関係職員実数

3. 統計職員

1) 統計職員數

統計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職員의 正確한 숫자를 把握하기는 困難하나 1973年 4月1日 現在 各部省 庁에서 일하고 있는 統計職員의 數는 대략 다음과 같다.

統計職員이라 함은 統計業務를 다루는 課, 係의 職員 및 비록 統計課, 係에 속하지 않더라도 實際 統計調査業務, 資料處理 및 製表 分析業務를 取扱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包含한다.

위 두 種類의 職員을 計算함에 있어 調査員은 除外되었으며 事務職員중 두개의 職을 겸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固有業務가 統計와 關聯있을 때는 包含시켰다.

以上の 基準에서 計算한 中央政府의 統計調査員은 約 16,000名에 達한다. 내역을 中央 및 中央機關의 地方事務所로 나누면 中央部署에 4,700名, 地方事務所 또는 出張所에 11,300名이 勤務하고 있다.

都, 道, 府, 県 段階에서 勤務하고 있는 統計職員은 正確히 算出하기는 더욱 어렵지만 대략 計算하면 各 統計課에 3,072名이 勤務하고 있고 衛生 및 民生主管과에 360名, 文教部門의 教育委員會事務局에 420名이 勤務하고 있다.

市町村段階에서 일하고 있는 統計職員은 約 2,650名이며 他業務와 統計業務 兼任職員이 5,800名이 있고 保健所에 830名이 勤務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략 計算할 때 地方政府에서 일하고 있는 統計段階 職員數는 約 10,500 名에 이르고 있다.

統計調査員의 境遇를 보면 1970年度 人口센서스때 約 600,000 名이 從事하였고 1970年度 農林센서스때 約 200,000 名이 從事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센서스가 없는 해의 調査員數는 顯著히 줄어든다. 1961 會計年度로부터 1972 會計年度 동안 指定統計에 從事한 常勤調査員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64	~	300
1965	~	600
1966	~	270
1967	~	120
1968	~	280
1969	~	410
1970	~	790
1971	~	170
1972	~	320

2) 統計職員에 대한 教育

① 政府統計教育機關

總理部 統計局 所屬 統計研修所와 文部省에 所屬된 統計數理研究所는 統計法에 根拠하여 行政管理庁長官이 指定한 2 個의 代表的인 政府統計研修 機關이다.

統計局 所屬의 統計研修所는 6 個月 教育過程을 두고 있으며 統

計數理研修所는 3個月 教育過程을 두고 있다. 各各 每年 100 余名の 研修生을 수용 教育시키고 있다.

② 地方別 統計教育

都道府県 및 都道府県統計協會가 中心이 되어 地方庁 統計職員을 위하여 3日 내지 7日間의 短期 보수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며 全國에서 해마다 1,000 余名이 履修하고 있다.

③ 其他

그 외에도 여러 中央部省과 行政庁에서 每年 統計職員에 대한 소양교육을 實施하고 있다.

특히 農林省과 厚生省은 各々 獨自의으로 統計職員에 대한 特別統計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이외에도 行政管理庁은 1963年 以來 每年 各部署의 統計職員을 對象으로 統計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統計調査員도 正確한 統計調査 實施에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함으로 調査員 任命권자는 調査員의 소양교육을 責任지고 實施토록 하고 있다.

全國的 規模의 統計調査時의 調査員은 大개 中央에서 직접 임명하지만 地方機關에 委任할 수도 있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國勢 調査員은 內閣總理大臣이 任命하며 自動車輸送統計調査員은 陸運局長이 직접 任命한다. 政府에서 任命된 統計調査員은 一般職의 國家公務員으로 되어 있으며 地方公共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調査員은 臨時的인 非常勤職 特別地方公務員으로 待遇를 받는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調査員의 俸給이 낮기 때문에 유능한 統計調査員을 충원하기 어려운 實情에 있다. 調査員은 1972年度에 日当 1,340 円을 支給받았다.

그러나 統計調査 規模가 擴大되고 調査種類도 많아지고 調査內容 또한 複雜하고 水準이 漸次 높아짐에 따라 유능한 調査員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같은 點을 考慮하여 政府에서는 調査員 俸給을 增額하는 方案, 可及的 우편조사를 많이 實施하는 方案, 研究調査員 制度를 選擇하는 方案, 정규 統計職員을 調査員으로 兼任시키는 方案등을 考慮하고 있다.

1972年度에 예비 統計調査員을 위한 予算이 東京都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것은 統計調査員 후보자를 確保하여 必要時에 調査員 採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制度이다.

4. 統計調査 活動經費

1972年度の 統計調査活動 經費중 人件費는 中央政府部省의 統計職員 1名당 大략 年間 經費가 1,524,000 円, 地方政府的 職員은 1,434,000 円, 市の 職員은 1,372,000 円이었다.

以上 職員의 總經費를 計算하면 30,600 百万円에 達하고 있다. 人件費外의 統計調査 經費를 1961年에서 1972년까지 年度別로 보면 中央部省의 指定統計의 總經費는 다음과 같다.

1962	2,100	百万円
1963	2,300	"
1964	3,000	"
1965	3,700	"
1966	5,800	"
1967	4,300	"
1968	5,500	"
1969	7,500	"
1970	13,100	"
1971	7,500	"
1972	9,000	"

1972年度에 支出한 90億円の 支出構成比를 보면 農林省이 26.6%, 統計局이 13.1%, 通商省이 11.6%, 厚生省이 11.6%, 労働省이 4.6%, 大蔵省이 3.5%, 運輸省이 3.3%, 其他가 3%로 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經費外에도 中央 各部省의 一般的 統計資料 蒐集 및 編輯經費에 많은 予算이 投入되고 있으나 資料未備로 正確한 내역을 算出하기 어렵다.

그리고 1972年度 地方政府의 總統計調査關係 經費는 約 10億 4千万円에 達하고 있다.

5. 統計資料處理施設

政府 統計資料處理를 大規模로 최초로 導入 應用한 것은 1920年度의 人口센서스때 부터였다.

그때는 P C S (Punch Card System) 를 使用하여 資料를 處理하였다. 그때부터 기계장치 설비는 해마다 增加되어 第2次世界大戰前에 外國으로부터 輸入된 P C S 기계의 80%가 政府 各部省에 設置 使用되었다.

戰後 統計의 重要性이 增大됨에 따라 P C S 장치는 더욱 增加되었고 最近에 이르러 기억장치를 수반한 Computer가 P C S에 代 替하여 大量 設置되고 있다.

1973年 1月 現在 185個의 Computer가 法務省을 除外한 政府 各 機關에 設置되어 있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統 計 局	I B M	370 - 150	NEAC	2200 - 500
				NEAC	2200 - 200
經濟企劃庁	F A C O M	230 - 60		
大 藏 省	F A C O M	230 - 35		
文 部 省	H I T A C	8400		
厚 生 省	N E A C	2200 - 500		
				N E A C	2200 - 400
農 林 省	H I T A C	8500		
運 輸 省	N E A C	2200 - 400		
勞 動 省	O U K	9400		

二. 統計法規

統計에 관하여 가장 重要한 法規는 "統計法" 과 "統計報告調整法" 및 "地方統計機構에 관한 規定" 이다.

1947年 5月에 統計에 관한 基本法으로서 制定된 統計法은 "統計의 正確性을 期하고 統計調査의 중복을 피하며 統計制度를 公고히 하고 改善 發展시키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上記 法規는 統計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指定統計制度를 채택하는 한편 一般 統計의 중복을 避하고 全國의 統計內容 規模를 把握하기 위하여 承認 統計制度를 택하고 있다.

"統計報告 調整法規"는 1952年 8月에 통계피조사자들의 負擔을 경감하고 行政活動의 能率을 높이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地方統計機關에 관한 規定"은 地方庁의 行政目的을 위하여 統計調査 活動을 遂行하는 範圍 및 內容등을 規定하고 있다.

1. 統計法에 의한 指定統計와 承認統計, 승인된 통계법 Designated, Notified, Approved statistical statistics, statistics.

1) 指政統計

(1)

統計法에 의하면 指定統計란 日本의 中央政府 및 地方庁에서 計劃・準備되고 行政管理庁 長官의 承認을 받아 實施하는 統計를 말한다.

이와같은 指定統計는 國民生活의 重要部分을 表現하는 항목을 調査하고 國家의 基本 정책 수집을 위하여 必要한 內容을 調査한다.

1972年末 現在 日本에는 12個의 指定統計가 있다.

指定統計의 準備를 위하여 行하는 統計調査를 위하여 統計法은 特別히 調査員 資格, 계획입안자의 자격, 地方厅에 대한 위임 範圍 등을 規定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① 指定統計의 承認

指定統計調査를 實施하려는 관서의 責任官은 事전에 그에 관한 調査計劃을 行政管理厅长官에게 提出하여 檢討를 받은 뒤 承認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한번 指定된 統計를 폐지하거나 變更할 때도 承認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② 報告義務

指定統計調査를 實施하는 책임관은 指定統計를 準備함에 있어서 응답자에게 指定統計 實施에 즈음한 報告義務를 課한다.

報告에 관하여 統計法을 위반한 자에게는 금고등의 刑罰에 처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③ 秘密의 保護

統計法은 한편으로 指定統計 被調査者에게 報告의 義務를 賦課하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調査官에게 피조사자로부터 얻은 情報에 관한 秘密을 엄격히 지킬 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指定統計用 調査表는 당해 統計目的 이외에 租稅賦課나 個人的 情報 또는 범죄수사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그 統計調査表는 指定統計 目的을 위한 編輯·製表用 이외에는 使用할 수 없다.

그러나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을 얻어 關聯 官庁의 예외로 地域別 分類 또는 學術目的의 研究資料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秘密의 保護를 위하여 個人的 秘密이 탄로되지 않는 範圍에서 統計結果表를 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오기나와"의 본토 歸屬으로 過去 "오기나와"정 청에서 實施했던 統計調査는 새로이 行政管理庁長官의 許可를 받게 되었다.

④ 統計結果의 刊行

統計結果는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을 받는 즉시 가급적 迅速히 公표하여야 한다.

2次世界大戰 前에는 秘密事項 또는 國家安保事項의 이유로 公표되지 않은 統計가 많았다. 原則적으로 公표는 관보나 또는 一般 刊行物의 形態로 公표된다.

2) 承認統計

中央政府, 協同組合, 地方政府, 日本銀行, 日本 商工会議所는 指定統計 이외의 統計調査를 實施하려면 반드시 行政管理庁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972年 10月 現在 承認統計의 總數는 4,449個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承認統計를 폐지하거나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는 行政管理庁長官은 施行機關에 대하여 이를 要請할 수 있다.

反面에 기 承認된 統計를 變更하거나 폐지한 때도 시행기관은 行政管理庁長官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承認 統計制度는 各種 統計를 改善 發展시키고 統計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統計의 眞實性을 確保함과 아울러 유용한 統計情報를 수집

하여 一般 利用者에게 널리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承認된 統計報告

“統計報告 調整法”은 國家 行政機關이 10 사람 以上の 자연이나 법인으로부터 間接 또는 直接的으로 지방관서를 통하여 統計資料를 蒐集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행정관리청장관의 承認을 얻도록 하고 있다.

1972年 10月末 現在 이러한 報告 承認統計는 8,829 件에 達하고 있다.

상기 法規를 위반할 시는 行政管理庁長官은 統計資料報告의 變更 또는 整理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承認制度를 통하여 통계보고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자에게 지나친 負擔이 가지않도록 가능한한 보고 사항을 억제하는데 있고 나아가서 통계자료 수집기술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통계법 (1947.3.26 법률제 18호로 공포) (1968 년도에 제 11 차로 개정 되었음)

(법의 목적)

제 1 조 : 이 법은 통계의 진실성확보와 통계조사의 중복을 피하고 통계체계를 정비함과 아울러 통계제도의 개선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통계)

제 2 조 : 이 법에서 지정통계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행정
관리청장관이 지정하여 그 뜻을 공시한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조사)

제 3 조 : ①지정 통계조사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이하 지정 통계조사라
고 한다) 는 이 법에 의거 행하여지며 다른 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이 법에 정하는 외의 지정 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명령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포함) 으로 이를 정한다.

③주무대신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사전에 행정관리청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전항의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도 또한 같다.

(국세조사)

제 4 조 : ①정부가 전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인구에 관한 조사로 행
정관리청장관이 지정하여 그 뜻을 공시한 것을 국세조사라
고 한다.

②국세 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국세 조사를
행한 해로부터 5년째의 해에는 간이방법에 의한 국세 조사
를 행한다.

③전항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도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
은 때는 임시국세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신고의무)

제 5 조 : ①정부,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는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명령받은 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않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경우 또는 법인일 경우,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본인을 대신 또는 대표하여 신고할 의무를 한다.

제 6 조 : 사 계

(지정통계조사의 승인 및 실시)

제 7 조 :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실시라는 그 조사에 관하여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16 조 단어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 3 호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1 . 목적, 사항, 범위 기간 및 방법
- 2 . 집계사항 및 집계방법
- 3 . 결과의 공표방법 및 기일
- 4 .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책임자
- 5 . 경비의 개산 기타 행정관리청장관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승인을 얻은 뒤 조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행정관리청장관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정통계조사의 실시·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정통계조사 이외의 통계조사)

제 8 조 : 지정통계조사 이외의 통계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조사실시자는 그 조사에 관하여 전조 제 1항제 1호에 열거된 사항을 행정관리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계보고 조정법 (1952년 법률제 148 호) 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할 통계조사의 범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③행정관리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정통계조사 이외의 통계조사의 변경,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정통계조사의 사무의 감사)

제 9 조 : 행정관리청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타 기관이 행하는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상황을 감사하고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을 내각 총리대신에게 상신하여 그 개선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통계관 및 통계주사)

제 10 조 : ①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총리부 및 각 성의 부내에 통계관을 둘 수 있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지방 공공단체에 통계주사를 둔다.

③통계관 및 통계주사 이외의 자는 지정통계조사 사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계관 또는 통계주사는 장관 또는 상사의 명을 받아 지정통계조사 또는 기타의 통계조사 사무에 종사한다.

⑤통계관은 총리부 사무관, 작성 사무관, 총리부기관, 작성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령에 의거 정하는 직원 (이하 이항에서 국가공무원이라 함)으로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제 1항에 정한 행정기관의장 (외국의 장을 포함함)이 임명하며 통계주사는 지방자치법 제 172 조 제 1항에 규정한 공무원 또는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19 조에 규정하는 사무직원 또는 기술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직원 (이하 이항에서 지방공무원이라 함)으로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1.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2년이상 종사한 자.

단, 통계주사로 임명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관리청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학교교육법 또는 구대학령에 의한 대학의 학부에서 통계학을 이수한 사람 또는 수학을 전수하는 학과를 수료하여 학사자격을 얻은 자.

3. 학교교육법에 의한 고등전문학교, 구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 또는 문부대신이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한 학교에서 통계학을 이수한 자 또는 수학을 전수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행정관리청장관이 지정한 통계직원 양성기관 또는 통계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별도로 정한 통계에 관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5. 전 각호에 제기한 자격외에 행정관리청장관이 통계조사에 종사함에 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11 조 : ①통계관 또는 통계주사는 그 뜻에 반하여 그 직무로부터 파면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직무에 전직되는 경우에도 행정관리청장관에 그 사정을 말할 수가 있다.

단, 별도 칙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행정관리청장관은 그 사람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통계관에 관하여는 직속장관에게 통계주사에 관하여는 당해 인사권자에게 말할 수가 있다.

(통계조사원)

제 12 조 : ①정부·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는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가 있다.

②통계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명령(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포함)으로 이를 정한다.

(실지조사)

제 13 조 : 제 10 조제 1 항에 규정한 자. 동조 제 2 항에 규정한 자. 동조제 3 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및 전조에 계기한 자는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행하고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를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호)

제 14 조 : 지정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비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 15 조 : ①누구든지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집한 조사표를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목적을 공시한 것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과의 공표)

제 16 조 :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신속히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등의 제출 및 설명의 요구)

제 16 조의 2 : 행정관리청장관은 이 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자료 및 보고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다.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제 17 조 :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지정통계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각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 18 조 : 정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통계 조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가 있다.

(권한의 위임)

제 18 조의 2 : 행정관리청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 제 2 조 및 제 7 조에 정하는 권한을 행정관리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제 19 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명령받은 경우 신고를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명령받은 조사에 관하여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여 조사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출
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지정통계 조사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
써 지정통계 조사의 결과를 진실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제 19 조의 2 : ① 통계관, 통계주사 기타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통계조사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의 단체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타에 누설 또는 도용
한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에 계기한 자가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 집계한 결과를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정
하여진 공표기일 이전에 타에 누설 또는 이를 도용한
때는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전 2 항의 사항을 지득한 제 1 항에 계기한 자
이외의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이었던 자가 동항의 행
위를 한 때도 또한 같다.

3. 통계보고조정법 (1952.5.24 법률제 148 호로 공포,
1968 년도에 제 4 차로 개정되었음)

(목 적)

제 1 조 : 이 법은 통계보고의 수집방법, 보고양식 기타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함으로써 통계보고의 작성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적용)

제 2 조 : 행정관리청장관은 이 법률의 운용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오로지 통계상의 견지에서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조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 의)

제 3 조 : ① 이 법에 있어 " 통계보고 " 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을 통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자에 대한 보고양식을 제시하여 제출토록 하는 일정시점 또는 기간에 관한 보고로서 그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인 또는 법인 기타의 단체 (지방공공단체 및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로서 총수가 10 이상인것 .
2. 정령에서 정한 문교시설, 의료시설, 기타 국가행정조직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이들 기관에 준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으로 그 총수에다 보

고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기타의 단체의 총수를 가한 것이 10 이상이 되는것.

②이 법에 있어 「보고양식」이란 조사표 또는 질문서등의 양식을 말한다.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승인)

제 4 조 : ①통계보고의 수집을 행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하여 미리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집방법 및 보고양식이 법률 또는 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통계보고의 수집

2. 통계법 제 3조에 규정한 지정통계조사로서 통계보고의 수집을 행할 때

②전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행정관리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의 명칭

2. 목 적

3. 보고를 구하는 사항

4. 보고를 구하는 자의 범위

5. 보고를 구하는 기일 또는 기간

6. 수집방법

7. 수집기간

8. 기타 행정관리청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신청서에는 보고양식 및 기타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승인의 기준)

제 5 조 : ①행정 관리청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이 통계기술적 견지에서 합리적인가 .

2 .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과 기하 행정 관리청장관이 승인한 통계보고의 수집과의 간에 조정의 필요성 여부

②행정 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된 통계보고의 수집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신속히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

제 6 조 : ①행정 관리청장관은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 전조제 2 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하 승인기간이라 함) 및 승인번호를 문서로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 관리청장관은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하여 불승인한 경우 그 이유를 부친 문서로서 그 뜻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 관리청장관은 제 4 조제 1 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계보고의 수집을 행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회망할 때는 그 뜻에

응하여 당해 통계보고에 승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승인기간 및 승인번호의 명시)

제7조 :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승인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보고양식에 그 승인기간 및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보고 수집의 중지 및 변경)

제8조 : ①전조의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을 중지하려 할때 그 뜻을 행정관리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청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승인의 변경)

제9조 : ①행정 관리청장관은 기승인한 통계보고의 수집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 관리청장관은 전항의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한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행정 관리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간을 단축한 경우 이유를 부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계보고 수집의 중지 또는 변경의 요구)

제 10 조 : ① 행정관리청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위반하는 통계보고가 수집되고 있음을 인정한 때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청장관은 전항의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내각총리대신에게 당해 통계보고의 수집중지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의의 제출)

제 11 조 : 행정기관의 장은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의거 당해 행정기관의 정책실시상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고 인정한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이의의 제출은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기재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제출서를 수리한 때 이의의 제출에 이유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재결하여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재결의 결과 이의의 제출이 이유있다고 재결한 때는 행정관리청장관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적용제외)

제 12 조 : 이 법의 규정은 정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 정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하는 통계보고의 수집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조정관)

제 13 조 : ① 이 법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관리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부문에 보고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보고조정관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권한의 위임)

제 14 조 : 행정관리청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거 제 5 조 제 2 항 제 9 조 및 제 10 조에 정하는 권한에 관하여 통계관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명령)

제 15 조 : 이 법의 실시를 위한 수속 기타 그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Ⅱ . 自由中国의 統計制度

Ⅱ. 自由中国의 統計制度

概 要

自由中国의 統計制度 및 統計機構는 이 나라의 독특한 主計制度의 일환으로써 位置를 占하고 있다.

主計制度는 予算編成, 會計, 統計의 세가지 機能을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獨立한 分野로서 運用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다른 行政機能에 共通的이고 同時에 그 機關의 運營上의 基盤이 되는 業務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나라의 統計制度를 볼 때는 主計制度 그 自体에 關하여 觀察하지 않으면 實態를 把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主計制度를 먼저 紹介하고 뒤이어 統計制度의 特徵, 統計機構의 內容, 統計業務의 概要, 統計職員의 實情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今後의 統計行政의 方向을 記述하고 統計制度改善小委員會制度 및 統計法規에 關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一. 統計組織

1. 統計組織의 特質

自由中国의 統計制度는 主計制度의 일환으로 設置되어 있으므로 그의 設立精神, 運用等은 主計制度와 密接不可分の 關係를 갖고 있다.

따라서 統計制度의 特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主計制度의 特質

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 獨立性

統計制度의 獨立性은 세가지 點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統計機構 乃至 組織의 獨立이다.

統計를 包含한 主計機構는 각기 各급 政府機關의 部局으로서 構成되어 있으나 同時에 各部局内の 主計機關은 相互關連을 갖고 있으며 所屬된 行政機構로부터는 獨立하여 運營되고 있다.

이는 中央政府, 省政府, 縣市政府를 通하여 體系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獨立性에 關하여는 行政院主計處組織法, 行政院主計處設置各機關會計統計人員條例, 公有企業 및 事業機關의 會計統計機構設置手続法等에서 明白히 規定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統計制度의 獨立性이 顯著함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統計職員의 地位의 獨立이라는 點이다.

政府統計職員의 任免, 轉任, 訓練, 業務評價에 關하여는 行政院主計處가 責任을 지고 있다.

所屬機關의 長官은 이에 干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所屬長官의 更迭에 따라서 統計職員이 更迭되는 일은 없다.

셋째, 統計職員의 職務의 獨立이다.

統計法 規定에 의거 各級政府의 統計職員은 獨立하여 그 職務를 行할 수 있고 所屬機關長의 자의적인 支配統制를 받지 않는다는

点이다.

2) 統一性

自由中国의 統計制度는 集中主義와 分散主義의 双方의 長
點을 兼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即, 行政院主計處는 나라 全体의 統計業務를 遂行함으로써 一元的
으로 責任을 지고 있고 統計方法 및 統計基準을 作成하고 있다.

同時에 中央政府 各部省 및 各地方政府는 各各 統計部局을 設置
하고 있으며 이를 通하여 中央, 地方을 연결하는 統一의인 統計機
構으로써 作用하고 있다.

統計職員은 모두 行政院主計處의 長인 主計長의 命令에 의거 統
計業務를 遂行하지만 同時에 所屬機關의 長官의 命令도 받아 統計
業務를 處理하고 있다. 또한 統計職員은 各級 行政機關에 分散하
여 各各의 分野에서 業務를 行함으로써 실제의 需要에 應한 統計
를 蒐集作成하고 있다.

이때 統計活動이 일원적으로 遂行됨으로 計劃的인 統制와 系統的
인 指導를 할 수 있다.

또 同時에 方法과 技術에 있어서도 高度의 統一性を 期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各級 政府機關의 統計活動에 關한 綜合調整은 모두 行政院 主計
處가 行하고 있으며 그 內容은 各機關의 統計機構 및 그 業務의
区分 統計調查區域의 설정, 統計計劃 方案의 作成, 統計方法의 統一,
統計圖表樣式의 統一, 統計分類의 作成等이다.

3) 相互依存性

予算, 會計, 統計의 3機關은 相互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即, 各種 行政統計 및 財務統計는 予算編成上의 基礎資料가 되며 予算은 또 會計와 직결되고 會計는 財務統計뿐 아니라 一般行政統計를 作成하는 源泉이 되어 있다.

이 相互依存性이 統計機關으로 하여금 主計機關內에 設置되도록 한 이 나라 制度의 特性을 뒷받침하고 있는 要因이 되고 있다.

2. 統計機構

自由中國의 統計機構는 行政院 主計處 第3局을 頂点으로 하여 中央政府 各省의 統計部局, 省政府의 各統計局, 縣市以下 各政府의 統計部局을 上下關係로 結合한 "피라미"型的 機構로 되어 있다.

또 綜合調整機構와 統計作成機構로 나누면 主計處第3局이 綜合調整機關이 되며 其他는 統計作成機構가 된다.

1) 行政院主計處第3局

① 所管業務

第3局的 所管業務는 行政院主計處組織法 第5條에 規定되어 있지만 大별하여 두가지로 나눈다.

첫째 行政的인 事務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1) 各機關의 統計職員의 指揮監督을 行하며 任免, 轉任의

審査를 行한다.

ii) 各機關이 必要로 하는 統計關係經費의 審査를 行한다.

둘째, 技術的인 事項이다.

即,

i) 統計作成方針, 統計基準, 統計圖表樣式的 審議

ii) 各機關의 統計業務의 区分 및 連結

iii) 國民所得統計의 編輯分析

iv) 他機關에 屬하지 않는 統計調査 및 編輯

v) 全國統計의 總報告의 編輯 및 統計資料 蓄積에 關한

事項

vi) 國際統計資料의 交換 및 統計業務의 連結

vii) 其他 統計에 關한 事項

第3局의 所管事務는 以上과 같이 國民所得統計의 作成 및 全國
統計總報告의 編輯을 除外하고는 모두 綜合調整機關에 屬하는 것이
라고 하여도 좋다.

② 組織

第3局의 長은 局長이며 主計官中에서 한사람이 局長을
兼하고 있다.

따라서 主計處의 最高會議인 主計會議의 構成 "멤버"가 되고
있다.

第3局은 5個의 課로 나누어지고 있다.

各課의 所管事務는 行政院主計處業務規定 第9條에 자세히 規定되고

있으며 그 概要는 다음과 같다.

第1課 : 人口, 土地, 社会, 教育, 労働 其他 内政에 關한 統計의 조정, 全國統計 總報告의 編輯, 基本 國勢調查의 方針案 및 他機關에 屬하지 않는 調查計劃의 作成, 公務員의 処遇改善方案의 審議 및 解決業務를 管掌한다.

第2課 : 立法, 司法, 公務員試驗, 任用, 감찰, 外交, 軍事, 교포업무, 交通, 運輸 및 其他 政治統計의 調整, 國際統計資料의 蒐集, 統計刊行物의 蒐集保管業務를 管掌한다.

第3課 : 農林, 漁業, 木畜, 鉦工業, 財政金融, 商業, 物價 其他 天然資源等の 統計의 調整, 統計概要, 統計便覽等 經濟動向統計의 編輯業務를 管掌한다.

第4課 : 國民生産, 國民所費, 資本形成 및 國民所得 統計의 資料蒐集 및 研究, 國營事業의 生産高 分析統計를 管掌한다.

第5課 : 統計業務의 計劃, 業務報告의 編輯, 各機關別 統計機構의 設置 및 業務管掌 規定의 審査, 統計職員의 任免, 轉任審査, 統計刊行物의 印刷發行, 統計資料 保管函의 設置 및 管理, 文書接受等の 業務를 管掌한다.

主計處 第3局은 以上の 5課로 나누어지며 그 人員은 約 40名이다.

2) 中央政府 各省의 統計部局

① 所管業務

各省의 統計部局은 大部分 統計處라는 名稱이 붙어있으며

그 所管業務의 共通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i) 그 省의 統計刊行物 및 函表樣式의 制定 및 統計의 統一의 方法의 推進

ii) 그 省의 統計資料의 記錄, 調査 및 編輯

iii) 그 省의 統計報告의 編輯

iv) 산하기관의 統計職員에 對한 指導監督

v) 산하기관의 統計業務의 配分

vi) 산하기관의 統計刊行物, 函表樣式等의 審査 및 統計編輯方法의 統一

vii) 統計職員의 任命·전임·공적평가의 原案作成

② 組織

各省 統計部局의 組織은 政府가 台灣에 移轉한 後 本土에서 보다는 많이 縮小되었지만 最近 다시 擴張 整備하는 段階에 있다.

重要한 省에 關한 統計組織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內政部統計處

人口動態, 公衆衛生, 勞動, 社會, 地方行政, 警察, 出版等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3 課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職員은 統計長以下 9 名으로 構成되고 있다.

또 人口센서스는 內政部 統計處의 所管이 아니고 臨時的 機構가 管掌하고 있다.

ii) 財政部統計處

貿易 및 稅務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3 課로 나누어지며 職員은 担当官以下 10 名이다.

iii) 教育部統計處

教育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2 課로 나누어지며 統計長以下 5 名의 職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iv) 司法行政部統計處

民事事件, 刑事事件, 監獄, 拘置所에 關한 統計를 作成하며 3 課로 나누어지고 担当官以下 5 名의 職員으로 構成된다.

v) 經濟部統計處

工業, 商業, 農業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3 課로 나누어지며 職員은 統計担当官以下 14 名이다.

1966 年의 工業센서스는 經濟部에서 企圖과 集計를 行하고 実查는 各省政府가 担当했다.

農業센서스는 從來는 企圖 및 実查業務를 省政府에서 行하였으나 1970 年 센서스부터는 特別委員會를 中央政府에 設置하여 企圖業務를 맡고 있다.

vi) 交通部統計處

交通, 郵便, 航空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vii) 國際經濟合作 發展委員會第3 處

産業聯関表를 作成한다.

3) 地方政府的 統計部局

省政府，直轄市政府，縣市政府，鄉鎮公所의 各級 地方政府에
는 “地方政府 및 所屬機關의 主計機關 및 人員 設置條例”에 의
거 各各 統計處 또는 統計室이 設置되어 있으며 中央政府 또는
上級機關의 指揮下에 統計의 蒐集，作成을 行하고 있다.

그리고 各各의 政府의 各部局에 그 規模에 따라 統計職員이 配
置되고 있다.

그 例를 들면 台灣省政府，台北市政府 및 縣市政府 등에서 볼 수
있다.

① 台灣省政府

台灣省政府은 台灣地域의 最高의 行政機關이다.

그 主計部局은 主計處이다.

主計處는 5個課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第3課 및 第4課에서 統
計業務를 다룬다.

第3課는 業務報告에 基礎를 둔 統計를 作成하며 第4課는 物價
調査，家計調査，國民所得推計等의 業務를 管掌한다.

여기서 縣市政府의 統計業務를 指揮하며 그 業務를 執行토록 命
令한다.

職員은 第3課에 23名，第4課에 18名이 있다.

또 民政庁에는 統計係가 둘이 있다.

即，1係는 3課에 設置되어 있고 다른 1係는 主計室에 設置되
어 있다.

前者는 人口動態 및 戶籍統計를 編輯 作成하고 또 經濟調查等の 標本調査도 實施한다.

後者는 庁内業務에 關한 統計를 蒐集한다.

主計機關에 屬하는 것은 이 중 後者이다.

② 台北市政府

台北市는 1967年 7月以後 中央政府 直轄市로 승격하여 省政府의 指揮는 받지 않는다.

主計處가 主計機關이며 그 副處長이 統計部門의 長이다.

5個課中 第3課 및 第4課가 統計業務를 担当하고 있다.

第3課는 各局의 統計業務의 調整, 業務資料의 蒐集, 年鑑의 編輯 등을 行한다.

第4課는 物價調査, 家計調査, 經濟統計調査等を 行하고 있다.

職員數는 3課에 13名, 4課에 12名이 있다.

③ 高雄市政府

高雄市는 省政府直轄市이다.

이와같은 地位에 있는 市는 基隆市, 台中市, 台南市가 있다.

主計室이 主計機關이다.

第4課가 統計担当部局이다.

또 主計室 副主任이 責任者가 되고 있다.

職員은 定規職 4名 및 臨時職 3名으로 되어있다.

業務統計外에 物價調査, 家計調査를 省政府의 지시에 따라서 實施하고 있다.

3. 統計業務

1) 作成統計의 種類

統計法 第3條에는 各級 政府가 作成하여야 할 統計를 다음 5種類로 規定하고 있다.

- ① 基本國勢調査 統計
- ② 各機關이 職務上 使用할 統計
- ③ 各機關이 處理하는 公務에 關한 統計
- ④ 各機關의 公務員 및 그 業務統計
- ⑤ 各機關이 作成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其他統計

① 基本國勢調査는 國民, 土地, 資源, 政府, 社會, 經濟, 文化等의 各分野를 包含하여 어떤 一定한 時期에 實施되는 센서스이다.

基本國勢調査는 적어도 每 10 年에 1回 實施되며 全國 또는 몇 個의 省, 또는 數個의 行政院 直屬市에 關聯되었을 때는 行政院主計處가 實施한다.

그러나 省 및 行政院 直屬의 市에서는 그 區域內的 基本國勢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基本國勢調査의 一部分을 實施할 때는 그 部分의 센서스는 人口 센서스, 農業센서스, 工業센서스等이라고 일컬어진다.

主管機關은 行政院主計處에 의거 決定된다.

이를 主管하는 機關은 임시로 行政院에 設置된 戶口調査處에서 行한다.

內政部長官이 責任者이며 關係省의 長官 및 省主席이 副調査長이

된다.

省政府, 縣市政府以下에 있어서도 각기 臨時的인 戶口調査處를 設置하여 센서스 業務를 行하고 있다.

② 各機關이 職務上 使用할 統計

各機關이 施政計劃을 세울때 그 職務를 執行하기 爲한 必要的 參考資料를 얻기 爲한 統計이다.

이 境遇는 各級 政府의 어느 機關에서 作成하여도 그 政府의 主計機關(即, 그 政府의 統計主管部局)에 통지되며 關係 各機關에 송부된 뒤 最終的으로 行政院 主計處에 記錄된다.

이 例로써 價計調査, 物價調査, 其他의 일차調査를 들 수 있다.

③ 各機關이 處理하는 公務에 關한 統計

그 機關의 職務執行過程 및 結果의 記錄을 包含한다.

例를들면 施政計劃執行成績等을 表現할 수 있는것, 業務能率과 그 경비를 表現할 수 있는것, 또는 財政收支狀況을 表現할 수 있는것 등 어느것이랴도 자세히 正確한 記錄일 것이 要求되고 있다.

現行 公務統計方案은 台灣省 統一報告方式에 의거 이 統計에 關한 統一樣式이 定하여지고 있다.

④ 各機關의 公務員 및 그 業務 統計

公務員에 關한 統計는 各機關의 組織, 編成 人員 公務員의 經歷·資格·等級·俸給·任免·移動·償罰等을 기재한 것이다.

이들은 職務處理의 성적, 能率, 費用, 出欠狀況等을 취합한 것이다.

모두 台帳에 依한 것이며 항상 記錄되고 또 定期的으로 정리보

고되는 것들이다.

⑤ 各機關이 作成하여야 될 것으로 認定되는 其他의 統計

各機關의 業務는 變動하고 있음으로 새로운 業務를 始作할 때 參考資料를 삼기 爲하여 또 새로운 業務의 遂行에 의거 새로운 統計가 作成되어야 할때 그 範圍가 定하여진다.

2) 統計報告의 經路

自由中國의 統計機關은 "피라민"型的 機構라고 말하여도 좋다.

그 實態는 蒐集된 統計가 下級機關으로부터 上級機關에 제출되는 經路를 觀察함으로써 알 수 있다.

또 同時에 이 나라에서는 業務統計가 統計의 中心이 되어있으므로 統計報告의 提出經路는 明確히 또 嚴密히 規定되어 있다.

定期的인 統計報告는 日報, 旬報, 月報, 季報, 年報等 多數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年報"이다.

各機關의 統計報告는 그 機關의 統計部局의 長이 서명한후 主務장관에 의거 上級機關에 提出된다.

또 그 統計가 担当機關의 必要에서 취합한 것이 아니고 上級主計機關 또는 統計部局의 長으로부터의 直接命令에 의거 作成된 것일때는 統計部局의 長이 이를 提出한다.

機關의 계통과 統計資料의 性質에 따라 各機關은 調查機關 單位別로 區別짓는다.

이들 單位와 그 区分은 各級 政府의 主計機關이 統計分野別로

決定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各 統計分野에는 最高의 취합기관이 있기 마련이다.

最下級の 統計機關은 最初의 資料를 所定の 報告樣式에 集計하여 보다 上級の 統計機關에 提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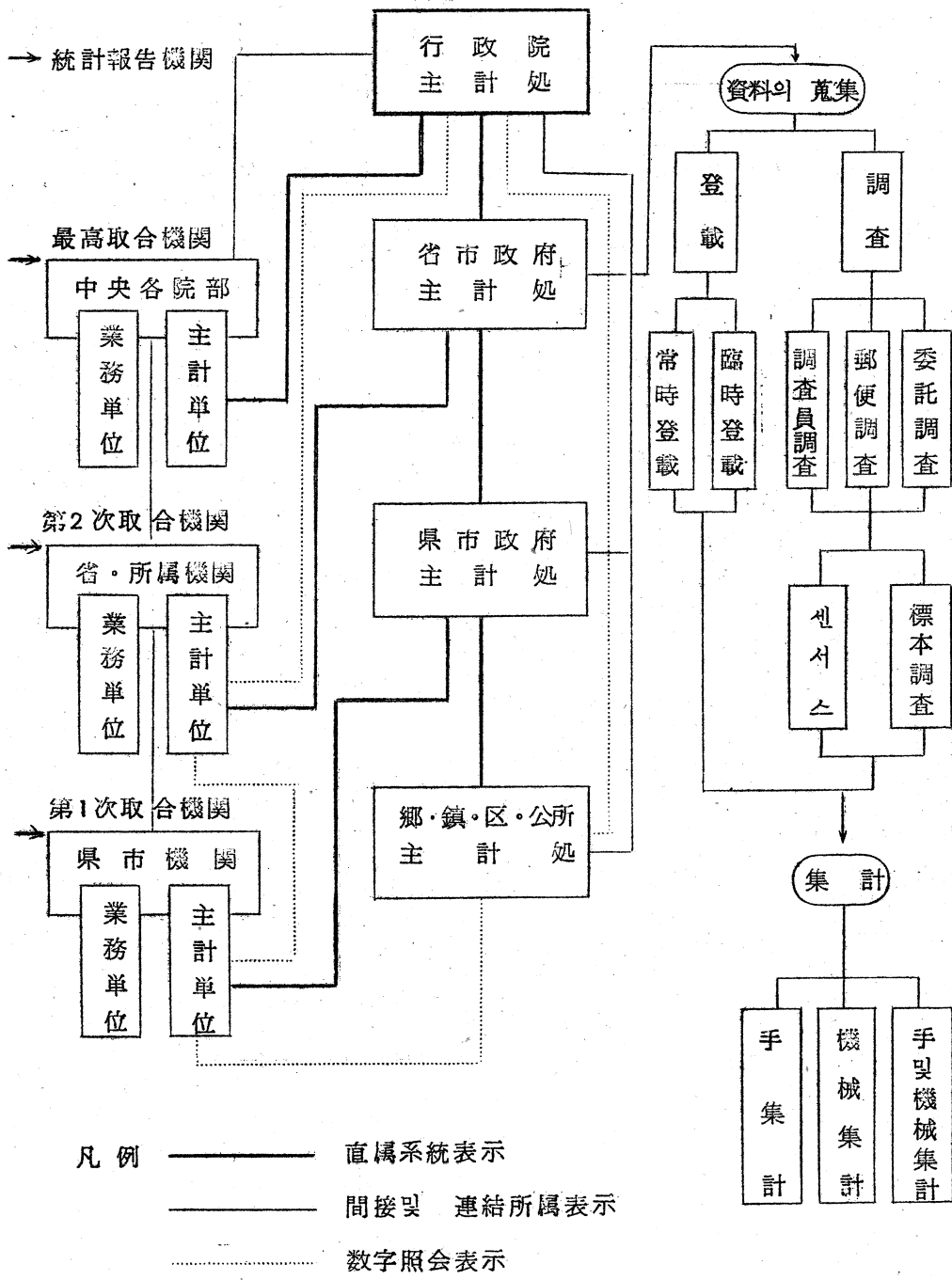
그 統計機關은 이를 所定樣式으로 취합하여 次上級機關에 提出한다.

順次的인 이와같은 統計報告는 各分野의 最高級機關에서 行政院主計處로 送付되고 全國 統計로서 編輯된다.

省 및 行政院 直屬의 市에 關하여도 統計報告의 提出 및 總報告書의 編輯過程은 이와 같다.

省, 또는 直轄市가 基本國勢調査를 實施할 때도 그 原資料가 最下級の 統計機構로부터 中央政府, 省政府 또는 直轄市政府의 統計機構에 提出되어 集中된 集計를 行한다.

以上の 過程을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3) 統計資料의 管理 및 刊行

統計資料의 管理 및 刊行에 關하여는 統計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의거 規制된다.

統計法 第26條에는 統計를 公開하는데는 3가지 区分을 두고 있다.

① 秘密類

政府機關 또는 公務員 및 其他 이해관계인의 合法的인 要求外에는 漏洩하여서는 안됨.

② 公告類

一定時間 또는 其他의 條件下에 一定地域에서 公告할 수 있다.

③ 公開類

공중의 閱覽 또는 要求에 제공할 수 있다.

이중 公告 또는 公開할 수 있는 種類의 統計는 刊行할 수가 있다.

이에 의거 行政院主計處는 每年 全國統計報告中에 公告類, 公開類에 屬하는 部分을 拔萃하여 自由中國 統計年鑑에 수록한다.

또 各省, 縣, 市에서도 各各의 統計年鑑을 發刊할 수 있다.

其他 各種의 基本國勢調查 및 動態統計에 關하여 그리고 業務統計에 關하여서도 各各의 機關의 統計部局에서 編輯을 行하고 刊行되며 資料綴에 綴하여져 一般의 利用에 제공되고 있다.

統計의 質을 높이고 또 統計에 對한 信賴性을 確立하고 다시

統計調査의 권한과 責任을 明確히 하기 爲해 統計資料의 刊行에 關하여는 法令上 明確히 規定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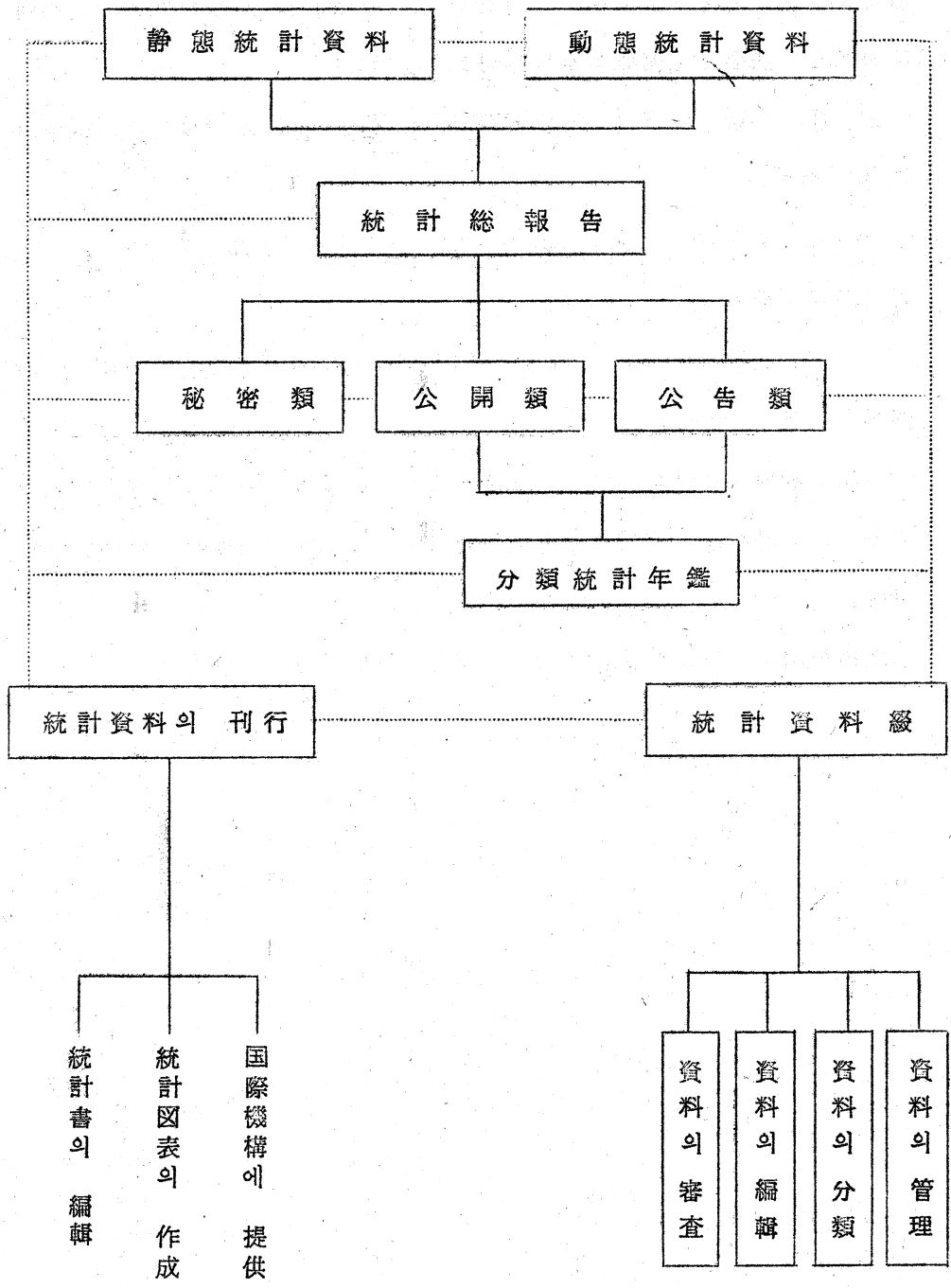
即, ① 各級 政府의 統計資料의 刊行은 그 政府의 主計機關이 이를 行한다.

② 各機關의 統計資料는 그 機關의 統計部局의 長의 審査를 經유하여 發表하여야 한다.

③ 國際機構 및 外國에 對한 統計資料 제공은 最高 主計機關이 이를 行한다.

各級 政府 및 各機關이 直接 資料를 各國 使事官등에 提供할 때는 그 事本을 事前 審査를 爲하여 最高主計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

統計資料의 管理 및 刊行에 關하여 凶示하면 다음과 같다.



4) 統計의 綜合調整

自由中國의 統計制度는 形式的으로는 各省 및 各 地方 政府에 統計部局이 있어 明白히 分散型이지만 그 實際의 運營은 行政院主計處에 많은 權限이 集中되어 있음으로 다른 統計部局은 主計處의 下部機關과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實質적인 集中型인 機構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實質적인 集中型 機構라고 본다면 綜合調整機關은 行政員 主計處에 集中되어 있으며 法令의 規定上으로 보면 오히려 統制機能 또는 指揮命令機能을 主計處가 맡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行政院主計處의 他統計部局에 對한 權限은 크지만 特히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統計職員에 對한 人事權이다.

主計處組織法에 依하면 各省, 各地方政府 職員의 任免에 對한 審査 및 移動發令權, 業務上의 指揮監督權을 모두 掌握하고 있다.

또 統計調査에 所要되는 予算에 關한 審査權이 부여되고 있다.

이 두가지 權限을 가지고 統計機構의 運營에 關한 통제를 거의 完壁하게 行하고 있다.

業務處理에 關하여도 統計調査—計劃 乃至 基本方針—統計基準, 報告樣式의 決定 또는 審査와 業務報告의 最終적인 취합을 行하며 또 各機關의 統計職員이 所屬機關의 長과 의견이 不一致할 때의 業務調整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國民所得統計를 취합하는 것은 業務上의 통제를 強化하는

重要機能의 하나이다.

行政院主計處와 各省統計處 長官의 의견 調整에 關하여는 統計首腦會議라고 할 수 있는 모임에서 調整된다.

그러나 이 會議는 法令上의 根拠가 없고 또 事實上 비정기적으로 開催되고 있는 實情이다.

中央政府에 있어서 統計職員間의 連絡은 經常的인 것이며 密接한 것임으로 特別히 會議를 開催할 必要가 적다고 볼 수 있다.

地方政府에 있어서도 各 段階의 中心은 各各의 主計處이며 中央의 行政院主計處와 거의 같은 統制權限을 가지고 있다.

다른 各局의 統計部門에서도 一次調査를 實施하지만 그 結果는 主計處에 集中되어 여기서 취합정리된다.

主計處는 調整機能과 同時에 集計機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統計職員

統計職員의 任免, 指揮監督, 処遇等に 關하여는 모두 「主計人員」에 關한 規定에 包含되고 있다.

이나라의 統計制度가 主計制度의 일 환으로써 形成되어 있으므로 이는 當然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1) 任用

公務員의 任用に 關하여는 公務員 任用法이 基本的인 規定이 되고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公務員은 簡任, 薦任 및 委任의 3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이 職務等級表는 考試院이 定한다.

이들 公務員은 文官試驗合格에 依하든지 아니면 法令이 規定하는 業績평가에 依하지 않으면 任用될 수 없다.

단, 各機關이 必要上 臨時 雇傭하는 職員에 關하여는 그 機關의 長이 任免할 수 있다.

大學 또는 專門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高等文官試驗의 合格者는 薦任職에 任用될 資格이 부여된다.

단, 그 成績이 中以下の 者는 우선 高級委任職에 任用된다.

高級中學卒業者로서 普通文官試驗의 合格者로 中等以上の 成績을 얻은 者는 委任職에 任用될 資格이 주어진다.

特種文官試驗 甲類에 合格한 者는 簡任職에 任用될 資格이 부여되지만 이 중 成績이 中以下の 者는 우선 高級薦任職에 任用된다.

위의 試驗 乙類 合格者는 薦任職에, 丙類 合格者는 委任職에 對한 任用 資格이 부여된다.

公務員의 昇級은 모든 昇級試驗合格者에 對하여 行하여진다.

특히 簡任職에 關하여는 薦任職의 最高俸을 받은후 그 職에서의 業績이 1年間 1等 또는 2年間 2等以上인 者에게 昇級이 주어진다.

主計機關 職員에 關하여는 主計人員 任用 條例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主計官, 統計長, 統計主任等에 關하여 자세히 그 任用

資格 要件을 두고 있다.

예를들면 主計官에 對하여는

i) 現在 또는 過去에 있어 主計官選任試驗에 合格한 者,

ii) 現在 或은 過去에 會計長 또는 統計長으로써 1年以上 經과하고 選任考課에 合格한 者.

iii) 國內, 國外의 大學에서 主計學科를 전공, 卒業하고 過去에 簡任職에 相當하는 統計職에 5年以上 재직하고 成績이 優秀한 者.

iv) 國內, 國外의 大學에서 專任敎授로서 主計學科를 5年以上 강의하고 主計學術에 關한 著書가 있고 또 審査에 合格한 者.

이중 한가지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統計의 學歷, 經歷을 考慮하여 任用하게 되어 있다.

다른 統計官, 各級 統計主任, 補助職員에 關하여도 이와 비슷한 自格이 嚴格히 規定되고 있다.

各 統計部局의 長의 신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簡任	薦任	委任
行政院主計處第3局	主計官 (兼局長) 視察 專門委員	課長 課員 視察 專員	課員

	簡任	薦任	委任
中央政府 各省 統計處 및 그 機關	統計長 統計處長	統計處長 統計主任 課長	統計主任 統計員 課員
台灣省政府 및 台北市政府	主計處長 副處長	副處長 課長	課員
省政府, 台北市政府 機關		統計室主任	主計員
縣・市政府		統計室主任 副主任	副主任
縣・市政府의 機關			主計員

統計職員의 任免, 轉任의 所屬에 關하여는 簡任職은 行政院 主計處가 直接 行하며 薦任職에 對하여는 中央 各省의 主計機關 또는 省市政府의 主計處가 選考한뒤 行政院 主計處가 行한다.

委任職에 있어서는 各省 主計機關 또는 省市政府主計처가 이를 행한다.

따라서 薦任職以上の 統計職員에 關하여서는 行政院主計처만이 任命할 수 있다.

단, 統計部局의 長에 關하여는 모두 行政院 主計처 主計長이 任命한다.

縣市에 關하여는 台灣省政府 主計처長의 의견을 尊重하게 되어 있다.

縣市政府 其他統計職員에 關하여는 省政府主計처長의 任命에 의한다.

또 基本國勢統計調査, 其他의 諸調査를 爲하여 수시로 屬屬하는 調査職員에 關하여는 各各의 調査要綱等에서 任用資格이 定하여진다.

統計職員의 他省間의 交流는 오히려 적은 実情이다.

그리고 他職種과의 交流도 거의 行하여지고 있지 않다.

行政院主計처에서는 統計部局長의 在任期間에 關한 制限을 定하고 있는데 3年을 넘은 사람은 다른 職位에 轉출할 수 있지만 실제 運用은 그대로 行하여지지 않고 있다.

또 公務員의 정년은 簡任職 및 薦任職에 있어서는 65歲, 委任職에 있어서는 60歲로 定하고 있다.

2) 職員數

統計職員數는 變化가 많음을 볼 수 있다.

1964年 調査에 依하면 專任統計職員은 953名, 兼任統計職員은

707名, 合計 1,660名이다.

中央·地方政府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中央政府	省政府	県市政府	計
專任職員	392	380	181	953
兼任職員	240	242	225	707
計	632	622	406	1,660

總數 1,660名中 男子는 1,370名(83%), 女子는 290名(17%)이다.

平均 年令은 40歲이나 30歲代가 597名(36%), 40歲代가 663名(40%)이 현저하다.

學歷을 보면 國外留學者가 1.3%, 大卒 34.2%, 高卒 58.0%이다.

職級別 構成은 簡任職 36名(2.2%), 薦任職 472名(28.4%), 委任職 985名(59.3%), 雇員 167名(10.1%)이다.

勤続年數를 보면 5年未滿 632名(38.1%), 5~9年 349名(21.0%), 10~14年 290名(17.5%), 15~19年 289名(17.4%), 20年以上 100名(6%)이다.

3) 統計調査員

調査員은 調査때마다 臨時로 任命된다.

그 選任의 基盤은 市·鄉·鎮·公所의 公務員을 主体로 함으로 公務員의 신분법령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데 長點이 있다.

個別調査別로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i) 人口센서스

人口센서스는 戶口調査法에 의거 시행되며 調査員에 關하여는 「其他의 機關, 単体職員, 學校敎員 및 民間人으로서 充원 한다」는 規定이 있다.

以外에 경관도 充원되지만 이것은 調査期間中の 사람의 移動을 금지시키기 爲한 것이라고 한다.

한사람의 調査員當 50 戶를 調査하며 調査手當, 敎育手當 및 세 對 명부 作成費가 지급된다.

ii) 商工센서스

鄉. 鎭의 商工關係職員이 調査員으로 任命된다.

1966 年度 商工센서스에서는 全國에서 1,600 名의 調査員이 任命 되었다.

한사람의 調査員當 200 業체를 대상으로 調査하였다.

iii) 農業센서스

農村報告員, 農會職員, 農業學校 敎員 등이 任命된다.

5. 行政院統計制度 改善 小委員會

1965 年 4 月에 設置된 行政院 統計制度 改善小委員會는 自 由中國의 統計機構, 統計活動의 全般에 걸쳐 상세한 檢討를 가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今後의 統計制度의 方向을 설정하고 있다.

以下에 그 檢討結果의 概要를 記述코자 한다.

1) 設立의 經緯

1964 年에 行政院 國際經濟合作 發展委員會는 長期 經濟 發展計劃을 研究 決定한뒤 統計를 利用함에 있어 資料의 不足을 痛感하고 統計項目의 強化改善을 行政院에 上신하였다.

行政院 主計處는 이를 받아들여 統計活動의 強化를 爲하여 統計 制度 全般에 對한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보아 政府統計改善 計劃案을 基礎하였다.

이案에 의거 統計制度改善小委員會가 行政院에 設置되었으며 1965 年 4 月에 발족하였다.

委員長에는 行政院主計長, 委員에는 內政部次長, 財政部次長, 經濟部次長, 行政院秘書長, 中央銀行副總裁, 國立政治大學院長, 省政府秘書長, 省政府主計處長, 行政院主計處副主計長, 行政院主計處第3局長이 任命되고 다시 고문으로서 內政部統計長, 財政部統計長, 經濟部統計長, 中央銀行副處長, 農協會會長, 省政府主計處副處長이 參加하였다.

또 美國 워싱턴의 調查研究所로부터 統計顧問團이 여기에 參加했다.

이 小委員會의 活動에 所要된 經費는 1,000 萬元以上이며 中·美 經濟協力資金에서 支出되었다.

2) 任務

同委員會 設置 規則 第4條에 依하면 이 小委員會의 任務는 다음의 8 項目이다.

- ① 現행의 統計地區組織 및 그 活動과 實施 予定의 檢討

및 統計制度 改善 및 統計法 修正案의 起草研究

② 현 統計職員 소양의 檢討와 統計職員의 敎育 및 訓練方案의 起草研究

③ 現在 實施中の 各種의 基本的인 센서스 및 標本調査의 檢討와 향구적 센서스機構 設置方案의 研究

④ 현행의 各種 登錄 및 신고제도의 檢討와 그 개선초안의 起草研究

⑤ 현행 各種 重要 統計計劃의 檢討, 正確性の 검증 및 各 各의 개선초안의 起草研究와 國民經濟成張과 關聯있는 各項의 變수에 關한 研究

⑥ 住宅센서스, 勞動力調査, 生産力調査, 出生率等を 包含하는 새로운 統計業務의 設計計劃의 起草研究

⑦ 中央 및 地方의 各各의 政府機關이 統計發展의 必要에 應하기 爲한 統計活動上 必要로 하는 予算의 實例研究

⑧ 以上 各項의 檢討 및 起草研究 초안에 의거 向後 10年間의 統計活動 長期發展計劃의 綜合的立案 및 編輯

以上の 8個項目의 任務를 기초로 하여 小委員會는 상세한 作業項目 및 進行予定表를 作成하였다.

作業項目으로서는 9個의 項目을 設置하여 다시 57個의 作業세목으로 區分하였다.

그리하여 作業班은 4班(統計法 및 統計組織, 統計訓練 및 統計基準, 社會統計, 經濟統計)을 두고 作業 세목을 분담 檢討하였다.

3) 作業結果의 概要

重要 作業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統計機構와 組織의 改善

中央 政府에 關하여는 統計處의 復活設置 및 人員의 增加를 要하는 곳은 教育部, 司法行政部, 交通部이고 統計室로부터 統計處로 擴張을 要하는 곳은 國軍退役兵 보도위원회이며 人員의 增加만을 要하는 곳은 內政부와 經濟部이다.

地方政府에 關하여는 會計機構分立 및 常設센서스 機構가 제안되었다.

公營事業機關에 關하여는 모두 統計部門을 設置하여야 된다고 認定하였다.

② 統計法規의 수정 초안의 檢討

統計法은 1932年 制定以來 30年을 경과하였으므로 最近의 情세에 맞게 수정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었으며 그 수정 초안이 決定되었다.

修正原則을 보면

i) 現행 統計法은 主計制度를 認定하는데 “키-포인트”를 두고 있으므로 重要한 條文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ii) 關係 統計行政命令 規定을 간이화하여 원칙적 條文으로서 統合하고,

iii) 各政府의 主計機關이 基本國勢調査 또는 센서스를 實施하여 實情에 맞는 센서스 機構를 設置 또는 常設한다.

iv) 統計活動의 監督 및 審査制度를 確立하여 統計의 質을 높인다.

v) 被調査者가 公務를 방해한 境遇 벌칙을 強化한다 등의 5가지 點이다.

③ 統計職員의 敎育 및 訓練

方案이 提出되어 그것은 即時 實施되었다.

④ 統計基準의 통일 초안

商品分類의 改정의 檢討와 産業分類, 職業分類가 새로이 制定되었다

⑤ 其他 個別 統計分野에 關하여는 각기 改善案이 提出되었으며 이 小委員會의 作業報告書는 全 5卷의 冊으로 出刊되었다.

二. 統計法規

자유중국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통계법규는 조직, 직원, 조사계획, 보고양식등에 걸쳐 잘 정비되어 있다.

이들 법규를 보면 이 나라의 통계제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하 주요통계 법령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원주계처조직법(초)(1959년 3월 28일 공포)

제1조: 주계처는 전국의 예산, 회계 및 통계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주계처는 다음 각국을 둔다.

1. 제1국

2. 제2국

3. 제3국

4. 제4국

제5조: 제3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기관의 통계작성방안, 통계기준 및 통계도표양식의 심사
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의 통계업무의 구분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 각 기관이 조사통계를 행하는데 요하는 경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민소득 통계의 편집 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청에 속하지 않는 통계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편집.

6. 전국 통계 총보고의 편집 및 통계자료철에 관한 안건의

관장.

7. 국제통계자료의 교환 및 통계업무의 연락에 관한 사항.

8. 각 기관의 통계직원의 지휘감독 및 임명, 면직, 전임의 심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제 8 조 : 주계처에는 주계관 4인~6인을 두며 간임으로 한다.

주계관은 예산, 통계의 법규, 방안, 제도등의 기획입안, 원안 작성 및 심사를 관장한다.

제 9 조 : 주계처에는 국장 3인을 두며 주계관이 겸임한다.

인원은 과장 11인~15인을 두며 천임으로 한다.

과원은 22인~45인을 두며 그중 11인은 천임, 기타는 위임으로 한다.

제 12 조 : 주계처에는 시찰 8인~10인을 두며 그중 4인은 간임, 기타는 천임으로 한다.

시찰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시찰 및 회계, 통계업무의 지도를 한다.

제 13 조 : 주계처에는 전문위원 2인~4인을 두되 간임으로 하고 동직원 4인~6인은 천임으로 한다.

제 14 조 : 주계처에는 필요에 따라 고원 6인~10인을 들수 있다.

제 17 조 : 전국 각 기관의 예산, 회계 또는 통계를 주관하는 직원은 각각 그 상급기관의 예산, 회계 또는 통계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소속 관청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 18 조 : 주계장은 수시로 각기관의 예산, 회계 또는 통계를 처리하는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다.

제 19 조 : 주계처에 주계회의를 두고 주계장, 부주계장 및 주계관으로 구성된다.

주계회의의 의장은 주계장이 된다.

주계장이 결석시는 부주계장이 대리한다.

각국, 실의 장 및 각관청의 예산, 회계 또는 통계 취급 책임자는 그 소관하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0 조 : 주계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의 임면 심사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통계법규, 통계조사방법 및 통계제도 설계의 심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조직의 편제 및 사무처리 규칙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4. 주계관 또는 국장이 제출한 사항.
5. 주계장이 제출한 사항.

2. 행정원 주계처처무규정(초) (1963년 7월 1일 수정공포)

제 9 조 : 제 3 국 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과

1. 인구, 토지, 사회, 교육, 위생, 노동 및 기타 내정 및 교육에 관한 통계의 수집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사항의 집행 계획방침, 도표, 보고양식의 심사결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경비의 원안작성, 심사 및 업무의 구분과 연락에 관한 사항.
4. 기본국세조사 방침의 계획과 기타 관청에 속하지 않는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5. 전국 통계 총보고의 편집에 관한 사항.
6.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안건의 심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 및 그 기타 본과 주관에 관한 사항.

제 2 과

1. 입법, 사법, 공무원 시험 및 임용, 감찰, 외교, 군사, 교포, 교통, 운수 및 기타의 정치통계의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사항의 집계 계획방침, 기준, 도표보고양식의 심사결정, 공포에 관한 사항.

3.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경비의 원안작성, 심사 및 업무구분과 연락에 관한 사항.
4. 국제통계 자료작성, 교환과 국제통계 진행계획 및 업무의 연락 배분에 관한 사항.
5. 통계간행물의 수집,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6. 특히 지시된 사항 및 본과 주관 사항.

제 3 과

1. 농촌 어업, 목축, 공업, 광업과 기타 천연자원 및 재정, 금융, 상업, 물가등 통계의 수집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사항의 집행, 계획방침, 표준, 도표, 보고양식의 심사결정, 공포에 관한 사항.
3.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경비의 원안작성, 심사 및 업무의 구분과 연락에 관한 사항.
4. 통계개요, 통계수첩 기타 경제동향등의 간행물의 편집.
5. 특히 지시된 사항과 기타 본과 소관에 관한 사항.

제 4 과

1. 국민생산, 국민소비, 자본형성 및 국민소득 통계의 징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사항의 집행계획방침, 기준, 도표, 보고양식의 심사결정, 공포에 관한 사항.
3. 제 1 호에 계기한 통계경비의 원안작성, 심사 및 업무의 구분과 연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소득통계 실무의 설계지도에 관한 사항.
5. 국영사업의 생산고 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6. 특히 지시받은 사항 및 본과 주관 사항.

제 5 과

1. 각종의 통계도표의 편제와 통계서적의 인쇄배부.
2. 전국 각기관 공무 통계조사의 설계연구에 관한 사항.
3. 전국 각기관 통계자료의 설계의 관리 지도.
4. 각기관의 통계기구의 설치, 합병, 정원편성 및 업무분장 규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각기관의 통계직원의 지휘감독, 임면, 전임, 시험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 3 국의 각종 업무보고 및 계획의 취합.
7. 본국 문서접수, 구분 및 각과 소관업무의 기한독촉에 관한 사항.
8. 특히 지시된 업무 및 각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10 조 : 주계장은 각국의 고급직원중에 1 인을 지정하여 책임자로 한다.

제 12 조 : 주계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회계, 통계법규, 통계제도의 기획.
2. 예산, 회계, 통계법규, 통계제도의 원안작성.
3. 예산, 회계, 통계의 법규, 통계제도의 심사.
4. 회계, 통계의 학술성 있는 문서의 연구 조사.

5. 주계장 및 부주계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제 14 조 : 시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제도 또는 방안의 실무상황의 시찰에 관한 사항.
2.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의 작성 및 인사의 실제평가.
3.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직원의 업무처리 지도.
4. 주계장 및 부주계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주계장은 간임 시찰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시찰실의 업무를 지휘감독시킬 수 있다.

시찰은 그 임무를 집행했을 때 그 보고를 주계장 및 부주계장에 제출한다.

각부국에 파견된 시찰은 각부국의 관장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 전문위원 및 직원의 직무는 주계장, 부주계장이 수시로 지정한다.

각부국에 파견된 자는 각부국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19 조 : 주계직원의 훈련은 주계장이 이에 관한 부국 및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처리케한다.

제 21 조 : 본 주계처의 사무는 행정원주계처조직법 및 기타 관련된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계회의에 관한 직권은 주계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하든가

또는 다음의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단, 외부에 대한 문서의 발송은 제 1 계층 및 제 2 계층에 한한다.

1. 주계장, 부주계장을 제 1 층으로 한다.
2. 각국실의 주관자를 제 2 층으로 한다.
3. 각과 과장은 제 3 층으로 한다.
과장이 하는 층을 두지 않는다.

3. 행정원 주계처 설치 각기관세제, 회계, 통계기관조례
(1958 년 3월 28 일 공포)

제 1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직원은 본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다.

제 2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은 다음의 각급으로 나눈다.

1. 회계장, 통계장은 모두 간임.
2. 회계처장, 통계처장은 간임 또는 천임.
3. 회계주임, 통계주임은 천임 또는 위임.
4. 회계원, 통계원은 모두 위임.

각기관 및 공립학교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에 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적합치 않는 경우 각기관 학교의 조직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보조직원의 직무는 주계처가 실제 상황에 의거 정한다.

제 3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사무는 각기관의 회계장, 회계처장, 회계주임, 회계원이 장이 되어 처리한다.

그 기관의 통계사무가 간단한 경우 이를 겸임한다.

제 4 조 : 각기관의 통계사무가 간단한 것은 전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이외는 통계장, 통계처장, 통계주임, 통계원이 처리한다.

제 5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은 각기 상급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 법에 의거 각각의 소속기관 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 6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의 보조직원은 각기 그 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의 감독지휘를 받는다.

제 7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직원의 임명, 봉급은 주계처에 의거 처리되며 그 소재기관에 통지된다.

전항 직원의 급료와 기타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주계처가 결정하여 소재기관에 통지하여 그예산에 편입한다.

제 8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은 그 소재기관의 당초 예산회계, 통계부문의 조직에 대하여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수정안을 기초로 하여 상급의 예산, 회계, 통계부국의 장을 경유하여 주계처에 제출한다.

제 9 조 : 각기관의 예산, 회계, 통계직원의 처리규정은 주계처에 의거 각기 결정된다.

4.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주계기구 및 인원설치조례(초)

(1949. 1. 7. 공포)

제 1 조 : 각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의 주계기구와 직원의 설치와 조정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 지방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주계기구의 명칭을 주계처 또는 주계실로 한다.

그 장은 다음의 등급으로 나누어 주계부가 각 정부의 조직 및 사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법에 의거 이를 둔다.

1. 주계처장은 간임으로 하고 부처장은 간임 또는 청임으로 한다.

2. 주계실 주임은 청임으로 하고 부주임은 청임 또는 위임으로 한다.

3. 주계원은 위임으로 한다.

보조직원의 직명등급은 각급정부 또는 소재기관의 동등급의 직원과의 균형에 의거 정한다.

제 3 조 : 성 및 직할시정부에 주계처를 둔다.

처장 1인을 두고 현. 시. 성의 예산, 회계 및 통계사무를 주관시킨다.

그 사무가 특히 번잡할 경우는 부처장 1인을 둔다.

처장의 사무처리를 보좌시킬 수 있다.

제 4 조 : 성 및 직할시정부의 주계처에 좌의 각과를 둔다.

1. 제 1과는 예산사항 관장.

2. 제 2 과는 회계사항 관장.
3. 제 3 과는 통계 및 조사사항 처리.
4. 제 4 과는 총무, 인사 및 기타 각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본다.

주계처의 사무가 특히 복잡할 때는 제 5 과를 설치한다.

사무가 간단한 것은 제 2 과 또는 제 3 과를 둔다.

그 직무는 전 각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내지 병합한다.

제 5 조 : 현시정부에 주계실을 둔다.

주임 1인을 두고 전 현시의 예산, 회계 및 통계사무를 주관한다.

그 사무가 특히 복잡할 때는 부주임 1인을 두고 주임의 사무처리를 보좌한다.

제 6 조 : 성 및 직할시정부 소속의 각기관에 주계실을 둔다.

주임 1인을 두고 그 기관의 예산, 회계보, 통계사무를 주관시킨다.

그 사무가 간단할 때는 주계원을 둔다.

현시정부소속의 각기관에 주계원을 둔다. 그 기관의 예산.

회계 및 통계의 사무를 주관시킨다.

단, 사무가 특히 복잡할 때는 주계실을 두고 주임 1인을 둘수도 있다.

제 7 조 : 성 및 직할시정부주계처와 현시주계실의 편성은 주계부가

그 사무의 규모를 감안하여 정한다.

성 및 직할시정부 소속의 각기관의 주계기구 및 직원의 편성은 성 및 그 직할시정부가 업무규모를 감안하여 각각의 방안을 작성하고 그안에 근거하여 주계부가 심사 결정한다.

제 8 조 : 성 및 직할시정부의 주계기관의 장은 직접 주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성 및 직할시정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현시정부(縣市政府)의 주계기구의 장은 성정부주계기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시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거 시정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각기관의 주계기관의 장은 각기 성, 직할시 및 현시정부와 그 상급기관의 주계기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5. 통계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중화민국 각급정부통계의 조사편제, 전국 통계총보고의 편집, 통계방법의 통일, 업무의 배분 및 사무의 지휘감독은 법률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 각하급의 주계기관 또는 주계직원은 통계사무에 관하여 그 상급정부주계기관의 직접 감독 및 지휘를 받는다.

제 3 조 : 각급정부가 작성하여야할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국세조사통계.
2. 각기관의 직무상 사용할 통계.
3. 각기관이 처리하는 공무통계.
4. 공무원 및 그 업무통계.
5. 각기관이 작성하여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통계.

제 4 조 : 전국의 각종 통계는 직접 관계가 있는 해당 기관이 작성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때는 중앙에 있어서는 정부주제처, 지방에 있어서는 성정부 또는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주제기관이 각각 처리한다.

1. 기본국세조사에 속하는 사항.
2. 어떤 기관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3. 각기관에 의거 조사편제되지 않는 사항.

제 5 조 : 각급정부 및 중앙 각기관의 통계범위의 구분은 정부주제처가 수요의 상황에 근거하여 계획을 기초하고 전국 주제회의의 의결을 경유하여 정부의 결재를 경유 이를 정한다. 변경이 있을때도 또한 같다.

단, 근본적 원칙을 변경하지 않을때는 국민정부주제처 및 관계기관이 협의후 결정할 수 있다.

입법. 사법. 고시. 감찰등의 기관이 직권을 집행할때 쓰는 특수 통계는 각기관 및 국민정부주제처가 그 범위를 협의

의후에 결정한다.

제 6 조 : 전조 제 1 항의 방안은 다음 각항을 명백히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 통계기관의 부국과 그 단계구분.
2. 통계의분야.
3. 각기관별 통계조사집행계획.
4. 통계과목.
5. 통계의 단위.
6. 통계표의 형식.
7. 조사 및 편제의 방법.
8. 통계의 공표정도.
9. 통계보고의 인쇄범위.
10. 기타 명확히 정하여 두어야 할 사항.

제 7 조 : 통계기관의 단계구분은 예산 및 법에 정하여 있는 단계구분에 저촉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조 : 통계분야의 구분은 경상적 통계가 제 5 조 1 항에 정하여 있는 순서외에 임시적 통계에 관하여는 정부주제처가 전국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 9 조 : 정부는 전국의 통계숫자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또는 기타의 일정기간마다 통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 각급 정부의 주계기관은 기본국세조사 또는 기타의 센서

스적 통계를 작성할때 수요의 상황에 근거하여 임시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그외의 기관과 임시 연락조직을 설치할 수가 있다.

전항의 통계는 그 경비예산이 성립된 뒤 작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통계과목단위, 포책의 형식 및 조사의 편성방법은 제 3 조 제 2 관, 제 3 관 및 제 5 관의 통계에 쓰는 특수 목적의 용도이외는 모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단, 특수상황 때문에 적용할 수 없을때는 그 관계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국민정부주제처에 요청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특수 목적에 쓰이는 통계는 국민정부주제처가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인정될때는 그 당초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과목단위 포책 양식 및 조사편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정통계의 과목 및 단위는 예산상 및 회계상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정부주제처는 제 5 조의 통계방안의 규정에 의거 각기관의 통계직원의 업무를 배분하고 이를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시 통계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각기관 장관은 소속통계직원에게 처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 통계직원 및 소속기관장관간에 통계사무에 관한 의견이 상이할때 그 상급기관의 장관 및 통계부국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 14 조 : 각기관의 통계철과 공무원 및 그 업무의 기록표책은 모두 그 기관의 통계직원이 관리한다.

제 15 조 : 각정부의 주계기관은 통계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정부 또는 그 소속 하급정부의 각기관의 관계철 및 표책을 열람할 수 있다.

군사의교의 기밀안건 이외에는 각기관의 장관은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그 기관의 문서철 및 표책을 열람할때도 또한 같다.

제 16 조 : 정부가 통계를 작성할때 조사 대상자는 관청단체,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자세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 17 조 : 통계직원은 그 직권과 직위를 이용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통계의 편제 및 보고

제 18 조 : 통계의 연포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계절별 또는 월별 또는 일정한 기간을 들 수가 있다.

제 19 조 : 각기관의 통계보고는 통계부국의 장이 서명한뒤 그 주관장관을 경유하여 상급관청에 제출된다.

단, 그통계가 그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상급의 주계기관 또는 통계부국의 장이 직접 명령에 의거
작성된 경우는 통계부국의 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20 조 : 통계보고가 전조의 순서에 의거 중앙의 최고 주관기관에
송부되었을때 그 주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것은 국민정부에
의거 주계처에 송부된다.

또 통계부국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은 주계처에 송부되고
주계처통제국에 의거 전국통제총보고로서 편성된다.

성 및 행정원 직속의 시의 통계보고의 제출순서 및 총보고
의 편성은 전항의 순서에 준한다.

제 21 조 : 제 5 조제 2 항의 통계는 주계처 또는 통계부국의 장에 의
거 이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 22 조 : 통계의 공개 가능정도는 다음의 3 종류로 나눈다.

1. 비밀류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의 합법적인
요구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개류

공중의 열람 또는 문의에 제공할 수 있는 것.

3. 공고류

일정시간 또는 기타의 조건하에 일정지역에서 공고할 수가
있다.

제 23 조 : 각급 정부기관의 수지통계는 그 소재지에 있어 매월

1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 공개류 및 공고류는 인쇄할 수가 있다.

제 25 조 : 정부주제처는 매년 전국통계 총보고개요에 근거하여 중화민국 분류통계연감을 편람하고 정부의 결재에 의거 인쇄 발행한다.

각 성, 시, 현도 당해 성, 시, 현의 분류통계연감을 편집할 수가 있다.

제 3 장 지방통계

제 26 조 : 성정부 및 행정원에 직속하고 있는 시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되어 처리되는 통계외에 제 5 조의 통계방안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당해성 또는 당해시의 통계를 처리할 수 있다.

제 27 조 : 성정부, 현, 시정부 및 성정부소속의 각기관이 작성하여야 할 통계는 제 5 조에 정한 순서에 의하되 그 범위의 구분에 관하여는 성주제기관에 의거 방안을 기초하고 전성의 주제회의의 의결을 경유하여 성정부의 결재를 얻어 행한다. 변경 때도 같다.

제 28 조 : 현시정부는 중앙정부 또는 성정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통계의 제 5 조 및 전조의 통계방안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필요에 따라 그 현 또는 시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 29 조 : 제 26 조 및 제 28 조의 성·시·현의 통계는 편성이 끝난 뒤

각 한통을 그 상급정부의 주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칙

제 30 조 : 국립 또는 지방설립의 학술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통계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1 조 : 본법의 시행세칙은 정부주계처에 의거 정한다.

제 32 조 : 본법의 시행기일은 명령에 의거 정한다.

6 . 통계법시행 세칙

제 1 조 : 본 세칙은 통계법 제 3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 중앙정부의 통계주관기관은 정부주계처 통계국 (현행주계처제 3 국) 으로 하며 성. 시. 현정부의 통계주관기관은 각기 그 정부내에 설치한다.

각 성. 시. 현정부에 주계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각 정부는 임시 통계기관을 설치하고 주계기관에 속하는 통계분야의 직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상급정부의 주계기관 또는 임시 주관통계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항의 주관통계기관의 조직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각 성. 시. 현정부의 임시 통계기관에 관하여는 본 세칙 각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 각급정부 및 그기관의 통계부국의 장 및 그보조직원 은

모두 주계인원으로 한다.

통계부국의 장은 다음의 3등급으로 나눈다.

1. 통계장 간임
2. 통계주임 천임
3. 통계원 위임

보조직원 에 관하여는 문관의 명칭 및 등급을 적용한다.

제 4 조 : 각관청의 통계사무가 간단하고 통계부국의 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당해 관청의 회계직원이 겸임한다.

제 5 조 :

1. 중앙정부 각기관 및 각성정부 및 행정원 직속의 각시정부의 주계기관의 통계직원은 정부주계처 통계국에 의거 주계회의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경유 설치. 임용 또는 면직한다.

성정부 및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 각기관 및 그 각 현시정부의 주계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성정부 또는 행정원직속의 시정부의 주계기관에 의거 정부주계처에 제출되어 설치. 임용. 면직된다.

2. 현시정부의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그 정부의 주계기관에 의거 성정부의 주계기관에 제출하여 설치. 임용. 면직한다.
3. 각 현시정부의 각기관의 통계보조직원은 정부의 주계기관이 각기 설치. 임용. 면직한다.

제 6 조 :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 및 통계보조직원은 시험, 전형 또는 훈련에 합격한뒤 처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 훈련과 임용의 표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

1. 각 성, 시, 현정부주제기관은 상급정부주제기관의 직접 감독과 지휘를 받는 외에는 소재 정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각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그 소재정부주제기관이 지정한 상급통계부국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각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그 상급통계부국장 또는 소재정부주제기관의 직접 감독과 지휘를 받는 외에 소재기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 8 조 :

1. 각급 정부 및 그기관은 통계사무 및 기타 행정사무의 연락을 기도하는외에 통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통계부국의 장 및 각부국이 정한 자에 의거 조직된다.
통계부국장을 주석으로 하고 각위원은 모두 무급직으로 한다.
2. 통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통계의 계획 및 통일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각부국의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편성, 응용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 9 조 : ①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그 각기관이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통계 계획을 통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뒤, 상급의 통계부국장 또는 소재정부의 주계기관에 송부하여 재결을 얻는다.

- ② 각급 정부의 주계기관은 각기관의 통계조직 및 통계계획에 근거하여 통계부분의 경비예산을 결정하고 각기관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사업경비는 단독별개로 제상한다.

제 10 조 :

- ① 기본국세조사는 국가의 인민, 토지, 자원, 정부, 사회, 경제, 문화등을 포함하는 일정 시기에 행하여는 센서스를 말한다.
- ② 기본국세조사가 전국 또는 수개의 성 또는 수개의 행정원 직속의 시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정부주계처가 이를 주관한다.
단, 성정부 및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의 주계기관은 단독으로 그 구역내의 기본국세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 ③ 전국 기본국세조사는 적어도 10년에 1회 실시한다.

제 11 조 : 기본국세조사의 일부분을 실시할때는 그 부분적 센서스 — 예컨대 인구센서스, 농업센서스, 공업센서스등은 그 실시 지역 및 실시시기는 호구센서스를 제외하고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주관기관은 국민정부주계처가 결정한다.

제 12 조 : 성, 시, 현정부의 주계기관이 그 관할구역내의 기본국세조

사 또는 어떤 부분적 센서스를 거행할때 다음의 각 사항을 상급정부의 주계기관에 제출하여 재결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1. 조사항목, 지역, 시기 및 단위.
2. 이에 따른 조문, 표책, 양식 및 기타의 설비.
3. 정리와 편성방법.
4. 임시 부속기관을 설치하는 조직과 임용하는 인원의 표준.
5. 경비의 예산.

제 13 조 : 중앙정부의 각성이 부분적 센서스를 실시할때 그 통계부국의 장은 우선 전조의 각사항을 소재 정부의 주계기관을 경유하여 상급 정부의 주계기관에 제출하여 결정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 각 기관이 직무상 사용할 통계는 그 기관이 시정 계획을 기초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제 15 조 : 각 기관은 전조의 필요로 하는 각종 통계에 관하여 자세히 그 명칭 및 범위를 소재 정부의 주계기관에 통지하여 주계기관을 경유하여 직접 관계있는 각기관에 송부하고 조사등재한후 별도로 심사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송부한다.

제 16 조 : 각기관이 직접 조사등재한 자료는 우선 소재정부의 주계기관의 심사재결을 얻은뒤 처음으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제 17 조 : 각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공무통계는 그 기관의 직무집행의 경과 및 결과의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성질의 것은 모두 확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시정집행계획의 성적과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것.
2. 업무의 능률과 각단위의 비용을 표현할 수 있는것.
3. 재정수지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것.

제 18 조 : 공무통계는 실제 숫자를 중요시함으로 통계양식에 의거 그 응용단위를 표현하여야 한다.

표 및 각항의 비율에 관하여는 통일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 19 조 :

- ① 각기관이 처리하는 공무통계의 자료는 일반 문헌 및 보고 중에서 정리 추출하여야 한다.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통계보조원을 각부국에 파견하여 일을 담당시키고 등재하고 그자리에서 자료를 발췌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계보조원은 행정상 소재 부국의 장의 지휘를 받고 그 정리한 결과를 그 부국의 응용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재부국의 장은 그 관계문헌보고등을 수시로 통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 각기관의 공무원의 통계는 각기관 및 소속 각부국의 조직

편성 및 공무원의 경력, 자격등급, 봉급 및 임면, 이동, 상
벌등의 기재를 포함한다.

제 21 조 : 각기관의 공무원의 업무통제는 각공무원이 그 직무를 처리
한성적, 능률 및 그비용, 매일의 출결상황을 포함한다.

제 22 조 : 각기관의 공무원 및 그 업무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조직편성, 정원수 기록부.
2. 공무원 자격, 경력, 봉급 기록부.
3. 공무원 임면이동 기록부.
4. 공무원 출근, 퇴근, 결근부.
5. 공무원이 사용한 경비 및 물품의 등재부.
6. 공무원 성적 및 상벌등재부.
7. 기타 등재를 요하는 사항의 부책.

제 23 조 :

- ① 직접 또는 원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을 그 종류의
통계에 직접 관계있는 기관이라고 한다.
- ② 각종의 통계는 직접 관계있는 각기관이 직접 처리한다.
다수의 직접 관계기관이 있을 경우는 소재정부의 주계기관
이 그기관을 지정하여 단독으로 처리시키든지 또는 수개의
기관이 합동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

- ① 정부주계처는 중앙 각기관 및 각급 정부의 수요상황에 근
거하여 전국 통계방안을 기초하여 전국 주계회의의 의결을

경유 정부의 재결을 얻어 공포한다.

- ② 성정부의 주계기관은 성정부 소속의 각기관 및 각현시정부의 수요상황에 기초하여 전성통계방안을 기초하여 전성주계회의의 의결을 경유 정부주계처가 재결한뒤 성정부가 이를 공포한다.
- ③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주계기관은 각각 그때의 수요상황에 근거하여 전시통계방안을 기초하고 정부주계처의 재결을 경유하여 시정부가 이를 공포한다.
- ④ 현시정부주계기관은 각각 그 현시의 수요상황에 근거하여 전성시의 통계방안을 기초하고 성정부주계처의 재결을 경유 현시정부가 이를 공포한다.

제 25 조 : 전성의 주계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국민정부주계처는 실제의 상황에 근거하여 임시 통계방안을 기초하고 임시 전국 통계회의를 소집한다.

이를 심사 재결한뒤 정부는 재결공포를 청한다.

전성주계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성정부주계기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임시 통계방안을 기초하고 임시 전성통계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의결한뒤 국민정부주계처의 재결을 경유, 성정부가 이를 공포한다.

제 26 조 : 임시 전국 통계회의의 조직규칙은 국민정부주계처가 이를 정한다.

전성 임시 통계회의의 조직규칙을 각급 정부행정기관이 기

초한뒤 정부주제처가 재결한다.

제 27 조 : 각성이 전성주제회의 또는 전성 통계회의를 개최할 때는 정부주제처는 직원을 파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 28 조 :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보고 및 수집기관 단위와 그 단계 구분의 기준은 각급 정부의 주제기관이 통계구역에 따라 정한다.

제 29 조 : 통계구역은 통계자료의 성질을 모아 다음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 1 . 행정 범위
- 2 . 경제적 여건
- 3 . 문화정도
- 4 . 국방관계
- 5 . 기타 적용 기준

제 30 조 : 각각 통계구역에는 최상급의 수집기관을 둔다.

제 31 조 : 통계보고의 송부는 최하급기관단위로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최상급기관단위에 이른다.

최하급의 통계기관은 원시 통계자료를 규정한 보고양식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차상급통계기관을 경유, 보고하며 자료수집시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뒤 최상급의 통계기관에 송부된다.

이와같이 순차적으로 한급씩 송부하여 각구역내의 최상급의 수집기관에 송부된뒤 정부주제처에 송부된다.

제 32 조 : 중앙 성 또는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가 기본국세조사를 주관할 때 그원시자료는 최하급의 통계기관을 경유하여 순차로 중앙 성 또는 행정원 직속의 시정부에 송부되며 그 주계기관이 집중정리하게 된다.

제 33 조 :

- ① 각항의 통계업무는 그수요의 급내지 직원경비, 설비상황에 의거 진행순서를 정한다.
- ② 개개의 통계작성에 있어 동일한 몇개의 계급으로 나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우선 표본추출조사 또는 시험조사를 행하고 각 단계별로 전부의 통계를 작성한다.
- ③ 전항의 통계작성에 관하여는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계획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또 각시기내에 완성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임시직원의 수, 설비, 경비예산등을 먼저 결정한다.

제 34 조 :

- ① 각급 정부의 주계기관이 기본국세조사 또는 부분적 센서스를 실시할 때는 임시 부속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으며 또 각기관의 인원을 징용할 수가 있다.
임시기관의 조직은 위원제를 채용할 수가 있다.
- ② 징용된 인원은 주계기관 또는 임시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35 조 : 통계보고과목의 통일에 관하여는 정부주계처가 전국통계

총보고의 범위를 문·류·강·목란의 항목별로 나누고 명칭을 설정한다.

문은 류로 나누고 류는 강으로, 강은 목으로, 목은 난으로 나누어진다.

목은 각통계양식의 명칭으로서 난은 각표중의 통계사항으로 한다.

제 36 조 :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전국 통계총보고의 과목에 근거하여 각종의 조사기록 및 정리표책의 양식을 기초하여 정한다.

단, 특수상황에서의 변경의 필요시는 소재정부의 주계기관의 재결을 얻는것으로 한다.

제 37 조 : 정부주계처는 각종의 통계과목의 정의 및 통계기술상 사용하여야할 용어를 확정,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8 조 : 통계단위는 모두 국정제도에 준한다.

동일하지 않는 단위에 있을때 또는 고정제도가 설정되어있지 않는 지방이 보고할 때는 최초의 단위를 사용하고 환산방법을 자세히 주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39 조 : 통계자료의 분류기준 및 배열순서는 국민정부의 주계처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40 조 : 통계표책, 분류조사표, 등재부, 정리표 및 보고표의 4 종류의 조사표를 1차 채용의 표로 한다.

등재부는 계속하여 등록할수 있도록 쓴다.

정리표는 조사 또는 등재부중의 자료를 종합분석할때 쓴다.
보고표는 정리한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할때 쓴다.

제 41 조 :

- ① 각기관보고표의 형식은 각기 그 정부의 주계기관이 이를 정한다.
또 숫자는 “아라비아”체로 좌에서 우로 기재한다.
표내의 통계, 합계, 소계는 모두 앞에 기재한다.
표의 용지는 19 cm X 27 cm보다 약간 작게 한다.
- ② 조사표, 등재부 및 정리표의 형식은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일단 정하여 소재정부의 주계기관의 재결을 얻은뒤 사용한다.
- ③ 각기관 소속기관의 보고양식은 그상급의 통계부국의 장 또는 소재정부의 주계기관에 의거 정하여진다.
조사표등재와 정리표의 형식은 각기 소속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정한다.
상급 통계부국의 장 또는 정부통계기관의 재결을 얻은뒤 사용한다.
- ④ 본조의 각항표식에 관하여 정부주계처는 전국적으로 일치된다고 간주할때 각각 통일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한다.

제 42 조 : 각급 정부의 주계기관은 통계방안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각급기관주재 통계부국장에 배분하고 감독 지도한다.

각기관의 통계부국장이 각기 소속 통계부국장에 대한 때도 같다.

제 43 조 : 각기관의 통계부국장이 소재정부의 주계기관 또는 상급의

통계부국장에 의거 통계방안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배분한 경우 또는 소재기관의 장관에 의거 임시적인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령된 경우는 모두 그기관의 통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방법을 상의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소재정부의 주계기관 또는 상급 통계부국장 및 소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 44 조 : 각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소재기관의 장에게 임시적인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령받은 때는 즉시 진행계획을 작성하여 상급통계부국장 또는 소재기관의 주계기관에 송부하여 재결을 얻는다.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할때는 동시에 임시 경비예산을 제출하여 이의 재결을 얻은뒤 집행할 수 있다.

제 45 조 : 각기관의 통계직원 및 소재기관 직원이 통계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 할때는 소재기관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 46 조 : 각기관의 담당직원은 위법 또는 직무태만, 또는 부당행위를 한외에는 면직, 강등, 감봉 또는 기타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 47 조 : 통계법 제 3 조에 규정된 각항의 통계자료의 문헌, 보고, 표책, 보고서류를 통계철이라 한다.

제 48 조 : 각기관 공무원 및 그 업무기록의 정부는 정부주계처가 통일양식을 규정한다.

단, 각기관은 특수수요를 위하여 기록을 첨가할

전항의 정부는 각기관에 의거 공포된다.

또 집행된뒤 그기관의 통계직원 에 의거 관리된다.

기록이 불완전 또는 불실할 때는 반려시켜 수정하거나 그
접수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49 조 : 각기관의 공무원 및 그 업무기록의 장부가 완전할때 차년
도의 예산을 확정 하고 집행 한다.

제 50 조 :

- ① 각급 정부의 통계기관이 통계사무를 위하여 필요할때 소재
정부 또는 소속하급정부 각기관의 관련문서, 표책을 요구할
때 그기관에 곧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직무상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기일을 연기
하여 제공할 것을 명백히 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단, 주제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복사할때는 연기할 수가
없다.

- ②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소재기관의 문서를 빌리거나 사
본을 작성할때도 같다.

제 51 조 :

- ① 각기관이 어떤 조사를 행함에 있어 국민의 의구심을 피할
필요가 있을때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한
다.

단, 이때 소재 정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일체의 비용을 실제액으로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② 전항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시켜 조사할 때는 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52 조 :

- ① 통계보고류의 자료의 시기 또는 종기는 월보에 속하는 것은 매월 1일부터 시작하고 제보는 매년의 1, 4, 7, 12월 1일부터 시작하고 반년보는 7월 1일부터, 연보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② 수집기관은 자료를 기한내에 보고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이를 정리후 보고표에 기입하여 기한내에 수집하여 보고한다.
- ③ 1년마다 보고토록 규정된 것은 수집기간이 반년을 넘지않도록 한다.
- 반년마다 보고하는 것은 수집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 계절마다 보고하는 것은 수집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 이들 기간은 규정된 기한이 끝난뒤부터 가산한다.
- ④ 교육년도의 통계자료는 2개의 반년도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다.
- 상반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수집하고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수집한다.

제 53 조 :

- ① 각급 정부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발표는 각급 정부의

주계기관이 행한다.

- ② 각기관의 통계자료는 소재 정부의 주계기관의 재결을 경유하여 발표한다.

제 54 조 :

- ① 각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는 소재 정부의 주계기관에 미리알리어 주계기관이 소재 정부의 통계부국의 장 또는 하급정부의 주계기관별로 조사하여 보고토록 명령한뒤 소재 정부기관은 관련통계자료를 수집 보고한다.
- ② 각기관에 취합된 통계자료의 문헌 송부를 받는 때는 즉시 소재 정부의 주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 : 경상통계보고의 발송에 관하여는 각급정부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통계를 편성하여 주무 장관의 서명날인을 얻은뒤 상급기관의 장에 송부한다.

제 56 조 : 각급정부의 주계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상통계보고이 외의 자료는 직접으로 소재정부 각기관의 통계부국장 또는 하급정부기관에 명령하여 직접 송부할 수 있다.
단, 소재정부 주계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급정부 및 각기관의 자료는 그 상급 통계부국의 장 또는 그 하급정부의 주계기관으로 순차 전달된다.

제 57 조 : 통계법 제 5 조 제 2 항의 통계에 관하여 비밀의 성질이 있는것은 각급정부의 통계부국의 장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비밀히 정부에 송부된다.

시간관계상 통계부국의 장이 직접 송부할 경우는 별도로
1 통을 복사하여 순차로 비밀히 정부 주계처에 송부되어
보존된다.

제 58 조 : 비밀류의 통계는 소재정부와 그 주계기관 쌍방의 동의를
얻은후 처음으로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 및 기타의 이해관계
직원의 합법적 수요에 대하여 공급할 수가 있다.

제 59 조 : 공중의 열람, 질의 또는 사본을 작성하게 하는 통계는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가 있다.

제 60 조 : 인쇄 발행하여야 할 통계는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인쇄한뒤 착오를 발견했을때는 정오표를 첨부하여 발행할 수
가 있다.

제 61 조 : 각급 정부기관의 매월의 재정수지통계는 가급적 다음달의
월 말 이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62 조 : 각기관의 통계부국의 장은 매월의 재정수지통계를 편집하기
위하여 각항의 수입, 장부, 증빙등을 차용하여 열람할 수 있고
회계, 회계검사, 출납 및 관리직원과 합동하여 수시로 금전,
물품등 출납재고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제 63 조 : 각급 정부가 통계연감을 편성할때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통계를 발췌하여 기재할 수 있다.
또 학술연구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편집할 수도
있다.

제 64 조 : 본 세칙에 부적당한 것이 있을때는 정부주계처는 상급관청에

제출하여 정정을 신청한다.

제 65 조 : 본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Ⅲ . 泰 国 의 統 計 制 度

經濟開發庁에 속하는 國民所得局과 農林省統計局・大藏省關稅局・保健省의 人口動態統計部 등 소수에 限定되고 있다.

또 各省庁이 作成하고 있는 統計도 大部分이 地方行政機關으로부터의 정기報告를 취합한 種類의 業務統計에 그치고 있는것이 많다.

實際로 泰國統計行政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總理府에 속하는 統計局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이다.

人口統計・農業統計등 主要 統計가 企劃・設計・實査되며 集計公表등이 여기서 행하여지고 있다.

또 「泰國統計年鑑」이나 「統計季報」등 綜合的인 統計報告書도 여기에서 편집간행되며 各省의 統計活動에 관하여 技術的인 지도와 조언을 행하고 있음으로 泰國의 統計制度는 實質的으로 強力한 集中型體制를 취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한편 地方統計機構를 보면 우선 地方管區로 나누고 내무상이 임명하는 地方長官이 配置되어 있다.

그아래 道에 該當하는 「찬왓트」가 있다. 같은 내무상으로부터 임명된 知事가 地方行政을 担当한다.

「찬왓트」의 밑에 郡에 해당하는 「안파」가 있다. 이들 地方行政機構 乃至 自治團體에는 統計專門部課를 두고 있지않다.

「찬왓트」에 있어서도 統計課가 따로이 없고 定期的인 業務報告를 担当하는 職員이 各 部署에 配置되어 있는 정도이다.

地方統計機構로서 注目되는 것은 總理府 統計局의 산하 기관인 地方實査 事務所가 있고 12個의 地方實査 事務所아래에 다시

Ⅲ. 泰國의 統計制度

概 要

泰國의 統計組織은 이른바 分散型의 組織을 취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總理府 統計局이다.

중요한 統計調査의 實施, 綜合報告書의 發刊, 統計의 綜合的 調整을 맡고 있으며 또 지방기관으로서 실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統計法規에 관하여는 1965年 總理府統計局的 권한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以上과 같은 組織, 法令下에서 泰國의 統計는 점차 整備되고 있지만 아직 人口, 農業의 兩分野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이며 기타 分野에 있어서는 業務統計외에 体系的으로 정밀하게 調査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一. 統計組織

1. 統計組織의 特質

泰國의 統計制度는 外形的으로 보면 이른바 分散型이며 各省厅이 각기 自己業務所管에 속하는 分野에 관한 統計를 편제하고 公表하는 責任을 가지고 있다.

中央政府의 行政機關은 全部 100여개에 이르며 그중 약 40여개의 機關이 어떤 形態로든지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 專門的인 統計部局을 가진 機關은 매우 적다.

69 個의 「찬왓트」 實查 事務所가 있다.

以上과 같은 統計組織에 의하여 構成된 泰國의 統計調查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泰國의 官庁統計로서 비교적 精密한 資料가 蒐集되고 있는 것은 人口, 農業, 金融, 貿易, 物價 및 國民所得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鉦工業, 商業, 建設業, 勞動統計에 있어서는 信憑性있는 統計를 얻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리고 現存하는 統計中에서도 金融, 貿易, 財政等의 諸統計는 그 編製過程의 性質上 상당한 正確을 기하고 있으나 其他 分野에 있어서는 人口센서스, 農業센서스를 비롯하여 總理府 統計局이 主管하는 몇몇 主要 統計調查를 除外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거의 一線行政單位로부터의 報告에 基礎를 두는 業務報告資料를 취합하는 정도이어서 그 信憑度가 높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象이 앞으로 繼續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에 記述하는 것과 같이 現在 泰國에 있어서 官庁統計의 中心機關인 總理府 統計局이 근래 그 體制를 整備하고 있으며 勞動力調查, 家計支出調查, 作物收穫高調查, 鉦工業센서스, 商業센서스 등의 諸統計調查가 策도에 오르고 있다.

앞으로 總理府 統計局을 中心으로 하여 不足한 統計 專門職員을 集中的으로 養成하면 泰國統計도 漸次로 그 質이 높여질 것이다.

2. 統計組織의 發展歷史

泰國의 官廳 統計組織은 약 60年前에 統計法이 制定된 때부터 始作하지만 實際로 近代的인 統計組織은 1952年 改正統計法이 實施된 후 부터이다.

이 法律의 施行에 따라 總理府소속 經濟開發廳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oard) 의 內局으로써 現在 總理府 統計局의 前身인 中央統計局이 設置되어 있다.

經濟開發廳은 國家經濟審議會 (National Economic Council) 가 명칭 變更된 것이며 1959年에 改稱되었으나 實質적으로 큰 變動은 없다.

國民所得 推計를 担当하는 國民所得局 (National Income Office) 도 이 經濟開發廳에 屬하고 있다.

中央統計局의 統計機能은 1952年度의 統計法에 依拠 자세히 規定되고 있지만 그 長은 政府統計業務局長 (Director of the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으로 호칭되며 동시에 審議機關인 統計委員會 (Statistical Commission) 의 事務局長도 兼하고 있다.

統計委員會는 統計全般에 걸쳐 指導 監督을 하며 經濟開發廳에서 任命하는 議長 및 副議長, 各省을 代表하는 委員으로 構成된다.

1952年 統計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統計局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① 統計報告 또는 統計資料의 供給을 위한 政府 中央行政機關

으로서의 機能

- ② 公共 統計業務의 發展·改善 및 民間 統計에 관한 調節
- ③ 一般 目的의 모든 政府統計計劃 및 事業에 관한 設計, 調節 및 技術的인 監督
- ④ 政府 各 行政機關 및 國營事業體의 統計調査의 實施·編輯·分析作業에 參與하는것
- ⑤ 各 行政機關에서 使用될 수 있는 統計基準의 設定 및 調査票 設計
- ⑥ 各種 센서스의 企劃, 實施, 報告書의 刊行, 主要統計調査의 實施
- ⑦ 統計의 企劃, 蒐集, 編製 및 分析에 從事하는 各 行政機關 및 國營事業體의 統計活動에 관한 技術的 支援
- ⑧ 國稅 統計資料의 國家經濟審議會 提出
- ⑨ 定期的인 統計資料의 公表와 各 行政機關, 國營事業體로부터 蒐集된 業務統計資料의 檢討 및 統計刊行物의 交換
- ⑩ 統計技術의 研究, 外國과의 統計刊行物의 交換 및 統計圖書 管理
- ⑪ 各 行政機關 및 國營事業體의 統計職員에 대한 訓練

이와같은 中央統計局의 機能은 내략 現在의 總理府 統計局의 機能과 類似하지만 職員數는 약 200名이었다. 內部組織은 經常統計部, 企劃部, 調査部, 기계제표부 및 통계서비스부의 5부로 構成되어 있었다.

1963年 5月 中央統計局은 經濟開發庁으로부터 分離되어 總理府에 속하는 外局으로 되었고 그 名稱도 Central Statistical Office로부터 National Statistical Office로 改稱되었다.

그후 職員數도 증가하여 1965년에는 現體制로서 改編되기에 이르렀다.

現在の 總理府 統計局은 새로이 設置된 製表部(집계 Center)를 포함하여 그 機能이 크게 擴大되었다. 그結果 人口센서스, 農業센서스, 鎡工業센서스 기타 모든 센서스 및 주요 統計調査實施를 擔當하고 調査結果의 評價 및 分析, 사후조사 實施, 集計, 統計의 品質管理, 새로운 統計技術의 導入, 조사구 要圖作成 등을 행한다.

3. 統計의 綜合調整

泰國에 있어 統計의 綜合調整은 總理府 統計局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統計法에 依拠 中央統計局의 統計調査 實施計劃에 관한 調整權限을 現在の 總理府 統計局이 擔當하고 있으며 그 機能은 다음의 7가지로 나누어진다.

1) 統計調査의 實查調整, 基準의 통일

總理府 統計局은 統計事業計劃에 관한 審査를 하며 企劃設計와 아울러 統計調査全體에 걸쳐 總理府 統計局의 承認을 얻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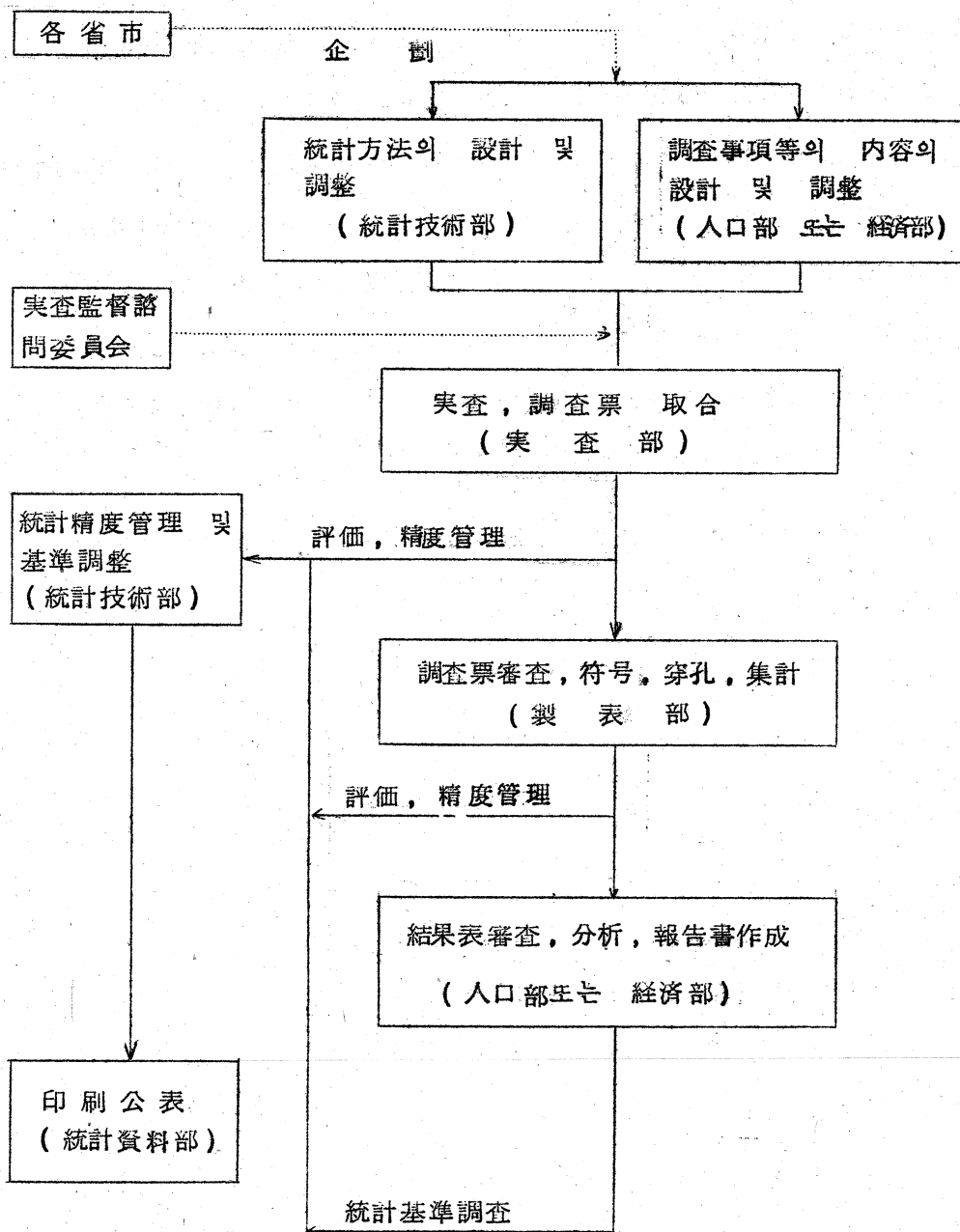
이 事前承認 段階에서 標本設計, 調査方法에 관한 審査는 總理府

統計局의 統計技術部 (Divis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가
担当하고, 調査事項, 調査表의 樣式, 內容 및 所要經費에 관한 審査
는 人口部 및 經濟部가 担当하고 있다.

다음 實查段階에 있어서는 實查監督諮問委員會 (Field Inspect-
ion and Advisory Committee) 에 의한 調整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主要 統計調査에 관하여는 實查部 (Field Operation Division)
가 직접 調査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集計製表段階, 公表段階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統計調査結果의 評價 및 分析, 基準의 統一
등에 관하여도 統計技術부가 担当한다.

以上の 過程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統計調査作業調整の 흐름



2) 統計基準

前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統計用語의 調整, 分類의 統一, 合目的性의 確保등 統計基準의 側面으로부터의 調整은 總理府 統計局 技術部가 担当하고 있다.

3) 統計予算의 調整

모든 統計 關係予算에 關하여 予算局이 予算編成을 하기전에 總理府 統計局에서 審査를 하도록 되어있다.

4) 統計報告書의 作成

前記 (1)項에서 본바와 같이 主要統計調査 結果報告書가 統計局에서 公表되고 또한 各省으로부터 統計數値의 報告를 받는 權限을 가지고 있으며 泰國 統計年鑑, 統計季報등의 綜合統計를 編輯 發行한다.

5) 統計에 關한 國際機構와의 業務協助, 外國政府와의 協力에 關한 事項

6) 統計職員의 訓練에 關한 計劃의 樹立 및 施行

7) 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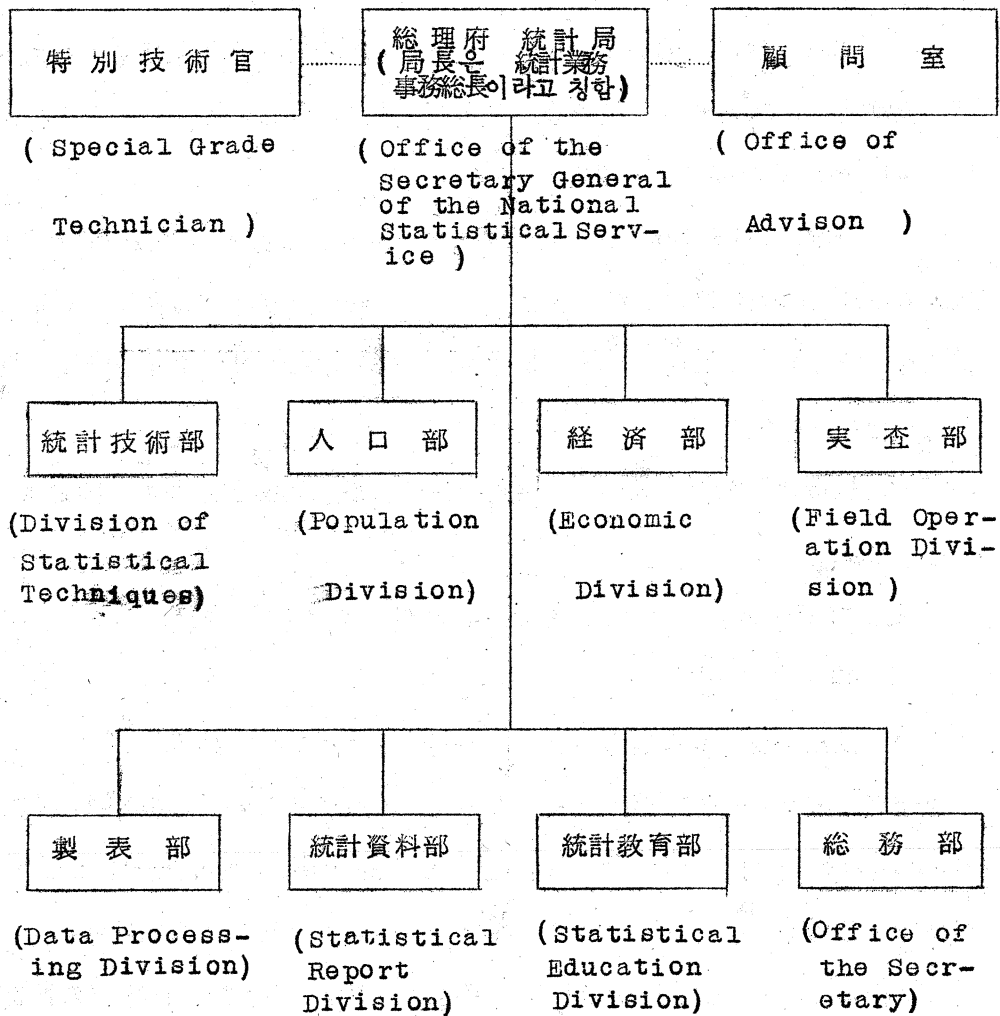
政府 및 民間統計活動에 關한 改善方案의 研究

總理府 統計局에는 統計法에 根據한 統計委員會 (Statistical Commission) 가 設置되고 있지만 이 委員會는 統計業務의 監督을 行함을 目的으로 하고 必要에 따라 勸告를 發하는 機關이다.

統計委員會의 構成은 副首相을 長으로 하며 12個 省의 次官을 委員으로 하고 있다.

統計委員會에서는 各省과 總理府 統計局間의 重要 問題에 關한 連絡 調整이 行하여지고 中央政府와 地方間의 相互協助에 關하여도 調整하고 있다.

總理府 統計局의 機構



4. 統計局 各部의 業務

1) 人口部 및 經濟部

이 兩部는 統計調査의 企劃, 設計 및 報告書의 編輯을 担当함과 同時에 各省 統計部局의 調査計劃에 관한 調整을 하고 있다.

人口部는 人口住宅센서스(10年마다 實施), 勞動力調査를 1963年 地方自治團體가 있는 地域에 처음으로 實施했고, 이후 "방콕"의 "톤푸리"市 地域에 定期的으로 調査를 行하고 있다.

또 其他 地域에 관하여도 調査地域을 選定하여 繼續적으로 實施하고 있고 社会經濟調査(Socio Economic Survey of Hill Tribes 1965), 學校 및 敎員센서스(School and Teacher Census) 등을 實施하여 人口 및 社会統計를 担当하고 있다.

經濟部는 1964年 鉦工業센서스(Industrial Census) 1966年의 Business Census, 作物予想收穫量調査(Crop Estimation Survey)……標本調査 方法에 의한 坪刈調査로 1965年 가을부터 本格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1964年 및 1966年 内水面 輸送調査(Survey of Inland Waterway Transportation 1964, 1966), 1965年 연안輸送調査(Survey of Coastal Transportation 1965), 고무 및 코코넛트재배조사(Rubber and Coconut Plantation Survey 1966년부터 試驗調査實施), 1966年 出入國旅行者調査(Tourist Survey at Boarder Crossing Outside Bangkok 1966), 家計支出調査 등의 經濟統計를 担当하고 있다.

2) 統計技術部

統計技術部는 標本設計, 実査方法 등 統計調査技術에 관한 指導 助言을 兼함과 동시에 事後調査의 실시등을 통하여 調査結果의 精度, 管理, 評價, 分析을 맡고 있다.

이른바 統計局에 있어서의 綜合調整 및 基準統一의 中心機關으로 活動하고 있는 部分이다.

이 部에서 實施하고 있는 最近 調査로서는 勞動力調査事後調査 (Follow up Interview of Labour Force Survey), 商業센서스 事後調査 (Business Census Post Enumeration Survey), 作物收穫推計調査事後調査 (Post Enumeration Survey of Crop Estimation Survey) 등이다.

3) 実査部

이 部는 統計局이 實施하는 各種調査의 実査를 맡고 있다.

前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地方機關 (12 地方事務所, 69 " 찬아트 " 実査事務所) 를 가지고 있고 中央과 합하여 總員 392 名 (定規調査員 包含) 을 가지고 있다.

4) 製表部

製表部는 統計局에서 실시한 調査뿐만 아니라 他省庁 所管 調査의 集計를 担当한다.

最近 集計過程이 相當히 機械化되어 IBM 1401, IBM 360-40 을 주체로 하는 電子計算組織을 가지고 있다.

5) 統計資料部

泰國 統計年鑑, 泰國 統計季報의 두가지의 綜合統計書의 編輯 刊行이 主要業務가 되고 있다.

6) 統計教育部

政府 職員の 統計研修에 관하여 企劃하고 實施하는 業務를 担当하고 있다.

統計職員의 養成所로서 現在 國立開發研究所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가 있지만 研修의 企劃, 교무 등에 관하여는 統計教育部가 担当하고 있다.

統計研修過程은 受講職員의 資質과 經驗의 差에 따라 区分된다.

6個月 過程부터 3年 過程까지 各種의 水準이 準備되고 있다.

7) 總務部

統計局의 庶務業務를 担当한다.

5. 기타의 統計部局

總理府 統計局 以外的 各省庁에서는 거의 自体統計調查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地方行政機關으로부터의 報告를 綜合 集計하는 業務統計作成에 그치고 있다.

勞動統計, 鉦工業統計, 建設統計, 商業統計 등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主要한 各省庁의 統計部局에 관한 統計를 分野別로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1) 人口動態統計

保健省次官室 人口動態統計部 (Division of Vital Statistics, Office of Under Secretary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가 出生, 死亡, 死産에 관한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申告制度는 1910 년경부터 始作되고 있으며 内務省管轄下에 있는 Local Register 내지 Commune Register 에 申告된 報告가 " 찬왓트 " 의 行政機構를 通하여 人口動態統計부에 送付된다.

여기서 人口動態統計年報가 作成된다. 또 内務省地方行政局 (Department of Local Administration) 도 같은 經路를 通하여 혼인, 이혼 統計를 편제하고 있다. 그리고 人口의 社会移動統計에 관하여는 局内에서, 人口移動은 總理府 統計局이 調査하고 있지만 出入國關係에 관하여서는 内務省 警察局移民部 (Immigration Division, Police Department, Ministry of Interior) 가 맡고 있으며, 外国人登錄 및 帰化에 관하여는 外国人登錄 및 稅務部 (Alien Registration and Taxation Division) 가 각각 作成하고 있다.

2) 農林水産統計

作物收穫量에 관하여는 總理府 統計局的 坪刈調査와 별도로 農務省 米穀局 (Department of Rice) 및 農務局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 각기 一線行政機關으로부터의 報告를 基礎로 하여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米穀局에서는 " 泰国 米穀生産 統計年報 (Annual Report of Rice Production)" 를 發刊하고 있다.

그 외에 가축 통계에 관하여는 家畜局에서, 林業統計에 관하여는 林業局에서, 漁業統計에 관하여는 漁業局에서 각기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農林水産統計調査는 여러가지가 실시되고 있으며 타분야의 統計에 비하여 비교적 整備되어 있다.

刊行物로서는 農務省의 農務局 農業 經濟部 農業統計課가 "泰國 農業統計年報"를 刊行하고 있다. 또한 漁業局 統計課가 "泰國 漁業年報"를 發刊하고 있다.

3) 物價統計

經濟省 商業情報局 (Department of Commercial Intelligence, Ministry of Economics Affairs)의 技術 및 商業統計課 (Technical and Commercial Statistics Section)에 의거 都売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가 매월 公表되고 있다.

4) 金融財政統計

金融統計에 관하여는 中央銀行인 "타이銀行"이 거의 独占的으로 作成하고 있지만 大藏省 國庫局 (Treasury Department)도 部分的인 資料를 取合하고 있다.

刊行物로서는 "金融統計"가 있다. 이외에 "타이銀行月報" 또는 年報 및 "타이銀行年報"도 發刊되고 있다.

일방 財政統計는 주로 大藏省 會計檢査局 (Department of Comptroller General)에 의거 작성된다.

기타 財政投融資 統計는 "타이銀行"이, 予算資料는 總理府 予算

局 (Bureau of Budget) 이 地方財政에 관하여는 內務省 地方行政局 (Department of Local Administration) 에서 각기 作成하고 있다.

5) 國民所得統計

經濟開發庁 國民所得局 (Office of National Income ,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oard) 이 推計를 担当하고 있다.

6) 其他의 統計

運輸 通信部門에서는 " 타이 " 國有鐵道 (State Railways of Thailand), 內務省警察局, 開發省國道局, 通信省港灣局, 通信省郵便電信局 등이 각각 所管 行政에 관한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教育統計의 分野에서는 文教省 教育技術局과 他教育計劃局이 作成하고 있다.

以上の 統計外에도 기상통계는 總理府 氣象局, 灌溉統計는 開發省의 中央灌溉局, 醫院·醫師·간호부 統計는 保健省의 담당部局, 犯罪統計는 內務省 刑務局 등이 作成하고 있고 各省庁에서는 각각의 業務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6. 統計調査員

泰國의 統計體制는 地方行政機關으로부터의 定期的報告의 集計에 基礎를 두는 業務統計가 中心이 되어 있고 統計調査에 의하는 것은 比較的 적다.

따라서 調査員의 活動은 比較的 消極的인 것이다. 그러나 統計 調査員에 의한 면접타계식 방식을 우선적으로 採用하고 있고 우송 방식에 의한 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泰國이 동남아세아지역에서는 비교적 政情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정도와 所得水準등으로 보아 郵便調査 자기방식을 採用하는 것은 回收率이 낮고 기입내용에 信憑性이 적어 調査의 成功率이 낮기 때문이다.

現在 統計調査員을 조직적으로 가장 잘 運營하고 있는 곳이 總理府 統計局의 實査部이다.

地方 實査事務所 및 "찬왓트" 實査事務所에서 常勤 직원으로서 配置되고 있는 統計調査員 數는 약 303 名이며 總理府 統計局에서 수행하는 각종 實査에 從事하고 있다.

이외의 常勤 調査員 組織으로서는 陸運局(Department of Land Transport)에 68 名, 商業情報局(Department of Commercial Inteligence)에 物價調査를 위한 價格調査員이 70 名이 있다.

이들 常勤調査員의 最低學歷은 高卒이상이어야 하며 報酬는 월액 450-500 "바-트"이다.

統計局의 조사원으로 임명된 자는 6개월간의 統計研修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人口센서스, 鎡工業센서스와 같은 大規模 조사에는 臨時 統計調査員을 대량 採用한다.

1960 년도 인구센서스를 예로 하여 소개하면 国民学校 敎員이 약 1만 5천명을 동원(센서스를 實施한 期間이 1960年 4~5월로 마침 여름방학기간이었다) 하였고 한사람의 調査員이 原則으로

한 조사구를 담당하였다.

수당은 일일 15 # 바-트 # 가 지급되었으며 # 방콕과 # 톤푸리 # 지구는 일일 25 # 바-트 # 가支給되었다. 그리고 實際로 일하는 날의 數에 따라 25 일분을 最高限度로 하여支給되었다.

7. 統計職員 및 電子計算組織

1) 統計職員數

統計職員의 數는 中央 地方을 통하여 1,772 명이며 그 内訳은 다음과 같다.

① 總理府 統計局	686 인
特別等級	5 #
1 等級	17 #
2 #	41 #
3 #	114 #
4 #	415 #
고용원	94 #
② 기타의 부국	1,086
(中央 地方)	
合計	1,772

2) 統計予算

1967年度 予算에는 인건비가 1,960 만 # 바-트 # 事業費가 5,115 만 # 바-트 # 로 되어있다. 1960년 인구센서스 經費는 약 3,000 만 # 바-트 # 였다.

3) 電子計算機

總理府 統計局의 製表部가 統計의 集計組織으로는 最大의 것이다.

1966年 2月 現在 集計中인 事業이 大小 합하여 約 30 種에 이르렀다.

製表部의 보유 電子計算機 內訳은 다음과 같다.

Card 穿孔機.....	43 대
Card 檢孔機.....	24 대
Card 分類機.....	9 대
Printing Card 穿孔기	3
Summary 穿孔기	4
會計機	3
計算機	2
번역기.....	3
製表機	7
照合機	1
IBM 1401.....	1
IBM 360-40	1

二. 統計法規

泰國의 統計法은 1936 ~ 1937 년 最初로 制定되었다.

이 統計法에 의거 內閣官庁 中央統計業務局 (Central Service of Statistics of the Depar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에 統計作成에 관한 權限이 부여되었다.

1950 년 國家經濟審議會法 (National Economic Council Act) 에 의거 이 권한은 國家經濟審議會에 이관되었으나 1953年 2月 5日 새로운 統計法의 공포에 의거 1936년의 통계법은 廢止되고 改正 統計法의 規定에 따라 中央統計局이 정부 中央行政機關으로서 탄생하였다.

이 統計法의 特色은 中央統計局이 센서스를 위시하여 각종의 統計 調査를 集中的으로 실시하는 권한과 各省이 作成하는 통계의 조정 권한 및 各성소속직원을 통계조사에 동원시키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統計의 中央 집권적규정이 內包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有能한 人材의 부족으로 實効가 적은 감이 있었다.

이때문에 1965년 다시 統計法이 改正되어 現在의 總理府 統計局으로 再編成되었다.

통계법의 당초취지와 통계조직, 통계업무의 執行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있어서는 큰 變動이 없었다.

以下 現行 1965년 통계법 (Statistical Act of 1965) 에 관하여 統計調査의 執行에 관한 규정 및 罰則규정에 관하여 소개한다.

1. 1965년도 통계법(抄)

1) 통계조사의 집행에 관한 규정

제15 조 통계기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각호를 정한 칙령을 공포하여야 한다.

1. 칙령의 유효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지역
4. 신고의무자
5. 조사실시기관의 명칭

제16 조 : 칙령을 제정한뒤 통계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공포한다.

1. 조사표의 양식 및 조사표 취급 요령
2. 통계조사원이 신고자에 대하여 조사표를 배부하는 시기
3. 조사표에 관한 신고가 통계기관에 전달될 시기

제17 조 : ① 통계조사원이 조사에 대한 신고자 또는 그 조사구역내에 거주 또는 근로하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접 또는 조사표를 배부할 수 없을때는 통계조사원은 조사표를 눈에 띄우기 쉬운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뒤 15일을 경과한 뒤에 신고자는 조사표를 받아 신고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 조 : 통계조사원은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법률에 의거 신

분이 보장된다.

신고의무자는 통계조사원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 조 : 통계조사원은 피조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 조 : 재판에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 또는 통계자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1 조 : 통계기관은 실시한 모든 조사표의 사본을 통계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벌칙에 관한 규정

제22 조 : 제16 조제1 호의 규정에 의거 통계국장이 공시한 조사표에 관한 취급을 위반한자, 제16 조제2 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기까지 통계조사원 또는 통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자, 또는 제18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 조 : 조사표 또는 통계조사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제24 조 : 제21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의 양자를 병과한다.

2. 1952년도 통계법(전문)

제1조: 이법률은 「1952년도 통계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이법률은 관보고시의 익일 이후 발효한다.

제3조: 1931년 통계법은 이법률에 의거 폐기된다.

제4조: 이법률에 있어 「주거」란 담장을 가지고 있건 없건 그 부지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건물 및 선박 또는 부가로서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거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말함.

「사무소」란 담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간에 그 부지를 포함한 건물 및 선박 또는 부가로서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주무관」이란 중앙통계국의 관리 또는 국가 경제심의회에 의거 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고 임명된 관리를 말하며 국가경제심의회 증명서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함.

「기록」이란 서면 기타 각종의 업무에 쓰이는 보고 또는 사실을 말함.

제5조: 내각 총리대신은 이 법률집행의 책임과 관리를 행하며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칙은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

제1장 일반조항

제6조: 중앙통계국은 이하의 업무를 행한다(이하의 업무를 생략함)

전술한 중앙통계국의 기능참조)

제7 조 : 정부통계 업무국장은 중앙통계국의 장이며 모든 통계업무의 지시와 관리의 권한을 가진다.

제8 조 : ①국가 경제심의회에 의거 그 구성원중에서 임명된 의장, 부의장과 각성 대표자 및 정부통계 업무국장으로 구성되는 통계위원회를 통계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정부통계 업무국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의견을 진술하고 업무에 관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몇번이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 조 :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전국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통계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제2장 통계업무의 집행

제10 조 : ①각 정부행정기관 및 국영사업체에 있어 통계 또는 통계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에 관한 책임자는 통계계획에 관하여 처음부터 정부통계 업무국장 또는 그 지정하는 자의 심사를 받아 사용할 양식 및 방법을 완성하고 그 승인을 얻은 뒤 계획에 착수하여야 한다.

종사자 간에 의사의 일치를 못볼 경우 정부 통계업무국장은 통계위원회에 제정을 구하여야 한다.

②통계계획의 준비시 정부통계 업무국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계획의 설계에 관하여 상담하고 계획안, 조사표, 양식 및 견적비용을 정부통계업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ㄷ: 각정부 행정기관 및 국영사업체에 있어 통계 또는 통계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의 책임자는 그 기관의 내부 행정자료로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결과의 사본을 정부 통계업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 조: 정부 통계업무국장은 각국통계조사, 센서스 실시 및 편집에 관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통계사무의 집행을 위임하여 수집하며 편집 심사된 보고양식조사표를 중앙통계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행정관과 절충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 통계업무국장은 또 통계업무의 집행과 별도로 실시하기 위한 정보 내지 원조를 상기 행정관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3 조: ①칙령 또는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는 통계계획의 실시에 있어 정부 통계업무국장은 이들 계획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진술 또는 숫자들을 수집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미등록 조합 또는 기업체로써 공동 경영하고 있을때도 정부통계업무국장은 조합 또는 기업체로부터 그 활동상황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수집에 응할 의무는 조합에 이사가 있으면 이사가, 이사가 없으면 조합원중에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 조 : 전 조에 규정한 수집처가 부재시 또는 수집에 응할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있는 대표자가 수집에 응할 의무를 진다.

제15 조 : 정부통계 업무국장은 이 법률에 근거한 양식을 준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직업·상업·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보고를 제출하는 사람 및 자료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6 조 : 정부 통계업무국장이 구하는 진술 또는 수량 자료의 제출은 관보를 통하여 일반 공사 또는 특정 개인을 상대로 서면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수집은 적어도 다음 사항을 특기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보의 양식

정보가 수시로 제출되어야 하든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든가 확정된 기일 또는 기간을 두어야 하며 적어도 7일 이상의 기간이 수집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2. 정보가 제출될 장소 및 방법

제17 조 : ① 조사표 또는 양식은 피조사자에 배부하고 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 주거 내지 사무소에 거주 또는 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정 연령자에게 맡길 수 있다. 또 배부는 등기우편에 의할 수도 있다.

② 전 조에 규정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표 또는

양식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배부에 종사하는 담당관은 당해 행정관리 또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다시 조사표의 수령을 거부할 때 조사표 양식을 면전에 두고 와야 한다.

③전 2 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사표 또는 양식의 배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무관 또는 담당관은 별도의 수단 즉 지정한 기간내에 지정 담당관에게 출두하게 하든가 그 주소를 알려 필요한 진술 내지 수량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소환하는 주의서를 그 주거 또는 사무소가 보기 쉬운 장소에 첨부하든가 적어도 2 개의 일간지에 신는 방법을 쓸 수 있다.

④전 3 항의 방법과 행동을 취한 뒤 소정 기일이 경과하면 당해 보고자는 조사표 또는 양식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 진술 또는 수량자료가 부정확, 착오 또는 불안전하다고 의분이 가는 경우 주무관 또는 담당관은 진술 또는 수량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거내에 들어가든지 또는 통상의 영업시간중 사무소에 들어갈 권한을 가진다. 주무관 또는 담당관에게 당사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정부 통계업무국장이 수집하는 개개의 양식으로 제출된

모든 신고는 비밀히 취급되어야 한다.

개개의 신고에 포함되고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명등록조합 내지 기업체에 관한 진술자료는 누구에게도 해당 보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이 법률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심문 내지 재판때문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중앙통계국의 행정적 관할 범위의외에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신고를 제출한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기 전에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도 공표하는 것은 금한다.

제3 장 별 칙

제20 조 : 배부 진술 및 수량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주무관 및 담당관의 질문에 회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제 13 조 또는 제14 조에 위반한 자는 200 "바-트"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 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0 "바-트"이하의 벌금 3개월이하의 금고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 조 또는 제14 조에 관한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자
2. 제18 조에 의한 주무관 또는 담당관의 주거 또는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 또는 그 검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자

제22 조 : 제19 조에 위반한 자는 5,000 "바-트"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그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Ⅳ . 印 度 의 統 計 制 度

IV . 印度의 統計制度

概 要

印度는 여러 州의 聯合組織으로 構成되어 있음으로 聯邦 또는 中央政府와 州政府간의 統治에 관한 責任이 분담되어 있다. 인도 憲法上 統計業務에 관하여 聯邦表, 州表, 共通表의 3種의 分類에 의거 그 책임이 分割되어 있고 共通表는 聯邦政府 및 州政府가 함께 統轄할수 있는 分野로 되어있다. 州段階와 똑같이 中央段階에서도 主題別 및 主題 Group 別로 責任이 中央各省에게 分割되어 있다. 特別한 分野에 관해서는 統計蒐集의 權限과 책임은 憲法에 따라 當該主題에 대한 責任의 所在에 따라 定하여 진다. 그러나 中央政府는 州에서 統計蒐集의 1次的 權限과 책임을 가진 分野에 대하여도 全國的立場에서 統計를 表示할 때는 반드시 中央統計局의 調整을 받도록 되어있다.

中央統計機關으로서 統計庁 (Department of Statistics) 이 內閣官房에 설치되어 있으며 中央統計局은 技術部局으로서 同庁傘下에 있다. 統計庁은 州 및 中央水準의 모든 統計에 대한 중요한 調整機能을 하고 있으며 州統計局은 州段階의 모든 統計調整 責任을 지고 있고 同時에 印度 전국의 統計調整을 받기 위해 中央統計局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과 連絡을 取하고있다.

中央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省은 그 必要에 따라 또 關聯分野의 統計에 발달정도에 따라 獨立된 局·部 및 課를 가지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組織의 發達歷史

印度의 統計制度發達は 印度의 獨立以後에 이루어졌다. 印度의 獨立以前에는 統計制度의 발달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英國 占領下에서는 적절한 統計機構라고는 볼수 없었다. 占領下의 최초의 統計機構로는 1862年の 統計資料의 蒐集, 作成等을 위한 標準統計 形態를 마련할 目的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이機構가 1868年 英領 인도에 관한 統計要覽을 發刊하였다.

英領印度에 관한 각종 經濟統計를 収録할 최초의 地名辭典 編輯事業이 1866년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1881年 全國에 걸쳐 統一된 樣式으로 實施되었다. 인도 饑饉防止委員會의 제의로 1881年 農林局이 各州에 설치되었고 農業統計의 開發을 위하여 農業統計局이 設立되었으며 1886年 『英領 印度의 農業統計』가 發刊되었다. 이때 各 地方 및 州에서 大量으로 보고되는 各種 農業統計資料를 취합, 檢討, 교정, 정리하기 위하여 1895년에 農林省에 農業統計局이 設置되었다.

여기서 農業統計와 貿易統計에 관한 調整業務를 맡았으며 價格, 賃金 및 産業에 關한 統計도 作成하였다.

이 機構는 統計局長이라는 制度에 의거 運營되었으며 1905년에 通商情報統計局長으로 職名이 變更되었다. 따라서 貿易協會와의 統計 其他 情報의 交換業務等이 吸收되었다.

이 機構는 1914년에 다시 統計業務만이 分離되어 統計局長 職責下에 運營되었다.

1925년에 「經濟諮問委員會」가 設立되어 經濟調査를 遂行하고 이를 보조하는데 있어 統計資料의 獲得可能性, 有用性等의 妥當性에 관한 調査諮問을 맡게 되었다.

이 委員會는 結論짓기를 인도에서 統計를 만족할만한 水準까지 이끌어올려 作成하려면 統計에 關聯된 業務를 다루는 統計庁이 設立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이 統計庁에서 中央 및 地方政府의 모든 統計業務를 監督하여야 하고 統計業務에 관한 諮問을 行하여야 한다고 建議하였다. 그리고 同委員會는 統計資料가 未備하고 또는 있다고 하여도 그 內容이 매우 貧弱한 行政部門을 指摘하였다.

同委員會는 産業別로 每 5年마다의 賃金調査의 實施와 아울러 住宅建設産業에 消費된 原資材와 建設実績에 관한 統計를 實施할 것을 建議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政府는 이 委員會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設立된 重葷한 委員會는 1934년에 設立된 Bowley Rebertson 委員會인데 이 委員會는 인도에서 「産業센서스」의 實施 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다.

同委員會는 賃金, 利潤, 價格, 國民生産, 所得의 推計, 産業센서스等에 관한 詳細한 건의서를 作成하였다.

그리고 經濟顧問團 所屬下에 「經濟情報機構」를 設置할 것과 이 機構內에 專門職, 定規職, 經濟 및 統計職員을 둘것을 建議하였다.

이 委員會의 建議에 의거 인도政府는 中央統計局의 設置草案을 作成하였다. 그러나 實質的이고 財政的인 여러가지 問題로 實現을 보지 못했다.

1939年 戦争의 발발은 인도政府에 대하여 軍事 및 一般行政部門의 資料의 必要를 增大시켰고 統計制度의 발달을 促進시켰다.

따라서 인도政府는 '經濟諮問官' 制度外에 '部省委員會'를 두어 中央部에서 獲得할수 있는 各種 統計資料를 檢討하고 現存 統計制度의 결함을 메꿀수 있는 方案에 관한 建議業務를 担当하였다.

이 委員會는 中央統計機構의 設立을 建議하였으며 統計機關의 組織, 州政府單位의 統計局 設置, 全國 單位統計作成等에 關하여도 建議하였다.

이와같이 英國의 占領下에서는 統計發展은 行政部에서 必要로 하는 分野에 制限되어 이루어졌다. 비록 여러가지 委員會가 設立되어 統計發展에 관한 훌륭한 建議을 하였으나 적절한 統計機構의 設立은 보지 못하였다.

1949年 內閣에 대한 名譽 統計諮問官으로 P. C. Mahalanobis 教授가 任命됨을 계기로 하여 적절한 統計機構의 設置 問題가 時急한 課題라고 認定되어 同機構의 設立을 위한 基礎적인 實務班이

1949年 內閣內에 設置되어 이것이 1951年 中央統計局으로 發展되었고 統計調整, 統計基準 및 統計諮問에 관한 役割을 担当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에는 內閣 官房에 統計庁이 設置되었고 中央統計局은 統計庁의 核心部署로 吸收되었으며 全國 標本調査委員會도 이곳에 設置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66年度에 'Computer Center'가 統計庁에 設置되어 中央部의 統計資料處理業務를 担当하게 되었다.

州政府의 統計組織은 보다 最近에 發達되었다.

과거의 英國統治下에 있을때는 農林, 教育等に 관한 統計를 中央部의 要請에 따라 蒐集 作成하였고 이 資料는 「標準帝國統計」로서 發表되었다.

1947年까지 州政府單位에 統計調整 活動에 관한 業務를 担当하는 州統計局이 設置된 곳은 「판잡」, 「서벵갈」, 「뭄베이」등 數個 州에 불과하였다. 1947年度 以後에 順次的으로 各州에 設置되기에 이르렀다.

印度의 獨立을 계기로 政府의 보다 廣範圍한 經濟社會的 技能遂行 필요상 統計制度의 發達は 더욱 促進하였다.

國家 5個年計劃의 形成과 때를 같이하여 計劃의 作成, 計劃의 評價및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사연구상 中央 및 州政府의 統計制度를 再整備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統計制度의 整備를 促進한 또 하나의 계기는 UN 및 國際專門機構로부터의 各種 統計資料 要求가 漸增하여졌다는 사실과 統計의 國際 比較性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統計基準 設定의 基礎가 이러한 國際機構에 의거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中央部의 및 各州의 統計担当部署는 人員과 機構面에서 차차 擴大되어 갔다. 中央 및 州政府에서 일하고 있는 統計職員은 1952年부터 1970년까지에 約 5倍가 增加하였으며 統計機關의 數도 約 3倍로 增大되었다.

統計職員의 增加現象을 다음表에서도 明白히 알수 있다.

年 数	統計機關數	統計職員數
1952 ~ 53	174	4,769
1954 ~ 55	181	7,421
1956 ~ 57	191	10,221
1957 ~ 58	229	11,971
1962 ~ 63	332	22,887
1965 ~ 66	431	26,617
1969 ~ 70	559	30,497

2. 統計機構

1) 統計基準設定 調整 및 諮問機構

相異한 統計機關으로부터 統計調査의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調査를 調整하고 統計基準을 設定하고 諸統計機構가 그 機能을 充分히 적절하게 발휘할수 있도록 促進하는 業務는 中央統計局에서 行하고 있다.

州單位에서의 이와 유사한 業務는 各州의 統計局에서 行하고 있다.

以外에 中央統計局은 各種 統計定義의 確定, 國家 및 國際統計의 比較性을 높이는 業務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은 中央統計局의 機能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

지 委員會가 設立되어 있다.

예를 들면 工業統計의 改善을 위한 常任委員會, 生計費指數와 價格統計에 關한 技術諮問委員會, 國民所得 推計資料蒐集에 關한 諮問委員會, 國民計定の 分析 및 編輯을 위한 諮問委員會, 州所得推計에 關한 研究團 및 統計職員의 訓練에 關한 常任委員會 等이다.

그리고 中央 및 州統計機關의 代表가 定期的인 모임을 가져 相異한 統計機關間의 協助를 要하는 事項과 行政的 業務를 協議하고 經驗과 見解를 交換하고 있다.

計劃蒐集에 關한 各種 社會, 經濟現象에 關한 統計資料의 重要性이 漸增되고 있음으로 統計發展에 關한 項目이 國家 5個年 計劃에 重要的 內容으로 包含되어 있다.

2) 中央政府의 統計機構

中央部処에는 現在 120 余個의 統計機構가 있으며 約 万余名의 統計職員이 勤務하고 있다. 中央部処의 統計機構中 一部는 순수한 行政統計의 蒐集 作成을 위하여 設置된 것이 많으며 行政의 副産物로서의 統計資料를 處理하고 있는 곳이 大部分이다.

이러한 種類의 機構는 所得稅省의 各局, 中央歲入庁, 鐵道郵便電信省 等이다.

그리고 以外에 中央官署 및 一般國民을 위하여 必要한 統計資料를 作成하는 機構가 있는데 예를 들면 纖維監督官事務所, 中央間接稅監督官事務所, 鐵鋼監督官, 輸出入統制聯合會 등이 있다.

이러한 一般的인 機構外에 專門적으로 統計業務를 다루는 機構가

中央政府内に 設置되어 있는데 이中 重要な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中央統計局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中央統計局은 1951年 5월에 內閣官房調査統計庁에 設置되었다. 이 機構의 設立 目的은 中央部處 및 各州間에 統計基準 設定, 統計調整에 관한 業務를 取扱하며 統計業務에 관한 모든 諮問을 실시하고 U N과 다른 國際機構에 統計資料를 提供하고 統計資料의 刊行, 經濟 및 社會統計의 圖表에 의한 公表 등의 業務를 遂行한다.

1954年에 財務省으로부터 國民所得業務가 移管됨에 따라 中央統計局의 機能은 擴大되었으며 그해에 國家企劃委員會의 企劃業務와 關聯된 統計資料의 蒐集, 整理를 위한 獨立된 室이 設置되었고 또 1957年度에 商工省으로부터 工業統計部를 移管받았다. 이러한 一般統計業務外에도 中央統計局은 統計職員에 대한 教育訓練을 担当하고 있다.

② 內務省 人口센서스局

이 局은 1881年度부터 每 10年마다 人口센서스를 担当하고 있는 機關이다. 內務省은 또한 住民의 死亡, 出生에 관한 申告處理業務를 맡고 있다.

인구센서스監督官은 內務省과 一般 人口統計, 人口動態統計 등을 綜合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여러 가지 計劃을 立案 實施하고 있다.

③ 食糧農業省의 經濟統計局

이 局은 農林省內에 1947年 全印度에 걸친 農業統計의

作成 編輯을 위하여 처음으로 設置되었다.

여기에서 蒐集되는 資料는 農業, 家畜, 水産, 山林等에 관한 統計이며 大部分이 州統計局에서 一次的으로 行政系統을 通하여 蒐集되고, 一部는 標本調査方法에 의하여 蒐集整理되고 있다.

④ 商務省 商業情報統計局

1895년에 設置된 이 機構는 第2次 世界大戰前까지는 一般 重要統計를 蒐集 發刊하는 中央統計局으로서의 機能을 하였으나 戰時中에 中央 各部에 各部의 統計機構가 設置됨에 따라 여기서 取扱하던 業務의 大部分은 該當部署로 移管되었으며 現在는 商業情報 및 外國貿易統計만을 다루고 있다.

⑤ 勞動雇傭更生省의 勞動局

이 機構는 勞動省內에 1946년에 設置된 機構로서 消費者 物價指數의 編制 및 勞動統計의 資料蒐集, 發刊, 配付業務를 担当하고 있다.

⑥ 國防省 軍統計局

國防省內에 設置된 機構로서 軍의 維持와 軍內部에 必要한 各種 統計의 作成, 編輯資料 提供을 맡고 있다. 軍事行政에 必要한 여러 가지 資料調査 및 蒐集業務를 隨時 또는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⑦ 國家標本調査所

이 機構는 1950년에 財務省傘下에 設置된 機關으로서 國民所得委員會, 國家計劃委員會, 其他 中央部에서 所要하는 各種 統

計資料를 標本調査方法에 의거 신속히 調査提供함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1957 年에 內閣官房의 統計庁傘下로 移管되었다.

現地 資料調査 및 蒐集은 國家 標本調査所에서 實施되고 調査에 관한 技術的 指導와 資料處理 및 分析은 「칼카타」에 있는 인도 統計研究所에서 맡고 있다.

最近 政府의 決定에 의거 國家 標本調査所의 全業務는 전적으로 統計庁의 指揮下에 놓이게 되었으며 國家 標本調査 機構로써 그機能이 더욱 擴大되고 있다.

3) 地方政府의 統計機構

現在 인도에는 416 개의 地方統計機關 또는 單位事務所가 州單位에 設置되어 있고 州統計局은 현재 各州에 모두 設置되어 있다.

國家—5 個年—計劃에 의한 中央의 財政的 支援下에 各州의 統計局 業務는 最近 數年間 相當히 增加되었다.

州統計局은 州政府傘下 各局에서 蒐集되는 行政統計 資料의 調整하는 機能과 모든 州政府의 重要統計를 取合하여 「州統計摘要」를 作成하고 地方政府와 中央政府의 連絡機能도 아울러 遂行한다. 그리고 各州의 所得推計와 統計要員에 대한 訓練 計劃等を 蒐集 實施한다.

그러나 各州의 統計局의 機能은 州에 따라 相當한 차이가 있다.

어떤 州에서는 州統計局에 州의 統計業務의 大部分이 集中되어 있는 集中形態를 取하고 있는가 하면 一部 統計局에서는 農林, 勞

動 및 人口動態 統計等은 따로 設置된 統計機關에서 作成하고 있다.

最近 各州의 統計局은 國家標本調査所와 多目的 統計調査 業務遂行을 實施하고 있다.

國家 5 個年 計劃에 의한 中央統計局으로부터의 州統計局 機能의 擴大를 위한 支援은 州統計發展에 相當히 重要한 계기가 되었다.

計劃作成의 必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州統計局을 強化시키고 地方 統計事務所를 設置하고 또 村落開發과 國家發展 業務를 위한 行政 資料의 蒐集整備를 效率적으로 遂行할 目的으로 行政情報事務所 (Administrative Intelligence Units) 를 設立 運營하고 있다. 印度의 統計機構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4) 其他 統計機構

其他 統計機構란 政府機關以外的 統計機構로서 特定法規, 定款等に 의거 設立된 團體를 말한다. 即 印度統計研究所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農業統計研究所, 印度聯邦準備銀行統計部, 應用經濟統計研究所 等이다.

이들 諸機構의 機能을 약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印度統計研究所

印度統計研究所는 1932년에 設立되었으며 統計調查研究分析, 統計人的 養成訓練, 大規模 統計調查計劃의 作成等の 중추적 기구로 인도 統計發展에 開拓者的인 役割을 수행하여 왔다.

1938年 以後부터는 統計專門家에 대한 實力을 檢証하고 資格證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同研究所는 國際統計協會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및 UNESCO와 提携하여 國際統計研究所 (International Statistical Education Center)를 '칼카타'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1952年度 인도 政府의 결정에 의거 同研究所는 統計調查 및 專門的 統計職員 및 統計人的 訓練養成機構로서 役割을 맡고 있다.

1959년에는 인도 議會에서 인도 統計研究所에 관한 法을 따로이 제정하여 一種의 國家的 重要 統計機關으로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同研究所에서 統計에 관한 大学院 過程을 두고 석사학위·박사학위등을 授與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同研究所는 인도의 다른 地域에 研究支所를 두고 있으며

" Sankhya " 라는 권위 있는 統計專門紙를 發刊하고 있다.

② 農業統計研究所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Statistics)

農業統計研究所는 以前에는 인도 農業調査委員會傘下の 事務所였으나 1953년 獨立된 以後로 農業 및 畜産分野의 統計調査에 標本調査方法, 實驗方法 등의 技術을 처음으로 적용시켜 農業統計의 發展에 큰 貢獻을 하여 왔다.

同研究所는 農業統計分野 研究調査의 중심적인 機構로 發展되었으며 農業統計 專門修鍊者에 대한 大学院 過程을 두어 卒業者에게 學位를 授与하고 있다.

③ 印度聯邦準備銀行의 統計調査部

이 調査部の 重要 業務는 인도 經濟의 金融財政部門에 관한 모든 資料를 蒐集整理 轉送하는 것이다.

현재 同調査部の 業務는 金融統計의 作成뿐만 아니라 応用經濟問題의 分析方法으로 計量, 經濟學의 方法을 使用하는等 새로운 方法을 시도하고 있다.

3. 統計資料處理施設

인도에서 최초로 電子計算機에 의한 資料處理 施設을 導入한 곳은 인도統計研究所가 1956年度에 設置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1970年 現在까지 電子資料處理 施設을 設置한 곳은 125個所에 이르고 있다.

인도 政府에서 最初로 " 컴퓨터 " 를 設置한것은 1966年度에 中央

機關의 統計資料 處理를 위하여 Honey well 「컴퓨터」를 導入한 것이 始初였다.

1966년에 최초로 統計庁에 「컴퓨터센터」가 設置되었는데 統計 庁業務 및 其他 行政機關의 위탁 統計資料를 處理하고 있다. 「컴퓨터센터」는 奉仕機構로서 많은 中央官署의 統計業務와 公共機關이 必要로 하는 資料處理業務를 行하고 있다.

設置 当初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디자인」과 分析을 위한 직원 訓練이 우선적으로 實施되어야 할것이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同센터는 「프로그래머」 訓練過程을 設置하고 있다. 이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센터외에도 「칼카타」에 있는 인도 統計研究所와 「칸푸」에 있는 인도 科學技術研究所 「뭄베이」에 있는 「타타연구소」 등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에 관한 연수과정들을 두고 있다.

二. 統 計 法 規

統計를 規則的으로 確實한 근거위에서 수집작성하기 위한 統計法 規 制定에 관한 문제는 일찍부터 각종 위원회에서 건의되어 왔다.

최초의 統計法規는 1942年度에 公布된 産業統計法 (Industrial Statistic Act) 인데 이는 産業統計調査를 확실한 근거에서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法은 그뒤 統計資料蒐集法 (Collection of Statistics Act) 으로 개칭되고 統計資料 수집범위도 경제 및 社會活動의 전문야로 擴大되었다.

그러나 이 法은 産業分野의 자료수집에만 活用되어 왔다.

다른 統計法으로서 出生, 死亡申告에 관한 統計法이 1969年 公布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重要 法規外에도 行政法規로 여러가지 統計가 수집되는 分野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工場法, 鉾山法, 勞働者補償法, 賃金支払法 等이다.

V . 필리핀의 統計制度

V. 필리핀의 統計制度

概要

“ 필리핀 ”은 스페인, 美国 및 日本의 統治를 받은후 1946 年에 獨立하였다.

그러나 그 政治, 行政組織은 大部分 美国의 例에 따라 運營되고 있다.

統計機構도 분산형의 機構를 취하면서도 綜合調整機關을 別途로 設置하고 있는 美国型의 機構를 가지고 있다.

各統計機關은 각기 所管事務를 遂行하고 있지만 不備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가지 不備事項을 극복하고자 最近 집중형 統計機構로 점차 履行하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機構의 概觀

필리핀의 中央統計機關은 綜合調整機關과 統計作成機關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綜合調整機關은 國家經濟審議會議 統計調整基準局 (Office of Statistical Coordination and Standards)이다.

統計作成機關은 5大 主要機關을 위시하여 各省에 統計部課가 있다.

5大 重要統計機關은 다음과 같다.

1) 商工省 센서스 統計局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cs) ... 人口, 住宅, 農業關係 센서스 및 人口 産業의 經濟 情勢에 關하여 調査한다.

2) 農業 天然資源省 農業經濟局 (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

: 農業部門의 經常的 調査를 實施한다.

3) 中央銀行經濟調査局 (Department of Economic Research)

: 物價, 通貨, 金融에 關한 資料의 蒐集, 加工, 公表를 行한다.

4) 勞動省勞動統計局 (Labour Statistics Service) : 勞動에

關한 經常的 資料를 蒐集 公表한다.

5) 保健省 疾病情報센터 (Disease Intelligence Center) : 保健

厚生에 關한 統計를 蒐集 作成한다.

이 外에 統計教育 연수機關으로써 “ 필리핀 ” 大學의 統計센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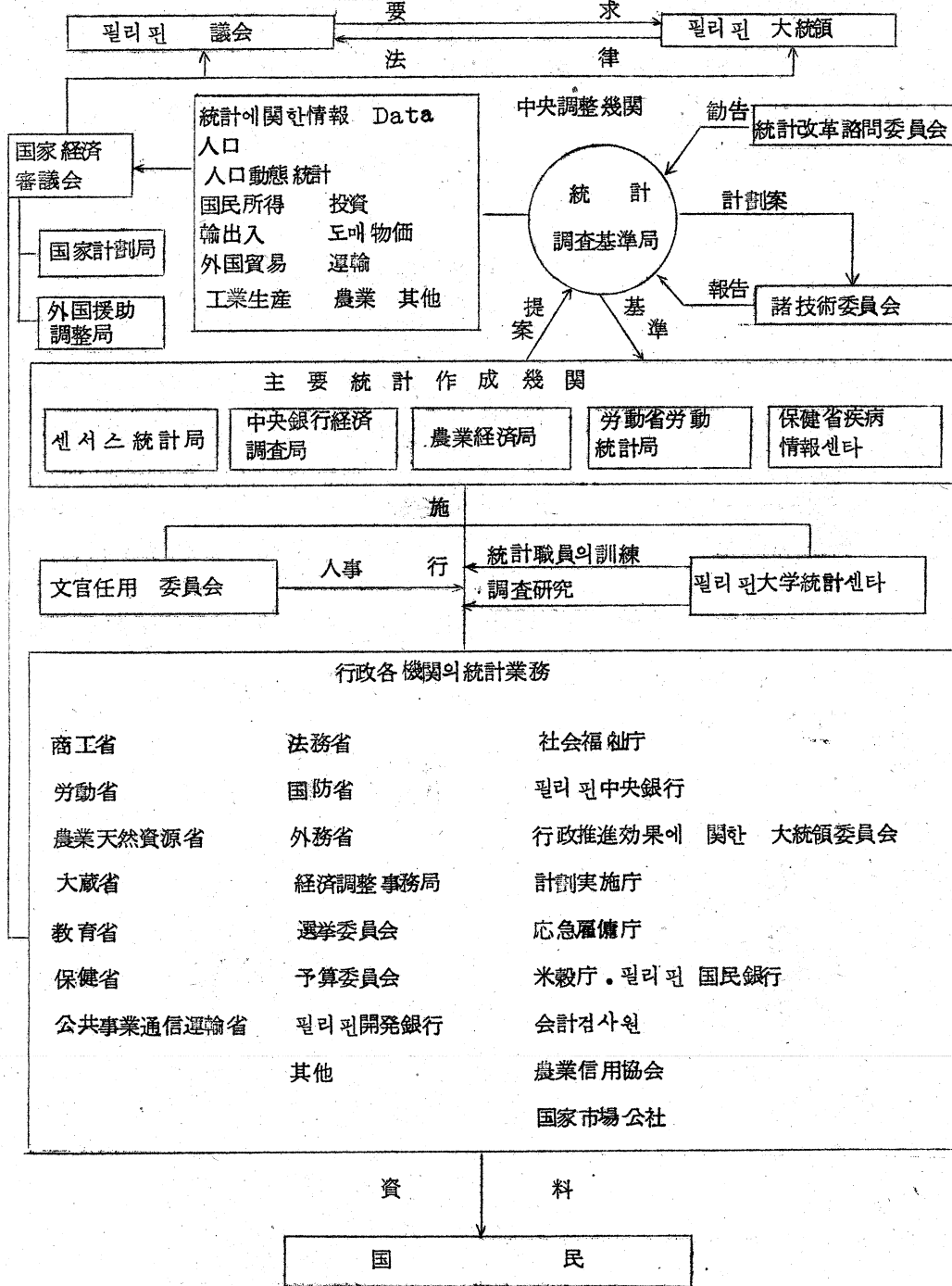
이들 各 統計機關을 機能別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專門技術機能	統計機關
專門技術	필리핀 中央銀行 센서스 統計局
統計의 蒐集, 編輯, 公表	農業經濟局 疾病情報센터 勞動統計部

專門技術機能	統計機關
統計方法 및 業務의 調査研究	센서스 統計局 필리핀 中央銀行 農業經濟局 勞動統計局 疾病情報센터 필리핀大學 統計센터 國家經濟審議會 統計調整基準局
調整 및 統計基準 (國民所得 推計)	國家經濟審議會 統計調整基準局
職員의 訓練	“ 필리핀 ”大學 統計센터

統計作成에 있어서의 각 行政部門 및 立法部門과의 關聯을 도시
하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 統計機構圖



2. 統計組織의 변천

필리핀의 統計組織의 設立경위를 보면 필리핀 全國의 人口추계가 행하여진 1591년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그때의 기록은 잘 알수 없다.

第一回의 공식적 人口센서스는 1877년 12월 31일에 칙령으로 實施되었다.

그 以後 人口센서스는 1887年, 1903年, 1918年, 1939年 및 1948년에 實施되어 다시 最近에는 1960年, 1970년에 實施되었다. 이와같은 歷史에도 불구하고 政府, 企業, 民間으로부터 끊임없이 增加되는 統計수요에 適合한 統計를 組織적으로 生産하기 시작한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1940년에 聯邦 法律 第591號에 의거 大統領 소속하에 “센서스 統計局”이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이는 政府의 전 統計活動을 한개의 機關에 집중하려고 한것으로 그中心은 센서스委員會였다.

그러나 1941년의 太平洋戰爭의 개전 및 계속되는 戰爭때문에 센서스局은 極히 限定된 業務의 遂行밖에 못하였다.

특히 1939년의 人口센서스는 그 집계조차 하지 못하였다.

1948年 人口센서스는 1946年 7月 4일에 獨立한 새로운 “필리핀” 共和國에 의거 實施된 最初의 것이지만 同時에 “필리핀”의 技術職員만으로 實施된 最初의 것이었다.

1951年 2月 1일에 센서스 統計局은 商工省에 이관되었다.

政府活動의 확대, 즉 公衆衛生, 教育, 社会福祉, 一般行政, 作物補助金, 統計安定 및 農工業의 發展과 더불어 또 政府計劃實施 各部門에 統計担当部署가 점차 設置됨에 따라 모든 統計活動을 집중화하려는 기도(센서스 統計局의 設立은 이 취지에서 나온것이다)는 政府 全體의 立場에서는 효과적으로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境遇 센서스 統計局이 統制 내지 調整의 權限을 갖지 않는 多目的 統計部局으로써 設置되어 있는것도 집중주의를 막는 要因이 되었다.

따라서 이時期에 있어서는 統計組織은 中央에 統制 내지 調整의 機關이 없는 狀態로 行政분야별로 분산하여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필리핀 政府 및 民間에 의거 統計의 重要性이 점차 높아졌다.

이는 政府 各組織에 있어 또는 社会經濟發展 開發計劃에 必要한 人口 및 社会經濟生活에 關한 기초적 情報의 作成에 있어 統計活動이 널리 확대되어 갔음을 말한다.

새로이 設置된 “ 필리핀 ” 統計協會의 理事會가 1952년에 大統領에 제안하여 中央統計調整機關의 設置 및 이機關이 政府 各 統計機關의 機能을 배분하여 基準을 設定하는 任務를 遂行할 것을 勸告하고 統計諮問委員會의 設置를 촉구하였을때 統합된 統計組織을 爲한 급속한 추진이 시도되었다.

이 提案을 지지하여 當時의 大藏大臣兼 國家經濟審議會議長은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社會經濟活動을 統計적으로 파악하는 範圍의 不充分함과 現代의 州 統計가 不正確하고 신뢰도가 낮은 事實, 그리고 統計調査가 部分的으로 중복하고 있는 問題는 政府 統計活動을 調整, 統合, 標準化하는 것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한다.

이 提案에 根拠하여 공식적인 行動이 1954年 政府 調査 및 機構 改革委員會의 設置로써 취하여졌다.

이委員會는 1954年 機構改革法으로 알려진 共和國 法律 第997号 (뒤 共和國 法律 第1241号로 수정)에 의거 設置된 것이다.

政府 統計組織 狀況의 重要 部門에 關한 広範圍한 研究를 행한 뒤 同委員會는 調整된 分散적 統計組織의 管理에 關한 體制를 最終的으로 나타낸 일련의 報告 (機構改革計劃)를 作成하였다.

그 要點은 첫째 分散화된 現在의 統計業務 組織을 存続시킨다.

둘째 그러나 이 分散組織의 活動을 調整하기 爲한 中央機構를 設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화로써 “필리핀” 政府의 統計機構에 2가지의 先進한 變革을 가져왔다.

첫째 그中 重要한 것은 統計調整基準局 (Office of Statistical Coordination and Standards)의 정식 設置이다.

同局은 機構改革計劃 第10号에 구체화된 行政命令 第119号 (1955年 7月 1日 施行)에 根拠하여 改革된 國家經濟審議會 議一部 局으로써 設置되고 있다.

물재, 農業天然資源, 銀行 및 金融, 勞務統計, 人口動態統計 및 教育統計에 관한 統計機能을 機構改革 第15 號에 의거 센서스 統計局으로부터 다른 政府機關에 이관하였다.

이들 機關은 그 行政的 및 法規的 技能으로 인하여 소관부서에서 統計業務를 처리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判斷되었다.

이리하여 필리핀의 全일의 統計組織은 中央 調整機關을 가진 分散적 機構로 存在하고 있다.

이와같은 組織下에서 政府 各機關은 그 指定된 統計분야에 관한 統計資料의 蒐集, 집계 및 刊行에 관한 責任을 지고있다.

3. 統計機構

1) 中央統計機構

① 統計調整基準局 (OSCAS)

統計調整基準局은 國家經濟審議會 下에 두고 政府의 各 統計作成 機關에 對한 中央調整 機關으로서 機能을 行하고 있다.

國家經濟審議會는 聯邦 法律 第2 號에 根拠하여 1935年 12月 23 日에 設置되었다.

그 주된 機能은 工業의 開發, 作物 및 農産物의 增産, 관세, 조세 및 기타 必要에 따라 大統領이 檢討하여야 할 事項 및 經濟 재정상의 問題를 政府에 조언하고 經濟計劃을 樹立하는에 있다.

필리핀의 獨立(1945年) 후 美國, 필리핀 合同財政委員會가 設置되어 經濟, 貿易, 財政, 金融政策에 관한 研究와 권고를 行하게

됨에 따라 政府 機構改革委員會가 共和国 法律第 51 号에 根拠하여 設立되어 經濟 및 財政에 關하여 主要한 計劃과 広範圍한 政策을 樹立하기 爲하여 “ 필리핀 ” 大統領을 보좌하는 政府 國家計劃 “ 센터 ”로써 國家經濟審議會를 재편성할 것을 勸告하였으며 이에 의거 1947 年의 行政命令 第 94 号에 의거 재편성이 行하여졌다. 1954 年 機構改革法(共和国 法律第 997 号)에 根拠하여 設置된 政府 調查 및 機構改革委員會는 機構改革計劃 第 10 号에 의거 다시 國家經濟審議會의 改革을 勸告했다.

이 勸告는 1955 年 7 月 1 日 施行된 行政命令 第 119 号에 의거 實施되었다.

이에 의거 종래의 “ 國家經濟審議會 ” “ 美國 원조에 關한 필리핀 委員會 ” 經濟計劃庁 및 關稅委員會가 폐지되어 새로운 國家經濟審議會가 設置되었다.

이것이 現在의 國家經濟審議會이다.

國家經濟審議會의 機能으로서 規定되고 있는것중 주된 것은 經濟 제사항에 關하여 大統領에 조언하는 것을 위주로 國家經濟政策을 作成하고 또 포괄적인 經濟社會 開發計劃을 策定하는데 있다.

同審議會는 議長, 副議長 各 1 名, 商工長官, 下院 및 上院議員에서 各 3 名, 中央銀行총재, 필리핀 開發銀行총재 및 民間人 3 名 計 14 名으로 構成되고 있다.

議長 下에 3 개의 局이 設置되어 있다.

즉 ① 國家計劃局(Office of National Planning : 農業資源課, 工業

資源課, 貿易商業課, 業務設備課, 金融課, 社會開發課, 補償課를 두고 있다) ②外國援助調整局(Office of Foreign Aid Coordination : 計劃立案課, 計劃實施課, 會計課를 두고 있다)과 ③統計調整基準局이다.

1) 統計調整基準局的 機能 및 權限

統計調整基準局的 技能 및 權限은 포괄적인 機構改革計劃 第10号에 열거되고 있지만 그後 國內의 決定等에 關하여 수정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各統計機關의 연락 機關으로 民間, 政府 또는 國際機關의 照會를 받은 統計상의 問題에 關하여 問議를 하고 또 統計상의 問題에 關하여 援助를 구할수가 있는 中樞機關으로서 業務를 行한다.

㉡統計活動을 적절히 機關別로 配分하여 統計機關內에서 效率的인 分業을 進전시킨다.

㉢統計活動에 關한 各機關의 變化, 予算要求의 審査 및 評價와 予算委員會 및 大統領에 予算에 關한 勸告案을 提出한다.

㉣統計의 作成에 關한 포괄적 進行計劃을 樹立하고 統計活動의 遂行 내지 擴張에 關한 우선 順位를 부여 全般的 일정의 設定 및 實施를 行한다.

㉤政府의 各種 統計業務에 關한 定期 調査를 行하고 그 業務의 必要性和 問題點을 開내어 이에 對한 改善策을 樹立하여 國家經濟審議會에 勸告한다.

㉔各機關이 使用하는 統計資料 蒐集을 爲하여 調査料 및 行政報告 樣式을 審査 承認한다.

㉕統計의 統一的인 報告 및 公表를 爲하여 基準을 開發 하고 規定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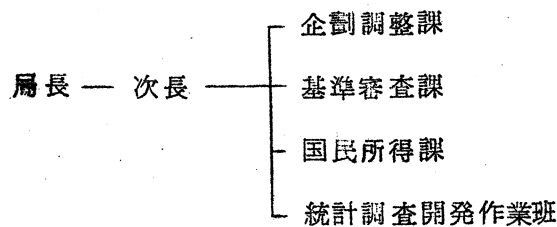
㉖統計業務에 從事 하는 各機關이 採択할 수 있도록 標準的인 定義, 分類를 設定하는일.

㉗社會經濟 開發計劃 策定, 政策立案 및 經濟분석을 爲한 政府 特히 國家經濟審議會가 쓸수 있도록 國民經濟계정의 포괄적 체계를 開發한다.

㉘各種統計 推計方法을 改善하고 各種定義等を 調査 수정하기 爲한 새로운 技術의 開發을 爲하여 關聯 분야의 獨創的인 調査研究을 行한다.

ii) 機構

統計造成基準局은 다음과 같이 局長 및 次長 (Assistant Director) 이 各 1名 그리고 3개과의 일개반으로 構成된다.



이중 統計調査開發 作業班은 産業연관표 作成을 爲하여 臨時 設置된 機構이다.

따라서 職員數는 尙尙적으로는 局長以下 37名으로 構成되고 있다.

企劃調整課는 統計의 報告 및 公表를 爲한 基準의 設定, 統計의

標準的인, 定義, 分類, 수속 등의 設定 및 調査票와 行政報告 樣式의 審査業務를 관장한다.

基準審査課는 統計의 作成에 關한 進行計劃의 開發 政府 統計業務에 關한 定期的인 調査의 實施, 統計關係 予算의 審査와 勸告 및 食糧 대책 조표의 추계와 商品 調査의 實施를 관장한다.

끝으로 國民所得課는 國民所得의 추계와 國民經濟계정 체계의 開發, 國民所得의 調査研究 및 基礎的인 社會經濟資料의 出처를 명백히 하는 業務를 관장한다.

이들 3개 課의 業務는 相互 密接하게 聯關되고 있다.

따라서 職員들은 調整過程에서 몇개의 業務에 精通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統計를 蒐集할 目的으로 審査하고 있는 職員은 同時에 그 統計의 利用도와 제外國에 있어서의 必要性外 및 基準의 適用과 樣式 審査等과도 關係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統計調整基準局에는 14~15개의 技術作業委員會가 設置되고 있다.

各省으로부터의 專門委員이 參加하여 構成되는 常設 機構도 있으나 統計의 生産과 利用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問題를 協議하기 爲하여 定期的으로 會合을 갖고 있다.

이중 活動이 活潑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人口委員會

保健 및 人口動態統計委員會

調査設計委員會

米穀生産消費

外国貿易統計委員會

物価統計委員會

国民所得統計委員會

iii) 業務

統計調整基準局의 業務는 調整的 業務와 所得推計 기타 業務로 나눌 수 있다. 본래 調整業務가 이 局의 中心的業務가 되어 왔다.

㉞ 統計의 企劃立案

經濟發展에 수반하는 統計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統計情報의 作成을 올바르게 체제 지우는 業務가 이 局의 가장 重要한 業務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統計調整基準局은 每年 우선 順位를 定하여 統計의 整備計劃을 作成하고 있다.

그 전제가 되는 作業으로서 同局은 各省의 統計部局의 活動, 資料의 出處 및 問題點等を 알기 위하여 統計業務에 關한 定期的 調査를 實施한다.

그 結果의 調査 票는 취합되어 長期的, 短期的인 統計計劃을 策定하기 위한 基礎 資料가 되고 있다.

이에 의거 各統計部局에서 作成되는 統計間의 gap를 찾아낸다. 그리고 새로운 統計의 調査, 현존 統計의 繼續내지 擴大, 또는 不必要한 統計의 폐지等を 內容으로 하는 勸告案을 作成하여 統計計劃立案委員會 (Inter agency Committee on Statistical Progra-

mming)에 提出한다.

㉔ 報告樣式 및 調查票의 審査.

政府活動 및 企業活動의 增加에 따라 各種의 記錄報告 및 統計資料가 점차 多量으로 必要하게 된다.

穀物, 工業, 生産, 雇傭, 保健統計, 社會보장에 關한 報告는 全國的인 社會經濟計劃의 策定에 必要不可欠한 情報를 제공하고 또 이 분야의 管理에 必要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 情報의 蒐集을 爲한 중복을 제거하고 또 蒐集된 統計의 質을 높이고 유용성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統計調整基準局은 各 統計作成機關으로부터 提案된 報告樣式 및 調查票의 審査를 行하고 있다.

1962年 10月 16日에 國家經濟審議會는 각서 第2号 (Memorandum Y circular No. 2) 를 發表하고 政府 各機關이 統計調查活動에 關한 計劃 및 報告樣式을 審査할 規則을 定하였다.

이에 의거 統計調整基準局에서 報告樣式 및 調查票의 內容은 審査하고 承認하여 調查期間과 番號를 부여하고 있다.

㉕ 基準의 設定

標準的인 定義와 標準分類의 設定은 各省 統計部局에 對한 調整業務의 일종이다.

統計調整基準局에서 行한 基準設定 活動은 各 統計作成 機關과의 協同下에 行하여진 것이며 現在까지 作成된 統計基準은 다음과 같다.

標準産業分類

信用貸付分類

필리핀 地域分類

標準事業所の 規模分類

標準商品分類

標準職業分類

제표수속基準

道市, 農村分類

이들 제基準 및 定義는 統計調整基準局의 分期別刊行物 統計情報 (Statistical Reporter) 및 其他 刊行物에 의거 一般 利用者에게 提供된다.

㉑ 國民所得 推計業務

統計調整基準局은 每年, 國民所得推計結果를 發表하고 있지만 産業 聯關表의 作成도 하고 있다.

㉒ 刊行 및 연락業務

統計調整基準局은 政府 各機關, 國內機關에 對하여 技術的인 援助 내지 相談에 應하고 있다.

또 民間企業으로부터의 要請에도 應하고 있다.

㉓ 刊行 및 연락業務

統計基準局은 政府 各機關, 國際機關에 對하여 資料提供 또는 統計 問議에 應하고 있으며 또 每分期 刊行物인 “統計情報”는 各種의 統計業務에 關한 調查研究 및 그때 그때의 統計上의 問題等

을 게재하고 있다.

이 刊行物の 配付처는 32 個局 300 個 機關이며 国内에서는 政府 各部局, 私企業, 研究機關, 圖書館等 1500 個의 機關에 이르고 있다.

② 商工省 센서스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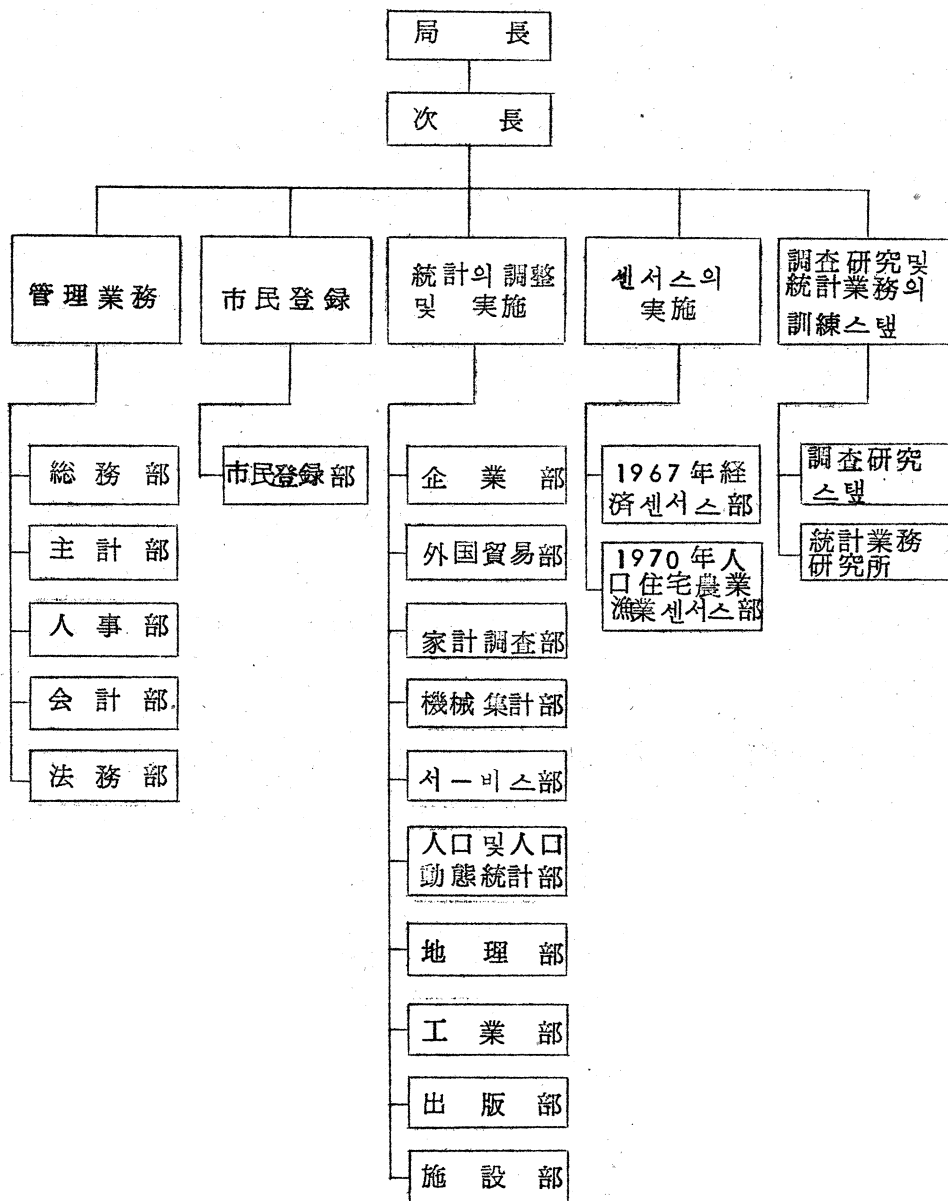
商工省 센서스 統計局은 1951 年 2 月 1 日 大統領 직속으로부터 商工省에 이관되었다.

그 權限 및 機能은 1940 年의 共和國 法律第 591 号 “ 센서스統計局的 創設 및 政府統計活動을 강화하기 爲한 法律 ”에 規定되어 있으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i) 政府 및 企業用に 提供하기 爲한 모든 種類의 社会經濟的 統計資料의 蒐集, 集計, 分析 및 刊行.

ii) 모든 種類의 센서스 및 調査實施.

iii) 住民登錄法에 規定한 申告規定의 勸奨 實施業務等이며 그 機構는 다음과 같다.



職員數는 상근직 650名 臨時職 100~300名에 이르고 있다.

③ 農業 天然資源省 農業經濟局

農業經濟局의 前身인 農業經濟部 (Agricultural Economics Division) 은 1953年 5月에 農業天然資源省 관방에 設置되었다.

그 權限은 省内各部局의 모든 統計活動을 調整하고 農業部門의 資料를 蒐集, 集計하고, 分析刊行하는 일이다.

이부서는 調査課와 統計課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1963年의 「農業經濟局을 創設하는 法律」에 의거 農業經濟部는 發展的으로 解体되어 統計業務는 農業推計 및 農業統計 担当 차장소관으로 되었다.

그 業務는 農業, 食糧 및 天然資源에 關한 經濟, 統計 資料를 蒐集하고 集計 編輯 要約하는데 있다.

作物 家畜農業價格等에 關한 標本調査 및 農産物 豫상수확고 추정農村 賃金, 物價等の 統計를 作成하는일이 具體的인 業務內容이다.

이 機構는 調査企劃部, 設計部, 作業 및 調査部, 農業推計部, 機械集計部로 構成되어 있으며 職員數는 中央에 120名이 있고 地方事務所에도 상당수의 職員이 勤務하고 있다.

④ 中央銀行 經濟調査局

필리핀 中央銀行은 1948年 6月の 中央銀行 設置法에 의거 設立되었으며 統計業務 担当機構는 經濟調査局이다.

中央銀行設立 條項은 同局의 技能을 “金融政策을 策定履行함에 있어 統計理社會의 지시에 의거 資料를 蒐集·整理하고 經濟調査를 實施하는 데 있다” 라고 주거하고 있다.

經濟調查部는 3個의 部門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国内部 外国部 및 統計部이다.

国内部 및 外国部는 通貨 銀行經營物價等の 분야에 걸쳐 調査하고 있으며 統計部門은 統計의 作成業務에 從事 關여하고 있다.

그 內容은 定期的인 統計報告 및 全国消費者 物價調査와 他金融部門에 對한 統計技術상의 援助 標本設計의 作成等を 包含한다. 中央銀行에 의거 作成된 統計는 通貨金融統計 物價統計 外國換統計 재정統計 財政統計等を 包含한다.

⑤ 勞動省 勞動統計局

1957年 1月の 勞動省 組織改訂에 의거 勞動統計部 (Labour Statistics Division)가 設置되었다.

그 任務는 “ 勞動에 關한 基礎적인 情報를 蒐集 編輯 分析 評價하고 勞動統計報告 組織을 作成維持하는것 ”이라고 되어있다.

동부는 1962年 7月부터 勞動統計局 (Labour Statistics Service)으로 개칭되었다.

同局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 i) 省内各部局의 統計報告에 關한 費用의 計算
- ii) 勞動統計資料蒐集 또는 集計分析의 지원
- iii) 勞動統計 調査活動의 計劃 調整 및 調査基準과 方法에 對한 審査.
- iv) 計劃의 有効성과 作業方法의 效率評價
- v) 勞動經濟 분야에 있어서의 調査 및 特別研究를 計劃指

導하고 賃金委員會에 機能的인 지원을 實施

vi) 勞動에 關한 實情을 表示하는 資料 및 情報의 編輯
公布

vii) 一般의 利用을 爲한 勞動統計資料 및 情報의 審査에
關하여 大統領室 所屬下에 있는 企業指導 統計센터와의 연락

viii) 勞動省內의 統計資料 蒐集에 關한 技術的 相談 및
圖書館 業務의 開發維持

ix) 實查職員에 對한 政策指導와 相談業務等이다

同局은 調査分析 公表部와 統計基準 調査部로 構成된다.

前者는 調査計劃 經濟政策의 立案 및 特別한 研究의 實施 統計資
料의 刊行等 業務를 行한다.

後者는 勞動統計의 基準, 용어의 統一, 勞動統計資料의 蒐集等을
行한다.

그 職員數는 各々 30名 정도이다.

⑥保健省 疾病 情報센터

疾病情報센터는 1959~60年 會計年度에 獨立機關으로 設置되었으나
1961年의 保健省의 設置에 의거 동성에 所屬하게 되었다.

동“센터”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i) 人口動態 統計 및 保健 疾病의 資料蒐集

ii) 有用한 資料를 適切히 蒐集하고 實態에 사용되도록
分析하는일

iii) 疾病의 예방과 管理 및 保健維持를 爲한 保健行政職

員의 指導 및 관련 統計 情報의 迅速한 作成 傳達等이다.

동 “센타”는 保健省의 모든 統計 活動의 中心이라고 할수 있다. 이 組織은 2個의 部 즉 監視課와 調查課로 構成된 調查部 및 人口動態統計課와 研究서비스統計課로 構成된 保健統計部로 짜여있다.

2) 地方統計 機構

地方統計機構로서는 中央政府산하 機關과 地方政府의 統計機構가 있다.

中央政府의 各 統計部局은 독자적으로 實施하는 統計調查에 따라 地方에 주재원 내지 指導要員을 파견하고 있다.

全國的調查는 直接 中央政府에 의거 實施되며 地方政府를 經유하지 않고 있다.

地方政府로서는 州政府 市政府 및 촌락이 있다.

각기 業務상 취급한 統計資料는 各會計年度末에 關係 中央 官서에 提出된다.

大統領選舉 및 中間選舉가 各년에 實施되고 있음으로 選舉區別의 選舉人名簿가 全國的으로 作成되고 있다.

이 名簿는 全國的 標本調查의 設計에 많이 活用되고 있다.

또 人口動態統計는 住民登錄法 實施를 藉기로 正確性を 높혀가고 있다.

4. 統計의 綜合調整

政府 統計 活動 全般에 걸친 綜合調整은 統計調整 基準局의 權限에 屬한다.
그 調整 業務에 關하여는 이미 記述했으나 이 항에서는 그 具體的 例에 關하여 補充的으로 調整業務를 記述하고자 한다.

1) 統計의 企劃立案

每年度의 統計정비 計劃에 優先順位를 부여 함으로써 各省에 對한 強力한 調整權限을 發揮 할수가 있으며 또 統計活動에 關한 予算의 睿查 制度가 있다.

予算委員會의 要請에 應하여 各省이 要求하는 統計調査 計劃 및 主要 予算을 睿查하여 이를 予算委員會에 提出한다.

이 具體的인 作業수속 및 樣式等에 關한 것은 불명하나 每年度 實施하고 있다.

단 睿查가 어느정도 尊重되고 있는가는 반드시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

2) 報告樣式 및 調査票의 實施

이樣式的 睿查는 모든 調査票에 關하여 行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으로 提出되는 報告내지 調査에 對해서만 行하여 진다.
例컨대 센서스 調査票에 關하여 보면, 이것이 技術 作業 委員會에서 檢討 되고 있으면 다시 睿查를 받을 必要는 없는 것이다.
즉 統計調整 基準局과 各省과의 協議 내지 睿議의 경우도 이미 檢討된 調査票는 睿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樣式的 睿查는 Report Control 機能에 屬하는 것이다.

審査件数は 다음과 같다.

年	度	양	식	수
1962	1964			935
1965				131
1966				18
1967	1964			67

3) 인사에 의한 調整

人事이동 내지 교류에 의거 調整機能을 行하는 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 全然 볼수 없다.

各省의 統計部 局間의 人事移動은 매우 드물다.

더욱이 統計基準局의 職員은 다른 統計部 局 보다 高額의 俸給이 지급되고 있고 직명도 Statistical Coordinator 라고 하며 Statistician 이라고 하지 않는다.

4) 各省 과의 協議와 調整

統計 調整基準局에 設置되고 있는 技術作業 委員會는 그 委員으로 各省 統計部 局의 職員을 包含시키고 있고 統計의 各省 및 利用에 關한 問題에 關하여 各省間의 協議를 통하여 實質的인 調整機能을 하고 있다.

그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米穀 生産 消費 委員會는 쌀과 옥수수 的 生産現況을 파악

하기 爲하여 每 分期마다 開催 되고 있으며 그 定期報告는 살과
옥수수의 공식 統計로서 提供된다.

②人口 委員會는 出生時에 있어서의 平均壽命, 出生率로 수정
한 性別, 年齡 및 人口 移動에 關한 各種의 資料에 根拠하여
1960~75年間的 일련의 人口計劃을 공식적으로 使用할 것을 提
案했다.

③物價 統計 委員會는 物價 統計의 不일치를 最小限으로
하기 爲하여 關係 統計 機關의 物價 統計 編輯과 公表에 關한
責任구분을 定하는 일련의 勸告를 採択 하였다.

④外國 貿易 統計 委員會는 센서스 統計局에 있어서 輸入
輸出의 統計資料의 集計 및 公表를 집중화하는 計劃 및 中央銀行
과 關係 委員會가 必要로 하는 特別集計의 準備를 爲하여 중복
하는 Master Card를 作成할 計劃을 採択할 것을 勸告했다.

5. 統計職員

1) 統計職員의 명칭

各省의 統計職員은 官명을 “統計官 Statistician”이라고 한
다. 그러나 統計調整 基準局의 職員에 對하여는 “統計調整官
Statistical Coordinator”이라고 부른다.

이는 國家 經濟 審議會의 職員에게 부여되는 特別한 조치로서
동 審議會의 다른 2個局의 職員에게도 Coordinator의 이름이
使用 된다.

동 審議會의 지위와 業務를 權限 있는 것으로 하기 爲한 措置이다.

2) 統計職員 數와 인건비

統計職員의 실수를 確實히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여기서는 1963年度에 統計調整 基準局이 實施한 調査에 關하여 記述코자 한다.

이 調査는 1963年 9月 30日 부터 1964年 2月 28日 까지 行하여 졌다. 調査對象은 政府統計機關의 部長以下의 전 統計職員이다.

局長·會長 및 其他 高級 管理職은 제외 되었다.

調査方式은 郵便調査에 의하였다. 1963年度의 予算에서는 中央政府의 金部局에 있어서의 統計職員數는 1920名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 調査의 대상 全職員은 981名 이었다.

以下 당초 予算成立時의 予定人數대로 現實的 充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調査에 있어서 統計職員이란, 그 지위나 칭호에 關係없이 統計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公務員을 말한다.

統計活動이란 資料의 蒐集, 集計, 摘要, 表示, 分析 및 解説活動과 調査活動, 標本설계, 品質管理 및 統計的 方法, 技術의 應用을 行하는 機能을 말한다.

그리하여 統計職員은 3個의 범주로 区分 했다.

① 專門職 (Professional)

資格 및 經驗에 의거 各種의 問題에 對한 統計的인 知識과 技

術을 적용하는 能力이 있고 統計的 方法 및 基準의 開發 統計 業務의 開發, 統計調查의 設計 統計資料의 分析 解說 및 調查에 종사하고 있는者

②中級職 (Intermediate)

初級職員에 의거 遂行된 業務에 檢査 및 監督에 종사 하는者 또는 分析과 統計 보좌원 등으로 專門職을 보좌 하는者

③初級職 (Primary)

統計書記, 計算員, 次공원, 부호원 및 其他의 보조원을 말한다.

위 調查에 의하면 統計職員數는 981名이었고 그中 專門職은 237名 (24%) 中級職은 289名 (30%) 初級職은 455名 (46%) 이었다.

1966年末 現在의 重要 統計機關의 統計職員數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專 門 職	中 級 職	初 級 職	計
統計調整基準省	16	—	7	23
商工省 센서스統計局	63	57	141	261
農業天然資源省農業經濟局	21	19	18	58
勞動省 統計局	6	6	2	14
保健省 情報센터	6	8	28	42

男女別로 보면 男 482名에 對하여 女子가 497名으로 필리핀에 서는 女子의 活動이 현저함을 볼수 있다.

年齡別로 보면 全體의 平均年齡은 35.2세이며 男 37.2세

女 33.6 세이다.

平均급여를 보면 專門職은 年間 4,969 “ 페소 ” 中級職은 3,350 “ 페소 ” 初級職은 2,344 “ 페소 ”이다.

統計職員 全体에 對한 인건비는 1963 年度에 3,212,562 “ 페소 ” 에 달하였다.

學歷에 關하여 보면 專門職의 81 %가 大學卒業 그中 12 %가 석사 또는 박사學位를 가지고 있다.

中級職 및 初級職에 對하여는 中級の 66 %가 大卒이며 初級の 51 %가 大卒로 構成되어 있다.

이 調査期間中 統計職員의 78 %가 第1次的 資料의 蒐集, 集計, 製표 및 解稟業務에 종사하고 있었고 研究分析에는 9 %가, 計劃의 立案 및 審査에는 2.8 %가 印刷 및 刊行에는 2 %가 調整業務에는 1.6 %가 各各 종사하고 있었다.

3) 대우

統計職員의 급여체제는 다음表와 같다.

統計상의 職位	연급여액 (페소)
① 專門職	
主任統計總調整官	9,756 ~ 11,904
主任統計調整官補佐	7,992 ~ 9,756
主任統計官	7,608 ~ 9,228
上級統計調整官	6,888 ~ 8,400
監督 統計官	6,240 ~ 7,608

統計 調整官	5,640 ~ 6,888
上級 統計官	5,112 ~ 6,240
統計 調整官	4,404 ~ 5,376
統計官 Ⅲ	4,188 ~ 5,376
統計官 Ⅱ	3,792 ~ 5,376
統計調整官 Ⅰ	3,432 ~ 4,188

②中級職

統計官 Ⅰ	3,264 ~ 3,984
初級 統計官	2,808 ~ 3,432

③初級職

統計補助員 Ⅱ	2,544 ~ 3,108
統計補助員 Ⅰ	2,196 ~ 2,676

4) 統計調査員

統計 調査員은 모든 調査때마다 고용되며 상임 調査員 制度는 없고 臨時職員으로 充원 한다.

高校卒業資格은 어떤 調査에도 公同하게 要求되는데 이는 地域別로 言語가 다양함으로 일정한 學歷이 꼭 必要하기 때문이다.

可能하면 大卒의 學歷者를 雇傭하려고 하지만 낮은 급어로 希望者가 적은 形便이며 교원도 센서스때는 調査員으로 任命된다.

調査員 수당은 하루 6“ 페소 ”이나 교원이 任命될 때는 交通費만 지급한다.

5) 統計教育

1953年 UN의 技術 協力을 얻어 “ 필리핀 ” 大學에 統計 訓練 센터 (Statistical Training Center) 를 設立했다는데 現在는 統計센터 (Statistical Center) 로 개칭 되고 있다.

이 센터의 機能은 “ 統計業務에 종사 하는 政府職員을 訓練하고 필리핀 統計의 組織 및 制度를 개선하기 爲한 調査를 實施 한다.

이를 爲하여 統計 센터는 統計의 專門 訓練을 받은 卒業生에 對한 學究計劃 및 統計業務에 종사하는 政府各省 職員에 對한 재직자 訓練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學究計劃은 필리핀大學의 技術 科學 大學院의 援助下에 行하여 진다.

統計에 關한 基礎的 訓練 및 統計職員에 必要한 主要한 問題에 關한 應用研究가 그 內容이 되고 있다.

3 學期에 걸친 교과요목에 의거 統計學士의 學位 또는 理學 學士의 學位가 부여된다.

統計 “ 센터 ” 는 적어도 年 1回, 政府 統計機關 및 民間단체의 統計職員 특별 계직 訓練 過程을 實施하고 있다.

이 訓練은 現實問題點의 토의 및 政府 企業의 經濟적 長期的 需要에
對한 統計 技術의 적용 方法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 統計센타는 政府 各省으로부터의 統計상담도 받고 있다.

이 統計센타는 東南亞細亞 各國政府의 統計職員도 수강생으로
받고 있다.

6. 中央 統計委員會의 構成

필리핀의 統計機構는 分散型이며, 各省에 各기 統計 各省 部局을
두고 이를 國家 經濟 審議會의 統計 調整 基準局이 調整하고
있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機構에 있어서는 充分한 統計체계의 整備 및
統計業務의 원활한 運營이 行하고 있지 않음으로 政府의 統計活動
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즉

①센서스 및 其他調査 結果의 樹立과 公포간에 時間的 Gap
가 너무 크다.

②行政 統計活動을 效率的으로 企劃 立案할 必要가 있다.

③政府機關에 의거 蒐集된 資料가 集計 되지 않고 축적 되고 있는 것이 많다.

④統計資料를 蒐集함에 있어 그 출처가 다양하고 또 중복이 많기 때문에 統計相互間에 모순이 생긴다.

⑤진급히 必要로 하는 統計調査의 개시 및 그 재원 확보에 보다 기동성을 가질 必要가 있다.

⑥보다 正確한 統計가 결여하고 있다는것, 特히 地域開發 및 地方計劃 立案에 必要한 小地域에 關한 統計가 결여 되고 있다.

⑦보다 効率的인 統計 刊行物과 배부 計劃이 必要하다.

위와 같은 제사항의 검토結果 統計調整 基準局은 1967年 統計法案을 作成하여 1967年에 양원에 提出할 準備를 했다.

이 法案의 취지는 政府의 統計業務를 國家經濟 審議會의 中央統計 委員會에 통합 집중 하려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통합될 機關은 統計調整 基準局, 센서스 統計局, 農業經濟局 및 勞動 統計局이다.

그 權限 및 機能으로서 모든 統計活動의 監督 및 管理 年度

別 統計計劃 및 予算의 편성 樣式과 質問書의 審査, 센서스 및 統計調査의 實施, 中央資料 센터의 管理, 中央統計 資料 提供 機關으로써의 業務 遂行 등이 예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法案이 成立하여 中央統計 委員會가 設置되어 活動을 개시한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① 政府의 統計作成計劃 策定 및 政府의 統計活動 遂行에 關한 優先 順位表를 作成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② 人的, 物的, 資源 및 資金면에 있어서의 效率性을 기할 수 있다.

③ 審査職員, 統計機械, 備品 및 設備를 합리적으로 利用하여 統計業務를 經濟的으로 行할 수 있다.

④ 統計의 公表에 있어 能率과 經濟性을 확보할 수 있다.

⑤ 統計資料를 各機關에서 公表함으로써 야기되는 混亂을 最小限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中央 統計委員會 設置의 구상은 分散型 機構로부터 집중型 機構로의 전환을 기도한 것이다.

이 委員會의 設立에 의거 종래의 統計調整 基準局의 權限은 크게 강화되게 되어있다.

二. 통 세 법 규

1. 기구개혁 계획제 10호(抄)

제 1 절 : 국가경제심의회 . 미국원조에 관한 필리핀위원회 . 경제계획청 및 관세위원회를 폐지한다.

제 2 절 : 새로이 국가경제심의회 (이하 심의회로 칭함) 를 설치한다.

제 3 절 : 심의회의 기능 . 권한 , 업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 경제에 관한 제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 조언한다.
- 2 . 명확한 국가경제정책을 작성하여 포괄적인 경제 . 사회개발계획을 책정한다.

이들은 대통령에 의거 또는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정부 각부처 . 정부기업체 . 국채금융기관 . 특별시 및 기타 지방 정부에 의거 실시된다.

- 3 . 경제개발에 관계있는 현존의 공적 . 사적인 모든 계획을 심사하고 매년 적어도 1 회의 수정을 행한다.
- 4 . 공적 . 사적 경제개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신용금융정책상 가능한 재원을 연구한다.
- 5 . 국가부족자원을 조사하여 필리핀 경제의 단기 및 장기 수요를 측정하고 개발계획 일정에 우선 순위를 부친다.
- 6 . 식량 및 원료의 생산 . 동력 . 통신 . 제조업 및 기타 불가결한 업무분야에서 공사기관의 투자목표를 설정한다.
- 7 . 면세특권의 허가 . 기타 투자유인을 관리하는 일관 정책 및 표준을 연구 결정한다.

- 8 . 정부의 수입 . 세출 수준에 관한 권고를 작성하고 경제개발의 전체 계획에 공공사업 지출을 포함시킨다 .
- 9 . 재정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권고를 작성한다 .
- 10 . 배상의 경제적 사정을 연구하여 그 사용 및 처분 및 배상사항의 규모 . 범위 . 시기 및 내용을 결정한다 .
- 11 . 국제수지 문제를 해명하고 국내 생산의 증대를 위한 관세정책 책정
- 12 . 모든 정부기관의 통계활동을 조정하고 통계의 기준 및 방법론을 작성하고 정부 제기관에 의한 사용을 지시한다 .
- 13 . 대통령에 의거 승인된 때 중앙은행에 대하여 외국환의 배분에 관한 우선 순위를 지시한다 .
- 14 . 이정책 기획 및 계획의 책정과 착수에 필요한 자료를 타 정부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15 . 심의회가 승인한 기획 및 계획을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고를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한다 .
- 16 . 경제계획의 진행상황 승인된 경제계획 및 일정의 수행에 있어 타기관이 행한 업무 및 행정상의 시책 목적 및 실행에 관한 법규 기타 정기적 보고를 의회 및 대통령에 제출한다 .

제 14 절 : 심의회는 국가계획국 . 외국원조조정국 및 통계기준국을 설치 유지한다 .

제 17 절 : 통계조정기준국은

1. 정부 특히 의회의 통계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 통계 체계를 촉진한다.
2. 다른 통계기관이 사용하는 충분한 통계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제정한다.
3. 분산된 통계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행한다.

2. 경제계획 입안에 관한 기구개혁 계획제 10호의 실시를 규정하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제 1119호 (抄))

제 2 조 : 다음 조직도에 표시하는 바와같이 심의회의 기구는 심의회 본부 의장사무국 및 Staff . 국가계획국 . 외국원조조정국 및 통계조정기준국으로 성립된다. 의장사무국에 3개의 Staff 부문 즉, 법규고문 . 홍보직원 . 서무과를 둔다.

국가계획국에 6개과 즉 농업자원과 . 공업자원과 . 업무설비과 . 금융과 . 무역상업과 및 사회개발과를 둔다.

외국원조조정국에는 2과 즉, 계획입안조정과 및 계획실시조정과를 둔다.

통계조정기준국에 2과 즉 계획조정과 및 기준심사과를 둔다.

제 25 조 : 통계조정기준국의 기능 . 권한 . 의무 및 책임은 기구개혁계획 제 10호 제 17 절에 있어 열거된 사항과 통계기관과의 연락을 행한다.

그리고 민간기구 . 정부기구 및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통계상의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중추기관으로써 역할을 한다.

제 26 조 : 계획조정과의 기능·권한·의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통계활동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에 의거 통계기관간의 효율적인 분업은 유지시킨다.
2. 통계활동에 관한 각기관의 연차별 예산요구를 심사 평가하고 예산위원회 및 대통령에게 예산권고를 제출한다.
3. 통계의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진행계획을 개발 적용한다.
이 경우 통계활동의 수행 내지 확장에 관한 우선 순위부터 전반적 일정의 설정 및 실시를 행한다.
4. 정부의 각종 통계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행하여 그 업무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결정하고 그 개선에 관한 필요한 방안을 심의회에 권고한다.

제 27 조 : 기준심사과의 기능·권한·의무 및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통계기관이 사용하는 통계숫자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표 및 행정보고 양식을 심사 승인한다.
2. 통계의 통일적인 보고 및 공표를 위하여 기준을 개발하고 규정한다.
3.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제기관이 채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정의·분류체제·기술 및 수속을 설정한다.

제 28 조 : 이 행정명령 제 4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직원기구에 관하여 지급될 봉급은 공무원 자격에 준한다.

단, 심의회는 다음의 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부의 행정, 전문직 및 기술직원을 위한 봉급표를 채택할 수 있다.

1 . 의 장	25,000	「 페스 」
2 .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의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일당	50	「 페스 」
3 . 국 장	12,000 ~ 15,000	〃
4 . 국 차 장	10,000 ~ 12,000	〃
5 . 법 률 관	10,000	〃
6 . 주임경제관	10,000	〃
7 . 주임계획조정관	10,000	〃
8 . 주임계획평가관	10,000	〃
9 . 주임통제관	10,000	〃
10 . 상급경제관	8,000	〃
11 . 상급계획조정관	8,000	〃
12 . 상급계획평가관	8,000	〃
13 . 상급통제관	8,000	〃
14 . 공 보 관	6,000	〃
15 . 협 동 조정 관	6,000	〃
16 . 통 계 관	5,100	〃

제 38 조 : 기구개혁 계획제 10 호 및 이 행정명령에 의거 요구된 행정행위는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120 일 이내에 시행된다.

3 . 통계활동 기타의 조사활동에 정부 각기관이 사용할 계획 및
보고양식의 검토와 심사에 관한 규칙

1 . 총 칙

제 1 조 : 여기에 규정된 어떤 계획 또는 보고양식도 먼저 국가경제심
의회 통계조정기준국장에 의거 심사를 얻어야 하며 다음에서
명하는 심사 . 승인번호 . 기호 또는 기타 적당한 조치없이 정
부기관이 통계정보를 수집 기록 사용할 수 없다.

본령의 규정은

- 1 . 10 인 이상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요구하는 계획 및
보고양식
- 2 . 필리핀 정부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특성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할때 적용된다.

제 2 조 : ① "정부기관"이란 모든 성 위원회 . 독립사무소 . 필리핀정부가 소
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 . 청 . 국 . 부 . 관 . 실을 의미한다.
단, 다음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회계검사원 . 내국세입
청 . 예산위원회 . 국고국 또는 그 감독기능의 수행자체가 법률에
의거 규정 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수집하
는일, 예컨대 필리핀 중앙은행 . 필리핀 개발은행 등으로 부터
의 보고사항은 제외된다.

② "보고양식"이란 신청자 또는 기타의 행정보고양식 조사표 .
전신조회 또는 정보수집에 관한 기타 이와같은 계획을 포함
한다.

- ③ "계획"이란 정보의 수집에 사용되는 기록의 설정 또는 유지에 관한 일반적 내지 특정한 모든 요구 보고양식의 내용·준비·회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④ "요구"란 권고 명령·규칙 또는 기타 지령을 포함한다.
- ⑤ 계획 또는 보고양식의 "심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구하여야 할 정보 또는 이에 의거 작성되어야 할 정보가 그 기능 또는 그 이외의 본래의 목적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거 정당이 필요한 여부의 결정
 2. 통계조정기준국이 정한 정보를 제안된 방식으로 수집 또는 기록함에 있어 또는 통계조정기준국이 정한 기타의 조건에 근거하여 승인번호 또는 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의 심사 또는 보고양식을 검토하는 권한
- ⑥ "사람"이란 개인·조합·협회·법인·기업체등 또는 파산관리인 기타 모든 사람의 조직단체·모든 주·정부 또는 그 지부·국·모든 정치적 지구를 의미한다.
- ⑦ "회답자"란 계획 또는 보고양식에 근거하여 보고할것이 요구된 모든 사람·기관·종업원을 말한다.

제 3 조 : 본장에 규정된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계획 및 보고서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획 및 보고양식의 List를 각 2부 작성하여 통계기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조정기준국장은 항시 사용되고 있는 이들 계획 및 보고양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획 및 보고양식에 관한 승인 번호 및
만료기한을 지정한다.

제 4 조 : 통계조정기준국장에 의한 통지에 의거 정하여진 기한 또는
만료일에 관계없는 승인번호 또는 심사를 표시하는 기타의
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조 : 심사가 요구하고 있는 계획 또는 보고양식에 혹은 이를 사
용함에 있어 중요한 수정 또는 변경을 할 때는 다음 각
조에 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부속자료 또는 설명을 부쳐 다
시 한번 통계조정기준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 계획 또는 보고양식의 검토 및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그
사본 2부를 보고를 받으려는 기간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통계조정기준국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7 조 : 회답자 특히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보고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능률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각 정부기관은 제출된 각 계획 또는 보고양
식에 관하여 회답자의 수집의 빈도, 항목의 수 기타 여러가
지 점에서 합리성, 필요성 또는 실제 유용성의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계조정기준국장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제 8 조 : 심사의 면제는 선서, 증명 기타 많은 양 또는 정보를 구하
지 않는 기타의 계획 및 보고양식에 관하여 통계조정기준국
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9 조 : 이와같은 규정의 범위의에 있는 계획 또는 보고양식의 어느 것도 조연적인 심사를 위하여 또는 그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3 조에 준하여 번호의 지정 또는 기타 심사조치를 위하여 통계조정기준국장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 기타 이 심사가 본 규정에 의거 요구되고 있지 않는 양식 및 질문서에 응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보고서의 사용에 있어 불확실성과 오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 "통계조정기준국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시를 당해 양식을 이용하는 기관에 의거 사용될 수 있다.

4 . 센서스 통계국의 창설 및 정부의 통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공화국법률제 591 호)

제 1 조 : 센서스 통계국을 창설한다.

제 2 조 : 센서스 통계국의 권한 기능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 전수조사 . 표본조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인구 농업 사정 작물의 면적과 생산고 . 가축수 . 축산물의 생산고 . 수출 . 수입 . 상업 . 공업 . 물가 . 상품재고 . 임금 . 농업자산 및 기타의 자산 . 사회적 경제적 단체에 관한 통계 기타의 정보 및 " 필리핀 "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거 지시하는 기타의 통계를 수집하는 것 .
- 2 . 이들 모든 통계자료 및 정보를 편집 분류하는 것 및 정부와 국민을 위하여 공표하는 것 .

- 3 .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및 상황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행하는 것.
- 4 . 인구 . 농업 . 공업 및 상업의 센서스를 준비 실시하는 것.
- 5 . 대통령의 승인하에 정부 . 기타 부국 및 부속기관을 위한 통계적 자료의 편집분류
- 6 . 「주민등록국 설치에 관한 법률」 제 3753 호의 규정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일.
- 7 . 인구동태 . 농업생산 . 소득 및 가축수에 관한 추계 및 공표

제 3 조 : 제 2 조에 규정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조사표 또는 양식과 설명서류를 가장 적절한 대상자에게 송부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이들 조사표가 우송 또는 배부된 개인 사업경영과 정부의 직원 또는 피용자 . 조합원 . 관리자 또는 법인대표자는 스스로 이 조사표 또는 양식을 완성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처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이를 완성시킬 의무가 있다. 이 수정한 조사표 또는 양식을 수령하고 30 일 이내에 완성하여 센서스 통계국에 우송 또는 배달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거절한다. 또는 이들 조사표 또는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서명한 자는 유죄 결정에 의거 600 「페소」이하의 벌금 또는 6 개월이하의 금고 또는 이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제 4 조 : 센서스 통계국이 개인 . 회사 . 조합 . 상사 또는 기업별로 작성한 자료는 이들 자료를 제공한 개인 . 회사 . 협회 . 조합 . 상사 또는 기업에 대한 증거로서 어떤 법정 또는 공무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들 자료 또는 정보는 그 임무 수행중의 센서스 통계국의 권한있는 직원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로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들 자료는 개인 . 회사 . 협회 . 조합 . 상사 또는 기업을 알 수 있도록 통계표에 의거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본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유죄 결정에 근거하여 600 페소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이하의 금고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제 5 조 : 센서스 통계국은 필리핀 대통령의 행정지시 및 감독하에 둔다. 이 법률에 규정된 직무의 올바른 수행에 필요한 직원은 센서스 통계국장의 권고에 근거하여 필리핀 대통령에 의거 임명된다.

그 봉급율은 「정부에 있어서 문관의 지위의 분류 및 봉급의 표준화를 정하는 법률」에 의거 결정된다. 일단 센서스국이 조직된 뒤에도 필리핀 대통령은 센서스 통계국은 어떤 행정 각성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하에 두는 권한을 가진다.

제 6 조 : 센서스 통계국은 국장 1인 및 보좌관 1인을 둔다. 이는 각기 센서스통계국장 및 동국장보좌로 칭한다. 센서스 통계국장은 공화국 법률제 402 호 제 5 조제 9 항제 4 호에 기재

된 부국의장이 받는 봉급과 같은 액수를 받으며 센서스 통계국장보좌는 동법률 제 5 조제 9 항제 5 호에 기재된 부국장의 보좌가 받는 동액의 급여를 받는다.

센서스 통계국장 및 동국장보좌는 국민의회입명위원회의 동의하에 필리핀 대통령에 의거 임명된다.

제 7 조 : 농상무성 통계부의 권한 . 기능 및 직무 관세국 통계부의 권한 . 기능 및 직무는 센서스 통계국에 이관한다.

제 8 조 : 필리핀 대통령은 공화국 법률제 170 호의 규정에 의거 행하는 센서스의 완료 이전에 공화국 법률제 170 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서스 위원회로부터 센서스통계국에 직원 . 비품 . 미지출예산 . 기록 . 문서 . 소모품 . 기타의 자산을 이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9 조 : 필리핀 대통령은 1941년 6월 30일까지 이에 반하는 법률규정이 있어도 통계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공표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각 행정성청 기관으로부터 센서스 통계국에 통계의 수집 . 편집 . 공표 및 종사하고 있는 국과 또는 그 부분의 기능 . 예산 . 비품 . 자산 . 기록 및 직원을 행정명령에 의거 이관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에 의거 대통령이 취한 행위는 차기의 통상회기의 국민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국민회의가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5. 농업 경제국을 설치하는 법률(공화국 법률제 3627 호)

(정책 및 목표의 선언)

제 1 조 : 국민 경제의 다른 분야와 충분한 균형을 가지고 필리핀 농업의 전진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천연자원의 전분야에 관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수집 편집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상술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업 경제국을 설치한다.

제 3 조 : 이 법률에 의한 농업 통계는 광업 . 토지 . 어업 . 임업 및 광산업 또는 직업에 관한 천연자원의 통계를 포함한다.

(동국의 권한 : 기능 및 직무)

제 4 조 : 농업 경제국은 농업 천연자원성의 모든 국기관 사무국 및 부의 통계는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작물 가축 및 축산물에 관한 농업의 전 통계 및 기타의 관련통계의 수집 제표 분석 공표 간행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 5 조 : 광산 . 토지 . 어업 및 임업의 통계는 각기 광산국 . 토지국 필리핀 어업위원회 및 산림국에 의거 수집 취합 편집된다.

제 6 조 : 농업 경제국은 외교기관의 농업 보좌관으로 부터 농업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에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의 농업정보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 7 조 : 동 국은 농업조직 및 관리를 포함하는 농업 생산성 토지의 경제학과 농업개발 노동수요 농장간행 및 기계화 농장경비

및 수익 농업투자 금융신용 조세 및 농업경영의 성공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에 관하여 물가 외국무역 수송 재고 및 창고업 식량의 공급과 소비 농장 노동과 임금 농장수입 농장입구 전원의 조직 농업관계 법률규칙을 포함하는 주위의 후생 및 농업 시장에 관하여 농업의 경제조사 연구를 행한다.

제 8 조 : 농업 경제국은 농업 천연자원 장관이 농업통계 및 농업경제의 분야에 관하여 지시하는 기타의 활동을 행한다.

제 9 조 : 동 국은 작물 및 농산물 가축의 종류별 두수 생산형태 지역 및 주의 최종년도 추계를 작성 공표한다.

동 국은 : 보고서 또는 "팜프렛"의 형식으로 그 연구를 완결하는때로 공표한다.

제 10 조 : 동 국은 적어도 10 개의 농산물에 관하여 그 해의 수확량을 예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농업 경제국에 의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유효 적절하다고 보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농부 또는 단체로부터 수립할 수 있다.

제 12 조 : 농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통계의 형식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소집단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 : 농업 경제국은 특정의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이 필요할 시는 타정부 각 부국과 협정을 맺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제 14 조 : 농업 경제국은 농업 천연자원성의 타부국에 속하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농업성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그러한 계획이 농업 생산성을 증가하고 농민의 복리를 증
진하는 농림성 전체의 계획과 일치하는 가를 검토할 수
있다.

제 15 조 : 동 국은 농업 개발국과 공동으로 당해국의 현지 직원 및
설비를 통하여 농부에 대한 경제 교육을 촉진하는 조직
을 개발할 수 있다.

제 16 조 : 동 국은 농업사정을 개선하여 필리핀 농업의 효율과 생
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수단과 범위의 채택에
있어 연구 및 권고를 행한다.

제 17 조 : 농업 경제국은 현재의 농업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제 18 조 : 농업 경제국은 관련 경제부문을 포함하는 농업경제의 효율
적인 관리와 충분한 적용을 위하여 국장 1인 및 차장
2인을 둔다.

제 19 조 : 동 국의 장은 행정능력 및 농업경제 분야에 있어서 능
력을 인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언에 의거 필리핀 대통령
이 임명한다.

Ⅵ . 인도네시아의 統計制度

VI. 인도네시아의 統計制度

概 要

發展途上國의 大部分의 例가 그러하듯 인도네시아의 統計制度는 集中主義를 택하고 있다.

中央 統計局은 各種 統計의 實査와 國民所得, 통계분석, 통계개발, 통계상담 및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各 국을 設置하고 있다.

주 및 현의 수도에는 中央統計局的 지국이 있으며 인건비를 위시한 必要한 經費는 中央政府가 負擔하고 있다.

中央統計局外에도 中央政府의 부서에 통계부과를 두고 있지만 그 통계는 個個의 機關이 必要로 하는 행정통계적 性格을 띄고 있고 全國的規模의 統計調査는 모두 中央統計局에서 실시하고 있다.

中央統計局은 광범위한 分野에 걸친 統計調査外에 타기관이 실시하는 統計調査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타기관의 統計活動에 대한 調整을 행하고 용어 및 정의의 통일 標準分類등의 事業을 실시하는등 중요한 업무를 띄고 있어 인도네시아 統計制度의 핵심이 되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組織의 變遷

中央統計局은 1925년 5월 1일에 "자카르타"에 세워진 和蘭統治下의 中央統計局으로부터 계승된 것이다.

그 당시 中央統計局의 業務는 商業統計, 輸出入統計, 農業統計, 형사통계 敎育統計, 物價統計, 농원의 임금통계, 工業統計 家計消費統計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1930년에는 人口調査가 실시되었다.

中央統計局의 設立은, 和蘭本국에서 採択되고 있는 統計活動의 中央集權化案을 實現한 것이다.

和蘭本국에서 實現되어 成功한 中央의 國家統計組織은 1941년에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도 實行되었다.

인도네시아 社會의 經濟生活에 대한 和蘭總督府의 간섭은 국가 수입에 영향을 미칠 지역에 制限되어 있었으며 法秩序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中央統計局은 總督時代의 一般事務局에 의한 통계 수집活動을 계승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經濟社會發展에 관한 개발적 報告書로서 동인도 報告書의 제2부의 내용을 形成하고 있으며 和蘭政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中央政府의 政策을 간단히 記述할 目的으로 作成된 것이었다.

동인도 보고서의 一部는 中央統計局自體의 사업성과였다.

통계조례가 發表된 1934년 이후 새로운 統計의 작성은 이 조례의 規定에 根拠하여 이루어졌다.

日本의 식민지 支配下에서는 上述한 機關은 軍政官部 總務部 調査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設置되어 「자카르타」에 둔 日本 陸軍本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 당시는 「인도네시아」와 外國의 關係가 斷絶되고 國內의 經濟活動이 沈滯되어 統計業務도 감소하였다.

終戰後 聯邦政府가 成立된 뒤 中央統計局은 「자카르타」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當時 中央統計局은 다음 事項에 關하여 큰 地障을 느끼고 있었다.

1) 統計面에 있어서 教育 또는 전문인재가 不足하였다는 점이다. 그 당시 有關인 指導者는 本國에 돌아가고 「인도네시아」인만이 남게되어 그들은 統計業務에 오래 從事하지도 않았고 教育도 充分히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統計機構를 創設하고 既存 統計를 改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實情이었다.

2) 1930년 이래 人口센서스가 實施되지 않았기 때문에 人口에 關한 正確한 資料를 얻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最新의 人口資料는 여러곳에서 必要로 하고 있었고 農業이나 工業分野의 構造에 關하여도 핵심적인 情報가 없어 매우 불편하였다.

上述한 問題때문에 政府는 그뒤 國家 統計事業委員會를 設置하였다.

이 委員會議의 長은 內閣의 閣부가 任命되었으며 委員會의 任務는 中央統計局에 맡겨진 모든 業務에 關하여 政府에 意見을 陳述하는 것이었다.

委員會는 公表될 必要가 있는 統計에 關한 지시를 하고 中央統計局이 作成하지 않으면 안되는 統計를 따로 区分 研究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뒤 委員會는 中央統計局에 中心的인 地위를 부여하여

內閣 總理大臣의 權限下에 두도록 政府에 勸告하였다.

1957 년에 中央統計局은 大統領 命令 (1957 年 제 172 號) 에 의거 通産省으로부터 內閣 總理大臣의 權限內에 移管되었다.

業務의 책임은 直接 總理大臣에게 주어지고 職員과 財政의 管理는 國務長官이 행하였다. 그 당시의 首相의 지도하에 10 年 간의 統計開發計劃이 作成되었으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統計面에서 충분히 教育 받은 인재의 確保
- 2) 今後의 統計發展을 위한 重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센서스
의 實施
- 3) 統計나 센서스에 關하는 法律制定
- 4) 統計는 다른 機關으로부터 蒐集됨과 동시에 統計局 自体
組織으로 調査를 行한다.
- 5) 새로운 統計를 開發하고 基本 統計內容을 改善하는등 任務
를 遂行하는 機構의 設置

최초의 10 年間 國家 統計開發計劃을 推進한 結果 中央統計局 業務를 위하여 만족할만한 熟練家가 確保되고 일련의 組織과 장비가 整備 設置되었다.

2. 統計機構

1) 中央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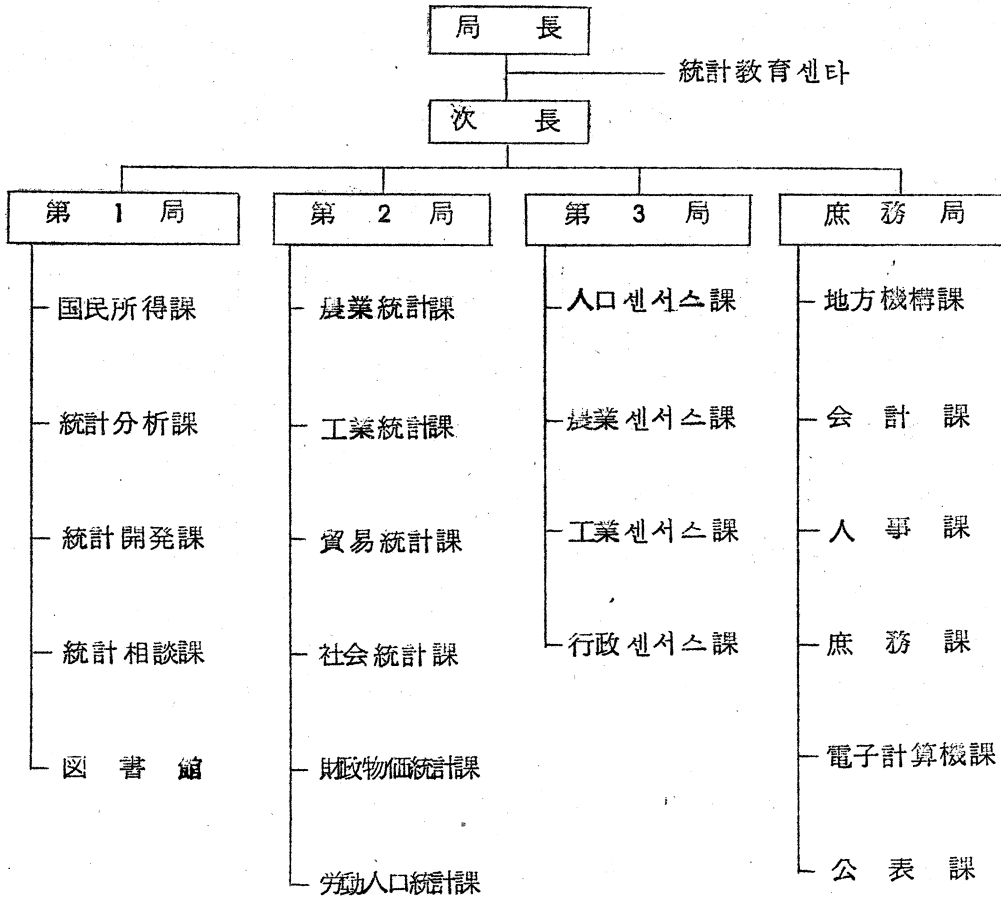
① 中央統計局

最初는 中央에 단일 기관으로 統計局이 설치되었으나

이국에 「센서스에 관한 1960년의 法律 제6호」로 새로운 業務가 부과됨에 따라 機構를 擴張하게 되었다.

1) 組 織

현재 中央事務局은 「1968년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결정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組織되고 있으며 그 조직기구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별도로 국장산하에 統計教育센터가 設置되어 있다.



ii) 所管業務 및 權限

中央統計局의 所管事務 및 權限에 관하여는 統計에 관한 1960년의 法律 第7号에 규정되고 있지만 簡單히 記述하면 다음의 3가지 점이다.

㉠ 政府 및 中央統計局에 委任된 統計活動의 遂行

㉡ 모든 中央 政府機關 및 地方政府機關의 統計活動의 綜合調整

㉢ 國民에 대한 統計의 유용성과 목적 P. R.

從來의 統計의 대부분은 다른 行政機關의 행정 부산물이 作成되고 있었다. 그러나 現在는 각종 法律에 의거 中央統計局이 스스로 調査를 행하고 있다.

또 綜合調整에 관하여는 農業委員會, 住宅問題委員會, 國民 산업성 등의 統計活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

統計資料 作成을 위하여 他機關으로부터 支援 要請이 있을 때는 中央統計局의 장비가 許容하는 限 支援하고 있다. 그리고 國民에 대한 계몽선전에 관하여는 1961년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때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다른 센서스나 중요 조사가 실시될 때는 반드시 擧前에 中央統計局이 調査目的에 관한 설명을 全國民에게 실시하게 되었다.

iii) 予 算

中央統計局의 收支予算은 國務大臣이 擘畫하고 최고 국가 조직부 予算에 屬하고 있다.

中央統計局의 予算은 中央統計局用과 센서스부용의 2개의 部門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現在 中央이 행하는 調査와 統計發展에 所要되는 예산은 開發予算으로 調達되고 있다.

매 3個月마다 國務省 長官은 中央統計局長의 요구에 대하여 予算執行 承認을 하고 이 承認內訳은 뒤에 中央統計局長에 의거 주센서스 및 統計局的 會計公務員에게 통보된다.

iv) 職員

統計職員은 中央統計局에 1,460명, 각주에 1,439명 각현 지구사무소에 4,602명 總計가 6,501명의 職員 및 調査員이 勤務하고 있다.

v) 刊行物

中央統計局的 業務의 성과는 해설서의 形式으로 月報, 期報, 年報로 發表되고 있다.

통계숫자는 政府機關에 配付되지만 자세한 情報나 特別한 情報를 必要로 하는 諸機關은 직접 中央統計局에 찾아온다.

統計의 公表는 中央統計局的 예산이 허락하는 範圍内에서 가능한 많이 公표되고 있다.

中央 統計局에 있어서 國民의 統計刊行物에 대한 수요판단은 곧 統計의 生産이 社會에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基準이 되어있다. 또 금일 統計에 대한 需要者로부터의 建設的인 비판은 統計의 改善의 推進力으로 매우 有用하다고 判斷되고 있다.

原則적으로 中央統計局은 社會의 重要한 現象을 表示하는 豊富한

資料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유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新聞에 게재하고 또는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행하고 있다.

vi) 정부내의 地位

1960년의 統計法 제7호에 의하면 中央統計局은 最高 幹部會內閣의 所屬下에 두고 있었으나 1965年 4月28日부터 國家 조사대신 밑에 조사통계국을 두게 되었다. 이는 국가 조사대신에게 中央統計局을 移讓하는 大統領 決定 제92호의 서한에 의거 실시되었다. 이 결정을 한 理由는 現在 #인도네시아# 革命과 부흥의 段階에서 首相의 監督下에 있는 中央統計局의 地位를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뜻이 記述되고 있다.

前記 決定書에 依拠 中央統計局은 首相으로부터 組織管理에 관한 效果的인 方法을 摸索하고자 국가 조사대신 지휘하에 두게 되었다.

② 其他 中央機構

中央統計局外에도 중앙부성에 통계부국이 設置되어 있는 곳이 있으나 그 活動은 오로지 行政目的을 위한 一般行政 統計資料의 單純한 取捨 또는 정리 발간에 그치고 있고 全國的規模의 統計調査는 거의 中央統計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地方機構

1961年の 人口센서스 1963年の 農業센서스, 1964年の 工業센서스등의 實施에 따라 각주의 수도에 中央統計局의 지국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地方事務所는 센서스 實行을 위하여는

中央統計局 予算으로부터 費用을 支給받고 있다.

1961年 以後 組織的으로 職員이 地方에서 任命되었다.

1964年 1月 29日에 「센서스 및 中央統計局 構造에 관한」인도네시아 共和國 大統領 결정 (1964年 第 47号)」이 發表되어 센서스국은 民政국 部門에 속하고 있었으나 中央統計局 지부도 개편 되었다.

地方 常設機構의 存在에 의거 統計資料蒐集 技術教育을 받은 人材가 어느 정도 確保되었으므로 센서스 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臨時 統計調査員을 大量 確保하여야 할 必要性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常設機構가 設置됨으로써 調査 또는 센서스의 經費를 節約할 수 있게 되었으며 其他 統計業務中 定例的인 業務가 制限되어 統計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作成할 수 있게 되었다.

現在 각주의 수도에는 주센서스 및 統計局이 있고 각 현의 수도에는 현의 센서스 및 統計局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地區 事務所에 統計職員이 있다.

3) 統計教育機關

1957年 3월 27일 到 開催된 各省 民間의 代表者 會議는 「인도네시아」가 높은 水準의 統計研修機關을 가질 必要가 있다는 뜻의 결의를 하고 1958年 8월 11일 到 「인도네시아」 共和國 首相 결정서에 의거 統計學院이 設立되었다.

그 運營에 관한 모든 事務는 中央統計局에 委任되어 있다. 이 學院은 首相에 의거 任命된 委員으로 構成되는 「監督會議」에 의하여 監督을 받고 있으며 委員은 議長으로서의 統計局長外에 國務

省의 代表 1명과 高等教育科学省의 代表 1명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学院은 每年 40名 정도의 卒業生을 내고 있으며 1학년, 2
학년, 3학년의 과정이 있고 每学年마다 40名 정도의 學生을 教
育하고 있다.

교관의 任命은 統計学 学院의 理事의 推薦에 의거 高等教育 과
학대신의 承認을 얻어 행한다.

統計学院의 교관은 常勤講師와 非常勤講師로 하고 약간명의 조수
를 두고 있다.

교관은 처음에는 大部分이 外國人の 專門家 (Colombo plan
또는 UNDP計劃에 의한) 들로 構成되었으나 차츰 內国人 專門家
로 代替되었으며 現在는 內国人 교관만 16명이 있다.

卒業生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① 統計學士의 稱호를 얻은 학생은 外國에 가서 高等統計学
의 研究를 繼續할 수 있다.

② 卒業生은 配置된 省 또는 局에서 繼續 勤務하도록 한다.

이 学院의 入学條件은 다음과 같이 区分되고 있다.

첫째 卒業後 中央統計局에 勤務하는 職員의 條件

- ① //인도네시아// 國籍을 가진 男, 女
- ② 国立高等学校의 卒業資格을 가진 者
- ③ 健康한 身體를 가진 者 (의사진단서 必要)

④ 品行이 단정한 者

⑤ 教育 修了後 적어도 中央統計局에 3年間 勤務하여야 함.

⑥ "試驗委員會"가 實施한 試驗에 合格한 者

둘째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學生의 條件

① "인도네시아" 國籍을 가진 男, 女

② 高等學校(國立)의 數학과 卒業資格을 가진 者

③ 健康한 身體를 가진 者(의사의 진단서 必要)

④ 品行이 단정한 者

⑤ 파견될 省 또는 局에서 推薦받은 者

셋째 其他

統計學院의 도서관은 여러나라의 國際資料, 政府資料 및 民間 團體의 書籍, 雜紙類, 諸報告書 및 여러가지 出版物을 구비하고 있다. 또 學生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統計를 研究하도록 "인도네시아" 國內의 各種 統計資料를 충분히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統計學院은 學生의 실습용으로 電子計算機, 수동계산기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며 中央統計局의 資料處理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1965년 8월 25일 "인도네시아 大學과 中央統計局間의 協力 約束調印"으로 統計學 學院은 진일보하여 "統計學 上級學校"로 改稱되었다.

關聯 報告書에 다음 事項을 두고 있다.

“ 1965年 8月 25日 調印된 “인도네시아” 大學과 中央統計局 相互間의 協力契約에 의거 인도네시아大學과 中央統計局間의 共同協力으로 統計學 上級學校를 設立한다 ”

上述의 調印에 의거 統計學 學院은 “인도네시아” 大學의 數學 物理學部와 接觸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쌍방에서 學生의 入學 條件, 教育年度 등 諸條件에 관하여 合意에 到達하여 同學院은 現在 運營되고 있다.

二. 統計法規

1. 公業센서스 실시에 관한 1964년 정부명령 제16호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① 1963년 3월 28일의 "경제선언"중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국민잠재력의 분포와 세력을 정확히 계산하여 규칙에 입각한 계획 실시를 기초로 지도된 국민경제를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

② 인도네시아 사회주의의 방향을 취하는 국민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여러 경제분야에서 국민정세와 국민활동에 관한 올바른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③ 특히 제품제조, 광업, 전화 및 서비스의 조달분야에 있어서 국민경제상태와 활동에 관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업센서스 실시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제5조 제2항에 의거

① 센서스에 관한 1960년의 법률제6호의 제3, 4, 5, 6, 7조(1960년 법령공보제105호)

② 잠정국민협의회 결정

③ 1959년 대통령 결정제6호제14조제2항 중앙통계국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1964년 대통령 결정제47호 공업센서스 실시에 관한 정부명령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제1조: 중앙통계국은 전 "인도네시아"에 있어 대기업 중소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업·광업·전기·가스의 상태에 관한 양적인 제반 정보를 수집코자 1964년 공업센서스를 실시한다.

공업센서스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기업의 형태, 기업의 종류 및 외자의 투입상황
2. 자재의 증가 감소
3. 동력기계의 사용
4. 사업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작업노동시간
5. 노동력 및 지불요금
6. 기초재료 및 기타 자재구입과 사용
7. 연료·정유 및 전력 소비
8. 기타 종류의 생산지출
9. 생산고 및 기업생산물 판매의 통계
10. 기타 사항

제2조 : 중앙통계국장은 제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부성과 연락을 취한뒤 다른 여러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 지방에 있어 중앙통계국의 지국이 1964년의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결정에 근거하여 설립될 때까지는 1961년의 인구센서스 및 1963년의 농업센서스 실시때의 조직을 공업센서스 실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제4조 : 중앙통계국장은 공업센서스 실시에 있어 통계 이용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조사실시의 편의도 고려하여 조사양식과 방법을 결정하고 조사의 실시시기 및 조사지역을 결정한다.

제 5 조 : 이 조사의 비용은 센서스에 관한 조항에 따라 중앙통계국 예산으로 이를 부담한다.

제 6 조 : 중앙통계국장은 이 센서스 실시에 필요한 보수·상여·보조금·보험금 및 다른 지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 센서스 실시에 즈음하여 각기관은 중앙통계국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한다.

제 8 조 : 이 정부의 명령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농업센서스 실시에 관한 정부규칙

제 1 장 농업센서스 실시의 성격과 방법

제 1 조 : 이 규칙에서

1. 센서스란 1963년의 농업센서스를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산물을 수확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함.
3. 농산물이란 재배·축산·어업의 산물을 말한다.
4. 조사원이란 농업센서스업무, 특히 특별조사와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 이 센서스의 종류 또는 성격은 표본조사식의 센서스이다.

전 농민이 조사되지는 않지만 농업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 3 조 : 센서스 실시는 중앙통계국에 의거 행하여진다.

제 4 조 : 특별한 이유에 의거 센서스를 보충 방법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지방에 있어서는 중앙통계국장이 간단한 방법에 의한 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 센서스 질문표에 포함시켜야 할 질문의 종류와 수는 중앙통계국장이 정한다.

제 6 조 : 조사원은 그 임명장에 정하여 있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즉,

1. 선정 지역의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일
2. 센서스 질문표에 기입하기 위한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질문권
3. 조사원이 특별히 수행하여야 할 일

제 7 조 : 선정된 범위내에 있는 주거를 가지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사원이 전조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것.
2. 가사·농사작업에 관하여 조사원의 질문에 진실한 내용을 설명할 것.
3. 농업조사의 결과를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사원이 측량을 행하고 소규모의 시험조사용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4. 정부 또는 민간의 각단체, 각기관, 각사무소는 필요할 때 센서스 실시자의 요청에 의거 노동력·의견·도구등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기 구

제8 조 : 중앙통계국장은 센서스 실시에 관한 완전한 작업 계획과 규칙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언을 부여하기 위한 작성간 위원회의 보좌를 받는다.

센서스 결과의 정리·발표는 중앙통계국장이 행한다.

제9 조 : ① 중앙통계국장은 1961년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주 및 현의 통계국지소에 대하여 센서스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지사는 그 지방에서 센서스를 잘 진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정돈하여야 한다.

주지사는 주 및 현의 통계국 지소에 위탁된 센서스 작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직원중 책임자를 지명한다.

센서스를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여 주지사는 제일대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임시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센서스 활동은 조사원에 의거 행하여진다.

군의 책임자, 촌장 또는 그대리의 감독하에 직원의 보좌를 받는다.

④ 지방에 있는 조사원은 중앙통계국장의 지시에 의거 통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요 원

제 10 조 : 중앙통계국장은 통계국지소 직원의 구성을 결정하고 전조 제 3 항에 규정한 조사원의 조사일정을 정한다.

제 11 조 : 제 9 조 제 2 항에 규정한 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직원을 말한다.

1. 위탁되어 2 가지 자업을 동시에 행하는 일반 행정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새로히 고용한 직원
3. 임시고용원

제 12 조 : 현지사는 제일대신의 이름으로 각지방의 조사실시를 위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규정된 직원을 임명할 수가 있다.

제 13 조 : 1. 제 9 조 제 3 항에 규정된 조사원은 현지사에 의거 임명 또는 해임된다.

2. 주 및 현의 조사원의 수 및 그들의 가산금·보수액 등은 중앙통계국이 전한다.

제 14 조 : 주지사는 조사실시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업국·어업국·축산국·산림국·관개국·농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농업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 4 장 경 비

제 15 조 : ① 제 16 조에 말하는 사무소 경비를 제외한 직원경비·사무용품·구입비·훈련비·교통비·기타 조사실시에 관한 경비

는 최고국가기관의 세출규칙에 근거하여 중앙통제국에 의
져 부담된다.

기타의 경비란 사례·보수·순직금·가산금을 의미하며 누
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가는 현행의 일반 규칙에 근거하
여 중앙통제국장이 정한다.

②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아닌 임시고용원으로 조사중
또는 그 업무를 행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
산상속인 또는 미망인에게 순직금과 위자료를 지급한다.

제 16 조 : 센서스 사무소에 위탁된 국가공무원의 급료와 일반 가산
금은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써 임명된 사무
소의 회계를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 17 조 : 제 1 대신은 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당해 지방의 센서스
경비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에게 대하여 중앙
통제국 회계로부터 경비지출의 결정서를 낸다.
주지사는 주현에 있어서 조사부 또는 국가행정관리를 지
명하여 위탁한다.

제 18 조 : 이 정부규칙에 정하는 외에 센서스의 실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중앙통제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국과 상담한 뒤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할 수가 있
다.

제 19 조 : 이 정부규칙은 법제화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3.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 조직규칙

중앙통계국 지위와 조직에 관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명령 (1968년 제16호)

제1장 위치

제1조 : 1960년 법률제7호에 의거 중앙통계국을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제2장 주요 임무

제2조 : 중앙통계국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제사회발전과 조직에 관하는 모든 통계활동의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및 공표를 한다.
2. 통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의 목적과 이익을 널리 국민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

제3장 기능

제3조 : 전조에 규정된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통계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다한다.

1. 통계보고 의무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비용의 절약과 통계업무의 중복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앙 및 지방의 양면에서 정부·민간기관의 모든 통계활동을 조정한다.
2. 통계부문을 통하여 작성의 활동 목적에 부합한 계획 작성에 요하는 통계 및 각 주무 대신의 업무보고 작성을 위한 통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노동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

질서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한다.

4. 국제조직·외국조직과 공동 사업을 행함으로써 통계기술을 높인다.

제 4 장 중앙과 지방의 조직

제 4 조 : 제 2 조 및 제 3 조에 기술한 중요업무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통계국은 다음 조직을 가진다.

1. 중앙사무소 (중앙통계국이라 칭한다)
2. 지방사무소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이라 칭하며 중앙통계국의 지국의 위치를 가진다)

제 5 조 : 1. 중앙통계국 (중앙사무소)은 직무 수행기관인 국과 보조기관인 서무국으로 나눈다.

- 즉, 제 1 국 (연구 및 분석) · 제 2 국 (경상적 통계) · 제 3 국 (센서스) · 제 4 국은 서무국이라 한다.
2. 각국과 서무국은 그 활동목적이 되는 대상 분야에 따라 부로 나눈다.
3. 각부는 관계있는 부분의 일을 포함한 특별한 통계를 수행하는 과로 나눈다.
4. 부 및 과의 구성은 중앙통계국 국장 결정에 의거 자세히 규정된다.

제 6 조 : ①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은 각주·현에 설치된다.

②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의 구성은 중앙통계국장의 제안에 의거 국무대신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통령 결정으로 규정

한다.

③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의 임무와 조직은 중앙통계국 국장 결정으로 규정한다.

제 5 장 행정지도

제 7 조 : ①중앙통계국은 통계활동 수행의 책임을 지는 중앙통계국장 1명이 지휘한다.

②중앙통계국을 보좌하기 위하여 중앙통계국장 대리 1명을 둘 수 있다.

③각국은 중앙통계국장의 직무수행에 있어 각국장 1명이 지휘한다.

중앙통계국 서무국은 중앙통계국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행정관 1명이 지도한다.

각부는 관계국장 또는 행정관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장 각 1명을 둔다.

각과에는 관계 부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과장 각 1명을 둔다.

제 8 조 : ①주 및 현의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은 각각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장 1명이 지도한다.

②각 행정구역에서는 관계있는 현의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의 직원인 관리 1명을 임명하여 행정구역의 장의 감독하에 둔다.

③지방센서스 및 통계국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제 10 조에

규정한다.

제 9 조 : 전 2 조에 규정한 중앙통계국의 상급 직원의 임명·해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통계국 국장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파면한다.

② 중앙통계국장 대리·각국장·서무국장은 중앙통계국장의 제안에 의거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해임한다.

③ 각부장 및 과장은 중앙통계국장이 임명·해임한다.

④ 주 및 현의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장은 지방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통계국장이 임명·해임한다.

제 6 장 지방센서스 통계국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제 10 조 : ① 주·현의 지방센서스, 통계국은 기술적 행정 지도를 포함하는 중앙통계국장의 계획에 따라 운영상·각주장관·현지사·시장의 하에 둔다.

② 정책결정과 계획에 요하는 지역적 통계자료에 대한 지방 정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외의 준비는 관계 지방정부가 행한다.

③ 지방센서스 및 통계국과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는 사항을 각 주지사·지방 행정책임자가 국무대신 및 중앙통계국장의 지시에 의거 규정한다.

제7장 예산

제11조 : 중앙통제국의 예산은 중앙 기관의 예산에 의존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12조 : 이 명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정, 규정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13조 : 이 명령, 규정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센서스에 관한 법률(1960, 법률제6호)

제1조 : 센서스는 다음 각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구센서스·주택센서스·농업센서스·공업센서스·종교·사회경제센서스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이외의 경제사회 현상에 관하여 일정 시기에 전국 또는 특정 지역에 걸쳐 특성을 알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것.

②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고 편집하여 이를 공표하고 또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또는 사회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제2조 : 센서스의 실시는 중앙통제국에 위탁된다.

제3조 : 인구센서스는 1961년에 행하고 매 10년마다 행한다.

인구 이외의 센서스는 적어도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정부규칙"에 의거 규정한다.

제4조 : 중앙통제국 국장은 전인도네시아에서 행하는 센서스를 준비·시행·지도하고, 또 조사지구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지국장은 정한 조사구의 범위내에서 센서스 실시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 센서스 담당관은 지국장 또는 지국장의 지시로 받은 관리에 의거 조사기간중 임명된다.

각 담당관은 임명장이 교부된다.

중앙통계국장은 이들의 보수를 정한다.

제 6 조 : 전조 제 2 항에서 규정된 임명장을 소지하는 센서스담당관은 센서스실시 필요상 가옥내 · 건물구내 · 종교의식의 장소 · 농지 · 사업장내에 들어갈 수 있고, 조사지역내의 교통기관은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 센서스 실시 기간중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기관은 센서스 실시를 원활히 행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 중앙통계국 국장 · 지국장 · 센서스 담당관은 센서스에서 얻어진 정보를 결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일시적인 집계결과 또는 지역적 성격을 띠는 센서스 결과의 공표는 중앙통계국장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지국장에 의거,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다른 담당관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제 9 조 : ①이 법률에 의거 시행된 센서스 진행을 고의로 혼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폐를 끼치는 자에게는 최고 1년의 형,

또는 2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② 제7 조에서 의무가 과하여진 협조를 하는 일에 고의로 거절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000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③ 센서스의 실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자가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6개월 이하의 형, 또는 1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조 제1 항에 규정된 기밀을 고의로 공개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악용한 담당관은 6개월 이하의 실형, 또는 1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⑤ 의무를 태만히 한 센서스 담당관은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000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

제10 조 : 이 법률은 1960년 센서스법이라고 칭하고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5. 통계에 관한 법률 (1960년 법률제7호)

제1장 총 설

제1 조 : ① 「통계」란 인도네시아의 모든 특정 활동 및 정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숫자의 형태를 취한 여러가지 정보를 말한다.

② 「통계활동」이란 숫자의 형태를 취한 여러가지 정보의 수집·편집 및 분석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중앙통계국)

제 2 조 : 중앙기관으로써 내각의 조직내의 중앙통계국은 다음 통계 활동을 행한다.

1. 중앙통계국은 정부에 의거, 맡겨진 통계활동은 농업·농지·광업·공업·통신·무역·노동·금융·국민소득·교육·종교의 분야에 이른다.
2. 중앙통계국은 정부의 이름으로 그 이외의 기관에 의한 동일한 조사를 행함을 금지하는 방침을 가지고 중앙 및 지방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의 통계활동의 조정을 기하고 정의·분류·유모표준 기타의 적용등 일률성을 확보한다.
3. 중앙통계국은 통계조사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통계의 방침과 통계의 이용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4. 중앙통계국의 구성과 조직은 정부 규칙에 의거 규정한다.

(국가통계자문위원회)

제 3 조 : 국가통계자문위원회는 국가계획 회의의 대표자, 중앙통계국장을 포함하는 작성의 고급 관리로 구성되며 약간의 전문적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국가통계자문위원회는 통계작성 항목 실시 방법과 조직 조사실시자에 대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국가통계자문위원회는 정확한 권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

로 인정할 경우 제3자의 설명·의견등을 요청할 수가 있다.

제2장 통계조사의 실시

제4조 : ①중앙통계국은 정부에 의거 과하여진 통계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동국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직원 또는 기타 관계인을 소환할 수가 있다.

②중앙통계국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연락 및 토의를 행한 뒤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시달하고 통계업무를 상기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통계조사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갖추는 것.
2. 기록 내용에 포함시킬 사항을 조사하는 것.
3. 여러가지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검토하는 것.

(조 정)

제5조 : ①통계활동의 조정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정부의 각기관에 있어서의 통계 업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그 소속기관이 통계활동을 행할 경우 사용될 조사 내용의 실례와 그 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중앙통계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통계조사 실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부의 각기관은 통계업무 사항에 있어 당해 기관의 이용에만 필요한 통계를 제외한 기타 통계조사의 사본을 반드시 중앙통계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고의 의무)

제 6 조 : ①통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특별한 임무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통계국 또는 다른 정부기관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울수 있다.

②정부는 중앙통계국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대하여 통계활동의 필요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간행물 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③국가 통계자문위원회의 해석에 의거 수속상 얻어진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이 법률에 의거 제출된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밀보호)

제 7 조 : ①개인 또는 단체에 관하는 개개의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계 활동을 수행할 임무를 진 직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얻은 정부 및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 8 조 및 제 9 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정부는 국가통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게 될 정보를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별 칙

(통계 직원에 대한 별칙)

제8조 : 통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체형 또는 1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고의로 허위의 정보 제공 또는 작성에 조력한 자.
3. 소관사무 이외의 정보를 구하거나 또 구하려고 지도한 자.

(신고자에 대한 별칙)

제9조 :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 통계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1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통계직원으로부터 요청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표의 기재를 이행치 않고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자.
3.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간행물 및 서류를 제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10조 : 제6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은 정부의 임무로서 또는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얻어 실시된 통계활동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제11조 : 통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이 법률은 1960년 통계법으로 호칭되며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VII . 스 리 랑 카 의 統 計 制 度

Ⅶ. "스리랑카"의 統計制度

概 要

「스리랑카」의 官庁 統計作成 業務는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 필리핀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統計 組織이 政府機構안에 상설된 것은 1921年以後이며 이때까지는 人口 센서스시행시마다 임시로 局을 設立하였다. 최초의 상설통계국은 「센서스국」으로 1921年 人口센서스 실시를 위한 것이었다.

이 局은 以後 「人口登錄局」으로 統稱되어 1936年에 다시 商工省으로 移官되었다.

1948年 센서스統計局을 大藏省안에 두고 中央統計主管局으로서 役割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센서스統計局은 각종 센서스를 위시하여 주요한 統計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各省에서 하고 있는 統計業務에 대하여서 지도 조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또 各省의 統計担当者들은 대개 센서스統計局長 관할하에 있다. 各省에 分散되어 있는 統計業務는 一般行政과 密接한 業務資料 取扱을 주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統計機構는 말하자면 집중형 통계기구라 할수 있다.

地方統計構造로 全國에 22개의 District의 行政機關이 있으며 각기 統計担当者 1名과 統計調査員 2名이 센서스統計局에서 配置되어 있고 이들 統計担当자와 調査員은 스스로 統計調査를 할 뿐만 아니라 人口센서스등 大規模調査를 할때에도 調査員에 대하여 指導 訓練 監督을 實施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1935年에 統計法

이 시행되어 그後 부분적 改正을 거쳐 현재 中央 및 地方政府의 統計業務에 관한 기본법으로 되어있다.

一. 統計 組織

1. 統計組織의 變遷

「스리랑카」의 統計活動은 東南아세아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 필리핀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年以前에는 統計組織이라고 뚜렷한 것은 없었다. 1900年 센서스規則 第9條에 의거 實施하는 人口센서스때마다 수시로 국(Department)이 설치되었다.

1920年에 이르러 1921年 人口센서스를 위한 센서스국(Census Department)이 설치되어 센서스를 끝낸 뒤에도 계속 存続되어 각종의 統計資料를 蒐集하는 機關으로 存続하여 왔다. 1931年에 「도누모루」憲法(Donoug more Constitution)이 公布되자 이제까지의 센서스국은 人口登錄局으로 統合되어 人口登錄局的 센서스部(Branch)로 개칭되었다. 1936年에는 1935年 統計規則 第44號가 制定되었다. 이 規則에 의거 통계전담부국을 두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人口登錄局에 있던 센서스부의 經常統計 作成業務가 새로이 商工省(Department of Commence and Industries)으로 옮겨 統計部가 되었다.

그 뒤 1900年度에 센서스規則이 制定되어 센서스국이 다시 設立되었다. 1946年度 人口센서스 종료 후 다시 中央統計局的 設立이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고 1948년에 센서스統計局을 大蔵省안에 두고
이제까지 商工省内에 있던 統計部도 여기에 합병하게 되었다.

2. 統計機構

1) 中央機構

① 센서스統計局

「스리랑카」의 統計中央官庁은 센서스統計局이다. 完全한
統一的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어느정도 強力한 權限을 가지고 中央
政府의 統計活動을 統制하고 있다. 센서스統計局은 人口센서스를 위
시하여 工業센서스, 家計調査, 小売物価調査, 物価指數 作成, 農藥標本
調査, 農業센서스등을 실시하고 있다. 센서스統計局이 이삼과 같이
統計調査 實施機關으로서 중심적 役割을 하는데 비하여 다른 省庁에
있는 統計部課는 주로 業務에 관한 일반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말
하자면 人口動態統計는 內務省의 登録局, 生産動態統計는 鉦工業 및
漁業省에서 作成하고 있다.

1) 센서스統計局的 機能

센서스統計局은 「스리랑카」정부의 中央統計官庁으로서의
責任을 지고 있다. 그것은 이 局이 각종 센서스를 위시하여 主
要 統計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各省에서 行하고 있는 統計業務의
指導와 調整 權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各省의 統計業務에 대
한 調整 技能은 1951會計年度에 首相의 命令에 의거 센서스統計局
은 政府로부터 要求하여 오는 모든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責任을 지도록 되어있다.

이 權限行使와 義務履行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各省의 統計담당들의 대부분은 센서스統計局長 管轄下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統計担当者를 두고 있는 정부부국의 장은 그 部局에서 제출하는 報告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統計에 대하여는 이들 統計担当者의 檢印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그와 다른 政府部局도 報告書에 表示된 統計가 센서스統計局長이 내놓은 統計와 틀림이 없도록 格別한 주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藏省大臣은 各省에게 通報하여 國民을 対象으로 실시할 統計調査票의 樣式 및 調査事項등에 대하여 사전에 센서스統計局長의 審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

ii) 센서스統計局과 地方政府機關의 統計活動과의 關係

「스리랑카」의 行政組織은 우선 9개의 州 (Province)로 나누이고 다시 22개의 道 (District)로 構成된다. 그러나 行政적으로는 Province는 別로 뜻이 없고 District에 Kacher라고 稱하는 政府機關을 두고 있다. 그것은 다시 107의 D.R.O. Division (Divisicmal Revencre Officer : 郡徵稅官管区)로 나누어지고 그 아래에 約 2萬의 村 (Villages)이 있다. 그 村을 몇개로 (다섯개정도) 묶어 管轄하기 위하여 約 4,000개의 事務所가 있다. 한개의 村의 인구는 平均 約 450名 정도로 작은 것이다. 村에는 「베루비타네」 (Vel Vidane)라고 부르는 部落長이 있다.

이는 修理事業등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部落民 中에서 指名하며 農業統計등을 맡고 있다. 地方 県 (District)에는 大都市議會 또는 中小市議會가 있다.

센서스統計局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中央政府 統計蒐集活動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있으나 또한 地方政府의 統計蒐集活動에 대하여도 責任을 지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地方政府에 걸친 統計蒐集은 센서스統計局에서 하고 이것은 全國에 22개가 되는 District에 있는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統計担当者와 統計調査員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District에는 統計担当者 1명과 數名の 統計調査員은 常勤職員으로 雇傭된 者 들이다. 이들 統計調査員은 또 調査가 洞과 村에 걸쳐 실시될때는 第一線의 調査員으로 종사하는 Grama Sevakas 라고 불리는 者와 耕作委員會 (Cultivation Committees) 의 代理者에게 訓練, 指導, 監督등을 행하고 있다. 센서스統計局은 District에 配置되어 있는 統計担当者와 統計調査員의 雇傭 및 訓練에 責任을 지고 있다.

iii) 센서스統計局과 統計利用者

말하자면 통계는 行政機關과 民間에서 使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아무리 正確한 統計일지라도 使用하지 않는 統計는 統計로서의 價值가 조금도 없다. 統計를 만드는 機關이 統計를 利用하는 者로부터 獨立되어 있을때 利用者의 要求에 充分히 따르지 못한채 統計가 作成되기 쉽다. '스리랑카'에 있어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委員會制度가 센서스統計局에 設置되었다. 委員會에는 다음 네가지가 있다. 즉 ① 人口統計委員會 ② 商業 및 鉞工業委員會 ③ 農業 및 社会奉仕委員會 ④ 国民經濟計算委員會 등이다. 이 委員會는 1965年 1월에 새로이 設立된 것으로 이것이 設立됨으

로서 센서스統計局에 있던 8個課는 廢止하게 되었고 센서스統計局의 業務는 주로 이 네개의 委員會制度 아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委員會에 議長은 센서스統計局長의 指導 監督아래에 있는 局次長 또는 해당업무에 정통한 上級 統計官이 任命된다. 議長은 委員會 運營 및 該當分野 統計業務 遂行의 責任을 진다. 委員會의 委員은 各 委員會의 統計業務와 關係를 가진 政府 各部局의 統計官과 國家計劃 經濟調查省 및 中央銀行調查部の 代表者로 選出된다. 現在 이 委員會制度는 겨우 軌道에 오르고 있다. 委員會에서 주고 받은 意見이 센서스統計局에서 作成한 統計가 改善되는데 크게 貢獻한바가 많다.

이상 네개의 委員會外에 標本調査, 研究訓練部가 새로이 센서스統計局에 設置되고 있다. 이 新設된 部에서는 大規模의 標本調査를 担当하는 反面 政府職員에게 대하여 統計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iv) 國際統計業務

센서스統計局은 國際機關에 대하여 모든 統計資料를 提供하는 일과 資料交換業務를 行하고 있다. UN 및 FAO, WHO, UNESCO 등과 定期的으로 統計資料를 交換하고 있다. 그리고 센서스統計局長은 統計에 관한 國際會議에 參席할 代表를 選拔할 責任을 지고 있다.

② 中央政府의 其他部省의 統計機構

中央센서스統計局을 除外한 中央 各省庁의 統計業務는 主로 行政統計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 종사하는 統計職員도 센서스統

計局長이 指揮하고 있다. 中央部署에 근무하는 統計官 및 專任調査員은 다음과 같다.

總理部 防衛·外務省

警務局 (Police Department)	統計官	1名
移民局 (Dep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統計官	1名
	統計調査員	1名

國務省 (Ministar of state)

輸出入管理局 (Dep. of Contral of Import and Export)	統計官	1名
	統計調査員	2名

大藏省

關稅局 (Custom Department)	統計專門家	1名
센서스統計局	局長	1名
	局次長	1名
	局長補佐	2名
	庶務担当	1名
	統計專門家	9名
	統計官	16名
	統計調査員	34名
	係長	2名
	組長	10名
	其他職員	410名

土地， 灌溉動力省		
林 野 局	統 計 官	1 名
	統計調查員	1 名
內 務 省		
登 錄 局 (Dep.of Rural Development and Small Industries)		
	統 計 官	1 名
保 健 省		
保 健 局	統計專門家	1 名
	統 計 官	2 名
	統計調查員	4 名
	P C S 要員	1 名
鉉工業， 漁業省		
	統計官專門家	1 名
	統計調查員	2 名
漁 業 局	統 計 官	1 名
商業， 貿易省		
商 業 局	統計專門家	1 名
会社登録局	統 計 官	1 名
法 務 省		
刑務所局 (Dep. of prisons)	統 計 官	1 名
農業， 食糧省		
	統計專門家 (非常勤)	1 名
	統 計 官	1 名
	統計調查員	1 名

農 業 局	統 計 專 門 家	1 名
農 業 卹 弔 局	統 計 調 查 員	2 名
	統 計 官	1 名
	統 計 調 查 員	5 名
教 育 ， 文 化 省		
	統 計 專 門 家	1 名
	統 計 官	1 名
勞 動 ， 雇 傭 ， 住 宅 省		
勞 動 局	統 計 專 門 家	1 名
	統 計 官	1 名
運 輸 省		
鐵 道 局	統 計 官	1 名
自 動 車 輸 送 局	統 計 官	1 名
	統 計 調 查 員	1 名
公 共 土 木 ， 郵 便 ， 電 信 省		
	統 計 官	1 名

3 . 統 計 調 查 員

「 스리랑카 」에서는 各種 經濟 指 標에 關 連 된 統 計는 센서스 統 計 局 長이 任 命 한 統 計 調 查 員에 의 해서 收 集 된 다. 이 들 統 計 調 查 員은 日 常 勤 務 하 는 國 家 公 務 員 과 一 起 統 計 欄 의 指 揮 監 督 下 에 統 計 調 查 活 動 을 行 한 다. 各 省 庁 에 配 置 되 어 有 는 統 計 調 查 員 의 數 는 130 名

인데 이외에 耕作委員會의 委員과 Grama Sevakas와 같이 統計調查를 行하고 있다.

이들은 耕作面積 調査와 市.邑.面에 이르는 여러가지 調査를 行하고 있다. 10年마다 行하는 人口센서스를 실시할때는 특별히 調査員을 採用한다. 1963年의 人口센서스시에는 約 5万名이 雇傭되었다. 이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教育을 받은 사람들로써 調査를 行하기에 앞서 미리 教育을 시킨다.

4. 統計職員의 採用

各省庁에 統計職員으로 直接 採用되는 것은 一般的으로 初級 (Primary) 또는 中級 (Intermediate level)에 限한다. 中等學校卒業者 (Senior School Certificate), (G.C. Ordinary level) 또는 数学科目 試驗에 合格한 上級試驗合格者는 統計調査員 初級者로서 採用된다.

数学, 經濟学, 統計学 및 社会学을 전공한 卒業生은 中級으로서 採用된다. 이 統計官 中級の 地位는 半數가 統計調査員으로부터 昇給되어 온다. 統計調査員은 組織에서 10年勤續을 하거나 資格試驗에 合格을 하면 統計官으로 昇進할 수 있다.

統計專門家の 任命은 대개 統計官中에서 昇進을 하는데 最底 5年間統計官으로서 勤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專門家の 地位는 尙이 統計学, 經濟学, 人口統計学 및 社会学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한 者 中에서 直接 採用된다.

나머지 $\frac{2}{3}$ 는 大學을 卒業하지 않은 者 中에서 功勞가 많고 經驗

을 많이 쌓은 勤務成績이 優秀한 者 中에서 昇進시킨다. 局長 또는 局次長은 센서스統計局長을 除外하고 統計專門家 中에서 任命된다. 센서스統計局長의 職은 中央行政機關의 上級官吏가 任命된다. 센서스統計局의 各種 職位에 대한 職員採用 計劃은 해마다 약간 變更된다. 이것은 局內 職員들을 될수 있는대로 昇進할 機會를 주자는 것이다. 이로 因하여 局內의 職員의 昇進 機會가 많아졌다.

5. 統計職員의 訓練

「스리랑카」의 官庁統計機構의 政府職員에 대한 訓練은 센서스統計局이 責任지고 있다. 訓練은 統計理論과 實務 兩面에 걸쳐 職員 및 新規採用者에게 實施하고 있는데 대개는 UN의 援助를 얻어서 여러 나라에서 實施하고 있는 訓練에 職員들을 派遣시키고 있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다.

數年後에는 「스리랑카」의 各 大學에서도 統計教育을 充實히하고 또 센서스統計局에서도 정도를 달리하여 統計訓練「코스」를 둘 予定으로 있다.

二. 統 計 法 規

1. 통계법 (1956년도 개정)

(명칭)

제 1 조 : 이 법은 통계법이라 칭한다.

(법률의 적용범위)

제 2 조 : 대신은 관보에 고시된 규칙에 의해 농업·이주자·공장·기
상, 광업·수출입·제조업·제품판매·수하물 및 수송중의 제
품재고·노동·생계업·임금·상업에 관하여 「스리랑카」 경제
와 관련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통계국의 설치)

제 3 조 : 「스리랑카」 정부에 통계국을 설치하고 제 2 조에 표시된 규
칙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수집과 작
성을 한다.

(국장 및 가타관리 임명)

제 4 조 : 다음에 제기한 자를 임명한다.

1. 통계국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2. 이 법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리

(정보의 제공)

제 5 조 : ①통계국장은 소정의 양식으로는 일정한 기일동안 이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어떠한 자에
게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거 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이 법률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일내에 정보를 서면으로 정하여진 관리로 하여금 제출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누구에게나 구두로 정보제공 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제원은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어떠한 장소로 출두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 자의 거주지나 영업장소로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

③국장이나 국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아무때나 누구에게서든지 이 법률에 의거 신고를 받은 정보가 정확한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장 및 위임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서류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서류 및 증명서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4 km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④이 조문은 어떠한 비밀의 정보나 증거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신고자의 의무)

제 6 조 : 전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허위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를 다하여서는 안된다. 즉 신고자의 소유물에 대한 경영 및 감독하에 있는 사항, 「스리랑카」에서 경영되는 기업이나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 외에 당해사업에 관련된 공정 및 거래상의 비밀을 가진

정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한 경우의에는 공표하여서는 안되는 개인의 정보)

제 7 조 : ①이 법에 의거 특정한 자료 부터 제공되는 정보는 그 정보에 관계된 토지 사업 및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된 동의서가 없을 때는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이 법률을 집행할 목적 이외에는 이 법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이 일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알려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률에 따라 통계에 수집 및 작성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에 의거 신고된 정보를 이 법률의 목적이외에 공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의 비밀을 불법으로 누설한데 대한 벌칙)

제 8 조 :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법률을 위반한 자로 간주하고 1년 이내의 구금 또는 1천 "루피" 이내의 벌금이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통지 방법)

제 9 조 : 제 13조의 규칙에 의거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한 고시 및 통지는 다음 각항에 따라서 행한다.

1. 토지.사업.기업의 소유자가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여기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시, 이 자에게 송부된 통지는 확실히 송부된 것으로 본다.

2. 토지.사업.기업의 소유자를 대신하는 대리자 또 그 토지.사업.기업의 관리 및 운영을 맡은 대리인 및 고용자가 "스리랑카"에 거주할 시는 이들에게 통지를 하여도

소유자에게 정확히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전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시는 고시 또는 등기로 그 자가 「스리랑카」에 있는 최근주소지에 발송하면 정확히 통지한 것으로 본다.

4. 이러한 토지·사업·기업주가 회사나 또는 단체일시는 통지를 다음 방법으로 하면 정확히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가 그 회사 혹은 단체의 지배인·비서관 또는 중요한 계원에게 발송된 때 그리고 그 회사나 단체를 위해 책임을 가진 자 그 회사나 단체를 대신해서 토지·사업·회사를, 관리를 할수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발송한 때

2) 「스리랑카」에서 그 회사나 단체등록을 한 사무소를 가진 자

3) 등기로 그 회사 또는 단체의 사무소로 우송한 때

(위 반)

제 10 조: 누구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간이재판의 판결로서 50 「루피」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을 계속할 시는 기간 1일당 10 「루피」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정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의한 규칙에 따라 지시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때

3.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의한 규칙에 따른 의무이행, 권한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 자

4.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의한 규칙에 의거 증거제출을
요구당할시 고의로 허위진술한 자

(회사 및 단체가 범한 위반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제 11 조: 회사나 단체가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한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서 본법 제 9 조제 4 항에 규정한 방법으
로 통지되었을때 그 회사 또는 단체의 지배인·비서관·책
임있는 계원 및 제 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
를 받은 자가

①정당한 이유없이 정보 제공이나 증거제출을 거부하거나
태만하고 고의로 그 회사나 단체의 고용자들에게 거부·태
만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시

②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할 시

③고의로 허위증거를 제공하였을 때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간이재판소의 판결로서 제 10 조의 벌칙을 적용
한다.

(위반 지속기간)

제 12 조: 누구나 본법 제 10 조·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때 까지 그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규칙)

제 13 조: ①대신은 본법 조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규칙을 만들 수
있다.

②전항에서 수여된 권한에 의거 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본법에 기술 또는 규정된 모든 사항
2. 본법에 의거 요구되는 정보가 각 행정기관의 독립적인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사항
3. 정보를 제공한 때에 이를 접수하는 관제한·일시·장소 및 제공방법등에 대하여
4. 본법의 규정에 의거 수집된 통계를 공표하는 양식과 방법에 대하여
5. 본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 및 통지를 행할때 그 방법에 대하여
6.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특정한 사람에게게는 면제될 때
7. 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보를 얻고 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알기 위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이 토지·건물·광산·공장·작업장·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실지검사를 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승인된 고시를 게재한다.

(부칙적 설명)

제 14 조: 본법에 있어서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이라 함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통계국을 말한다.

2. 「국장」이라 함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통계국장을 말한다.

3. 「규칙」이란 대신에 의거 작성된 규칙을 말한다.

Ⅷ . 베트남의 統計制度

Ⅷ . 베트남의 統計制度

概要

1949年以前 프랑스 統治時代に 仏領3國(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統計는 仏領 印度支那統計局(French Statistical Service of Indochina)에서 作成하였다.

終戰後 1949年 後半기에 統計機關으로서 베트남 統計經濟調查局(Institute of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of Vietnam)이 創設되어 이것이 現在의 베트남 中央統計局(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으로 改組되었다.

베트남의 統計局은 오히려 分散型으로 各 行政機關이 各己 行政目的에 應하여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機構

重要な 統計機關은 베트남 中央統計局(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으로서 企劃開發省(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에 所屬되고 各種 統計資料의 蒐集, 各省 所管以外의 센서스 및 統計調査 實施 統計職員 訓練등의 統計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中央統計局 以外의 各省에 統計機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農林省農業經濟統計部 (Department of Agriculture .
Agriculture Economic and Statistics Service)

統計課 (Statistics Section)

센서스 研修課 (Census and Training Section)

農業經濟課 (Agricultural Economic Section)

② 勞動省調查, 計劃, 勞動統計部統計課 (Department of
Labour, Research, Planning and Labour Statistics Division,
Statistics Section)

③ 文部省 官房統計課 (Department of Education, Secretariat,
Statistics Section)

④ 保健省 統計課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tatistics
Section)

⑤ 大藏省 統計課 (Department of Finance, Statistic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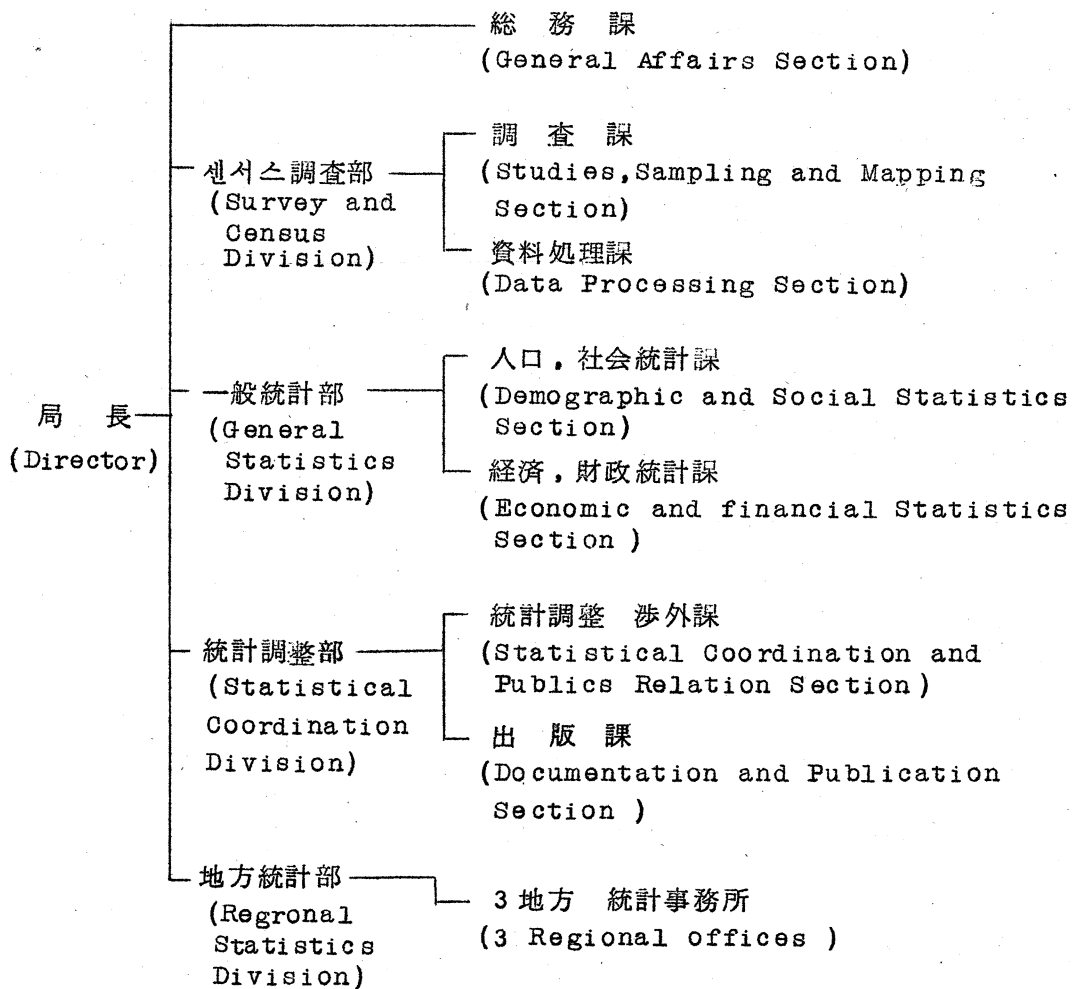
大藏省 關稅局 外國貿易統計課 (Bureau of Customs Foreign
Trade Statistics Section)

現在の 베트남 中央統計局은 4 部, 6 課, 3 地方 統計事務所로서
構成되어 있다.

즉 센서스 調查部 (Survey and Census Division) 에서는 센
서스 및 統計調查의 研究, 標本設計, 統計資料 處理등을 担当하고,
一般統計部 (General Statistics Division) 에서는 人口, 社会統
計, 經濟, 財政, 統計등을 作成하고 統計調查部 (Statistical
Coordination Division) 에서는 統計活動 基準의 策定, 各省 統

計活動에 관한 調整, 유엔등 國際機關에 대한 報告등 對外關係資料 編輯, 出版등을 所管하고 있다. 그리고 地方統計部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은 세곳에 地方統計事務所의 統計業務를 統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中央統計局의 機構圖는 다음과 같다.



統計活動의 企劃 및 綜合調整의 權限을 가진 最高機關은 統計委員會 (Commission of Statistics)로서 各省 庁의 代表者들로서 構成되어 있다.

中央統計局長은 이 委員會의 事務局長이 되며 調査項目등이 審査를 行하고 있다. 統計教育에 對하여는 中央統計局이 實施하고 있는 統計職員 教育이 있고 이중에는 每年 實施하는 初級職員에 對한 4個月 課程, 中級職員을 爲한 1年 課程이 있고 앞으로 이같은 課程이 계속 實施될 것이다.

이외에도 行政學校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와 政治, 經營學校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Business)에서 統計學에 關한 講義를 하고 있다.

二. 베트남의 統計法規

1. 통계에 관한 법령 (1955. 10. 1 제정)

제 1 절 통계의 조직 및 조정

제 1 조 : 통계의 일반업무에 관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통계위원회 및 중앙통계국

제 2 조 : ① 통계위원회는 통계자료의 수집과 출판, 분류계획 개인, 기업,

재산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의 통계업무를

총합 조정하여 정확하게 하고 제 통계의 개선을 도모한다.

② 통계위원회는 특히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매년마다 각 행정기관의 통계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발표한다. 이 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작성

될 수 있다. 그 목적은 중요업무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앙통계국의 업무 및 각 행정기관의 통계사무를 지도

한다. 이것은 조사의 중복을 피하게 하고 통계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통계조사 및 인구센서스 실시에 즈음한 각 행정기관의

지원 책임과 업무분담을 정한다.

4. 관할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미리 요청사항을 검

토하여 통지한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통지한

다.

- i) 통계업무 및 통계연구 통계개발에 용이하게 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연간예산과 또는 추가예산의 요구, 민간기관에서 제출된 보조금 청구
- ii) 각 행정기관에서는 준비된 통계업무 및 통계연구, 자료 작성 업무, 통계인의 양성에 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지원의 청구
- iii)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규처리
- iv) 질의서, 서식 또는 그의 여러 자료가 통계위원회에서 승인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의 자료에 대하여는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조사, 주택조사, 인구조사, 자료목록 또는 개인 집단, 외국관청사무소에 대한 조회를 행한다.
- v) 여러가지 통계조사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규격의 조사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유엔에서 사용하는 규격및 국제적, 지역적 규격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 vi) 통계의 급속한 보급과 각 행정기관의 정보를 교환한다.
- vii) 국제기관과 경제, 기술원조를 위하여 외국사절단에서 요청하는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viii) 기술적 연구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계방법연구, 업무를 지원한다.
- ix) 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계지식을 보급한다.

x) 통계활동, 통계자료작성, 통계적 방법의 연구에 대한
민간인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제 3 조 : 통계위원회는 공화국 대통령의 위촉을 받은 장관권한하에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각성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러 관청대표자들로서 구성된다. 위임자는 중앙통계국장,
국가경제성장관, 노동성장관, 농업성장관, 베트남국립은행총재
예산국장, 기획청장관이다. 통계위원회 사무국은 중앙통계국
장이 책임을 진다.

제 4 조 : ①통계위원회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통계위원회는 설치기관 권한 및 구
성을 정하고 통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세기관의 공무원
또는 보조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②중앙통계국장은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통할자이며 이
위원회사무국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 통계위원회의장, 소위원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의장은 여러가지
위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베트남대학을 포함한 베트남
의 공공기관의 대표자들을 언제든지 회의에 초청할 수 있
다.

제 6 조 : ①통계위원회는 위원의 1인 또는 서기관에게 제 2 조 2 항에
규정한 문제등에 대한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부국은 자기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재검토하도록 부탁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 중앙통계국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 각종 통계의 작성
- 2 . 일반적 또는 부분적 인구조사 시험조사에 따른 여러 조사의 실시
- 3 . 통계개발 및 분류자료 개인, 기업,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 보존
- 4 . 통계연구의 계획 및 원조
- 5 . 통계활동의 결과 공표 및 보급
- 6 . 통계도서관 유지 운영
- 7 . 제 2 조제 2 항에 의거 매년 각 행정기관의 통계업무 계획준비
- 8 .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 공무원의 양성 및 관청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통계지식의 보급
- 9 . 관청의 통계자료작성 및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또 감독을 받고 있는 사기업의 통계자료작성 업무의 정비 및 통계자료의 분류
- 10 . 통계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식, 질문서 및 여러가지 인쇄물 작성배부
- 11 . 국제적, 지역적 통계규격, 특히 U N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보급
- 12 . 국제적 통계활동 및 국제적 지역적인 통계회의 출석
- 13 . 통계출판물의 교환 통계방법 및 통계직원의 양성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국제기관, 외국통계기관과의 연락

제 8 조 : 통계의 수집, 작성, 공표를 위하여 중앙통계국은 다음 사항을 1 가지 방법 또는 2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1 . 전문적 통계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의거 실시된 전수 조사 방법
- 2 . 전문적 통계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의거 실시된 표본 조사 방법
- 3 . 우편질문서 방법
- 4 . 행정기관의 조사원에 의한 조사 질문서 면접 조사 방법

제 9 조 : 중앙통계국은 통계국장 및 통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의거 운영된다.

제 10 조 : 중앙통계국의 업무조직은 중앙통계국을 소관 장관의 성령에 의거 정하여지며 그 조직은 중앙통계국의 지방지부들을 수 있다.

제 11 조 : 중앙통계국장은 성령에 의거 중앙통계국 공무원을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또 성령에 의거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도 중앙통계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 12 조 : 중앙통계국장은 통계조사 인구조사 실시에 있어 조사원과 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국장은 현행 법규내에서 허용된 예산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일급 또는 시간급을 정한다.

제 2 절 통계기밀에 관하여

제 13 조 : 피조사자는 통계위원회에서 작성한 통계조사 및 통계위원회의 증인이 찍힌 질문서 또는 다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확하게 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회답을 하여야 한다. 회답을 거부, 지연 또는 의식적으로 부정확하게 회답을 한 때에는 처벌한다.

제 14 조 : 중앙통계국의 공무원 및 통계조사에 참가한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형법 378 조의 처벌 대상인 기밀을 지키고 여러 가지 개별조사를 위하여 특히 임명된 유급 또는 무급의 조사원도 비밀엄수의무를 진다.

제 15 조 : 기밀통계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서 및 기타 서식은 한번 기입되면 조사를 받은 부국과 외에서는 그 서류를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X . 公 共 的 統 計 制 度

IX. 홍콩의 統計制度

概 要

現在 홍콩의 統計庁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은 홍콩政府의 38個 行政機關의 하나로서 人口統計調査, 人口動態調査, 社会文化統計調査等を 調査 實施하고 또한 貿易統計와 經濟統計의 編輯을 하고 있다.

이 統計庁은 1947年 1月1日에 植民地統計局 (Statistics Branch of the Colonial Secretariat) 으로서 設立되었다.

1948年 1月1日 以後 獨立官庁으로서 体制를 갖추고 統計庁 (Department of Statistics) 으로 改稱되었으나 1951년에 商工省 (Commerce and Industry) 에 흡수되어 한 部局으로서 統計局 (Statistics Branch) 이 되었다. 이와 별도로, 1959年 4月에 센서스庁 (Census Department) 이 設立되었으나, 1962年 5月에 植民地政府 所屬의 센서스統計 企劃室 (Census and Statistics planning office) 이라는 機構로 改革 되었다.

現在의 統計庁은 前述한 商工省統計局과 센서스統計企劃室이 合併하여 1967年 12月4日에 中央統計機關으로서 設立된 것이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現在 中央과 地方이라는 統計組織이 따로 区分되어 있지 않다.

一. 統計組織

홍콩은 小地域임으로 統計庁의 機構를 보면 統計組織의 전모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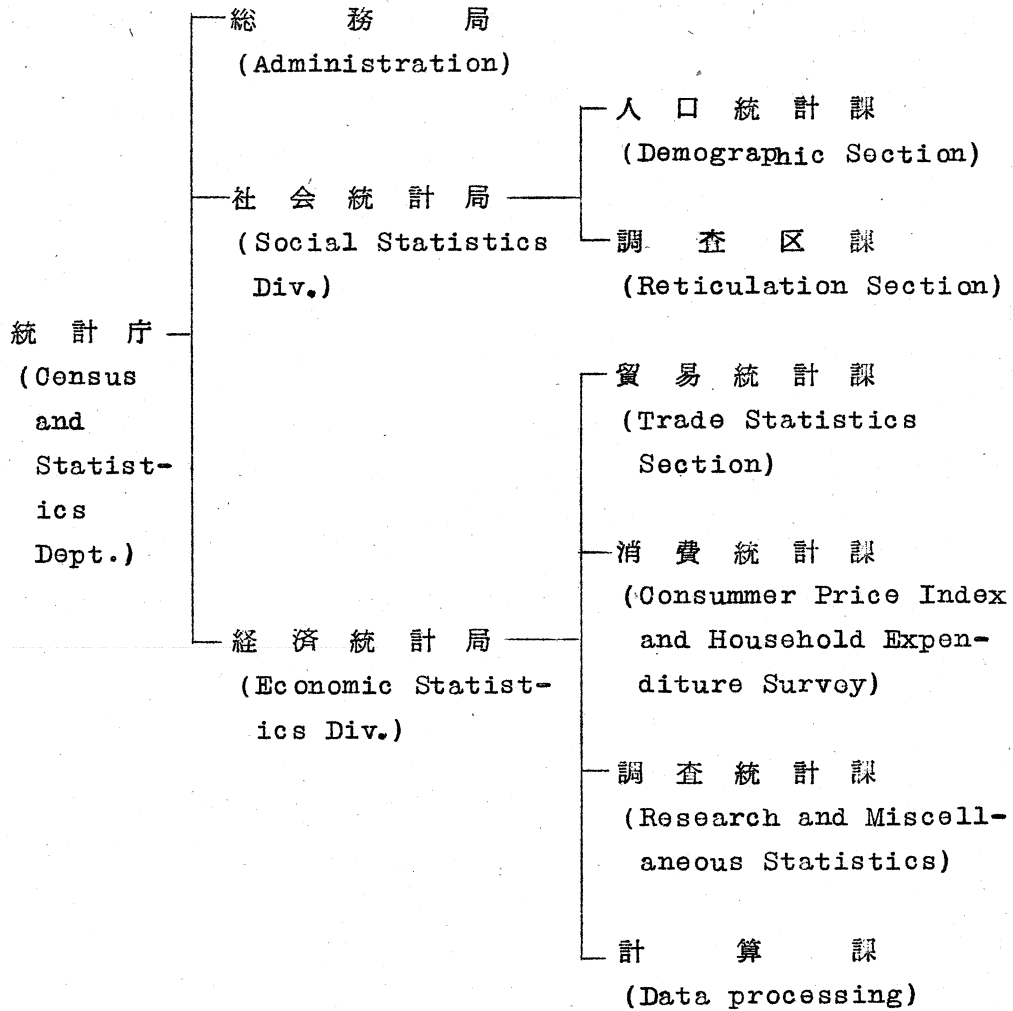
1968年 3月 現在의 統計庁은 3局 6課로 成立되어 있다.

總務局은 予算合計 庶務 出版等を 担当하고 社会統計局 (Social Statistics Division) 은 人口統計調査, 人口動態統計調査等を 実施하고 蒐集한 資料를 基礎로 各種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經濟統計局 (Economic Statistics Division) 에서는 稅関部로부터 송부되는 輸出入申告書를 바탕으로 하여 貿易統計를 編輯하고 消費者物價指數와 家計調査에 關한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또 資料 處理를 하는 計算部門은 이 局에 所屬되어 있다.

1968年 3月 現在 統計庁의 職員의 定員은 207名이다.

統計庁의 機構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統計庁은 統計活動에 關한 計劃 및 調整을 行하고 統計資料와 蒐集과 各種 統計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統計調査는 統計調査란 (Survey Interviewing office) 에 의거 實施된다.

現在 소규모의 統計調査를 하기 爲하여 屬備된 統計調査官은 最

少限 中学校卒業 程度の 學歷을 가지고 있다.

人口센서스等 大規模의 統計調査를 實施할 때는 比較的 많은 調査人員이 雇傭된다. 例를들면 1961년에 人口센서스調査時는 1万 3千名の 人員이 雇傭되었다.

이같은 人口센서스調査를 하기 前에 統計庁의 上級統計官이 調査員에게 調査에 關한 教育을 實施한다. 이들 調査員은 臨時로 雇傭되며 大多數는 高等學校・教育大學 및 綜合大學의 學生들이다.

統計教育에 關하여는 中學校나 高等學校 水準으로 統計에 關한 敎科가 없고 大學에 가서야 學士課程을 두고 있다.

政府關係 職員에 對하여는 英國의 통계가양성협회 (Institute of Statisticians of United Kingdom)에서 實施하는 第1期 試驗에 응시할 수 있는 特別 課程을 두고 있다.

統計庁의 統計關係 予算은 1968 / 69 會計年度에 298 万 745 百 홍콩 // 달러 // 로 그 內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人 件 費	233 万 8,100 香港幣
② 管 理 費	6 万 7,400 //
③ 統 計 調 查 費	2 万 1,600 //
④ 機 械 借 料 및 維 持 費	35 万 3,500 //
⑤ 其 他	20 万 6,900 //
合 計	298 万 7,500 //

統計庁의 資料 處理 機械는 IIOT 로부터 借用한 것으로 PCS 制度가 使用되고 人口센서스 報告書 作成과 貿易統計編輯等を 爲한

資料 處理를 하고 있다.

이 機械 台數는 다음과 같다.

555	Caluculaton	1 대
902	Tabulator	3 대
313	High-Speed Sorter	2 대
303	Counter Sorter	1 대
302	Counter Sorter	1 대
365	Collator	2 대
424	Interpreter	1 대
208	Mark-Sensing and end-point reproducers	2 대
	合 計	13 대

二. 統計法規

現在 統計組織에 關한 法規는 없지만 人口센서스에 對하여는 “센서스”法 (Census Ordinance) 이 있고 貿易統計 作成에 對하여서는 1966年 10月3日 施行한 輸出入登錄法 (Importation and Exportation Regulation) 이 있다.

이 센서스法은 統計調査를 實施하는데 被調査者가 調査에 不응하고 協力을 거부할 시 處罰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輸出入登錄法은 輸出入業者가 免稅品以外의 輸出入商品을 去來할 시 正確하게 輸出入申告書를 商工省에 提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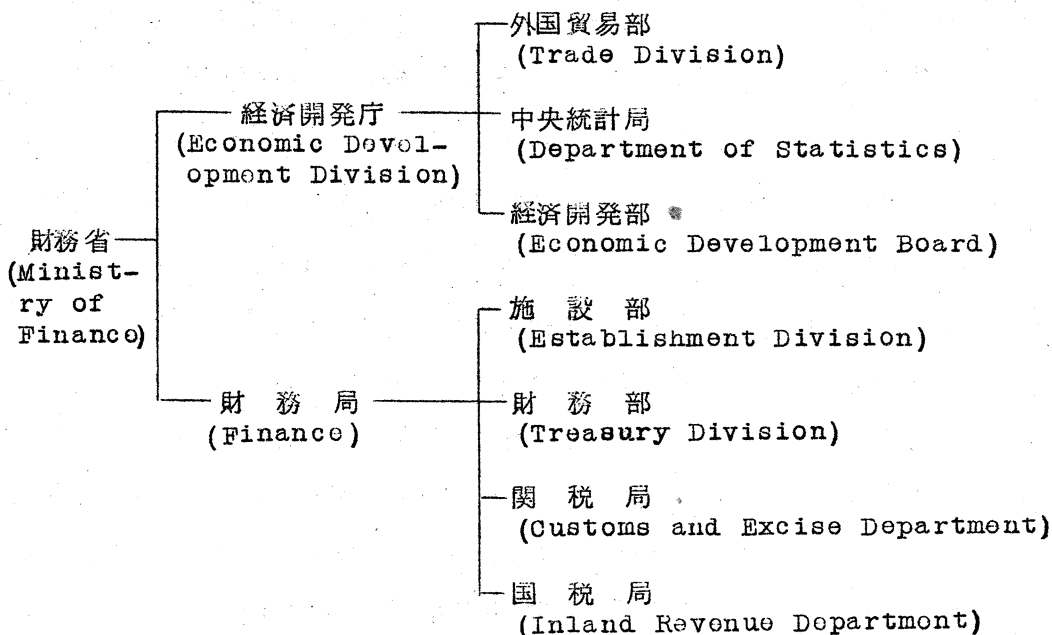
이 規定을 위반할 시는 刑罰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X . 싱가포르의 統計制度

X. 싱가포르의 統計制度

싱가포르의 中央統計機關은 財務省의 經濟開發庁 (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 所屬되어 있는 中央統計局 (Department of Statistics) 으로 人口, 貿易, 工業에 관한 基礎的인 統計의 蒐集, 加工을 行하고 특히 國民所得의 推計 國際收支表의 作成等を 主要業務로 하고 있다.

또 이 中央統計局에서는 다른 行政機關의 統計關係部局에 대하여 統計活動에 관한 必要한 援助를 行하고 또한 調整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中央統計機構와 系列을 달리하는 地方統計機構는 두고 있지 않다. 이 中央統計局이 所屬되어 있는 財務省의 機構圖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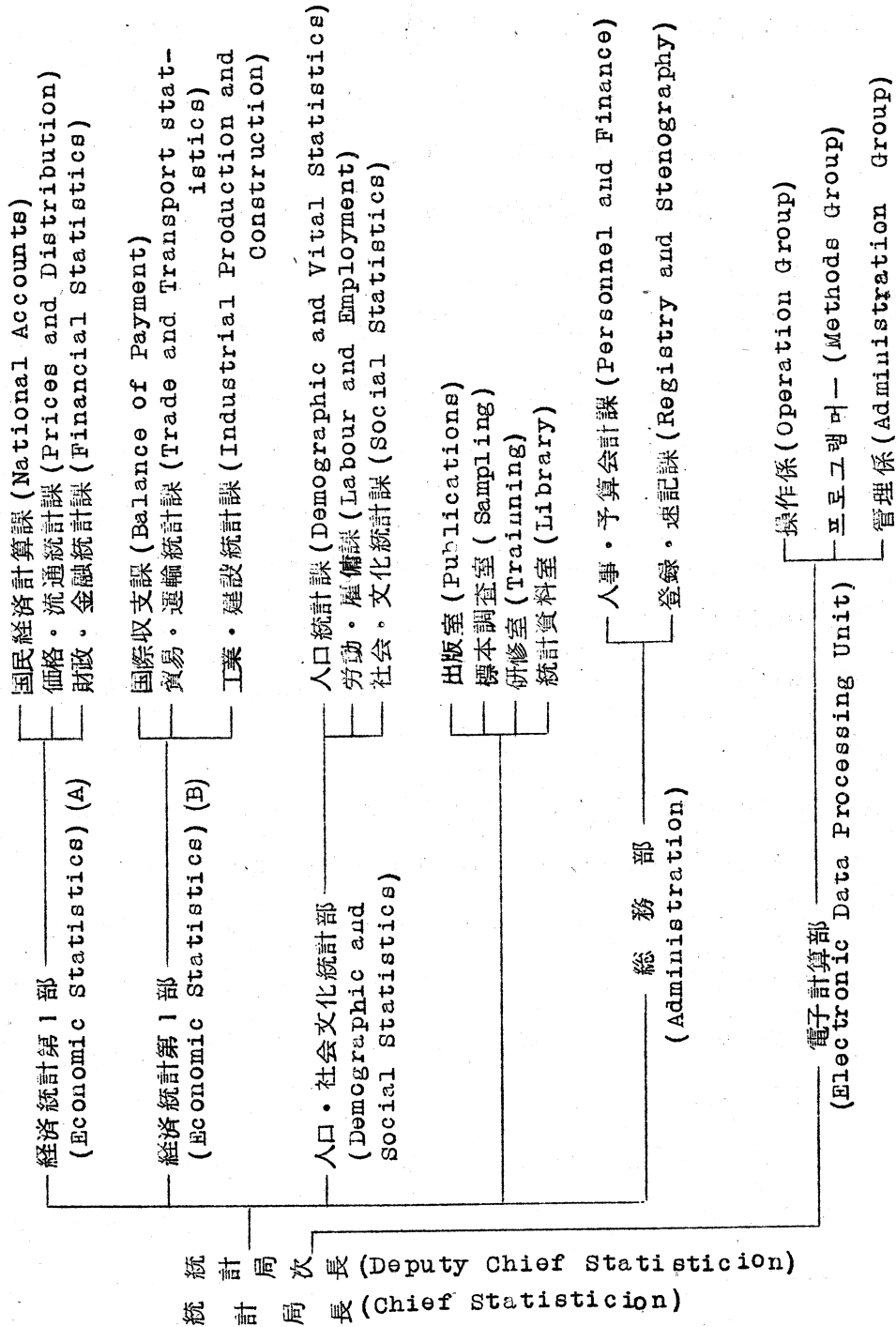
그리고 財務省 以外の 各省(労働省, 文部省, 厚生省, 国家開發省)
에도 그 行政活動에 關聯된 業務統計를 作成하는 統計担当部 課가
設置되어 있다.

現在에 싱가포르의 中央統計局은 5 개의 部와 18 개의 課, 室, 係로
成立되고 있다.

經濟統計 第1部(Economic Statistics[A])는 3 개의 課로서
構成되어 있고 主로 國民所得의 推計등 國民經濟計算, 消費者物價
指數, 都壳, 小壳, 物價指數, 流通需給統計, 事業所統計, 銀行, 保險
등의 金融統計, 經濟諸指標 四半期別 景氣予測에 關한 加工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經濟統計 第2部(Economic Statistics[B])도 3 개의 課로서
構成되어 있고 國際收支의 推計 貿易統計 價格指數 民間航空統計,
鉦工業統計와 生産指數, 建設에 關한 諸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人
口, 社会統計部(Demographic and Social Statistics)도 獨
같이 3 개의 課로 構成되어 있으며 出生, 死亡, 혼인 移動에 따른
人口動態統計, 労働, 雇傭統計, 教育 保健등 社会文化統計등에 統計調
査를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人事, 予算, 會計등을 所管하는 總務
부와 資料處理를 行하는 電子計算部가 設立되어 있다. 또 統計要覽
(Monthly and Annual Digest) 등을 編輯, 刊行하고 있는 出版室
標本設計와 標本調査技術에 應用을 所管하고 있는 標本調査室 初級,
中級 水準의 統計実務家を 養成하는 統計研修室 統計資料에 蒐集
閱覽등 資料서비스를 行하고 있는 統計資料室이 따로이 設立되어 있다.
이 統計局(Department of Statistics)의 機構圖는 다음과 같다.

統計局 概 構 図



統計調查活動에 있어 重要な 役割을 행하는 統計調查員은 統計局 으로서는 常用과 臨時的의 두가지로 区分 雇傭하고 있다.

常用統計調查員은 經常的인 統計調查(實查)에 따른 資料蒐集業務에 從事하고 臨時 統計調查員은 募集한후 統計調查를 하기 위하여 訓練은 行하고 特別한 統計調查에 從事시키고 있다. 이들 統計調查員은 中學校卒業程度의 學歷을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2내지 3가지의 主要한 方言을 말할줄아는 者를 雇傭하고 있다.

現在 싱가포르에 있어서는 基礎的인 統計資料를 組織的으로 蒐集하고 그것을 加工, 編輯하고 있는 非政府統計機關은 大端히 적다. 싱가포르大學(University of Singapore)과 난양大學(Nanyang University)과 같은 大學研究 機關에서는 學生에 대하여 學問上의 研究와 研修活動의 一部로서 가끔 小規模의 統計調查를 實施하고 있다.

統計局側에서는 人口센서스와 같은 大規模 統計調查를 實施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大學研究機關의 職員과 學生을 臨時的으로 採用하여 統計調查를 行하고 있다. 특히 1965년에 設立한 싱가포르大學 經濟調查研究所(Economic Research Center of the University of Singapore)는 統計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主要한 非政府機關에 하나로 常用統計 專門委員을 두고 있다. 또한 統計調查와 그 研究에 있어 必要한 短期間의 專門家를 아울러 雇傭하고 있다. 또 市場調查(Market Research)와 消費者 行動調查(Consumer Behaviour Studies)을 實施하고 있는 研究機關이 別途로 設立되어

있다. 此外에는 統計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民間機關은 거의 없는 実情이다. 學校에 있어서 統計教育은 高等學校에서는 統計体制와 그 基礎理論을 가르치고 大學에서는 經濟學과 數學에 관한 教科에서 統計學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統計職員에 對해서는 1968年1月1日 現在로 電子計算機關係職員을 包含해서 總計 219名으로서 그중 統計關係職員은 111名, 電子計算機關係職員은 80名, 事務關係職員은 28名으로 되어 있다.

統計職員의 地位와 各部室의 人員構成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統計職員의 地位 및 各部室 人員構成

(1968年1月1日現在)

	統計局長 統計局長 次長	經濟 統計 第1部	經濟 統計 第2部	人口,文化,社会 統計部	計	總務部	電子計算部	會計
統計官 (上級레벨)	2	3	3	2	10	-	電子計算部長 5 上級프로그래머 -	15
統計行政官 (中級레벨)	-	6	8	5	19	2	프로그래머 - 6 電子計算機管理者	38
統計書記 統計調査指導員 (初級레벨)	-	14	58	10	82	6	機械操作員 51	139
타이피스트 速記者, 雜役 (補助레벨)	-	-	-	-	-	20	타이피스트 速記者 7 雜役	27
合計	2	23	69	17	111	28	80	219

(出所) Staff position [Permanent establishment as at 1.1.1968]
Statistical organization in Singapore.

歐 美 編

I . 美 国 的 統 計 制 度

I. 美 國 的 統 計 制 度

概 要

美聯邦政府의 여러 기관의 組織法에는 業務統計 뿐만 아니라 一般目的 統計의 蒐集에 관한 諸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美合衆國의 統計體制는 中央集中型이 아니라 統計資料蒐集의 責任과 權限이 行政機能에 따라 여러 기관에 分散되어 있는 分散型이라 할 수 있다.

거와 모든 政府機關이 고유업무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相當한 程度로 統計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政府統計 種類는 広範圍하고 多樣한 것이다.

各 政府機關의 統計活動이 어떻게 形成되고 있는지를 보다 잘 理解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여 各 類型에 包含되는 機關의 統計活動을 살펴보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1) 中央 調整機關

統計의 重複을 피하게 하여 이의 均衡을 기하고 政府統計의 總括的인 體制 改善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2) 一般目的 統計機關

一般의 利用을 위한 특정 分野의 統計를 蒐集하고 이를 편 集 公表한다.

3) 綜合分析 研究機關

他機關에서 蒐集되는 資料를 研究 分析한다.

4.) 行政目的 統計機關

統計를 行政目的 遂行過程上의 부산물로서 산출하는 機關을 말한다. 이렇게 몇개의 範疇 (Category) 에 묶어 놓는 것은 편의상 相異한 統計活動 分野를 용이하게 区分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範疇에 屬하는 機關은 相互 배타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機關은 한개 이상의 範疇에 속하게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一般 目的統計機關의 範疇에 包含되는 機關中에도 分析 및 研究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機關이 있는 것이다. 分析 및 研究機關 範疇에 속하지만 직접 統計의 蒐集에 參與하기도 하며 行政調整機關에서 蒐集되는 統計가 一般 目的統計機關의 基本資料로 使用되기도 한다.

一. 統計組織

1. 統計機構

1) 中央調整機關 (Central Coordinating Agency)

予算管理厅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ing)

- 統計活動의 責任있는 遂行을 위한 總括적인 中央統計調整機關으로써 大統領室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에 直屬되어 있는 機關이다.

予算管理厅 (Office of Management & Budgeting) 내에는 統計 政策官室 (Division of Statistical Policy) 이 있어서 聯邦報

告法 (Federal Reports Act) 에 依拠, 美政府統計를 管理하는 중앙관서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그 主要 役割은 다음의 4 가지로 区分할 수 있다.

i) 統計 計劃 및 予算管理

ii) 調査票의 作成

iii) 統計基準 및 定義設定

iv) 國際統計 計劃 등이다.

1930年 초반 이후 政府 및 一般의 統計需要가 날로 增加함에 따라 広範圍한 統計作成이 必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55년부터 每年 主要統計計劃을 위한 予算이 美政府 予算에 特別會計로서 策定되었다. 이같은 主要統計計劃 遂行에 관한 予算은 보다 効率的이고 經濟的인 統計作成을 위한 큰 뒷받침이 되는 것이며 相異한 機關에 分散되어 있는 統計活動의 不必要한 重複을 避하도록 調整하는 役割을 한다.

또한 特定分野의 統計活動의 必要性 및 효용에 관한 分析方法을 제시하여 統計体制가 統合적으로 發展되도록 한다.

1942年 美聯邦 報告法에 의하면 모든 聯邦機關은 (몇개의 特殊機關을 除外한) 10名以上の 応答者로부터 特定 情報, 혹은 資料를 蒐集한 境遇 予算管理庁 統計政策官室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統計蒐集活動의 統制는 不必要한 重複을 피하게 하고 經費를 節約하며 統計의 質的인 改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各種 報告計劃이나 調査票는

- i) 当該 機關의 고유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 ii) 他機關에서 既 蒐集되어 있는 資料는 아닌가
- iii) 被調査者의 情報를 包括的으로 記錄하기에 적절한가
- iv) 效率的 標本技術에 의하여 応答者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가
- v) 必要 以上の 資料를 蒐集하지는 않는가 등이 정밀하게 檢
討된 後에 作成되어야 한다.

小企業체에 대하여 報告의 負擔을 덜게 하도록 特別한 배려를
하고 調査票는 限定된 期間동안에만 유효하도록 하여 定期的인 檢
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中央統計調整機關으로서의 予算管理厅의 統計政策官室은 政府
의 모든 部処에서 通用될 수 있는 統一된 基準을 作成하는데 있
어서 선구적 役割을 하고 있다. 統計基準, 定義, 分類方法, 節次
등은 相異한 機關의 統計 系列의 不일치와 矛盾點 등을 배제하는
데 必須的 要件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基準, 分類, 定義 등은 予算管理厅의 後援으로 各 省의
技術諮問委員會의 協助로 開發되었는데 政府이외 一般機關에서도 広
範圍하게 活用되고 있다.

統計政策官室은 이같은 基準, 定義, 分類의 作成뿐만 아니라 새로
운 統計技術을 채용할 수 있도록 支援을 한다. 美國의 大規模의
統計機關은 보통 상임통계기술전문가를 두고 있지만 軍소기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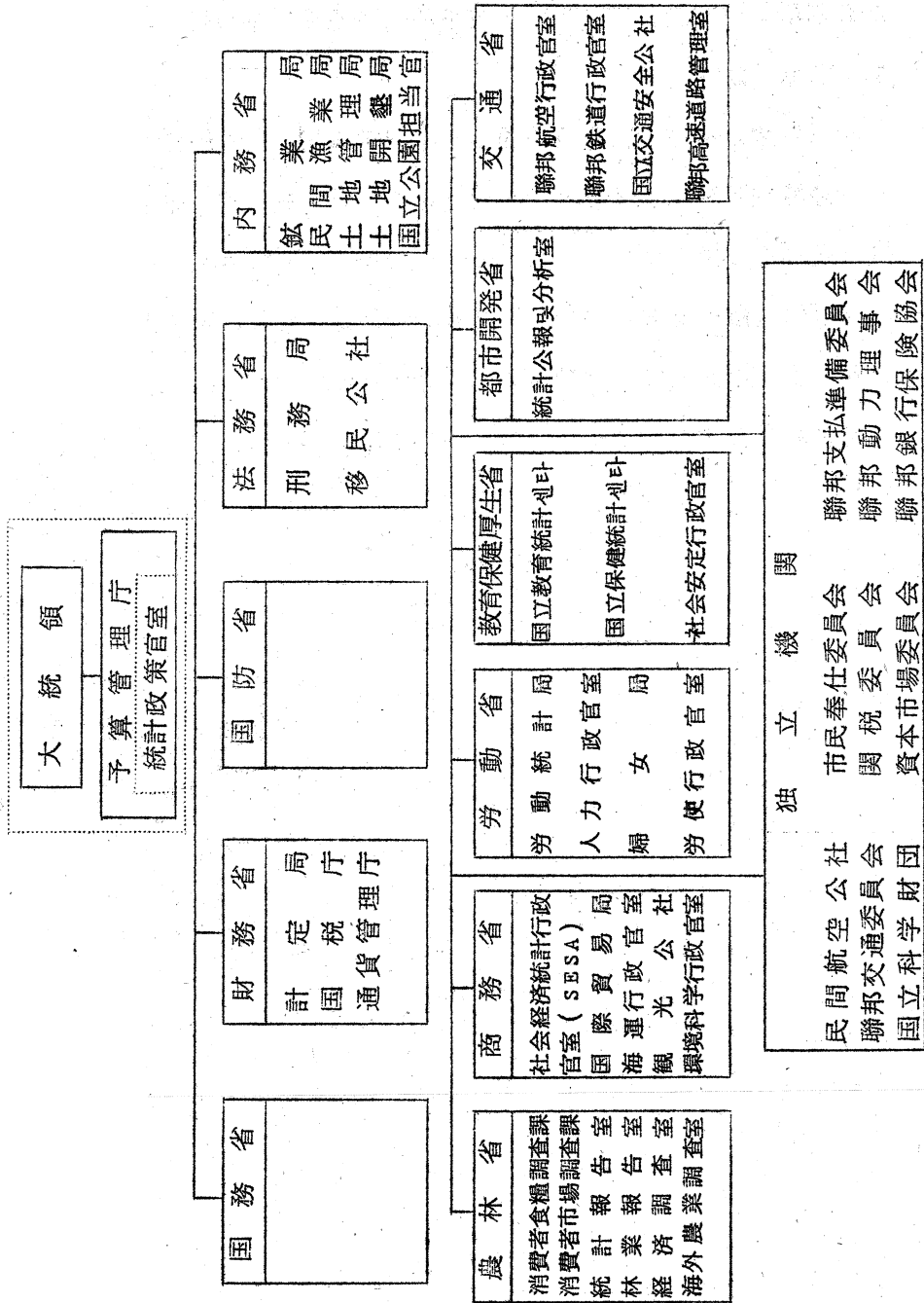
統計基準，標本設計 그밖의 技術的 問題에 關하여 외부로부터 支援을 받고 있다.

統計政策官室은 美政府機關과 國際機構間의 統計活動에 있어서 相互 連絡機關이며 尤연의 定期 혹은 特別刊行物 發刊을 위한 美國의 資料를 提供하고 各種 統計刊行物을 交換하고 있다.

그리고 統計改善을 위한 國際活動에도 參與하며 國際標準分類의 適用 및 諸外國의 統計活動을 支援하기도 한다.

美國의 統計機構圖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美國の統計機構圖



2) 一般目的 統計機關

用途가 넓고 多目的으로 쓰이는 一般目的의 統計를 定期的으로 樹立하고 製표하여 特定分野別로 資料를 公表 發刊하는 機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機關이 있다.

① 社会經濟統計行政官室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al Administration) - 社会經濟統計行政官室 (S E S A) 은 1972年 1月 商務省內的 센서스局과 企業經濟庁의 業務를 發展的으로 併合하여 商務省의 統計計劃을 遂行하는 單一機構로서 새로이 발족하였다.

따라서 社会經濟統計行政官室은 社会 및 經濟 人口統計 등 広範圍한 一般目的 統計를 蒐集, 編製, 公表하는 權限을 가진 中央統計機構로서의 中추적 機能을 갖게 되었다.

또한 國民所得 및 生産産業聯關表, 國際収支 및 地域計定을 包含하는 國民經濟計定을 作成 推計하며 이 体制를 發展 改善하고 經濟現況 및 展望을 分析 公表한다.

그리고 社会經濟統計行政官室은 商務省의 經濟機能 즉 計量經濟体制의 改善, 統計指標, 其他의 長短期 經濟展望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中央部署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센서스局은 이 社会經濟統計行政官室의 모든 統計實查業務 및 資料處理 業務를 担当하는 機構로 存在하고 있다.

센서스局은 美國의 一般目的 統計를 蒐集하고 編製, 公表하며 다음과 같은 법정센서스를 주관한다.

- i) 人口센서스 每 10年 (" 0 " 으로 끝나는 해)
- ii) 住宅 " - " (" 0 " 으로 끝나는 해)
- iii) 農業 " - 每 5年 (4 와 9 로 끝나는 해)
- iv) 事業体센서스 - 每 5年 (2 와 7 로 끝나는 해)
- v) 製造業 " - " (" ")
- vi) 鉦工業 " - " (" ")
- vii) 交 通 " - " (" ")
- viii) 政 府 " (註, 地方政府 单位) - 每 5年
(2 와 7 로 끝나는 해)

센서스국은 또한 標本調査를 통한 主要 統計情報를 蒐集하는데 人口, 製造活動, 商品生産, 都小売業, 政府 및 州財政, 住宅의 特性 및 面積, 建設, 消費者所得 및 購買力에 관한 統計를 蒐集 公表하며 또한 美國의 對外貿易統計를 編製하여 月別, 分期別 및 年間으로 公表하고 있다.

센서스국은 他省에 대하여 資料蒐集, 標本抽出, 集計, 資料處理 등에 관한 技術支援을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勞働省 勞働統計局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月間 勞働力調査를 支援한다.

센서스국은 國際開發處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와 協助하여 센서스에 관한 研究, 分析, 統計調査方法등을 研究하고 자 美國에 오는 外國統計研修生을 訓練하고 外國 統計機關에 대한 技術諮問을 하기도 한다.

② 勞働統計局 (Bureau of Labor Statistics) : 勞働省 (Department of Labor) 傘下의 勞働統計局은 勞働力 統計 취업 및

実業, 貿易과 美国의 雇傭問題, 外国의 労働現況등에 관한 資料를 蒐集 整理하고 있다.

또한 都売物価指数와 消費物価指数를 編製하며 物価와 消費水準에 관한 諸統計를 作成 公表한다. 그리고 外国 統計人을 위한 労働 統計訓練, 支援을 하며 國際労働機構 (I.L.O) 에 대하여 美国을 代表한다.

③ 統計報告室 (Statistical Reporting Service) : 農林省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 속하여 있으며 農林省이 所 管하는 一般 農林統計의 計劃 및 全般的인 調整을 한다.

그중 몇가지 主要한 것을 들면 : 農地面積調査, 畜産物 生産量, 농가구입가격지수산출, 農業就業率 및 賃金調査 등이 있다.

④ 国立保健統計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保健教育 厚生省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Welfare) 에 속하며 出生, 死亡, 혼인, 이혼등 人口動態 統計를 作成하고 生命表 (Life-table) 및 保健統計를 관장한다.

保健統計를 蒐集하기 위한 標本調査를 定期的으로 実施하며 調査 方法의 研究 및 開發, 資料分析 外国統計研修生訓練 他機關에 대한 統計技術의 支援등을 한다.

⑤ 国立教育統計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教育保健 厚生省에 속하며 各級 學校의 入学, 卒業生數, 教員數, 學校施設, 學校財政등에 관한 統計를 蒐集 제표한다.

3) 綜合分析 및 研究機關

統計의 分析 및 研究機關은 政府 또는 其他 統計機關으로 부터 算出되는 統計를 分析, 利用하여 經濟 및 社会政策에 寄与하도록 綜合的인 資料를 作成하는 機關을 말한다.

이러한 範疇에 속하는 機關을 몇군데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經濟諮問委員會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大統領室에 속하며 經濟開發에 관한 조언, 經濟計劃 및 政策에 관한 分析, 經濟成長 및 經濟安定에 관한 諮問役割을 한다.

이 委員會는 國民經濟의 모든 부문에 관한 繼續的 分析을 통하여 國家經濟의 흐름을 考察하며 統計蒐集 活動에는 直接的으로 参与하지 않으나 多樣한 source로부터 나오는 經濟資料를 大統領 年例 經濟報告書 作成에 利用한다.

여기서 發刊되는 月刊 經濟指標 (Economic Indicator)에는 國民所得, 就業率, 生産, 物價, 金融, 信用, 株式市場 聯邦財政 등 主要 經濟指標가 提示되고 있다.

② 經濟調査室 (Economic Research Service) ; 農林省에 속하며 農産物 統計의 作成 經濟的 分析, 農業展望 등에 관한 指標를 作成한다.

즉 農家人口, 農産品價格, 農家所得 및 消費市場, 資源開發, 農業財政, 農産品 生産統計등을 作成한다.

③ 鉞業国 (Bureau of Mines) ; 內務省 (Department of Interior) 에 속하며 鉞産物生産, 消費, 在庫 및 鉞工業 就業, 勤

勞者災害 統計를 編製한다.

④ 國際交易局 (Bureau of International Commerce) ; 商務省에 속하며 센서스局에서 總括되는 資料를 根拠로 美國의 對外貿易을 分析하고 이를 公表한다.

⑤ 消費者 및 食糧經濟調查室 (Consumer and Food Economic Research Service) ; 農林省에 속하며 食品消費量, 食生活 改善 등의 資料를 分析 綜合한다.

⑥ 人力調查庁 (Office of Manpower Research) ; 勞動省에 속하며 人力問題의 時系列 分析 및 그 計劃을 樹立한다.

4) 行政目的 統計機關

美國政府의 거의 모든 行政機關이 行政運營過程에서 相當한 量의 統計情報를 蒐集하고 있다.

이같은 資料를 一般目的의 對象이 되는 것도 있으며 特定行政計劃에 使用됨을 主目的으로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統計政策官室의 主要 政策중에는 行政의 부산물로서 算出되는 統計資料를 多目的으로 쓸 수 있도록 調節하는 것이 包含되어 있다.

主要 行政目的 統計蒐集機關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社會安定行政官室 - 保健教育厚生省에 속하며 高令者, 불구자, 要 救護對象者 및 保健保險 (CASDI) 計劃에 관한 資料를 취합한다.

同 計劃은 自營業主, 農場勤勞者, 家庭婦, 民間非營利團體, 州 및 地方自治團體雇傭員 등 거의 모든 類型의 勤勞者를 包含한다.

따라서 이들의 就業狀態 및 所得關係資料가 各 州別로 作成되며 이는 센서스局에 의하여 公表된다.

또한 保健保險 救濟基金 運營基金으로 病院 및 医療施設에 관한 広範圍한 情報가 繼統적으로 蒐集되어 모든 受益者들의 特性에 관한 資料가 公表되고 있다.

② 国税庁 - 財務省에 속하며 個人所得分配 및 國民所得 構成要素의 推計에 관한 基本資料를 稅務行政의 必要資料로서 蒐集한다.

또한 企業体納稅台帳으로부터 企業体標本調査 対象業체를 選定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輸送 및 公益事業에 관한 資料가 「聯邦航空公社」, 「聯邦動力委員會」, 「聯邦通信委員會」 등으로부터 算出된다.

2. 美聯邦과 各州의 統計計劃의 聯關性

① 州 統計計劃 - 大部分의 國家에서 地域的 혹은 政策的으로 細分되어 있는 統計調查計劃을 어느 程度 中央政府로부터 地方政府에 委任하여 統計資料를 取合하고 있는 境遇가 많다. 美國에 있어서 聯邦政府와 各 州와는 그같은 系統이 서있지 않고 州는 그들의 統計를 蒐集하고 作成하는데 있어서 獨自的인 計劃을 遂行하여 나가고 있다.

各 州 및 地方自治團體의 統計開闢은 동일하지는 않다. 즉 몇몇 州에서는 근소한 部문의 統計만을 蒐集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州에서는 그나름대로 包括的인 여러가지 統計를 算出하고 있는 實情이다.

聯邦政府와 州의 統計計劃이 別個의 것이라도 境遇에 따라서는 緊密한 協助 아래 統計를 蒐集하고 있다.

예컨대 人口動態 統計, 非農業部門의 勤勞時間 및 賃金統計調查의 境遇는 聯邦政府와 州와의 相互共同計劃에 依拠 蒐集된다.

또한 大部分의 農業統計는 聯邦-州 共同計劃에 依拠 農林省과 州 當局과의 円滑한 協助下에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州 當局은 行政的 支援을 하고 政府는 予算을 支援하게 되는데 聯邦政府에서 要求되는 資料와 地方行政當局에서 實際 蒐集하는 그 것과는 性格이 判이한 것도 있다.

따라서 州 및 地方行政機關에서 蒐集되는 資料를 一次的으로 取合하고 同時에 直接的인 調査를 實施하여 補完資料를 確保하고 있다. 이리하여 大部分의 州에서는 州統計의 業務別, 地域別 比較성 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予算管理厅의 統計政策官室과 흡사한 機能을 갖는 自体統計調整事務局을 設置하게 되었는데 이들「統計比較委員會 (National Conference of Comparative Statistics)」라 稱하고 中央統計政策官室에서는 이곳에 常任駐在官을 派遣하고 있다.

② 國際統計計劃 - 美國政府는 政府統計의 改善 및 國際間的 廣範圍한 比較를 위한 國際的統計 또는 組織活動에 있어서 能動的인 參與을 하고 있으며 유엔 經濟社會理事會에 의하여 設立된 統計委員會 會員으로 參與하고 있다.

또한 亞細亞 統計官會議, 國際食糧農業機構, 國際民間航空機構, I L O , I M F , U N E S C O , W H O . 등 다수의 專門機關에 대한 統

計活動을 활발히 展開하고 있다.

國際機構 또는 美國政府의 直接的 支援 (주로 A I D) 에 의하여 對外的인 統計技術의 開發에도 積極 參與하고 있다. 즉 支援을 要하는 低開發國家에 많은 統計專門家들이 派遣하고 있고 外國의 統計實務者를 위한 定規統計研修課程을 機關別로 개설하고 있다.

특히 센서스局에서는 센서스 方法을, 勞動統計局에서는 勞動統計 方法을, S E S A 에서는 國民所得 및 생산계정, 國際收支均衡에 관한 統計方法을 教育하며 그밖의 많은 單位機關에서도 統計技術에 관한 外國研修生을 訓練하고 있다.

③ 非政府 統計機關 - 一般企業체 또는 産業製造活動에 관한 統計를 蒐集하고 公表하는 包括的 計劃의 一環으로 聯邦政府는 經濟團體, 貿易協會 등에서 蒐集하는 資料를 利用하기도 하는데 이는 政府나 民間團體에서 行하고 있는 統計活動의 重複을 피하며 正確하고 새로운 適時的 統計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例로는 「美國鐵鋼協會」로부터 算出되는 鐵鋼生産量, 「自動車 製造協會」로부터 公表되는 自動車 工場販賣量, 「鐵道協會」로부터 公表되는 週間貨物輸送量 등이 있다.

美國政府는 가끔 民間團體에서 주관하는 統計調査 및 計劃에 直接 參與하기도 하는데 특히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그러하다.

④ 諮問機關의 活用 - 非政府機關들은 統計資料의 一次的 供給源이 될뿐 아니라 최종 利用者로서 政府統計計劃에 直接的으로 關聯을 맺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各 事業体와 労働者 農民을 代表할 수 있는 諮問機關 또는 研究機關을 活用하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면; 予算管理厅은 美国統計協會에 의하여 1951年 設立된 「統計政策諮問委員會」로부터 聯邦統計組織 및 그 政策에 관한 助言을 받고 있고 1942年 予算管理厅의 承認으로 設立된 「聯邦報告諮問委員會」로부터 応答者の 報告負擔의 軽減, 經費節約, 統計利用度의 增大 등에 관한 專門的 助言을 받고 있다.

또한 「労働統計諮問委員會」, 「센서스諮問委員會」, 「事業体 經濟諮問委員會」, 「聯邦就業安定諮問委員會」등 일련의 諮問機關이 있어 繼續적으로 統計技術的 方法에 관한 助言 및 諮問을 하고 있다.

⑤ 特別研究 및 調査-統計計劃 및 統計調査, 分析, 改善을 위한 特別研究諮問機關이 多數 設置되어 있다.

이러한 特別機關은 주로 特定機關과 關聯하고 있는데, 예컨대 商務省長官이 任命하는 「綜合評價委員會」에서는 센서스局的 全般的 活動에 관한 評價報告書를 作成하며 保健教育 厚生省長官이 任命하는 「特別諮問委員會」에서는 教育統計計劃에 관한 全般的 評價 보고서를 作成한다.

聯邦支払準備理事会 (Board of Governors Federal Reserve System) 에서 任命하는 「7人諮問委員會」에서는 貯蓄 通貨保有量 景氣展望에 관한 統計計劃을 檢討한다.

「經濟調査室」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計定研究委員會」에서는 予算管理厅과의 協定으로 國民計定體系를 研究, 檢討한다.

「物価統計分析委員会」에서는 政府의 物価指數를 多角的 側面에서 考察한 綜合報告書를 作成하고 있다.

1961年 케네디 大統領은 就業 및 失業者 動態 研究를 위한 特別委員會를 任命하여 就業 및 失業測定에 관한 報告書를 發刊하도록 한 바 있다.

3. 資料蒐集 整理 및 處理過程

1) 行政統計

많은 統計資料가 行政過程에서 부차적으로 蒐集되는 境遇가 허다한데 輸入統計가 그 첫째 例이다. 그러나 근일에는 年老者, 不具者, 疾病, 保健保險計劃 또는 失業者救濟 等に 關한 行政計劃에서 人口問題에 關한 방대한 資料 및 就業者, 失業者 統計가 부차적으로 作成되고 있으며 個人 및 企業所得稅 台帳은 所得統計의 主要 源泉이 된다. 그밖에도 「聯邦支払準備理事會」 「聯邦有價証券 및 外換委員會」等 多數의 調整機關에서는 그들의 行政業務 分析을 위한 必要 불가결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2) 센서스

센서스는 統計情報를 蒐集하기 위한 一次的 手段이 되어 왔다.

定期 人口센서스에 의하여 全般的 人口成長率을 算出할 수 있고 綜合經濟센서스 또한 資料의 합목적성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

次期 센서스까지의 gap를 充當할 수 있는 신뢰도가 어느 程度 희박할지라도 定期的인 센서스 資料는 統計構造에 있어서 必須的 要素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人口 및 住宅, 農業, 製造業, 都小売業 센서스가 定期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것이다.

센서스를 單純히 全수조사로서 생각하는 例가 많은데 센서스에서 도 이질적 資料를 蒐集하는때는 標本調査가 利用되고 있다.

標本調査가 全수조사에 比하여 資料가 빈약하고 국부적일 것이라는 思考方式은 뒤바뀌어 오늘날 잘 管理되고 科學的으로 設計된 標本은 그것이 작은 標本일지라도 매우 精確하고 대표성있는 統計 値를 算出할 수 있는 것이다.

3) 統計 定義 및 標準分類

統計基準 定義 및 標準分類에 관한 方法이 予算管理庁과 關係機關의 技術陣에 의하여 開發되었는데 이는 政府統計의 比較를 容易하게 하고 効率的 利用을 위한 가장 重要한 手段중에 하나이다.

이중에는 標準産業分類, 標準大都市 統計地域分類, 標準企業體 分類, 交通統計를 위한 商品分類, 就業報告를 위한 標準規格, 標準職業分類 등이 있으며 이같이 많은 各 機關의 統計作成에 統一的

으로 利用될 수 있는 標準 이외도 特別計劃에 適用할 수 있는 專門化된 標準이 開發되고 있다.

4) 秘密의 保護 및 調査票의 送付

應答者로부터의 個別的인 報告資料는 當該 蒐集機關에서 秘密을 보강하여 當초의 統計目的 이외에는 쓰여지지 않도록 規定하고 있다.

센서스 法에는 個人資料의 누설금지 조항이 規定되어 있고 應答者의 承認없이 資料를 提供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聯邦機關이 個人 혹은 團體로부터 동일한 資料를 必要로 하는 경우 聯邦報告法에 依拠 가급적이면 他機關에 既蒐集되어 있는 資料를 利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資料를 提供하는 機關이나 提供받는 機關이 모두 秘密을 지키도록 規定하고 있다.

5) 調査方法

調査項目이 많은 複雜한 調査票 또는 迅速을 要하는 調査에는 흔히 個人面接調査가 使用되고 있다.

예컨대 標本調査方法에 의한 全國의 就業 및 失業者調査, 센서스局에서 每月 實施하는 人口動態調査에는 타계식면접조사방법이 採択되고 있다.

消費者價格指數 算出을 위한 対象品目에 대한 價格調査가 또한 勞動統計局에서 同一한 方法으로 遂行된다.

人口센서스에서 타계식 면접조사가 傳統的으로 쓰여 지는데 人口가 조밀한 小地域은 郵便調査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小地域에는 各家口에서 調査票를 記入하여 센서스局으로 郵送하면 센서스局에서는 미비한 調査票, 미접수된 가구에 한하여 電話質疑를 한다.

大部分의 事業体 調査에서도 対象처에서 調査票를 作成 送付하고 不完全한 内容에 한하여 電話質疑를 하고 있다.

이 境遇 応答可變性の 研究를 통한 資料의 質的改善 및 bias 研究등이 講究되고 있다.

6) 標本設計

近代的 標本調査는 政府統計의 精密度와 適時性を 높여 주었으며 調査經費, 報告負擔을 덜게 하였다.

標本調査方法으로 蒐集되는 資料의 실례를 들어보면 月間勞動力 動態 및 水準推定, 農産物 收穫量 推計, 事業体 財政現況 등이 있는데 이는 統計蒐集의 効率的 方法일 뿐아니라 editing, coding, 製表等 資料處理 過程에 있어서도 많은 利点を 준다.

標本調査의 利점을 最大한 살리기 위하여는 標本이 設計된 時

점에서 最終 結果値를 計算하여야 한다.

예컨대 全國과 地域推計를 同時에 算出하려면 단지 全國推計를 위한 標本보다는 훨씬 더 큰 標本이 必要할 것이다. 근일에 있어서 美國의 標本調査는 거의가 確率抽出에 의한다.

이같은 標本調査方法의 考察은 政府의 관심사이며 現況方法보다 더욱 効果的인 標本調査가 開發되고 있다.

7) 電子計算 處理

1950年 초반에만 하더라도 統計業務에 보편적으로 쓰여진 장비라면 在來式 穿孔기였는데 資料處理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電子計算組織 (Univac I)이 1951年 센서스局에 設置됨으로서 統計資料 뿐만 아니라 一般 企業資料處理의 電子計算化를 위한 전기가 되었다.

그후 컴퓨터의 수는 날로 增加하여 거의 모든 政府機關이 統計業務를 다루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利用케 되었다.

또한 高速印刷機, 자료입력장치, 資料再生裝置, 自動解讀裝置 같은 派生的 裝備들이 開發되어 컴퓨터에 쓰여지게 되었다.

컴퓨터는 莫大한 量의 資料를 短時間에 處理하고 있지만 사실 Programing 이나 operating system 에 있어서 엄밀한 調整이 要求되고 있다.

4. 主要 社会 經濟統計計劃

1) 人口統計

① 總人口 및 人口動態 ... 人口의 크기, 特性에 關한 統計가 商務省 센서스국에서 每 10 年마다 實施되는 人口 센서스에 依하여 蒐集되고 있다.

最初의 人口 센서스는 1970 年에 있었고 그후 每 10 年마다의 센서스 結果가 地域別로 詳細히 公표되고 있다.

人口統計는 人口의 크기, 特性 및 就業狀態, 職業 및 産業, 所得 關係 등을 包含하는 全般的 經濟要素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5 % 標本家口로 부터 經濟項目에 關한 基本資料가 蒐集되고 있다.

센서스局에서는 또한 449 개 標本調査地域의 5 万余 家口로 부터 人口의 特性, 月間勞動力 移動에 關한 資料를 繼續적으로 蒐集하고 있다.

이는 次期 센서스 期間에 있어서의 人口의 分布, 構成 등에 關한 補完資料가 되는 것이다.

農林省 經濟調査室과의 共同作業으로 10 万余 農家口로부터 離農 婦農 및 其他 農家人口 變動에 關한 추계를 郵便調査方法으로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人口動態統計는 「国立保健統計센터」에서 管 理하고 있으며 이의 基本資料는 50 個州에 所在하는 州 「人口動態申告事務所」에서 蒐集提出되는 出生, 死亡, 혼인, 離婚申告에 依하여 蒐集된다.

「国立保健統計센터」에서는 以外에도 月間人口動態統計의 잠정치 推算.

全國別, 州別 其他 地域別 人口動態統計作成, 生命表 作成 等を 主管하고 있다.

② 移民 및 歸化……法務省의 「移民, 歸化事務局」에서는 外國人 및 歸化人에 關한 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出入國者(觀光者, 留學生, 事業訪問, 外國의 公務員, 臨時雇傭員 等) 및 美國 歸化人에 對한 諸般資料를 綜合하여 公표한다.

2) 社會統計

① 教育統計……大部分의 聯邦 教育計劃이 保健 教育厚生省의 「教育庁」에 集結되어 있어서 「國立教育統計센터」는 이에 關한 特別研究와 아울러 日련의 統計調査를 遂行한다.

「教育庁」資料外에도 各種 聯邦教育事業, 國民教育水準 等の 資料가 「센서스局」의 人口動態調査에 의거 蒐集되고 있다.

② 保健統計……保健教育厚生省의 保健統計센터에서는 다음의 3가지 표本조사를 繼統적으로 實施함으로서 保健統計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i) 센서스局의 訓練된 調査員을 動員하여 每年 42,000 여 표本가구를 대상으로 慢性 질환 또는 不具者, 急性疾患, 醫療 및 齒科施設利用, 入退院患者 等 醫療에 關한 國家保健統計와 日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調査整理하고 있다.

ii) 保健診斷調査에서는 6~11세, 12~17세, 18~79세 의 年齡階層別 표本人구를 대상으로 健康診斷, 試驗, 調査 等を 하여 階層別 保健特性에 關한 資料를 蒐集한다.

iii) 醫療資源調査는 最近에 設定되었는데 各급 醫療機關, 特

殊患者 수용소 등으로 부터 集團患者의 特性 및 医療業에 從事하는 人力의 特性에 관한 精密한 統計를 산출한다.

또한 州로 州 或은 地域에 따라 特別保健調査를 實施하여 傳染病患者, 死亡者, 醫療施設 等の 資料를 蒐集한다.

③ 社会保險 및 關聯統計……年老者, 不具者, 失業者, 家族부양인의 死亡에 관한 保險計劃이 全国的으로 잘 보급되어 있는데 保健教育厚生省의 「社会安定 行政官室」에서는 同計劃을 가장 包括的으로 樹立하고 關聯統計를 作成한다.

同 計劃은 全 俸給者의 93%를 포용하고 있으며 모든 政府機關 雇傭人들이 「聯邦退職保險」에 加入되어 있어서 退職後, 遺家族에 대한 生계보장에 惠沢을 받고 있다.

各 州에는 勤勞者 傷害, 疾病 等に 관한 現金支給, 醫療惠沢을 위한 보상조직이 있고 特別보상 및 年金計劃에 따라 無能力者, 退職者 및 그 遺家族을 위한 연금을 每月 支給하고 있다.

3) 人力, 雇傭, 勞動統計

① 勞動統計……勞動統計는 주로 센서스局의 人口動態調査에서 蒐集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勞動統計局에서 集計, 分析되어 公表되고 있다.

從來의 月間 勞動力動態推計는 「人口動態報告書」에 公표되었었는데 1959年度 부터 노무성 勞動統計局의 月刊 「勞動統計報告」에 登載하고 있다.

② 非農業部門의 雇傭 및 賃金統計……非農業部門에 관한 雇傭, 勤勞時間, 임금추제가 每月 勞動統計局에서 作成, 公표되고 있는

이 자료는 労働統計局과 「就業安定局」 산하의 各州 事務所와 協議하에 聯邦과 州의 公同計劃의 일환으로 蒐集되고 있다.

雇傭推計는 製造業, 建設業, 鉱業 等の 모든 非農業部門의 就業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週間 平均勤勞時間 및 소득추계가 製造業, 鉱業生産 従事者 및 도소매업, 金融業 従事者, 保險 및 부동산업 従事者를 대상으로 作成되고 있다.

이 같은 資料를 根拠로 하여 主要産業別 就業動向의 分析 및 長期就業展望 等の 資料가 作成되고 있다.

③ 農林業 労働統計……農林業 勤勞者の 勤勞所得, 特性 等に 관한 資料가 各州로부터 2万5千余 農家를 대상으로 調査蒐集되며 하와이 알라스카를 제외한 全國 추계치로서 每月 公표되고 있다.

동 추계는 農業센서스 및 人口센서스의 資料와 연결, 分析되며 센서스局的 人口動態調査에 의하여 農場就業者 賃金, 就業期間에 관한 諸般資料가 總括적으로 每年 公표되고 있다.

④ 賃金統計……賃金統計는 별도로 労働統計局에서 蒐集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聯邦 各機關에서는 行政運用에 必要한 關係 賃金 資料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労働統計局에서는 50 個 製造業体 및 20 個 非製造業体를 대상으로 2年 내지 5年마다 賃金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 賃金調査를 実施하고 있는데 85 個 大都市地域과 大都市基準 統計地域을 調査地域으로 設定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별 賃金統計는 다시 每年 實施되는 專門, 行政職, 技

術職 勤勞者 給料調査와 연결되어 産業 및 직업별 賃金指數가 산출된다.

農林省 統計報告室에서는 作物수확량 報告에 의하여 農家賃金에 관한 지역별 平均賃金指數를 算出한다.

⑤ 地方 就業情報……勞働省 就業安定局 관할 2,000 余 「地方就業安定事務所」에서는 失業者 保險 및 公務서 勤勞者 福祉計劃이 聯邦-州 共同計劃의 일환으로 遂行되고 있다.

地方就業事務所는 現地 失業者保險, 就業情報, 人力資源 統計의 源泉이 되고 있다.

就業安定局은 이같은 地方就業정보를 全国的으로 취합하여 産業별 就業現況 및 勞動力移動, 勞動力需要와 供給現況, 失業者추계를 150 개의 主要 「就業市場地域」으로 分類하여 公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過剩 勞動力을 포용하는 小地域은 별도 分離하고 있다.

州 就業安定事務所에서 發刊되고 있는 「就業 案内」에서는 特種 職業 및 職業群에 관한 經濟的 要因과 그 內容이 提示되고 있다.

또한 農繁期에 있어서 270 개의 「主要 農業地域」으로 부터 農場就業에 관한 情報가 就業安定局에 報告되어 農業市場에 관한 지역별 資料가 作成되고 있다.

⑥ 科學 技術人力統計……國立科學財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은 科學技術人力의 統計情報를 分析, 調整하고 開發하기 위한 諸計劃을 樹立實踐하고 있다.

또한 勞働統計局에서도 科學者, 엔지니어 등의 所得 및 特性, 就業現況에 관한 資料를 蒐集, 分析한다.

[公衆保健室 (Public Health Service)]에서는 医療業 従事者에 관한 医療人力의 需要供給推計를 作成한다.

⑦ 人力開發 및 訓練……労働省 「人力行政官室 (Manpower Administration)」에서는 人力開發 및 訓練에 관한 몇가지 計劃을 遂行하고 있는데 同計劃에서는 聯邦人力政策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해 주고 있다.

技術人力의 부족으로 因하여 그 需要에 適應하기 위한 職業訓練, 人力開發 政策에 있어서 보다 活動的이고 광범위하게 展開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包括的인 統計情報를 蒐集하고 있다.

이같은 情報는 地域別 技術訓練 및 그 參加者들에 관한 社會經濟的 特性을 提示하고 있어서 人力行政에 관한 議會 報告資料로서 使用되며 또한 行政目的과 統計資料로서 利用된다.

⑧ 生産推計……主要 民間經濟 및 非農業部門의 生産現況이 労働統計局에서 集計되며 또한 農業生産推計가 經濟報告室에서 集計되고 있는데 勞動力 投入과 生産과의 上관계수가 다음의 두가지 相異한 概念에서 算出되고 있다.

i) 單位時間當 一人 總生産量을 測定하여 單位生産量에 所要되는 勞動時間의 變化를 推定하여 物量指數를 算出한다.

ii) 單位時間當 一人總生産量을 測定하여 技術의 變化와 附加價値의 變化 等を 추정한다.

이는 農業, 非農業, 製造業, 非製造業을 包含하는 國民總生産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労働統計局에서는 또한 學校施設, 病院, 高速道路, 公共機關 等 各種 建設統計를 蒐集 公表한다.

農林省 經濟調査室에서는 두 種類의 生産力을 추정하는데 그 하나는 單位面積當 勞動力 및 生産量의 추정이고 다른 하나는 總耕地面積에 對한 勞動力과 生産量과의 推計이다.

⑨ 労働移動……労働統計局에서는 全國에 걸쳐 모든 製造業部門에 關한 月間労働移動率을 算出하고 있는데 이는 4万余 業体の 1千2百餘名의 勤勞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聯邦과 州 共同計劃으로 州 製造業体の 勞動力移動에 關한 情報를 취합하고 있다.

全國의 労働移動率은 1958年 부터 比較可能하며 그 以前의 것은 産業分類構造의 改正으로 比較할 수가 없다. 따라서 大部分의 州, 地域別 労働移動率은 1958年 부터 比較可能하다.

⑩ 産業災害……勤勞者 災害統計가 労働統計局에서 670余 製造業 部門에 對하여 1千4百萬 勤勞者를 對象으로 蒐集되고 있다.

同資料는 勤勞者 災害 및 偶發事故에 關한 定期的 調査에 의하여 蒐集되고 있다.

또한 內務省「鈹業局(Bureau of Mines)」에서는 石炭, 鈹業, 石油, 天然가스, 金屬 및 非金屬工業, 모래, 자갈 採取 및 採石業 等의 勤勞者 災害統計를 蒐集, 公表하고 있다.

労働省「勤勞者補償局(Bureau of Employee's Compensation)」에서는 聯邦勤勞者補償法에 의거 勤勞作業中 重·輕傷에 關한 諸般 統計 및 傷害者와 遺家族補償에 關한 統計를 每年 作成 公表하고

있다.

또한 勤勞傷害者數는 「全國保健調査」에서 그 資料가 蒐集되는데 이는 1957年 公衆保健室에서 最初로 시도한 것이다.

同調査의 資料는 自動車 傷害, 作業傷害, 非作業傷害 및 其他 傷害要因別로 分類되고 있다.

㉑ 海外勞動統計…… 海外의 勞動力現況에 관한 特別研究 및 資料가 勞動統計局에서 수집되고 있다.

同情報는 UN 및 其他 國際機關의 刊行物 또는 實務障의 直接的 調査에 의하여 蒐集되어 定期的으로 公表된다.

또한 選定된 國家에 대하여는 勞動活動 및 統計資料를 入手하여 이를 分析하고 每月 公表하고 있다.

4) 物價統計 및 物價指數

① 都壳物價…… 勞動統計局에서는 每月 都壳物價指數를 편제하는데 公式的인 月別指數가 1902年부터 公表되어 왔다.

이 指數의 全般的인 改正이 1952年에 2千余個 生必需品에 대한 價格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作成되었다.

同指數는 物價水準의 變動을 測定하기 위하여 編製된다.

말하자면 主要市場의 價格變動要因에 관한 分析, 個別商品 및 商品類 (group) 의 價格變動率과 그 推移를 測定하는 것이다.

價格資料는 主要市場 通用價格別로 1차 去來段階에서 調査되고 있는데 軍需物資, 生産者小壳販売品은 가중치 패턴에서 除外되고 있다.

1955年 主要 加重值集團에 관한 一連의 調整作業이 있었고

1958년에는 1954年度 産業센서스 資料를 根拠로 하여 加重值 構成을 改正하였고 그후 1958年 센서스를 根拠로한 加重值 改正을 하였다.

다시 1963年 센서스에 의하여 加重值 構成이 改正되었고 指數 基準年度를 「1967 = 100」으로 改編하기에 이르렀다.

同指數는 每月 農產品, 加工食品 等の 14個 主要商品集團, 穀物, 綿製品 等の 81개 小集團, 241개의 單位規格品을 包含하여 거의 모든 生必品 別로 作成되고 있다.

또한 建設資材價格指數, 耐久材, 非耐久材 等 23개 特別商品 Group 別 指數를 每週 公表하고 該指數品目的 月平均價格이 公表된다.

또한 主要産業에 대한 月間生産指數가 發表되고 있다.

② 小売物價……또한 勞動統計局에서 編製하고 있는 消費者物價指數는 都市 勤勞所得者와 俸給所得家計에서 購入하는 一定量의 商品 및 서비스 價格의 變動에 대한 尺度가 되고 있다.

이 指數는 都市家計의 消費生活變動을 把握하며 物價의 「바로메타」가 되고 있다.

本指數는 食料品, 被服類, 交通費 및 Service (劇場觀覽料, 美容料, 医療費 等)에 관한 價格을 基本으로 한다.

이 指數는 1次大戰中「国立造船所」에서 價格協定에 使用키 위하여 처음으로 算出되었었는데 그후 利用範圍가 漸次로 擴大되어 全都市指數를 算出하고 1913年 까지 逆算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全國 消費者物價指數는 1913年 以後 利用可能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指数基準年度가 1957 ~ 59 = 100 으로 改編되고
그후 다시 1967 = 100 으로 改編하고 調査地域과 品目에
現實的 修正을 加하였다.

現行 指数品目으로 包含되는 400 余品目は 勤勞所得者, 俸給所得
者들이 購入하는 다양한 商品 및 Service 중에서 가장 「代表性
있는 것으로서 勞動統計局에서 選定하였다.

價格資料는 " 勞動統計局의 訓練된 調査員을 動員하여 蒐集되며
小數의 項目(公共施設使用料, 新聞購読料 等)에 대하여는 郵便調
査, 電話質疑 方法을 用하고 있다.

③ 農家購入價格……農林省 統計報告室에서는 農家不動産의 抵
當利子 및 納稅를 包含하여 農家生活 및 農産品 生産에 投与된
財貨 및 서비스의 指數를 算出하는데 每月 15 日을 기점으로 하
고 있다.

農家生活必需品에서는 食料品, 담배, 被服, 家具什器, 建築資材, 自動
車 및 그 附屬品 等を 包含하며 農産品 生産品目에서는 飼料, 家
畜購入, 發動機 및 그 附屬品, 機械類, 肥料, 種子 等を 包含한다.

農家 不動産의 acre 當 支払利子와 租稅, 賃金 등이 農業生産指
數와 결합되어 包括적인 農家購入指數를 形成하는데 利子, 租稅, 農
家賃金率을 합성하여 「패리티 指數」를 算出하고 있다.

農家購入價格指數는 1928 년에 처음으로 公表되었는데 年度別 指
數는 1910 年부터, 分期別指數는 1923 年부터, 月別指數는 1937 年
부터 利用할 수 있다.

指數品目は 農家購入商品 패턴에 대한 價格系列이 이루어지도록 繼續 增加되고 있다.

同價格資料는 체인 스토아 或은 獨立商店으로 부터 同時에 蒐集되고 있다.

農家不動産税金, 支払利子額, 等の 資料는 따로이 特別調査를 實施하여 蒐集하고 있다.

(4) 農家販賣價格……統計報告室에서는 또한 月間 農家販賣價格 指數를 算出하는데 包括的인 指數가 公表되기는 1921年 부터이다.

農産品の 月平均, 季節平均價格이 다음의 8,000 余 対象処로 부터 蒐集되고 있다.

i) 地方 荷置場의 農産品 取扱者

ii) 製粉工場

iii) 酪農製品共販場

iv) 市場 및 協同組合

v) 地方 農産品 市場

vi) 地方銀行

vii) 特定 酪農業者 等이다.

現行指數는 農産品販賣額의 거의 93%를 網羅하는 55개 個別 商品價格을 基本資料로 하고 있다.

農家販賣價格指數는 農家購入價格指數와 연결되어 農産品の 패리티 價格을 決定하게 된다.

5) 生産統計

農業, 製造業, 鈷業 等の 生産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定期的

으로 센서스가 實施되고 있는데 동센서스 資料를 補完하기 위하여 標本調査가 隨時로 實施되고 있다.

① 製造業…… SESA에서 集計되고 있는 製造業에 관한 基準統計 (bench-mark statistics)는 다음의 4가지 基本要素로 構成되고 있다.

i) 每 5年마다의 製造業 센서스

ii) 年間 製造業 動態調査

iii) 月間販売, 注文, 在庫, 等の 産業調査

iv) 特定 商品의 生産量, 積荷量, 在庫에 관한 動態調査 等이다.

센서스法이 1948年에 制定 1964年에 改正되었는데 이 法令에 의거 製造業, 鉱業, 事業体 센서스(都·小売業, 서비스業)를 「2」와 「7」로 끝나는 每 5年마다 實施하고 있다.

次期 센서스를 補完하기 위한 簡易 標本調査를 實施하는데 이는 6万余 対象業体로부터의 資料를 센서스와 類似的한 形態로서 취합하고 있다.

거의 모든 大規模의 製造業体를 망라하는 月間 産業動態調査資料는 製造業 動向의 基本指標가 되며 年間製造業調査를 위한 基準資料가 된다.

또한 5千余 主要生産製品에 관한 生産, 出荷, 在庫調査를 月別, 分期, 年間으로 實施하고 있고, 이 외에도 産業生産에 관한 情報는 聯邦 各 機關으로 부터 蒐集되는데 예컨대 國防省에서는 國防契約에 의한 軍需品生産을, 財務省의 国税庁에서는 알콜飲料 및 産業用

알콜의 生産을, 「関稅協會」에서는 有機化學物 生産資料가 確保되고 있다.

② 鉍業生産……鉍業센서스 實施過程은 製造業센서스와 同一하며 鉍業生産, 販賣價格等에 관한 全般的인 資料가 蒐集되고 있다.

鉍業動態資料의 出處는 內務省 鉍業局이며 分期別, 年間別로 鉍業統計를 公表하고 있다.

鉍業局과 40 개 州 및 Puerto Rico 와의 協議로 年間 鉍業生産資料가 취합되고 있으며 主要 鉍物, 金屬, 燃料 等에 관하여 週間, 月別, 分期別로 公表하고 있다.

③ 農業生産……1840 年 부터 每 10 年마다 農業센서스가 實施되어 왔는데 農業生産統計는 主로 統計報告室에서 蒐集한다.

毎年 3 月 統計報告室에서는 17 개 主要作物統計를 위한 郵便調査를 實施하는데 同資料는 主要作物 및 耕地面積推計를 위한 基本資料가 된다.

또한 畜産物 在庫調査, 屠殺 推計 및 酪農製品生産, 가금류 生産推計를 하고 있다.

漁獲量 및 이의 價格統計에 관한 精密한 資料가 內務省 「漁業局」에서 蒐集된다.

④ 産業生産指數……聯邦支払準備委員會에서는 月間 産業生産指數를 編製하는데 耐久材는 總指數 加重值의 48 %, 非耐久材는 38 %, 鉍業生産이 8 %, 電氣가스가 5 % 를 차지하고 있다.

6) 分配統計

① 都小売, 서어비스업……每 5 年마다 都小売, 서어비스업 센서스

가 實施되어 그 結果가 公表되고 있는데 主要商品에 대하여 센서스局에서는 週間, 月間으로 地域別 都小売業推計를 發表한다.

그外 百貨店 販賣에 관한 資料가 大都市 및 그의 地域別로 作成되고 있다.

1954 年까지의 센서스는 他計式 面接調査에 의하여 實施되었는데 그후 郵便調査를 實施하게 하였다.

雇傭員이 없는 業체는 이 센서스에서 除外되고 있다.

1967 年 센서스부터는 各 業체로 부터의 直接的인 報告를 취합하는 한편 国税庁과 社会安定行政官室의 記録文書를 參照하였다.

月間 小売業推計는 11 人 以上の 從業員을 雇傭하는 業체를 對象으로 通貨確率로 標本調査方法으로 實施되고 있는데 이같은 方法에 의하여 全數調査를 標本調査로 代置할 때에 惹起되는 誤差의 크기를 測定하고 있다.

그리고 百貨店 月 販賣統計가 200 余 基準大都市地域, 中小都市, 其他 地方区域別로 當該地域의 全數調査를 通하여 蒐集되고 있다.

② 農産品 市況……農林省「消費者 및 市場調査室 (Consumer and Marketing Service)」에서는 農産品 市況에 관한 諸 資料를 集計하는데 이를 各 地方事務所로 부터의 報告를 月別, 分期別, 年間으로 總括하여 公表한다.

또한 水産物 生産狀況이 매일 内務省 漁業局에서 發表되고 있다.

7) 輸送, 公共施設, 通信 統計

① 輸 送……센서스局에서는 每 5 年마다 交通센서스를 實施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繼統的인 統計計劃을 遂行하고 있으며, 交通

省 「聯邦 航空行政官室」 「聯邦高速道路行政官室」 「聯邦鐵道行政官室」
等に 의하여 各種 統計活動이 遂行되고 있다.

聯邦 航空行政官室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에서는 空港 航路飛行施設, 登錄된 航空機의 利用等に 관한 資料를
蒐集하며 聯邦 高速道路行政官室 (Federal Highway Administra-
tion) 에서는 車輛登錄, 燃料 消耗 및 交通事故 安全行政, 交通特
性, 主要幹線道路의 延長, 高速道路維持經費 및 財政 等に 관한 資
料를 蒐集한다.

또한 聯邦 鐵道行政官室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에서는 鐵道事故, 機關車運行期間 等に 관한 資料를 公表한다.

「美合衆國, 沿岸警備室 (U.S Coast Guard)」에서는 피서 休養客
들의 익사사고에 관한 資料를 集計하며, 「國立 交通安全公社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에서는 民間航空事故에
관한 資料를 公表하고 있다.

② 交通 센서스……交通 센서스가 처음으로 實施된 것은
1963 年이며 每 5 年마다 繼續 實施되고 있다.

統計蒐集의 不必要한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동 센서스에서는 聯
邦 關係当局에서 作成되지 않는 資料에 한하여 蒐集하고 있다.

따라서 동 센서스 計劃은 다음과 같은 一連의 特別調查로서 構
成된다.

i) 全國 旅行者調查……全國, 地域別 旅行統計 즉 旅行의
目的, 旅行期間, 交通手段의 利用, 宿泊施設, 旅行距離, 旅行頻度 等

ii) 트럭 및 運行調查……全國의 트럭 保有台數 및 主要

用途, 延運行 距離, 積載量, 燃料의 種類 等

iii) 貨物輸送調査……交通 商品分類에 의한 商品의 流通, 出發地 및 目的地, 25개 主要 生産地域으로 부터의 商品의 流通量, 商品別 積載量 및 距離 等の 資料

③ 公益事業……電力과 天然가스 産業에 관한 精密한 統計가 「聯邦 動力委員會」에서 蒐集되어 月別, 分期別로 그 結果가 公表되고 있다.

④ 通信……電話, 電報, 라디오, T V 等の 通信事業에 관한 統計가 「聯邦 通信委員會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作成되고 있다.

8) 建設 및 住宅統計

① 建設……建設統計는 센서스局의 月間 「建設業 推計」에서 細分된 資料로서 公表되는데 센서스局에서는 建設統計에 관한 概念 및 方法의 改正을 위한 一連의 長期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1960年 以後 센서스局은 居住單位 住宅, 改築, 非居住用 建物, 公共施設 等の 概念에 관한 많은 修正을 加하였다.

店舖, 倉庫, 工場 等 非居住用 建物 標本調査를 每月 實施하고 州 및 地方政府 建設 活動에 관하여도 每分期마다 標本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② 住宅……美合衆國 住宅 센서스가 1740年에 처음으로 實施되었다.

1740年과 1950年 센서스 資料는 建物の 構造, 形態, 建立年度, 存続期間, 居住人의 人種, 防水, 房當居住人數, 房賃 等に 관한 資料

를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1960 年の 住宅 센서스에서는 現行住宅行政計劃에 있어서 統計需要에 부응하기 위한 調査票의 修正을 加하였는데 이에 새로이 追加된 項目으로서 トレ일러의 種類, 寢室의 數, 浴室數, 昇降機構造, 温水施設, 난방燃料, 給水源, 個人別 自動車 保有數, 還氣裝置, 自家冷凍裝置, 洗濯機, 電話 等이다.

또한 방세 자료는 勞動統計局에서 消費者物價指數 算出을 위하여 蒐集되고 있다.

住宅建設融資, 財政에 관한 計劃 및 그 資料가 「住宅 및 都市 開發省」傘下機關으로부터 利用될 수 있다.

9) 事業体 經營狀況

民間企業 經營에 관한 年間資料가 国税庁의 「所得統計報告書」에 収録되고 있다.

그리고 製造業体財政現況에 관한 情報가 「聯邦貿易委員會」와 「外換管理委員會」의 共同計劃에 의하여 1947 年 以來 每分期別로 蒐集되고 있다.

또한 産業部門別 經營資料가 外換管理委員會와 SESA 와의 共同計劃에 의거 每分期別로 公表되고 있다.

10) 個人所得, 支出, 貯蓄

① 所得……個人所得에 관한 推計는 細分된 資料로서는 公表되지 않고 있지만 1946 年 以後 個人所得에 관한 推計結果는 月別로 算出되고 있으며 農家所得 年間推計가 農林省 經濟調査室에서 作成되고 있다.

家口 및 個人所得 推計는 다음의 3가지 主要 出處로 부터 나 오는데 즉,

i) 人口 센서스

ii) 年間 標本家口所得調查 (人口動態報告書)

iii) 個人所得 및 支出調查 (勞動統計局) 等이다.

그리고 勞動統計局的 週期的調查에 의하여 所得稅 控除 以前, 以後의 個人所得分配 水準에 관한 情報가 蒐集, 公表되고 있다.

② 支出……都市 消費者 支出에 관한 最近의 資料 蒐集方法으로서 「消費者支出調查」가 消費者 物價指數 改編作業의 一環으로 勞動統計局에서 遂行되고 있는데 이 調查를 通하여 美合衆國의 全都市人口를 代表하는 9,500 標本家口로 부터 所得, 貯蓄과 關聯된 支出資料가 蒐集되고 있다.

③ 貯蓄……SESA 에서는 每分期 個人 仮處分所得으로 부터 個人消費를 控除하여 個人 貯蓄推計를 作成한다.

「有價証券 및 外換管理委員會에서도 分期別로 個人別 貯蓄推計를 作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推計를 造和시킨 包括的 資料가 每年 公表되고 있다.

11) 海外貿易 및 觀光統計

貿易統計는 美聯邦政府 統計史上 가장 오래된 것중에 하나인데 年間 商品別 貿易統計가 1790 年 부터, 月間資料는 1866 年 부터 蒐集作成되어 왔다.

政府貿易統計는 SEISA 에서 編製되는데 그 基本要素는 輸出入 商品價格, 商品分類, 國家別 輸出入 等이다.

輸出商品은 約 3,600 個 品目으로 分類되는데 이는 國際標準貿易分類에 의한다.

12) 國民經濟 計定

① 國民所得 및 生産……國民總生産 및 國民所得, 個人所得, 推計 等 一連의 關係資料가 SEISA에서 作成된다.

1965 年에 商務省은 國民所得 및 生産에 관한 包括的 改編을 完了하였는데 國民所得, 生産統計의 推計方法에 관한 概念이 세 種類의 發刊物에 잘 記述되어 있다.

즉, 1954 年 부터 發行된 「國民所得」과 1965 年의 改編目的을 序述한 「1965 年의 調査」, 그리고 이를 補完하기 위한 「美合衆國의 所得」 등이 있다.

13) 政府 財政

① 聯邦政府……聯邦 財政運營에 관한 資料는 주로 財務省에서 취합된다.

政府公債 및 現金去來에 관한 總括的 情報가 「日刊財政」에서 提示되고 있고 보다 詳細한 財政狀況이 「月刊財政」 「財政回報」에 収録되고 있다. 그리고 政府財政運營에 관한 廣範圍한 資料가 「財政年鑑」에 収録되고 있다.

予算管理庁에서 每年 發行하는 「美合衆國 予算」은 聯邦財政

計劃에 관한 總括的 狀況 및 統計를 同時에 收錄하고 있다.

政府 財政統計 計劃의 一環으로 SESA 에서는 聯邦 財政 統計를 州 및 地方政府의 財政資料와 比較可能 하도록 分類하여 歲入源泉別 總額, 事業別 歲出總額을 모두 公表한다.

「TVA」 「商品信用協會」와 같은 尤수의 聯邦 團體 또는 公共企業에서는 財政現況에 관한 定期刊行物을 發刊하고 있다.

② 州, 地方政府 財政…… SESA 의 「政府課」는 州 및 地方政府 財政 統計에 관한 資料를 1950 年 政府 센서스 施行에 관한 法案이 議會에서 通過를 계기로 每 5 年마다 동 센서스를 實施함으로써 蒐集하게 되었다.

二. 統計法規

1. 미합중국 센서스법

총 칙

제 1 조 : 이 법에 있어서 각 조항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한 「국」은 센서스국을, 「장관」이라 함은 상무성장관을 말한다.

제 2 조 : 센서스국은 상무성에 속한다.

제 3 조 : 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반기능 및 임무를 그가 임명하는 행정관 및 고용인 또는 상무성 내의 국·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부 각 성·청으로부터 관계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자치단체·시·개인으로부터 기록의 사본·보고서 또는 기타 형태로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 장관은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유인물을 공공인쇄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센서스 보고서 또는 이 법에 의한 각종 조사의 결과보고서의 인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 ① 장관 또는 상무성 내의 행정관 및 고용원은 이 법에 의거 제공된 자료를 통계목적 이외 기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자료를 공표할 수 없다.

② 선서한 행정관·고용원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의 보고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없다.

- 제 7 조 :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계 및 전자개발 업무를 선정할 수 있다.
- 제 8 조 : 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게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9 조 : 센서스국장은 의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법이 정하는 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국의 상임 행정관·고용원은 미합중국 국민이어야 한다.
- 제 11 조 : 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임시직원을 1949년 「직급법」에 관계없이 책정·임명할 수 있다.
- 제 12 조 : 장관은 상무성내의 고용원 이외에 타 성·청 및 독립기관의 고용원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직보수법」에 관계없이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3 조 : 장관은 센서스 수행을 위하여 정규의 고용원을 센서스 기간 동안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정규고용원이 임시직에 대치된 후 업무상 필요치 않는 때는 장관은 즉시 그의 최종직책 및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 어떤 고용원도 본 조항에 의거 임시직에 재직기간중 법적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 본 조항에 의거 「임시직」은 1년 혹은 센서스 실시요소에 소요되는 특정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 각 지도원은 장관의 훈령·지시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각 조사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고용원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센서스와 통계조사에 관련된 통계수집에 임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장관은 미합중국 대륙내에서 실사 고용원에 대하여 모타 싸이클,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1949년 개정 「여행법」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다.

센 서 스

제 18 조 : 장관은 제조원·광공업·도소매업체 센서스를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장관은 매 10년마다 인구·주택·실업자 센서스를 4월 1일을 시점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장관은 매 5년마다 농업·관개·배수 센서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장관은 매 5년마다 정부센서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센서스는 정부세입·세출·부채·조세 및 주·자치지역·시 기타 정부기관의 고용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 22 조 : 상기 조항은 어떤 연방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 장관은 센서스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4 조 : 각 센서스의 조사범위는 (인구센서스를 제외) 각주 및 Columbia 지구, Alaske Hawaii, Virgin Islands, Guam 및 Puerto Rico 연방을 포함하며 미합중국의 사법권 및 통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구센서스는 전항의 전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5 조 : 각 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 의원할당 목적의 인구조사를 제외하고 장관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하여 표본조사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

제 27 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에 위배하거나 태만했을 시는 500 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28 조 :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용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선서를 했을시 위증으로 간주 2,0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어떤 질의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위임받은 자 혹은 요청받은 자가 직접, 간접으로 허위자료를 보고했을시 2,0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제 29 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장관의 승인없이 어떤 특정자료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이용하였을 때는 1,0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이하의 징역 혹은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제 30 조 : ①이 법의 규정에 의거 장관 혹은 상무성 국·청 직원으로부터 어떤 질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받은 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태만했을시 1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60 일 이하의 구금 또는 양자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이를 허위보고한 자는 5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한다.

제 31 조 : 상무성 국·청의 인구조사를 위임받은 자에게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1,000 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한다.

제 32 조 : 호텔·아파트·하숙 임차가 또는 그밖의 건물소유주·관리자·감독자로서 이 법에 의한 센서스 또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무성 국·청 직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시 500 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33 조 : 공공업체·기업체·사업체·협회 또는 종교단체의 책임자 또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상무성 국·청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우편·전신·방문 그밖에 어떠한 수단으로 보고를 요청했을 때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태만한 자는 500불이하의 벌금형이나 6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했을 시 1,000불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한다.

Ⅱ . 独逸의 統計制度

II. 獨逸聯邦共和國의 統計制度

概 要

獨逸聯邦의 政府統計는 統計 技術的인 面에서 中央集中型 體制를 갖추고 있다.

多數의 國家에서 政府 各 部署가 所管 統計業務를 分擔하여 다루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獨逸의 모든 政府統計는 「聯邦統計庁」에 集中되어 있다.

獨逸의 聯邦의 地域構造와 行政組織에 따라 聯邦政府와 州政府와는 상호 緊密한 統計的 疎通을 이루고 있다.

聯邦統計庁 (Federal Statistical Office)에서는 各 個別統計를 취합정리 編製하며 資料 蒐集, 處理는 各 「州統計局」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獨逸의 政府統計는 聯邦體制에 適應하도록 廣範圍한 統計網을 構成하고 있다.

最近 聯邦統計庁은 資料處理, 統計分析 業務에도 活動的으로 參與하는 傾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特히 國民計定에서 그러하다.

또 다른 特徵으로서 獨逸에서는 法的 根拠없이 어떤 政府機關도 任意로 統計資料의 蒐集 行爲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政府 各 機關은 聯邦 行政을 수행하여 나가기 爲한 資

料蒐集을 聯邦統計庁에 委任하도록 되어 있다.

一. 統計組織

1. 中央統計機構

1) 聯邦統計庁 (Federal Statistical Office)

聯邦統計庁은 內務省 所管下에 屬하는 獨逸聯邦의 中央統計機關으로서 庁長·副庁長 以下 10個部로 構成되며 그 機能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

- ① 聯邦目的의 統計의 취합, 編製, 公表 및 統計의 同質性, 比交性을 증진시키기 爲한 技術的 方法의 開發
- ② 海外 統計의 作成 및 國際統計機構와의 統計情報의 交換
- ③ 國民計定の 作成
- ④ 統計 法令에 關한 立案作成
- ⑤ 司法部의 統計 질의에 對한 答辯의 提示 및 忠告

그 중 聯邦統計庁의 가장 重要한 任務는 무엇보다도 各 州統計局의 報告를 取合하여 聯邦統計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技術적으로 編製하는 것이다.

統計資料를 蒐集하고 이를 電子計算에 依하여 自動處理하는 過定은 各 州統計局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資料蒐集에 있어서 技術的 特性으로 因하여 海外貿易統計 같은 境遇는 聯邦統計庁에서 「聯邦關稅庁」과의 협조아래 直接 集中 處理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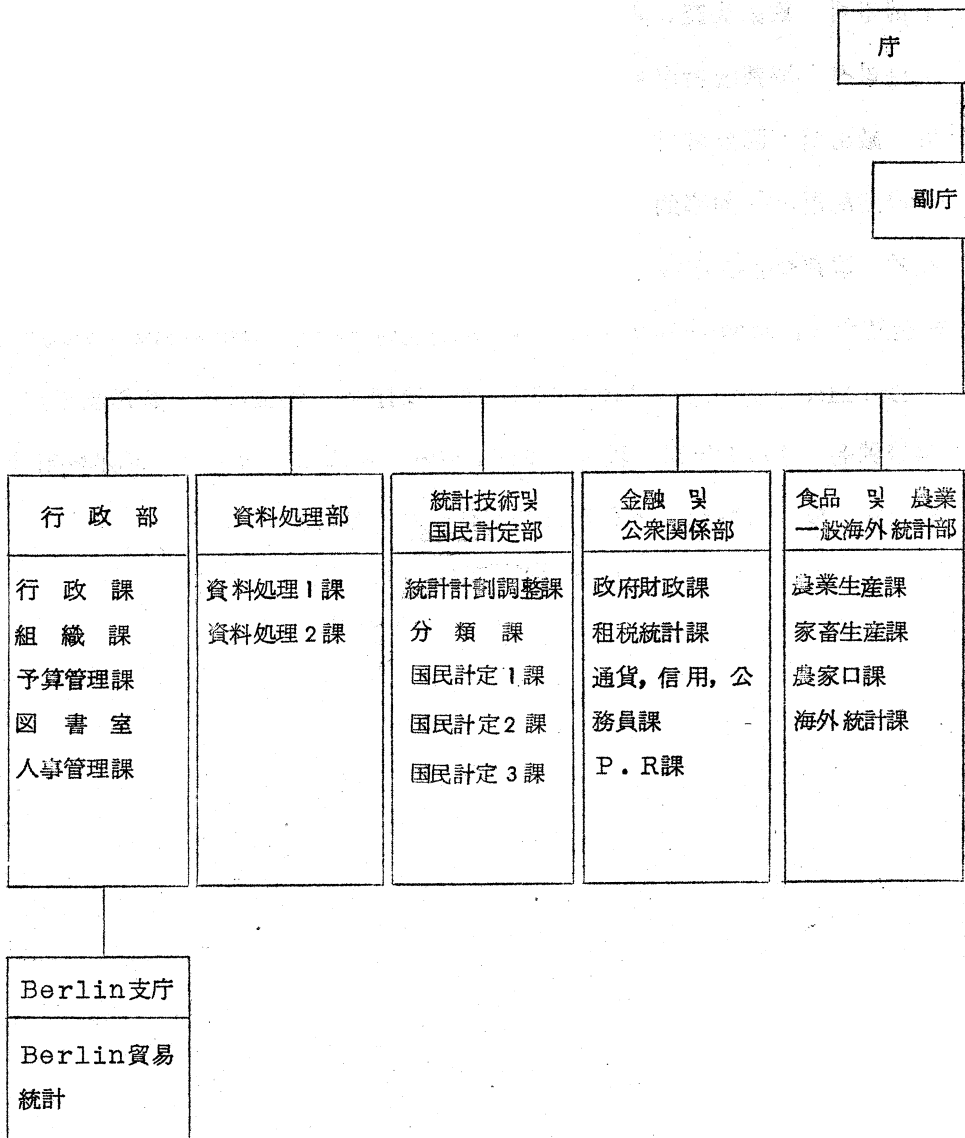
이외에도 實用的 調查方法을 採하여야 하는 境遇는 마찬가지이다 (例컨대 鐵鋼調查, 非農業部門調查, 家計支出調查, 都小売業調查等).

따라서 聯邦統計庁과 州統計局과는 적절히 業務가 分担되어 있지만 嚴格히 区分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聯邦統計의 効率的 수행을 爲하여 Berlin과 Duesseldorf에는 각기 聯邦統計支庁을 設置하여 當該 地域의 Berlin 支庁에 貿易統計 航空統計를, Duesseldorf 支庁에 鐵鋼生産統計를 全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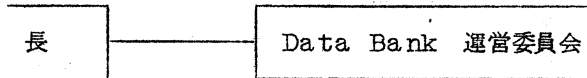
Berlin 支庁과 Duesseldorf 支庁을 包含하여 聯邦統計庁의 實務陳은 1971年初 現在 2602名에 이르고 있으며 聯邦統計庁의 機構圖 및 分野別 人員現況은 다음과 같다.

聯邦統計庁の



機能別組織図

(1971.2 現在)



産業及製造業部	交易及 交通部	物価・家計部	人口・社会・教育部	人口・職業・住宅部
産業生産課 生産指数課 生産課 産業サービス課	海外貿易課 国内交易課 交通, 通信課	物価(都・小売)課 賃金及 給料課 家計調査課 費用構造 及 貸借対照表課	人口動態課 教育課 公衆保健課 社会福祉課	人口サービス課 雇傭及 職業課 建築及 住居課

分 野 別 人 員 表

行 政	496
Berlin 支庁	487
資 料 処 理	197
国 民 計 定	135
金 融 統 計	144
食 品 · 農 業 · 海 外 統 計	98
産 業 統 計	215
貿 易 · 輸 送 統 計	579
物 価 · 賃 金 · 家 計	188
移 住 · 教 育 · 保 健 統 計	94
人 口 · 住 宅 統 計	89
計	2,602

2) 聯 邦 各 省

상술한바와 같이 獨逸의 政府統計는 統計庁에 集結되어 蒐集, 公表되며 各省은 임의로 統計資料를 蒐集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各省은 그들 固有行政業務 處理過程에서 附隨的으로 産出되는 行政資料 또는 統計局의 正常的 資料蒐集 過程에서 얻어질 수 없는 例外的인 情報에 한하여 蒐集編製하고 있다.

2. 地方統計機構

1) 州統計局

獨逸의 聯邦 行政體制에 적합하도록 各 州政府는 獨自의 州政府統計를 蒐集, 편제하며 이같은 州政府의 統計活動은 全國의 11個 州統計局에 依하여 各級 地方行政機關과의 협조아래 수행된다.

各 州統計 結果는 相互 比較可能 하도록 聯邦統計庁에서 技術的으로 취합조절 되는데 州統計의 效率的 管理 利用을 爲하여 各 州統計局은 Data-bank 를 設置하고 있다.

2) 市統計局

거의 모든 調査票가 州統計局으로부터 直接 応答者에게 배부되는데 대규모의 센서스의 境遇, 地方行政機關을 經유하여 調査票를 배부하는 것이 더욱 實效를 거두고 있는 때도 있다.

특히 人口 및 農業統計의 分野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體制에 맞도록 各 市는 그들 自体의 市統計局을 設置하고 聯邦統計庁 또는 州統計局의 實查業務에 參與하는 同時에 市行政 目的의 統計를 蒐集하는 二重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3. 統計諮問委員會

統計의 合目的性과 各 統計機關에 分担되어 있는 業務를 合理的으로 수행하기 爲하여는 統計에 對한 부단한 助言과 技術的 支援이 必要하다.

따라서 「統計諮問委員會 (Advisory Committee)」가 聯邦統計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거 聯邦統計庁에 對하여 諮問役割을 하도록 되어 있다.

統計諮問委員會는 各省 長官이 任命하는 위원 및 統計機關, 聯邦 統計의 利用者の 代表들로서 廣範圍하게 構成되며 聯邦統計의 內容 및 統計方法論, 其他統計 技術的인 問題에 關여하고 있다.

統計諮問會議는 每年 聯邦統計庁長 주재하에 全般的인 統計業務 計劃과 特定統計調査의 질의사항에 關하여 討論한다.

個別統計에 關한 精密한 審査 및 專門的인 事項에 關하여는 統計諮問委員會 中에 「專門分科委員會」가 担当하는데 그 分野는 다음과 같다.

- ① 統計 data bank
- ② 國民 計定
- ③ 分 類
- ④ 價格構造
- ⑤ 農業統計
- ⑥ 産業・製造統計
- ⑦ 貿易 및 輸送統計
- ⑧ 物價 및 賃金統計
- ⑨ 建設・住宅統計
- ⑩ 社會統計
- ⑪ 金融・租稅統計
- ⑫ 人口統計

또한 이 외에도 統計의 合理化와 調整을 爲한 統計閣僚委員會가 各省 및 聯邦會計庁의 代表를 常任委員으로하여 構成되는데 同委員會에 對하여 聯邦統計庁은 諮問機關으로서의 資格을 갖는다.

同委員會는 聯邦 個別統計에 關한 內容과 各省의 統計需要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며 經濟施策立案에 있어서의 統計의 最大活用을 檢討하고 있다.

從來에는 同委員會는 內務省長官에 依하여 召集되었으나 1958年 以後부터는 各省에서 必要로 하는 統計는 當해 長官의 주재하에 召集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歐洲共同体 (European Communities) 의 요청에 依한 統計資料要求와 統計予算에 關한 事項은 內務省長官의 주재로 개최되는데 原則적으로 同閣僚委員會는 政府統計의 總體的인 計劃을 檢討한다.

4. 聯邦統計의 作成過程

上述한바와 같은 組織的 기틀안에서 聯邦統計의 作成過程은 다음과 같이 区分될 수 있다.

1) 計劃

聯邦 各省으로부터 必要로 하는 統計가 決定되면 聯邦統計庁은 總體的인 統計調查方針에 적합한 方法論的, 技術的 計劃을 樹立한다.

同計劃의 目的은 同一한 統計方法에 依하여 聯邦統計의 構成要素인 基準・定義・質疑等을 一致하도록 하여 個別統計를 相互比較

可能하도록 하는 것이다.

同 計劃에서 特히 重要な 問題는 다음과 같다.

- ① 調査의 特性, 調査單位 및 範圍의 限界의 設定
- ② 調査票의 樣式
- ③ 被調査者의 範圍 決定
- ④ 調査方法 決定
- ⑤ 調査期間 設定
- ⑥ 資料處理의 設計
- ⑦ 製表計劃
- ⑧ 公表計劃
- ⑨ 調査費用 (당해 省에서 負擔한다)

調査方法 및 모든 技術的인 問題가 最終的으로 決定되면 이를 立法化하기 爲한 統計法 또는 訓令이 聯邦統計庁에서 起案된다.

2) 資料蒐集 및 處理

調査票 樣式, 應答者, 資料蒐集의 節次, 調査期間, 製表要領等 구체적인 計劃 및 이에 關한 指針이 모든 統計機關에 하달되면 다음의 副次的인 機能은 [州Computer 센터]와의 協助하에 大部分 州統計局에서 수행된다.

- i) 應答者 選定
- ii) 調査票의 印刷
- iii) 調査員의 教育·訓練
- iv) 調査票 배부 및 회수
- v) 調査票 內檢 및 應答의 지연에 對한 督促
- vi) 資料處理·集計 및 結果 編製
- vii) 聯邦統計庁에의 送付等

그러나 聯邦統計庁에서 集中的으로 編製하는 中央統計의 境遇는 上記의 機能까지도 聯邦統計庁에서 수행된다.

3) 分析 및 公表

統計調査는 結果를 公表함으로써 일단 매듭을 짓게 된다.

聯邦結果는 聯邦統計庁에서 公表되지만 特定 地域統計는 州統計局에서 公表할 수 있다.

統計局에서 發表되는 一般目的의 統計이외에도 各省 또는 州政府로부터 所管行政에 關한 個別資料를 分析하고 이를 公表하기도 한다.

現在 聯邦統計庁은 약 1,300 種의 各種 刊行物을 發刊하고 있으며 總 發行部數는 年間 약 85 万部に 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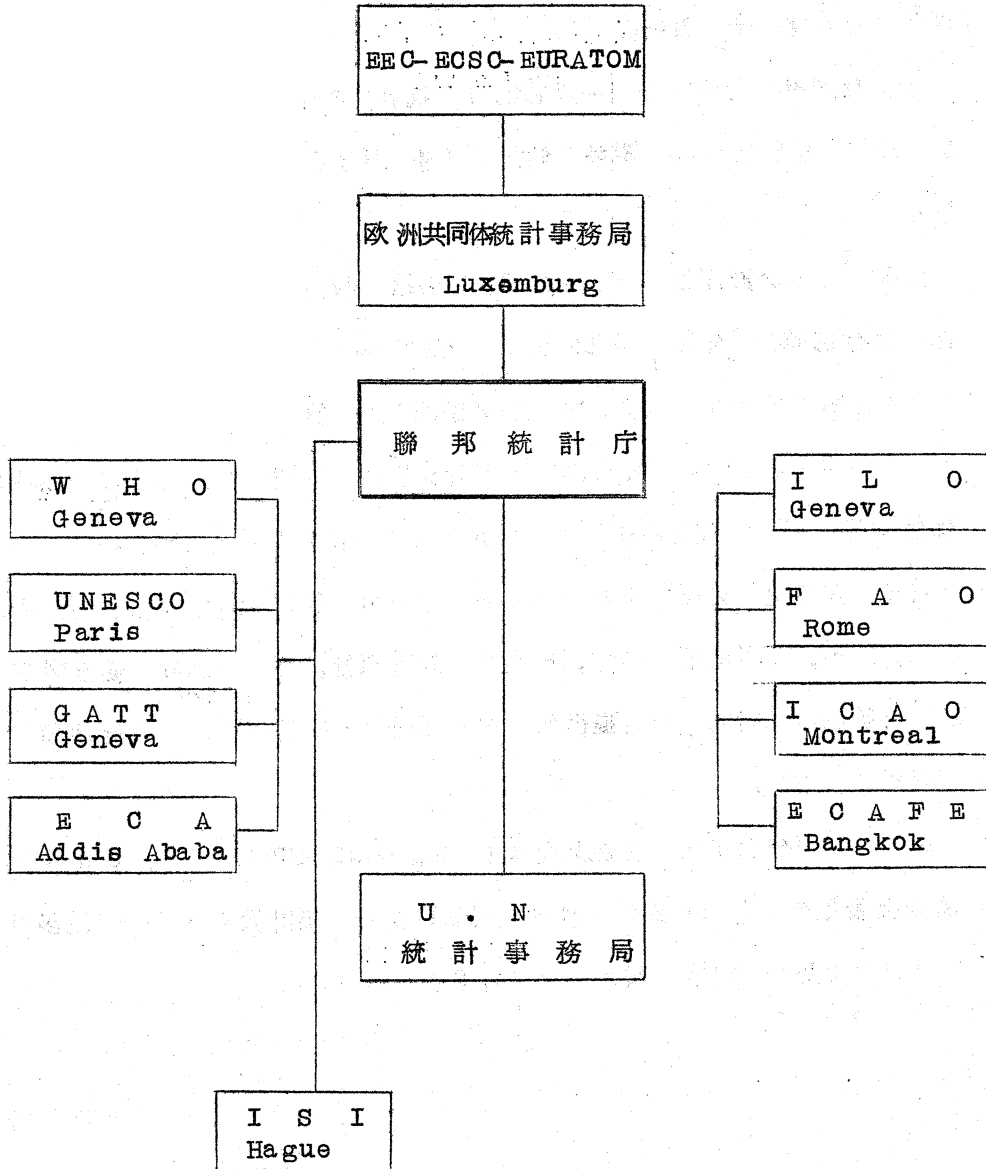
4) 海外統計의 作成 및 國際機關과의 資料交換

聯邦統計庁은 諸外國의 統計資料를 蒐集하고 各國際機關과의 統計情報 및 資料交換業務를 最近 크게 擴大시키고 있다.

이는 單純한 外國資料의 蒐集에 그치지 않고 資料內容의 分析, 研究, 比較, 多目的인 整理, 迅速한 綜合報告, 利用機關의 便宜圖謀, 政府各機關에 對한 資料提供等 여러面에서 廣範圍하게 統計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또한 聯邦統計庁은 歐洲共同体 (EES, ECSC, EURATOM), UN 歐洲經濟社會委員會等을 비롯한 여러 國際機關과 統計資料交換을 活潑히 行하고 있는데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國際機關과의 協助体制圖



5) 機械集計 過程

聯邦統計庁은 效果的인 機械集計를 위하여 最新의 電子計算 組職을 設置하고 있는데 現在 聯邦統計庁은 小規模의 統計의 製表를 爲한 Univac 1004 와 IBM 1401 그리고 大量의 資料를 處理하기 爲한 IBM 7070 이 있는데 주로 海外貿易統計 및 家計調查, 都小売業調査等の 中央統計를 處理하고 있다.

1967年 1月 IBM 360/40 이 設置되어 現在 11個의 磁氣 tape組職, 2個의 磁氣 disk, card 解讀機, 高速印刷機, 光学解讀裝置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磁氣 tape 는 매초 60,000 byte, 磁氣 disk 는 156,000 byte 의 解讀記錄機能을 갖고 있으며 Card 解讀機는 매시간 60,000 매의 Card 를 解讀하며 高速印刷機는 132欄의 66,000 行의 記錄能力을 갖고 있으며 core 保管力은 131,000 bytes 이다.

또한 集計時間을 더욱 效果的으로 運用하기 爲하여 同 組職은 이른바 多目的 Program 을 可能케 하고 있다.

예컨대 1969年의 Bundestag 選舉 結果가 聯邦統計庁에 의하여 處理되었는데 同集計를 爲하여 州 computer 端末 (terminal station) 을 設置하여 電送 處理토록 하였다.

大規模의 多機能解讀裝置가 1970年 人口센서스 集計를 爲하여 처음으로 附設되어 간이센서스, 農林業 勞動力調查, 家計調查, 都売業調査等 廣範圍한 多目的 program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二. 統計法規

1. 聯邦目的을 爲한 統計法

제 1 조 : 연방통계청 (Federal Statistical office)

① 연방통계청은 내무성 소관에 속하는 독립된 연방중앙기관이다.

② 연방통계청장은 국무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연방통계청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방목적 통계의 작성 및 이의 동질성 비교성의 검토.
2. 연방통계의 취합, 공표, 보관.
3. 연방법률의 규정한 통계의 수집.
4. 행정통계의 처리.
5. 제해의 통계작성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국민계정의 설정.
7. 연방통제법 및 관계훈령안의 초안.
8. 연방사법부에 대한 통계제공.

제 2 조 :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① 연방통계청은 한개의 자문기관을 부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임원들로서 구성한다.

1. 연방통계청장 또는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
2. 성, 주립은행, 독일연방철도국, 연방회계원의 대표 각 1인
3. 각 주통계국장 또는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
4. 주요 지방자치단체 대표 각 1인.

5. 상공인 대표 7인 및 고용주 대표 1인.

6. 농업부문 대표 2인.

7. 경제, 사회단체 대표 2인.

③ 동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주정부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4항에서 7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협회 또는 단체의 제청으로 연방통계청장이 임명한다.

⑤ 동 위원회는 특정통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분과위원회 회의에는 관계장관이 참석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를 받지아니한다.

제 3 조 : (연방통계에 관한 훈령)

① 연방통계는 법률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연방정부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통계조사를 훈령으로서 정할 수 있다.

1. 연방 목적을 위하여 당해 조사의 결과가 요청될 때.

2. 응답자의 범위가 정하여 있을 때.

3. 간행물을 제외하고 조사경비가 연간 500,000 Mark를 초과하지 않을 때.

③ 전항의 훈령에는 조사항목 및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④ 연방통계 예산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제 4 조 :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 ①연방각성 장관은 행정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산출되는 업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통계청에 이관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사항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특정통계의 관리를 연방장관은 통계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 : (정보의 제공)

- ①모든 자연인, 법인 또는 협회, 단체는 법률에 정한 통계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지닌다.
- ②통계질의에 대한 답변은 진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간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 ③조사표가 응답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 응답내용이 정확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 (비밀의 보장)

- ①연방통계의 자료로서 제시된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설되지 아니한다.
- ②통계간행물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공표하지 못한다.

제 7 조 : (벌칙 및 과료)

-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이용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어에 상응하는 벌금을 과한다.
- ②보수를 목적으로, 공표행위를 하거나 자신이나 제삼자의 재산을 기만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동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이 법에 의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만 마르크의 벌금을 과한다.

Ⅲ . 카나다의 統計制度

Ⅲ . 카나다의 統計制度

概 要

1 . 프랑스 統治下의 카나다 統計

“카나다”의 統計는 카나다 역사를 볼때 일찍부터 발달되었다.

1608年 Champlain에 의거 Quebec 政府가 設置될 때까지 로 마카도릭 信奉者들에 관한 人口動態 統計等 資料는 주로 교회 기록을 통하여 蒐集 作成되었다.

이들 統計資料는 1608年에서 1621년까지 Sagard 와 Champlain 의 著書와 敎區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카나다 統計는 루이 14世가 50年間 植民地統治의 카나다의 發展狀況 人口數等を 把握하려고 기도함으로써 發達하기 시작하였다. 그 結果 Jean Talon이 최초의 系統的이고 体系的인 人口 센서스를 1666年에 實施하였다.

여기서 住民의 姓名, 年齡, 職業 同居狀態, 家口主에 대한 家族狀況 등이 조사되었다.

그 이듬해 人口 센서스의 補完調查로서 耕作面積 家畜 飼育數에 대한 調查가 實施되었다. 이 센서스는 프랑스統治下에서 약 36회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9회의 部分的 調查가 實施되었다.

그리고 21회의 全數조사와 4회의 部分조사가 Newfoundland에

대하여 4회의 調査가 Saint John 省에 대하여 7회의 調査가 Prince Edward 省에 대하여 실시된바 있다.

이와같이 250년의 植民地統治下에서도 人口統計, 家畜統計, 生産統計 등은 相當한 水準에서 實施된 바 있다.

2. 初期英國統治下의 統計

그러나 1763년 캐나다가 英領으로 바뀐 뒤로는 다른 統計의 發展을 보지 못하였다.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植民地 總督은 植民地의 管理들로부터 提出되는 조잡한 統計숫자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1765년 캐나다의 南部地方에 대한 센서스가 實施되었고 1784년과 1790년에도 實施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선뒤 비로서 植民地間의 正確한 統計資料 比較를 위하여 定規的인形態에 의한 人口센서스가 實施되었다.

北部 캐나다에서는 1824年度까지는 每年 實施하였고 南部 캐나다에서도 1825년에 센서스를 實施하였다.

Nova Scotia와 New Brunswick에서는 그다지 자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Red River District에서는 1814年度, 그리고 1831年에서 1835년까지 계속 實施되었다.

大部分의 州에서는 10年마다 人口센서스를 實施하였다. 1851年度の 人口센서스를 法規化하였는데 그 전문에서 “人口센서스는 1852年 1861년에 實施하고 그 뒤로는 매 10년마다 實施하여야

하며 보다더 훌륭한 規則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法規에 의거 1851~2년도와 1861년도의 캐나다 人口센서스가 實施되었다. 그 뒤 캐나다 聯邦이 全体的으로 每 10年마다 人口센서스를 定期的으로 實施하게 되었다.

3. 캐나다 聯邦의 統計

1867年 “캐나다” 聯邦이 해안의 各州까지 包含하여 처음으로 成立된 뒤 各州와 聯邦과의 사이에 센서스 및 統計業務는 “英領北美法”에 의거 配分되었다.

캐나다 聯邦의 成立以後 1871年과 1881年에도 兩次的 센서스가 全國的 規模로 實施되었다.

4. 센서스 및 統計庁의 設置

1905年 農林省에 센서스庁을 設置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統計 歷史의 指標가 되었다.

더우기 센서스와 다른 統計를 併합시킴으로서 전반적인 統計系列을 作成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分野의 統計需要를 惹起시키고 後에 聯邦統計局의 設置를 促進하게 하였다.

캐나다의 統計法은 1918年에 制定되었으며 政府統計政策은 本格的 制度에 오르게 되었다. 이法 制定으로 이는 從來의 센서스法, 一般統計法, 鐵道統計法, 犯罪統計法 그外 各種 統計에 관한 諸規定의 綜合的 規定이라 할 것이다.

一. 캐나다의 統計組織

1. 統計機構

“ 캐나다 ”의 政府統計組織은 中央 集中形이며 「聯邦統計局」은 商務省長官의 指示에 따라 모든 政府統計를 包括的 單一計劃에 의하여 調整 管理하고 있으며 이를 改善하기 위한 中央官署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聯邦統計官 (Dominion Statistician)」은 統計局의 諸般 行政, 統計調查, 分析 公表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最高責任者로서의 權限을 가지며 「聯邦補助統計官」은 이를 補佐하고 代身할 수 있으며 統計局의 行政管理의 責任을 갖는다.

1) 聯邦統計局

聯邦統計局은 1部 13個課로 構成되며 各課는 다시 係로 区分된다. 그中 總務部는 統計局의 諸般 行政業務를 管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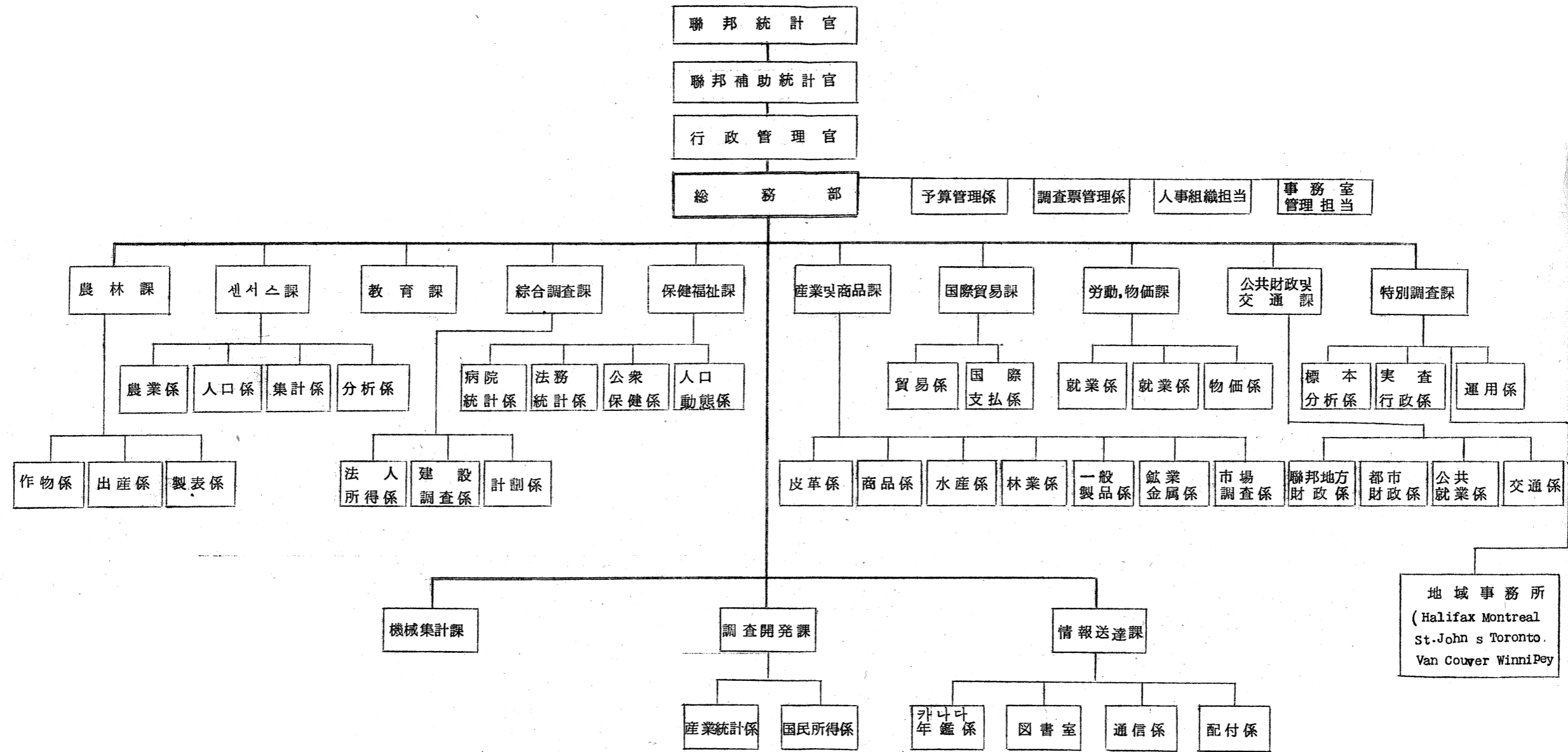
農林課, 센서스課, 教育課, 綜合調查課, 保健및 福祉課, 産業및 商品課, 國際貿易課, 勞動 및 物價課, 公共財政 및 交通課, 特別調查課 등의 10個課에서는 各分野別 統計資料의 蒐集, 處理, 編輯에 관한 各種計劃을 樹立 實踐하며 機械集計課에서는 各課에서 取合되는 各種資料를 機械處理 集計하고 있다.

各課 및 外部로부터 供給되는 統計資料는 「情報送達課」를 經由하여 處理되고 있다.

調査開發課에서는 國民所得推計와 經濟統計의 改善을 위한 제반 계획을 樹立한다.

캐나다 聯邦統計局의 機構圖는 다음과 같다.

카나다 聯邦統計局의 組織表



① 聯邦統計官 (Dominion Statistician)

聯邦統計官은 “ 캐나다 ” 政府統計의 調節, 管理 改善에 대한 最高 責任者로서의 權限을 가지며 商務省長官의 定하는 바에 따라 統計法의 實施 및 統計局 任職員에 대한 指導 監督權을 갖는다.

② 聯邦補助統計官 (Assistant Statistician)

聯邦補助統計官은 統計局의 諸般 行政을 管理하며 聯邦統計官이 不在時 그 業務를 代行한다.

③ 行政管理官

行政管理官은 統計 行政運用 問題에 관한 보조를 하며 특히 機械集計 調査票樣式의 改正 統計方法의 改善등에 관한 諮問 役割을 하며 機械集計課의 最高責任者로서의 業務를 갖는다.

④ 總務部

統計局의 人事管理 予算管理등에 관한 全般的 行政業務를 處理하며 調査開發課의 業務를 直接 指揮 監督한다.

⑤ 農業課

農業生産品의 品質規格, 在庫, 市場價格, 센서스, 주기간의 農業生産動態 推計業務를 担当한다.

作物係는 作物收穫統計 및 과실채소류의 市況 價格 在庫調査를 하며 特殊作物 統計를 作成한다.

畜産係는 畜産物의 生産推計 및 羊毛生産에 관한 年間推計, 月間酪農製品 및 가금류生産 在庫 推計業務를 担当한다.

調査 및 제표계는 農作物 畜産物의 조사 제표 農家所得 및 生産指數 賃金 等を 편제

⑥ 센서스課

人口, 住宅, 農業 센서스를 주관한다. 농업계는 농업센서스의 進行計劃, 조사표 양식의 作成, 센서스報告書의 發刊等に 관한 諸般計劃을 樹立 實踐한다.

人口係는 人口센서스의 進行計劃 조사표의 作成 및 센서스報告書を 發刊한다.

機械集計係는 寸공카드 및 제표에 관한 設計, 農業, 人口, 住宅, 家族 및 勞動力等 統計를 集計한다.

分析係는 센서스 資料를 分析하고 이에 관한 論文集을 發刊한다.

⑦ 教育課

教育課는 初·中等 教育에 관한 統計報告書 作成, 大學 圖書館 私立學校 專門學校로부터의 各種 報告資料를 取舍 公表한다.

⑧ 綜合調査課

綜合調査課는 資本投資狀況 建築資材生産調査, 会社利潤調査 建設業센서스등을 實施한다.

法人所得係는 会社의 利潤調査를 每 分期別로 實施한다.

建設調査係는 資本消費調査, 建築資材生産調査, 建設業센서스 建築物 新築狀況調査 등을 實施한다.

計劃係는 課內 調査業務의 諸般計劃과 特別調査를 爲한 準備등의 業務를 担当한다.

⑨ 保健 福祉課

保健, 福祉에 관한 統計의 蒐集 製表, 公表와 他 政府機關과 關聯業務에 관한 共同計劃을 樹立 實踐한다.

病院統計係는 国公立, 私立病院의 患者收容施設 및 財政 및 各種 医療統計를 作成한다.

法務統計係는 犯罪統計, 警察活動等에 관한 諸般統計를 作成한다.

公衆保健係는 疾病統計와 出産力推計를 行한다.

人口動態係는 出生, 死亡, 혼인, 이혼, 死産 人口의 自然增加 死亡率 趨勢에 관한 統計를 作成한다.

⑩ 産業 및 商品課

原資材, 勞動, 賃金, 勤勞時間, 燃料, 電力商品의 生産, 分配 在庫에 관한 現況統計를 作成한다.

皮革生産係는 酪農業센서스 장화, 구두등의 皮革製品의 生産統計業務를 担当한다.

商品系는 商品統計의 調整 製造業체에 관한 年間, 月間, 在庫, 船積 統計 中小企業체 統計를 作成한다.

水産係는 主要 漁獲物 및 漁業裝備에 관한 統計를 作成한다.

林業係는 林業統計, 木材産業 및 펄프工場으로부터의 製品 및 原資 料統計를 作成한다.

一般製品係는 紡織物 生産統計 製造業에 관한 地域別統計 製造業統 計의 調整等 業務를 遂行한다.

鉍業 金屬係는 鉍業統計 金屬 및 非金屬 生産統計와 化学製品生産 統計를 作成한다.

市場調査係는 都, 小売 서비스業 센서스, 公共料金調査, 小売物価販売額指数 算出 “체인스토아” 센서스를 実施한다.

⑪ 國際貿易課

“카나다”의 國際收支均衡의 分析 海外貿易統計作成 貿易指數算出등을 担当한다.

海外貿易係는 輸出入商品統計 및 月刊 貿易動向을 作成한다.

國際收支係는 國際收支統計 및 分析과 카나다의 海外投資等に 관한 統計를 作成한다.

⑫ 勞動 物価課

各 事業체로부터의 報告를 取合하여 일간 就業狀態 勤勞時間에 관한 報告書 作成, 實業保險委員會로부터 失業者 통계 작성, 物價指數算出, 勞動所得推計 및 分析, 가계소비조사 등을 施行한다.

就業係는 週間平均所得 賃金勤勞者年間所得調査 就業 및 週間給与額에 관한 産業指數作成등의 業務를 担当한다.

就業係는 失業者 保險 및 救濟에 관한 統計를 作成한다.

物價係는 都, 小売業 平均物價 및 物價指數算出, 農家購買價格指數算出, 價格動向에 관한 月刊報告書를 作成한다.

⑬ 公共財政 및 交通課

政府財政 및 行政 政府企業체 交通 公益事業에 관한 統計를 作成하고 이의 調整業務를 맡고 있다.

聯邦 地方財政係는 聯邦 및 地方政府의 主要 公共財政에 관한 資料를 蒐集한다.

都市財政係는 自治市の 財政統計 및 主要 政府企業체의 財政, 課稅

및 納稅에 관한 資料를 蒐集한다.

公共就業係는 公共就業者에 관한 給與統計等を 作成한다.

交通係는 乘客·貨物·鐵道·船舶·民間航空·其他 公益事業의 統計를 作成한다.

⑭ 特別調查課

勞動力 및 家屋賃貸料를 分期別로 調査하고 其他 標本調査의 設計에 관한 支援 地方센서스事務局에 대한 技術支援을 行한다.

標本分析係는 標本調査 設計에 관한 諮問調査 方法上的 問題點에 대한 協議와 調査計劃의 樹立業務를 管掌한다.

実査行政係는 調査員의 運用 및 地區別 統計事務所の 管理와 定期報告資料에 관한 業務를 担当한다.

統計地區事務所는 Halifax . Montreal . St. John's . Toronto . Vancouver Winnipeg 에 位置하고 있다.

運用係는 標本調査의 運用 및 資料의 編製와 “오타와” 地域의 実査指導監督을 行한다.

⑮ 情報送達課

統計局 刊行物の 管理 配付業務를 맡고 있으며 統計局의 모든 資料는 情報送達課를 經由하여 處理토록 하고 있다.

“카나다” 年鑑係는 “카나다” 年鑑外에 핸드북 各種 分期別 年間報告書 등의 發刊 및 國際統計機關에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圖書室은 各種 統計書籍의 保管 備置管理 및 統計局 圖書目錄의 作成管理業務를 担当한다.

通信係는 放送通信社 等に 대한 統計情報 提供과 各 新聞社에

대한 統計資料를 提供한다.

配付係는 Mailing list의 整理 外國과의 發刊物 交換 및 送付 業務를 맡고 있다.

⑩ 機械集計課

各種 統計資料의 機械處理 計劃 分析 및 製表業務를 担当한다.

⑪ 調査開發課

國民所得推計 國民計定과 經濟統計의 改善에 관한 業務를 遂行한다.

産業統計係는 産業動向에 관한 月間 및 分期別 報告書의 作成, 産業生産指數 作成 主要産業의 生産力 測定等を 行한다.

國民所得係는 國民所得推計 및 國民計定에 관한 調査開發 國民計定에 관한 特別調査를 實施한다.

二. 統 計 法 規

1. 캐나다 연방통계국 (Dominion Bureau of Statistics) 에 관 한 법률

제 1 조 : 이 법률은 통계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 이 법률에서

1. 「통계국」이라 함은 연방통계국을 말한다.
2. 「운송인」이라 함은 교통업 및 수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3. 「부처」라 함은 캐나다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을 통칭한다.
4. 「장관」이라 함은 상무성장관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이라 함은 전기 . 가스 . 수도 . 송유등의 시설을 소유, 운용하는 자와 전신 . 전화사업의 경영회사를 말한다.
6. 「규칙」이라 함은 이 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제반 법규 및 훈령을 말한다.

총 칙

제 3 조 : 통계국을 장관 아래 설치하며 이를 「연방통계국」이라 칭한다. 그 임무로서

1. 산업 . 상업 . 재정 . 사회 . 경제 및 국민의 제반활동 상황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 . 편제 . 분석 . 공표
2. 다른 정부부처와의 통계기술 편제 발간에 대한 공동협조
3. 본 법률에 의한 센서스의 실시
4. 사회 . 경제통계의 조정에 관한 계획 수립등을 수행한다.

제 4 조 : ①국무협의회에서는 연방통계관을 임명하며 연방통계관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통계정책에 관한 조언 및 그와 관련된 다른 부처와의 협의

2 . 통계의 수립 . 분류 . 공표에 관한 조정

3 . 이 법률의 시행 및 통계국 운영과 직원의 지도감독

4 . 통계국 제반 업무의 장관에 대한 보고

②통계국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 5 조 : 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 상업 . 재정 . 사회 . 경제에 관한 통계정보 또는 그가 주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통계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통계조사원의 임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 : 모든 관리자 센서스담당관 조사원 주재원은 임무수행에 앞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임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7 조 : 장관은 이 법률이 정하는 모든 센서스의 실시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수집 . 편제 . 공표를 위한 통계국의 업무와 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규칙 훈령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 조 : ①국무위원회 또는 장관은 이 법률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편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 법의 조항에 관계없이 장관은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통계의 수집을 인정할 수 있다.

제 9 조 : 장관은 이 법률의 실시 및 이 법률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또는 이를 편리하게 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어떤 지방정부와도 협의를 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항에서 그러하다.

- 1 . 이 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지방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
- 2 . 이 법률의 실시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통계나 정보를 지방부처 혹은 지방공무원이 수집하는 경우
- 3 . 연방통계관이 지방부처나 지방 공무원으로부터 통계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제 10 조 : 지방관서 기타 모든 공공문서 또는 민간단체의 기록문서등의 책임자는 연방통계관이 위임한 센서스관리관 조사원 주재원이 이 법의 실시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장관은 이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센서스담당관에게 센서스의 실시 또는 통계의 수집 오차수정을 위한 교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달을 받는 공무원 센서스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법정 에 소환하여 출석케하고 조사사항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2 조 : 임명의 증표는 장관 연방통계관 및 그의 국무위원회에서 위임된 자. 또는 통계공무원, 센서스담당관이 서명 날인한 서한 또는 임명장을 말한다.

제 13 조 : 어떤 개인의 보고나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은 사전 승인 없이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구 및 농업센서스

제 14 조 : 인구센서스 농업센서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통계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센서스의 시기는 1951년 6월을 기점으로 하여 매 10년마다 국무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 생략

제 16 조 : 국무위원회에서는 센서스의 조사구획에 따라 전국을 분류할 수 있다.

제 17 조 : ① 각 센서스는 캐나다의 각 지역에 관한 가장 정밀한 자료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당해지역의 인구 연령성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 혈통 . 교육 . 임금소득 . 종교 . 직업 . 기타 방법에 의한 분류
2. 상주인구에 대한 주택의 주거 . 비거주용 혹은 신축중의 모든 건물을 포함하며 방수 . 건축재료등의 조사
3. 경작지면적 경작기간 , 지가조사등
4. 농산물 산출조사 및 가축두수와 가격등
5. 기타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② 위 각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 광업·채석업·어업 및 임업에 관한 센서스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및 서어비스업 센서스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 ① 연방통계관은 산업통계의 적당한 작성을 위하여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사표를 만들 수 있다.

- 1 . 사업체명
- 2 . 제조하고 있는 상품
- 3 . 투자 자본
- 4 . 사용된 원자료 및 그 금액
- 5 . 총생산품의 가격
- 6 . 업종별 상용근로자 수
- 7 . 총지급 임금
- 8 . 총가동 일수

② 장관은 각 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조사표를 응답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조사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통계국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연방통계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 외국과의 무역에 관한 통계 연간보고서 작성
즉 i) “카나다”의 모든 세관을 통하여 반입 혹은

유출된 상품의 분량·가격

ii) “카나다”로 부터의 수출품목

iii)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iv) 외국 교역에 종사한 선박에 관한 통계

제 21 조 : 국세청에서는 “카나다”의 수출입에 관한 제반정보를 국무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방통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통계관은 카나다국내 교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운송 및 공익사업

제 22 조 : ①운송업자 공익사업체에서는 국무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매년 관계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연방통계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23 조 : ①장관의 요청이 있을시 모든 운송업자 공익사업체에서는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는 45일 이내 연방통계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24 조 : 모든 보고자료는 이 법률의 규정없이 어떤 법정에서도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

제 25 조 : 각급 법원의 범죄심판을 관리하는 자는 매 10월 연방통계관에게 범죄행정에 관한 제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 모든 형무소 및 감화원의 장은 매 10월 연방통계관에게 수감자에 관한 제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 전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관한 특정자료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국은 다음의 통계를 수집.
편제 . 분석 . 공표하여야 한다.

- 1 . 인 구
- 2 . 출생 . 사망 . 혼인 . 이혼
- 3 . 전염병 . 질병
- 4 . 이민 및 이주
- 5 . 취업 . 실업 . 급료 . 근로시간
- 6 . 농업 . 낙농업
- 7 . 광공업 . 제조업
- 8 . 교 육
- 9 . 공공재정 및 민간기업체의 경영상태
- 10 . 도매물가 . 소매물가 . 서비스업
- 11 . 병원 . 의료원 . 자선협회
- 12 . 가 계
- 13 . 기타 국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9 조 : 국무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별통제조사의 실시를 장
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30 조 :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임무를 위임받은 자가

- 1 . 선서를 마친후 임무를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보고하는 때
- 2 .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정보
를 수집할 때

3. 수집된 정보를 응답자의 승인없이 부당하게 누설하는
때는 본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300 불 이하의
벌금형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1 조 : 이 법률의 목적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자료를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답에 불응하는 자와 요구된 사항에
관하여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미비된 보고를 하
는 자는 100 불이하의 벌금형이나 3 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2 조 : 지방부처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책임자가 이 법률의 규정
에 따라 통제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의 보관을 소
홀히 하여 정보의 수집을 지연시킨 때는 300 불이하의
벌금형이나 6 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3 조 :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자가

1. 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지 아니하는 자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응답자 혹은 보
고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 때
2. 통제목적 이외 부당하게 정보를 사용하는 때는 5 천불
이하의 벌금형이나 5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V . 스웨덴의 統計制度

IV. 스웨덴의 統計制度

概 要

“스웨덴”의 政府統計組織은 전통적인 中央集中型이며 政府統計에 關한 制限 活動은 「스웨덴 王室協會 (King-in-Council)」가 定하는 바에 따라서 「中央統計局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에 集結되어 있다.

따라서 中央統計局은 스웨덴 政府統計를 管理 調整하는 中央管署로서의 技能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各種 統計의 蒐集, 製表, 公表 등에 關한 制限 計劃을 수행하고 있다.

統計의 蒐集, 分析, 集計等 広範圍한 統計行政을 効率的으로 수행하기 爲하여 Stockholm에 統計局 本庁이 있고 Orebro에 統計支局을 設置하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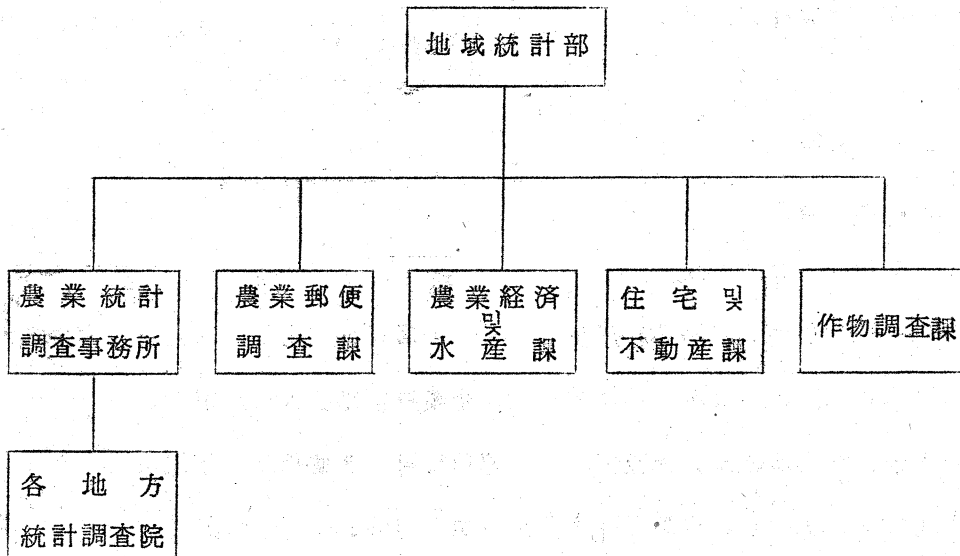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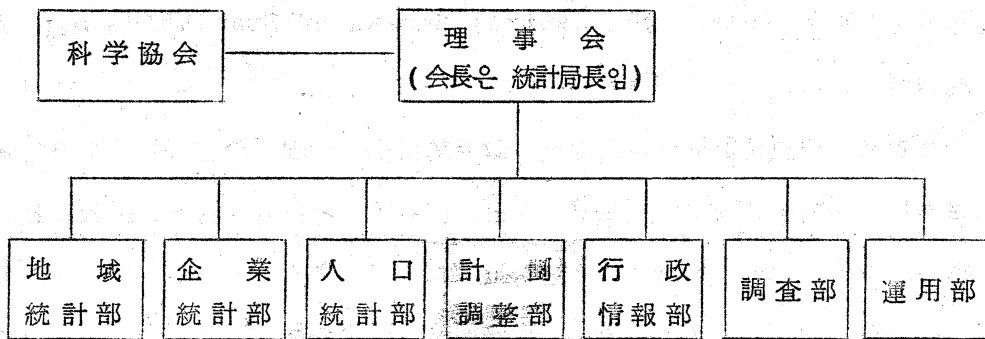
1) 中央統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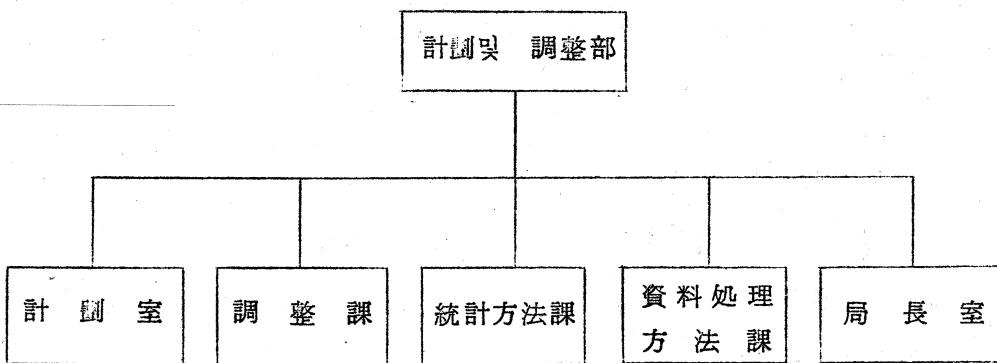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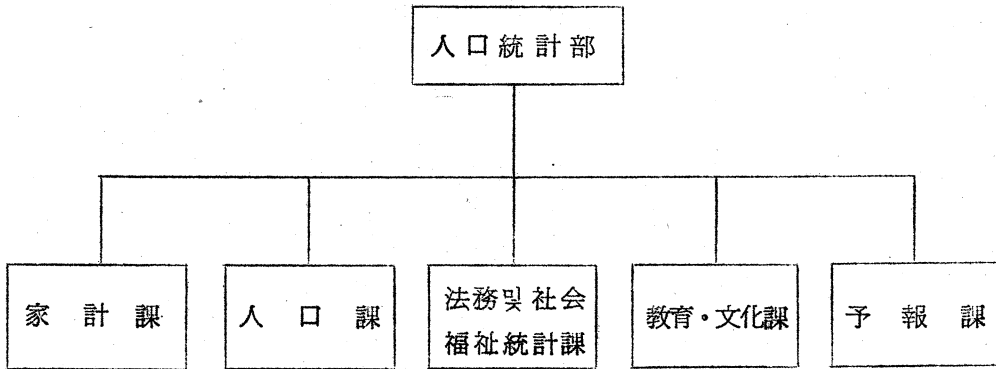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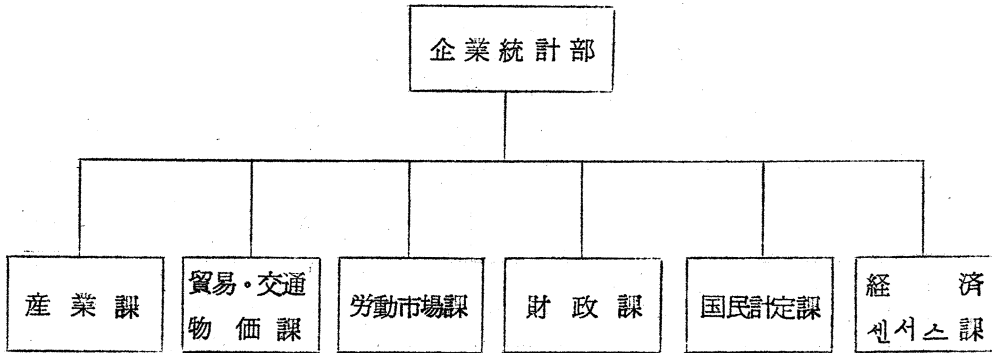
中央統計局은 王室協會에 所屬되어 있는 獨立된 中央政府 統計機關으로서 크게 地域統計部, 企業統計部, 人口統計部, 計劃 및 調整部, 行政情報部, 調査部 및 運用부의 7個部로 構成되어 있으며 諮問機關으로서 科學協會를 附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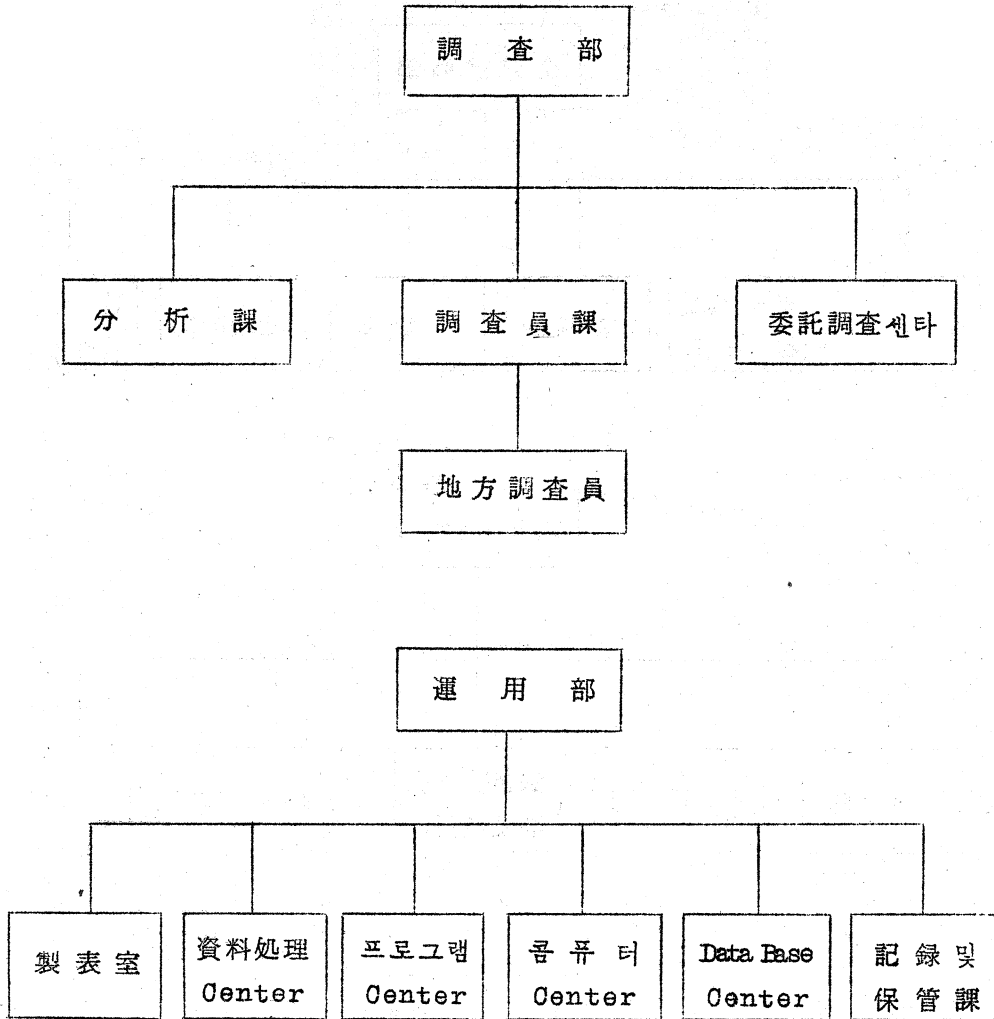
統計局은 7 名의 任員으로 構成된 理事会에 依하여 運用되며 會長은 統計局長이 겸임하고 있다.

中央統計局的 構成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中央統計局的 組織圖表







① 科学協會 (Scientific Council)

議長을 비롯하여 7 名의 任員들로서 構成되며 이는 모두 스웨덴 王室協會 (King-in-Council) 에서 任命되고 있으며 會長은 統計局長이 兼하고 있다.

本協會는 中央統計局이 行하는 社會, 經濟統計의 調査, 分析 및 資料處理業務와 調査票樣式의 設計等에 關하여 諮問을 하고 王室協會 特別訓令에 關한 事項을 中央統計局에 下달하고 이를 處理한다. 또 物價指數의 編製, 公表等에 關한 諮問을 하고 있다.

② 理事会 (Board)

議長을 비롯하여 7名의 任員으로 構成되며 이는 모두 王室協會에서 任命된다.

理事會의 議長은 中央統計局의 局長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理事會는 中央統計局의 모든 統計行政, 統計管理, 公表, 主要統計調査等의 計劃을 蒐集하고 統計局 任職員을 指導 監督하는 權限을 갖는다.

③ 地域統計部

作物統計, 畜產物統計, 生産量統計를 비롯한 農家購買價格, 農家所得, 賃金에 關한 統計를 편제하며 農業센서스를 主管한다.

以外에도 農家住宅 및 不動產統計와 漁獲統計를 作成한다.

④ 企業統計部

産業生産指數 算出 및 勤勞者 所得, 産業災害에 關한 전반적 資料蒐集과 物價指數를 편제한다.

또한 勞動力의 需要 供給, 産業別 就業者 現況, 失業者 勞動力 移動에 關한 계반 資料를 蒐集 제표하며 政府 및 公共企業의 財政統計도 作成하고 있다.

以上の 業務外에도 國民所得 및 國民總生産 推計, 國民計定の 分

析에 관한 綜合的 計劃을 수행하고 있다.

⑤ 人口 및 社会統計部

人口 및 社会統計部에서는 家計調査 및 人口센서스를 主管하며 人口動態統計, 經濟活動人口調査, 犯罪統計, 社会福祉統計 및 教育, 文化統計 등의 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⑥ 計劃調整部

中央統計局의 各種 定期 統計調査에 관한 計劃을 調整하며 調査方法의 開發, 資料處理의 改善方案을 樹立한다.

⑦ 行政情報部

中央統計局의 予算運營 및 人事管理, 統計訓練 등의 業務를 수행하며 統計圖書館을 산하에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以外에도 國際統計機關에 對한 스웨덴 政府統計의 供給 및 外國 國의 統計資料의 交換 統計刊行物의 配付業務를 맡고 있다.

⑧ 調査部

中央統計局의 各種 統計調査, 標本調査 등을 受託하여 各種 調査業務를 處理하고 있다.

이 業務는 350 名의 잘 訓練된 全國의 調査指導員을 通하여 處理하고 있다.

⑨ 運用部

中央統計局의 各種 統計資料를 機械處理하고 이를 保管하며 効率的으로 利用하도록 한다.

방대한 資料處理 業務로 因하여 "Orebro에 庁舎를 別途로 두고

있다.

運用部에서는 以外에도 Data Base Center, Computer Center, Manual Data Processing Center, Programming Center 등을 갖
추고 있다.

二. 統計法規

中央統計局에 關한 勅令 (1971.6. 제정)

(기 능)

제 1 조 중앙통계국은 정부통계를 산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앙 관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제 2 조 중앙통계국은 특히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기적인 정부통계의 산출 공표 및 통계조사의 실시
2. 정부통계조사의 조정 및 일반 비정부기관의 통계조사의 조정
3. 행정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처리집계
4. 국제통계기관의 기준 정의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분류의 작성 및 정부통계의 비교 분석
5. 국제기구에 대한 스웨덴 정부통계의 제공
6. 교육, 직업 및 고용에 관한 장기전망

제 3 조 중앙통계국은 통계도서관을 부설하여 일반에게 공개 운영한다,

또한 해외통계자료를 수집하며 외국에 정부통계자료를 총괄 제공한다.

제 4 조 중앙통계국은 통계에 관한 위탁조사를 자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처리한다.

(조 직)

제 5 조 중앙통계국은 한개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의 회원으로서는 의장을 비롯하여 왕실협회에서 특별히 임명하는 자들로서 구성된다.

제 6 조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통계국의 국장이 된다.

제 7 조 중앙통계국에는 통계분야에 따라 3 개 부 행정기능에 따라 4 개 부를 설치한다.

각 부는 「지역통계」, 「기업통계」, 「인구통계」, 「계획및 조정」, 「행정및 정보」와 「조사」, 「운용」부로 한다.

「계획 및 조정부」는 계획부장 책임하에 두며 중앙통계국장의 보좌역할을 한다.

「운용부」는 운용국장 책임하에 두며 중앙통계국의 통계산출을 담당하는 Orebro 지국의 장이 된다.

제 8 조 중앙통계국의 자료처리기구로서 과학협회 (Scientific Council) 를 설치하여 그 회장은 통계국장으로 하고 왕실협회에서 임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 9 조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부법령에 관한 주요 문제점
2. 중앙통계국의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3. 의회로부터 승인을 요하는 주요 재정에 관한 사항
4. 상급관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정부통계 산출의 조정 및 개편업무와 비정부통계기관과의 통계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0 조 이사회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국장은 이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앙통계국의 조직운영 및 제반법규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야기시키는 주요문제에 관하여는 왕실협회의 훈령에 의거 처리한다.

제 12 조 국장은 왕실협회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수규정 C 1 급이상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국장의 제청으로 왕실협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국장 부재시에는 조정 및 계획국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조정 및 계획국장 부재시는 운용국장이 대신한다. 그 이하는 국장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각부의 장이 대행한다.

V . 화 란 의 統 計 制 度

V. 화란의 統計制度

概 要

화란의 統計制度는 거의 완벽하리만치 傳統的인 中央集中型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政府 各 省에는 固有行政業務 處理를 爲한 統計分析課가 있기는 하지만 原則적으로 모든 統計活動은 中央統計局에 (Central Statistical Bureau) 集中되어 있다.

中央統計局은 行政 및 予算管理상으로 모든 實查業務에 關하여 中央統計委員會 (Central Commission of Statistics) 의 指示, 監督을 받는다.

中央統計委員會는 政府의 모든 統計活動을 審議, 決定하는 獨立的 機關으로서, 화란 王室勅令에 의거 各省은 임의로 統計調査를 할 수 없으며 地域的 이거나 或은 全國的 이거나 특정 統計調査를 하려면 中央統計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中央統計局에서 實施하게 되어 있다.

中央統計局은 地方事務所를 設置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全國的 規模의 센서스를 實施하는 境遇 各 地方自治團體와 연결시켜 遂行되고 있다.

統計資料蒐集에 關하여 王室勅令, 省令 或은 特別센서스法에서 의무와 罰則을 規定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란의 모든 統計調査는 사실 慣習에 의하여 實施되고 있다.

一. 統計組織

1. 統計機構

1) 統計機構의 歴史的 背景

화란의 政府統計의 歴史는 그 正確한 時期는 알수없으나 18세기 末인 1795年 人口센서스가 實施된 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以前에도 小規模의 地域的인 人口調査는 있었으나 体系的인 것은 못 되었다.

1829년부터 每 10年마다 定期人口센서스를 担当하기 爲한 統計課가 內務省에 設置되었으나 그 機能은 極히 빈약하였다.

그後 社会政策에 있어서 統計의 重要度가 날로 增大함에 따라 1892年 中央統計委員會 (Central Commission of Statistics)가 獨立機關으로 발족하여 政府統計에 關한 諮問役割을 하는 同時에 直接 統計資料를 蒐集 編製하고 統計年鑑, 統計月報等을 發刊하였다.

中央統計委員會의 業務가 점차 擴大됨에 따라 보다 強力한 中央 集申體制를 갖추기 爲하여 종래의 內務省 統計課를 中央統計局 (Central Statistical Bureau)으로 승격하여 經濟省 소관하에 設置하고 中央統計委員會의 監督下에 모든 政府統計의 蒐集, 編製 資料處理, 公表에 關한 責任을 갖도록하였다.

中央統計局的 統計職員數를 年度別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u>年 度</u>	<u>職 員 數</u>
1899	5
1909	63
1919	200
1929	223
1939	477
1949	879
1959	1143
1968	1478

2) 中央統計機構

① 資料蒐集業務

화란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政府統計가 中央統計局에서 編製되고 있으며 中央統計局 以外에 政府統計의 編製機關은 極小數에 不過하다.

政府 各省이 그들의 行政業務處理過程에서 附隨的統計資料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임의로 統計調査를 實施할 수 없다.

政府企業체 또는 特殊研究機關(예컨대 화란 醫療協會 화란經濟人協會 農業經濟協會等)에서는 각기 所管業務의 範圍 내에서 統計資料를 蒐集하여 中央統計局的 統計算出에 對한 局部的인 補完役割을 하고 있다.

② 센서스業務

中央統計局 센서스課에서는 모든 政府 센서스를 주관한다.

各種 調査票는 中央統計局의 指示에 따라 各市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긴밀히 연결되어 配付된다.

화란의 最初の 人口센서스는 1829年부터 實施되었으며 2次센서스가 1947年에 그後 1960年에 實施되었다.

近來 人口센서스는 17年내지 13年간격으로 實施된다.

이는 各市에 人口申告事務所를 設置하고 있어서 地域別 常住人口에 關한 특성 및 資料調査가 부단히 申告되고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各市 人口申告事務所에 보관된 人口動態資料 또한 每月 中央統計局에 送付되어 全國적으로 취합되어 報되다.

또 綜合經濟센서스가 1930年 12月1日부터 每 10年마다 實施되고 있다.

이 센서스에서는 鉞工業, 製造業, 建設業, 公益事業, 商業, 交通, 金融業, 서비스業을 總括하여 UN의 國際標準産業分類에 따라 作成되고 있다.

③ 人口統計

人口統計는 人口統計課에서 各市 人口申告事務所로부터 報를 취합 作成한다.

各 申告事務所로부터 每月 人口動態資料가 中央統計局에 送付되어 全國적으로 報되며 月刊 「人口統計」에 發表되고 있다.

④ 法務統計

法務統計課는 法施行에 關한 모든 情報 및 司法当局의

活動狀況, 犯罪統計를 주관하며 이에 관한 各種資料를 蒐集, 製表
公表한다.

犯罪統計는 화란의 政府統計 中 가장 오랜 歷史를 갖고 있으며
社會各層은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犯罪統計公表에 있어서 18 歲以下の 少年犯罪는 每年 別冊으로
公表하고 있다.

또한 破産統計, 火災統計 등이 定期的으로 公表되고 있다.

⑤ 社會統計

社會統計課에서는 크게 나누어 家計 및 小売物価, 勞動
統計, 社會福祉 및 保險統計 등을 作成하고 있다.

家計調査는 1935 年에 598 家口를 대상으로 처음 實施되었는데 1951
年 부터 全國적으로 任意抽出된 3,000 家口를 包含하는 同時 消費
패턴의 흐름을 正確히 포착하기 爲하여 200 家口에 대한 經常支出
調査를 병행하였다.

價格資料는 76 個 市單位 購買센터에서 調査되는데 消費者物價指
數 編製에 該當하는 608 個品目에 대하여는 12,000 對象처로부터
蒐集되고 있다.

⑥ 勞動統計

중래의 勞動統計는 每 10 年마다의 人口센서스 資料를 취
함하여 就業者, 失業者 및 賃金 雇傭에 關하여 製表하여 왔는데
近來에 이르러 200,000 名의 勤勞者를 對象으로 每 3 年마다
勞動人口調査를 實施하고 이를 國際勞動機構 (I. L. O) 의 決定에

따라 標準資料로서 公表하고 있다.

⑦ 農業統計

毎年 5月 中央統計局은 綜合農業센서스를 實施한다.
中央統計局은 이 센서스를 爲하여 調査員을 別途로 採用하지
않고 農林省의 地方出張所와 연결시켜 實査를 進行시키고 있다.
따라서 中央統計局은 農林省의 各 地方出張所에 直接 實査에
關한 指示를 下달한다.

F A O에 의하여 每 10年마다 實施되는 世界農業센서스는 上記 센
서스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⑧ 資料處理

各種 統計調査票의 大部分이 資料處理課에 集結되어 P C S에
의하여 處理된다.

近來 光学解読裝置의 開發로 컴퓨터실을 따로이 設置하여 30여
명의 職員이 배치되고 있다.

電子計算에 所要되고 있는 機械는 다음과 같다.

펀치 및 검공기	110 대
分類機 (IBM 084)	4 대
組合機 (IBM 088)	1 대
複写穿孔機	1 대
光学解読機 (IBM 1232)	1 대
E L - tape system	1 대
E L - card system	1 대
I B M 360 - 20 , card system	1 대

⑨ 統計 發刊

中央統計局은 年間 約 350 種의 統計刊行物을 發刊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란統計年鑑」 「統計 Pocket-book」이다.

또한 每 10 年마다 화란의 統計의 集大成인 「화란의 統計歷史」를 發刊하고 있다.

그 외에도 每月 「화란 統計月報」 또는 매주 「統計속보」를 發行하여 統計資料普及에 迅速을 기하고 있다.

상기의 各種 定期統計刊行物이나 센서스 보고서 등은 거의 모두 中央統計局 發刊課에서 直接 印刷되며 모든 調査票 또한 發刊課에서 印刷되어 配付된다.

⑩ 國際的 統計協力

國際 統計의 比較性 및 이의 改善에 關한 國際的 統計活動에 中央統計局은 能動的 參與를 하고 있다.

화란의 中央集中型 統計体制은 이같은 國際的 活動에 있어서 統計基準의 設定을 容易하게 한다.

國際統計活動은 中央統計局과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統計事務局과의 協助아래 遂行된다.

또한 1948 年 발족한 Benelux (Belgium Netherlands Luxemburg) 經濟共同體를 爲한 統計調整委員會가 別途 設置되어 있으며 1913 年 國際統計協會 本部가 中央統計局에 設置되어 非政府的 統計活動에 있어서도 世界各國의 主導的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⑪ 国民計定

화란의 国民所得을 公式的으로 推計한 것은 1938年 부터인데 그後 1942年부터는 国民計定体制의 도입으로 괄목한 發展을 보았다.

国民計定の 作成은 中央統計局의 主要機能中에 하나이며 国民計定 課에서는 이에 關한 綜合的 研究를 하며 새로운 項目을 設計한다.

中央統計局은 이 業務를 爲하여 直接 資料蒐集에는 參與하지 않 으나 基本的 統計가 欠如되었을 때는 이에 關한 實査를 시도한다.

慣例的으로 中央統計局의 新規 職員은 단기간 国民計定課에서 수습 하도록 되어 있다.

近日 經濟分析 및 經濟施策에 있어서 国民計定이 広範圍하게 使 用되고 있으며 年刊인「經濟計劃」(中央企劃局 發刊)의 重要基本 資料로서 掲載되고 있다.

또한 Benelux 地域國家는 3個國이 類似한 方式으로서 政府予算을 調節하도록 동의하고 있다.

現在 国民計定課의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国民計定の 編製

2. 長短期 經濟指表의 作成

① G . N . P

② 輸出入 指數

③ 民間消費支出

④ 總固定資本形成

3. 國家統計

4. 勞働人口 및 所得分配統計

中央統計局의 職員은 報酬規定에 따라 크게 高級, 中級, 初級으로 나눌 수 있다.

高級, 中級 職員은 모두 大學卒業의 學歷을 가진 者들이지만 初級 職員은 統計分野의 技術的 經驗을 쌓은 者로서 거의 Computer 運管에 종사한다.

中央統計局의 局長은 中級 및 初級 職員에 對한 僱用權을 갖고 있으며 高級管理職에 對하여는 經濟省 長官이 所管한다.

全職員의 70%가 大學에서 經濟學 또는 數學을 이수한 者들이지만 事實 統計專門家는 소수에 不過한 실정이다.

各 分野別로 人員現況은 다음과 같다.

	科學分野	統計分野	行政分野	計	比率
高級	50	16	32	98	6.6
中級	27	360	170	557	37.8
初級	-	306	513	819	55.6
計	77	682	715	1,474	

끝으로 中央統計局機構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